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I

김경준 · 김영지 · 윤철경 · 이은주 · 이은주 · 임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보고서 표지 디자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보고서 디자인 콘테스트』의 당선 작품을 카카오톡 이모티콘 작가(작가명 모지)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이 실사한 것입니다.

***당선작 프롬프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미디어, 권리”

AI 디자인 _ 곽진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행정원)

실사 디자인 _ 변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인턴)

협동연구총서 23-89-01
연구보고23-일반0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I

저 자 김경준, 김영지, 윤철경, 이은주, 이은주, 임성은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윤철경(GIL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
_이은주(동국대학교 교수)
_이은주(청주교육대학교 교수)
_임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구본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취약계층 청소년의 삶을 전체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2년에 걸쳐 연도별로 세부 하위 주제를 설정하여 각 영역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정책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23년도에는 복지 분야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을 설정하고, 취약계층 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 요구 분석,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음. 특히, 델파이조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유형의 청소년을 선정하여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였음.

■ 연구내용

- 복지 분야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설정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복지 영역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취약한 대상인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유형을 선정하였음.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 진단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대상의 정책을 진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관련 기관에 대한 정책 서비스 지원 실태에 대한 종사자 의견과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관련 법·제도, 정부 및 민간기관의 관련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였음.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과 관련한 법률이나

조례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입법 상 혹은 시행 상의 문제, 그리고 법률 제·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하였음.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 요구 분석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재 현장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서비스의 수행 및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서비스의 중요도, 필요도와 비교함으로써 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음.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과제 개발 :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복지 분야 지원정책 분석과 현장 실무자 요구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정책과제는 크게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제·개정, 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음.

■ 주요 연구방법

- 전문가 델파이 조사 : 복지 영역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대상과 정책 내용, 주요 이슈,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8일 ~ 4월 17일 사이에 아동·청소년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복지 관련 연구원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학계·현장 실무자, 부모 등 취약계층 청소년 특성별로 3~4명 내외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며 정책 과제를 개발하였음.
- 설문조사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4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청소년 현황과 정책 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취약계층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온라인 웹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취약계층 시설 종사자를 4개 유형별로 각 100명 내외로 할당하여 최종 511명을 조사하였고, 부적합한 응답자 21명을 제외한 49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초점집단인터뷰(FGI) :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의 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8일 ~ 2023년 8월 21일 사이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부모 및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1~2시간 동안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음. FGI는 총 3회 진행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의 진행으로 시설 보호 기관 종사자 4명, 가족 돌봄 기관 종사자 5명, 경계선 지능 기관 종사자 4명,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3명,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부모 4명 총 20명이 참여하였음.

- 워크숍 개최 :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13일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각 유형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주요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심리 정서적 문제(우울증, 정서 불안, ADHD 등), 학업 수행의 문제(기본기 부족, 경계선 지능, 주의력 부족 등), 행동문제(폭력성, 부정적인 언어사용 등), 자립 준비의 어려움(자립 의지 및 자립 준비 부족 등) 등이었음.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서비스는 심리·정서·행동 치료 지원, 진로 및 취업·직업 지원, 상담 지원 등이 중요도에 비해서 지원이 많지 않았음. 또한, 아동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추진, 시설종사자 배치 기준 유연화 등도 필요성에 비해서 정책 수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시설 예산 지원 확대, 자립 지원의 내실화, 상담 지원 확대, 전문치료시설 설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시설종사자의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으로 나타남.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보호자의 경제활동 부재, 가족 내 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 정서적 어려움(심리적인 케어나 의지할 성인의 부재, 가장으로서의 심리적 부담감,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등), 학업문제의 어려움(가족 돌봄으로 학습 시간 부족, 학원비 부족, 기초학습 능력 부족 등) 등이었음.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의 중요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는 대상자 실태 파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정신건강 지원, 학업 및 진로 지원, 경제적 지원, 가족 돌봄 관련 법·제도 개선,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지원, 돌봄 대상자 의료 연계 지원 등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책·서비스 요구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경제적 지원, 정신건강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지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법제화 또는 조례 제정 등으로 나타남.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학업 수행 문제(학업 수행 능력 저하, 학습 의욕 및 학업 의지 부재 등), 친구 관계 맺기의 어려움(또래관계 형성 부족, 사회성 부족, 대화·행동수준·지능 차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 등), 자기관리 문제(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및 과다 사용, 계획적인 소비의 어려움, 위생개념 부족 등) 등으로 나타났음.
- 한편,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관련한 법·제도 개선, 정책 접근성 제고, 예산 제고,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자기 관리 프로그램,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정책·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비해서 정책 지원이나 수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어려움과 정책 실태를 반영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책·서비스 요구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정확한 실태 파악, 예산 지원,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진로·취업·직업 지원, 사회성 향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처 프로그램

개발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났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며, 일상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PC나 휴대전화 없으면 불안해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는 평소에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은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역량이 부족하고, 보호자의 협조가 부족한 것 등이었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을 위해서는 지각·결석이 잦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고 돕고자 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 교육을 통한 담임교사 등의 관찰력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학교·청소년 기관 등의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교사 및 청소년 기관 종사자 등 대상의 교육 실시 등이었음.
- 한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이유는 당사자의 거부,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 보호자가 원하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부모 동의 부족 등이었음. 따라서 은둔형 청소년 개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 우울, 불안 등을 다루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 등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심리·마음건강 상담, 대인관계·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났음.

2)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및 정책 진단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현황 :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은 '보호자의 부재, 적합한 양육 능력 부족, 보호자로부터의 이탈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

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함.

- 보호대상 아동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2022년 시설보호 1,294명(56.5), 가정보호 995명(43.5%)으로 가정보호보다 시설보호의 비중이 여전히 높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이나 규모를 추산하기는 불가능함. 다만,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추세를 추측할 수 있음.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2021년 3.2%, 2022년 3.6%였음.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현황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2,402명에 이르렀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0,401명으로 급감하였으나 2021년 21,47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법·제도 현황 :

- 시설 보호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아동보호의 원칙(제2조 3항),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제15조), 가정위탁보호제도(제3조 6항), 시설보호(제15조 1항 4호), 보호종료(제16조 1항, 제16조의 2)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

-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기 구축되어 있으며, 주무 부처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 보호 아동과 청소년은 입소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수준이 차별적인 문제점이 있음.
- 시설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지원, 후원자 연계 및 후원금 관리, 치료비 지원, 대학진학 자금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원 가족과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아동양육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개별급여) 지급 등 경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립준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장기 청소년쉼터 설치 기준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보호 중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제한적이며, 보호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음. 또한 시설 입소기간 아동발달 지원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시설 퇴소의 경우에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됨.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현황 :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의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신·신체질환,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 등을 돌보는 18세 미만 또는 20대 중반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국가별로 연령범위가 다르고 발생 비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실시된 정부 실태조사 결과 1~3%의 청소년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가족 돌봄 내용은 가사노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며, 생계비 지원이나 휴식, 문화여가 등의 욕구가 높았음. 또한 돌봄과 가사부담으로 높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문제나 진로탐색의 어려움과 돌봄으로 또래관계 문제가 야기되었음.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법·제도 현황 :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단독 법안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안」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실시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과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노인의로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음.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

- 일상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대상 측면에서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범위를 세분화하여 정책을 구분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법, 이용원칙,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함.
- 우리나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국가수준은 무반응 국가 7단계에서 인식초기단계 6단계와 인식·정책 신생국 5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현황 :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적장애로 분류될 정도보다는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일상 생활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생애 주기에 따라 발달, 학습, 사회적 관계, 정서, 신변관리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함.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은 지능 분포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56%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시설 보호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것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음.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법·제도 현황 :

- 2023년 현재 법 조항에 ‘경계선 지능’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없음. 그러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능력의 제한’, ‘지능지수의 범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포괄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음.
-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느린 학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¹⁾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약 68개의 지자체 조례가 있으며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
- 2023년 10월 현재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²⁾, 「경계선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2) 강기운 (2023b).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운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3R0P7O1N000W9V3T2S0A0Z1Z0N1에서 2023년 10월 20일 인출.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³⁾,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⁴⁾이 발의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 아동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

-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전체적으로 취약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아기, 학령기 이후의 정책이 거의 없으며, 학습 이외의 영역과 가정양육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음.
- 경계선 지능 용어 자체가 공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지능지수(IQ)의 범위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은 지능검사 분포를 통해서 약 13~14%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샘플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출현율을 조사한 자료가 없는 실정임.
- 지자체별로는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고 있지만,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법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현황 :

- 은둔은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회의 가장 상징적이고도 필연적인 부작용이며, 어떤 별개의 또는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규모는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연령대나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7년에는 19~39세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13만 5천여명, 2020년에는 18~34세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3) 허영 (2023).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D3C0D3C2B9Q1P0O4M0V5V2U7T4R7에서 2023년 10월 20일 인출.

4) 최영희 (202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3S0T5B3B0Z1A1Y1Z0X5F5G8E5F1에서 2023년 10월 20일 인출.

37만명으로 추정하였고, 윤철경 외 연구(2022)에서는 2021년 18~34세 전국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234,788명으로 추정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21년에 19~34세 고립 청년을 5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제도 현황 :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관련 법제도는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⁵⁾,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조례 등이 있음.
- 당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기청소년 유형으로 추가하였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은둔형 외톨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학교 등교를 하지 않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현재 30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대체로 은둔형 외톨이 발견,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활력 조성, 문화예술체육, 자립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16개 지자체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내용상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립청년을 규정하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진단 :

-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보되어 있지 못함.
- 14개 지역에서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들이 제정되어 청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의 내용

5)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과 방식의 구체성 수준에 편차가 크고 지원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많음.

-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20세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참여하기 어려움. 간접적·제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유효한 사업들이 일부 실시되고 있었으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특화된 지원정책사업은 사실상 부재함.
- 청소년동반자 사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이지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입장에서는 참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큼.
- 전반적으로 1년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며, 안정된 관계형성과 장기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1년 이내 단위의 프로그램 신청과 선발형태의 사업추진은 부적합함.
-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청년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이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해본 경험이 있거나, 지원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수행력을 가진 지원조직을 찾기는 어려움.

■ 정책과제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공통적인 과제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확충 및 특성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맞춤형 전문 인력 배치 및 연수 강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제·개정 추진

2)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서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건물형태를 ‘상가건물’을 제외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과 동일하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하고,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침실은 ‘침실 1개의 정원을 최소 2~3명 이하’로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퇴소 규정의 보완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의 청소년보호체계에서의 공적 책임 규정의 강화를 제안함.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혼재되어 사용되는 개념의 명확화, 기능 중심 청소년쉼터로의 개편을 제안함.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 방안
 -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측면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시설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 인력 등을 제안함.
-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최근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의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과 진료비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보호 시범사업 확대,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함.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 보편적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률이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단독법안이 제정될 경우 연령, 돌봄 범위와 내용은 청년집단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실태조사, 인식개선과 홍보, 발굴시스템이 의무화되어야 함.
 - 단독 법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과 「가족 돌봄 청년법」으로 구분하거

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제정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사회서비스 관련법과 돌봄 서비스 유관 법률을 개정하여 가족 돌봄의 돌봄 대상자를 포괄적 돌봄 체계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법안」(안)⁶⁾에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방향이나 예산지원에 있어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사례발굴과 서비스 개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함.
- 민간단체는 공공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과 협업을 통해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 방안

- 유관 체계의 사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의 전문 인력 확보 방안과 교육방법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음.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관한 교육을 추가 실시해야 함.

● 신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커뮤니티 케어 허브와 같은 지역사회 돌봄과 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존 방문서비스 종사자 직군을 활용한 발굴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가족 돌봄(Family Care) 카드(가칭), Self-Care Day(가칭), 지역사회 돌봄 매니저(가칭) 등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휴식지원서비스 및 보호자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도 필요함.

6) 서영석 (2023b).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의안 원문】.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필요 예산 및 확보 방안

-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의 비용 추계서에 기초하여 가족 돌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해보면, 청년층을 포함하여 매년 평균 약 85억원이 필요하며,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면 다소 낮아질 수 있음.

4)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가지 법률 제·개정(안)을 제안함.
- 1안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 마련의 장점이 있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임.
- 2안은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법이 신설되기 전에 현행법에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여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3안은 현행법의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⁷⁾,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관련 법률임.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신규 구축하는 1안과 기존 전달체계 안에 편입하는 2, 3안을 제안함.
- 1안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안으로 사회복지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 관리 등이 가능하여 지원의 연계를 높일 수 있음.
- 2안은 취약계층 복지 전달 체계에 편입하는 안으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7)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관리하므로 중복지원의 문제를 줄이고 지원 대상이 생길 때마다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3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전달체계에 편입하는 안으로 기존의 발달장애인 장애인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고, 광범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방안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현재 종사자들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임.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 요구는 학습, 심리·정서, 일상생활, 진로·직업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원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신규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 적응 사업의 두 영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인프라 구축 사업은 위험군에 대한 조기 진단, 출현률 조사, 실태 조사,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인식 개선, 종사자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포함함.
- 사회 적응 사업은 구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네트워킹 및 흥미 탐구 사업,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거점 대학 시범사업, 지역사회 적응 지원, 진로 취업 지원과 가족 지원 사업을 제안함.

● 필요 예산 확보 방안

- 현재의 다른 정책 기반으로 비슷하게 운영되는 사업 추진 등을 참고하여 제안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50억으로 예측하였음.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구축과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음.
- 제도 구축과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위해 각 부처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비용이 국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함.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도 일정 정도 포함해야 함.

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복지지원에 위한 정책과제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한 예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촉진하고 교원 연수, 학업중단숙려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제안함.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발견과 사례관리, 부모 상담과 교육 및 멘토링, 청소년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중장기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제안함. 기존에 있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에 적용 대상 연령, 적용할 수 있는 지원내용 등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고, 분산된 전달체제로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사항

- 기존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안과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의 두 가지로 제한함.
- 기존 전달체계 활용방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9~24세 은둔 징후 또는 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하는 안임.
-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은 시·도별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가족지원 센터와 같은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안임.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방안

-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은 사업기획자, 소통역량을 습득한 전문가, 은둔 경험을 갖춘 준전문가, 은둔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사 양성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신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견을 위한 홍보사업을 제안하였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치료 지원 등임.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 프로그램은 부모교육 및 멘토링, 자조모임, 부모 상담 및 심리치료 등임.
- 은둔형 외톨이 발견을 위한 홍보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 실태조사 및 세미나, 홍보물 제작 등임.

● 소요예산 확보 방안

-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청년 멘토 양성 및 배치, 부모 멘토 양성 및 배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은둔형 외톨이 부모 프로그램 지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견·홍보 등의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은 98억 7,960만원으로 추정함.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I

협동연구총서 23-89-01
연구보고23-일반06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9
4. 연구방법	11

II. 취약계층 청소년 개념과 복지 관련 정책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19
2.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28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현황	31
4. 소결	40

III.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및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조사

1. 조사개요	47
2. 조사결과	48
3. 소결	84

IV.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 복지 요구 분석

- 1. 설문조사 95
-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60

V.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현황 183
- 2.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법·제도 현황 191
- 3.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205
- 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213
- 5. 소결 220

VI.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현황 225
-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법 제도 현황 230
-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257
- 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262
- 5. 소결 281

VII.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경계선 지능 청소년 현황 289
- 2. 경계선 지능 청소년 법·제도 현황 296
- 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진단 303
- 4.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311
- 5. 소결 329

VIII.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현황 334
-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제도 현황 350
-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진단 364
-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367
- 5. 소결 384

IX. 결 론

1.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절차 .. 389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391

참고문헌 425

부록 445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12
표 Ⅰ-2.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13
표 Ⅰ-3. 설문조사	14
표 Ⅰ-4. 초점집단인터뷰	15
표 Ⅱ-1.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와 유형	21
표 Ⅱ-2.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령	22
표 Ⅱ-3. 취약계층 청소년 법률 및 서비스 내용	24
표 Ⅱ-4.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29
표 Ⅱ-5.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서비스	32
표 Ⅱ-6.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예산	38
표 Ⅲ-1. 중앙 정부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취약계층 청소년	49
표 Ⅲ-2. 중앙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50
표 Ⅲ-3. 최근(1~2년 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문제점 등)	53
표 Ⅲ-4. 중앙 정부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문제점	62
표 Ⅲ-5. 지방 정부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문제점	66
표 Ⅲ-6. 민간단체·시설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71
표 Ⅲ-7.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 개선과제	77
표 Ⅳ-1. 조사현황	96
표 Ⅳ-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98
표 Ⅳ-3. 주요 조사영역 및 문항구성	100
표 Ⅳ-4.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03
표 Ⅳ-5. 기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07
표 Ⅳ-6.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기술통계	108
표 Ⅳ-7.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의 필요도와 수행정도 기술통계 ..	109
표 Ⅳ-8.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서비스	110

표 IV-9. 시설 유형별로 수정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서비스	111
표 IV-10. 시설 유형별로 추가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서비스	112
표 IV-11.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서비스	113
표 IV-12. 시설 유형별로 수정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서비스	113
표 IV-13. 시설 유형별로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서비스	114
표 IV-14.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15
표 IV-15. 기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17
표 IV-16.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서비스 중요도	119
표 IV-17.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120
표 IV-18.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대상 범위	121
표 IV-19.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수행 돌봄 범위	122
표 IV-20.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주체 가능 여부	122
표 IV-21. 돌봄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	123
표 IV-22. 돌봄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	123
표 IV-2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발굴 방법	124
표 IV-2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서비스 제공 필요 유무	125
표 IV-2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서비스 유형	125
표 IV-26. 정부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추진에 대한 의견	126
표 IV-27.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26
표 IV-28. 기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130
표 IV-29. 경계선 지능 정책의 필요도 및 수행실태 기술통계	131
표 IV-30.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 및 지원정도 기술통계	132
표 IV-31. 학교 내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와 지원실태 기술통계	134
표 IV-32.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정부부처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135
표 IV-33.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135
표 IV-34. 학교생활에서의 은둔생활 사전징후	136
표 IV-35. 은둔생활 주요 계기	137
표 IV-3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	138
표 IV-37. 은둔형 외톨이 주요 활동	139
표 IV-3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경로	140
표 IV-39. 조기발견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141

표 IV-4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	142
표 IV-41.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	143
표 IV-42.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이유	144
표 IV-43. 학교·기관에서의 지원	145
표 IV-44. 연계한 기관	146
표 IV-4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만나는 방법	147
표 IV-4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148
표 IV-47.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향후 전망	148
표 IV-4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전망 이유	149
표 IV-49.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150
표 IV-50. 은둔형 외톨이 문제 최우선 지원 대상	151
표 IV-51. 은둔형 외톨이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152
표 IV-5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153
표 IV-53. 은둔형 외톨이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154
표 IV-54.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한 지원	155
표 IV-55. 실무자로서의 역량	156
표 IV-56. FGI 응답자 특성(시설 보호, 가족 돌봄, 경계선 지능 종사자) ..	160
표 IV-57. FGI 응답자 특성(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부모)	161
표 IV-58. FGI 질문내용	161
표 V-1.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2013~2022)	185
표 V-2.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유형별 시설보호 현황(2020~2022) ..	187
표 V-3. 청소년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2014~2022)	189
표 V-4. 18세 미만 실종 아동·청소년 현황 (2018~2022)	189
표 V-5.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현황(2012~2021)	190
표 V-6.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2023)	190
표 V-7. 청소년쉼터 유형별 현황(2023)	191
표 V-8.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유형 및 기능	197
표 V-9. 청소년쉼터 유형 및 기능	205
표 V-10.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 서비스	211
표 V-11. 청소년쉼터 유형 개편안(기능 중심)	216
표 VI-1. 가족 돌봄청년의 서비스 욕구(%)	228
표 VI-2.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사례	231
표 VI-3. 기본 서비스 내용	234
표 VI-4. 특화 서비스 내용	235
표 VI-5. 서비스 제공 방법	236
표 VI-6. 서비스 이용원칙	237

표 VI-7.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237
표 VI-8. 서비스 추진체계	238
표 VI-9. 영국 스코틀랜드 보조금 체계	249
표 VI-10. 영국 영 케어러 정책 변화 추이	250
표 VI-11. 호주 보조금 체계	253
표 VI-12. 영 케어러 대응 수준	261
표 VI-13. 사회서비스 인력안내	276
표 VI-14. 가족 돌봄 지원 5년 간 필요예산 추계	281
표 VII-1. 지자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의 경계선 지능 정의	292
표 VII-2.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 법·제도 현황	297
표 VII-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 연령 및 지원 영역	304
표 VII-4.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개정(안)	311
표 VII-5. 현행 법 개정(안)	312
표 VII-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314
표 VII-7.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안)	317
표 VII-8. 경계선 지능 청소년 종사자 역량 및 역량 제고 방안	318
표 VII-9.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안)	320
표 VII-10.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적응 사업(안)	322
표 VII-11. 2023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	327
표 VII-12. 경계선 지능 청소년 예산 추계	328
표 VIII-1.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335
표 VIII-2. 은둔형 외톨이 발생비율의 변화(2017~2021)	338
표 VIII-3. 2021년 전국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 규모(2021년 18~34세 인구 기준, 추정치)	339
표 VIII-4. 은둔형 외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별/학력별)	340
표 VIII-5. 응답자의 평소 외출 정도	340
표 VIII-6. 은둔생활을 하게 된 계기	341
표 VIII-7. 은둔생활 기간	342
표 VIII-8. 은둔이 시작된 최초 시기	343
표 VIII-9. 청소년복지지원법	351
표 VIII-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352
표 VIII-11.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현황	353
표 VIII-1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 제정 현황	355
표 VIII-13. 청소년동반자 현황	356
표 VIII-14.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업목표	358
표 VIII-15.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사례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부평)	361

표 Ⅷ-16. 시·도별 인구비율로 추정된 시·도별 18-24세 연령대 은둔형 외톨이 인구와 지원센터 수	374
표 Ⅷ-17.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사업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383
표 IX-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별표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개정(안)	394
표 IX-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400
표 IX-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401
표 IX-4. 가족 돌봄 지원 5년 간 필요예산 추계	406
표 IX-5.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개정(안)	407
표 IX-6.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안)	409
표 IX-7. 경계선 지능 청소년 종사자 역량 및 역량 제고 방안	410
표 IX-8.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안)	411
표 IX-9.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적응 사업(안)	412
표 IX-10. 경계선 지능 청소년 예산 추계	413
표 IX-1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415
표 IX-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416
표 IX-1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사업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422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7
그림 Ⅰ-2. 세부 유형 선정 절차 및 협동연구 추진체계 조직도	8
그림 Ⅰ-3. 연구절차	16
그림 Ⅱ-1. 취약계층 청소년 분류	27
그림 Ⅳ-1. 조사도구 개발절차	99
그림 Ⅳ-2.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 어려움 ...	106
그림 Ⅳ-3.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IPA 분석	108
그림 Ⅳ-4.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의 필요도와 수행정도 IPA 분석	109
그림 Ⅳ-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	117
그림 Ⅳ-6.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	129
그림 Ⅳ-7. 경계선 지능 정책의 필요도 및 수행실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32
그림 Ⅳ-8.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 및 지원정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33
그림 Ⅳ-9. 학교 내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와 지원실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134
그림 Ⅳ-1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복수응답)(n=161)	138
그림 Ⅳ-11. 은둔형 외톨이 주요 활동	139
그림 Ⅳ-1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경로	140
그림 Ⅳ-13. 조기발견이 어려운 이유	141
그림 Ⅳ-1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	142
그림 Ⅳ-1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	143
그림 Ⅳ-16.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이유 ...	144
그림 Ⅳ-17. 학교·기관에서의 지원	145
그림 Ⅳ-18. 연계한 기관	146
그림 Ⅳ-1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만나는 방법	147
그림 Ⅳ-2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향후 전망	149

그림 IV-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전망 이유	150
그림 IV-22. 은둔형 외톨이 문제 최우선 지원 대상	151
그림 IV-23. 은둔형 외톨이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152
그림 IV-2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153
그림 IV-25. 은둔형 외톨이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154
그림 IV-26.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한 지원	155
그림 IV-27. 실무자로서의 역량	157
그림 V-1.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수 및 발생원인(2013~2022)	186
그림 V-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별 현황(2013~2022)	187
그림 V-3. 보호대상아동 보호 추진체계	199
그림 V-4.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추진체계	201
그림 V-5.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	210
그림 VI-1.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체계도	239
그림 VI-2. 서대문구 통합사례관리 체계	245
그림 VI-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안)	275
그림 VII-1.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경로 도식	305
그림 VII-2. 지원 체계 구조	316
그림 VIII-1. 고립·은둔 청년 발생률 연령별 변화	338
그림 VIII-2.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단계별 지원서비스	358
그림 VIII-3.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359
그림 VIII-4. 체인지업프로젝트 지원내용	362
그림 IX-1.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절차	390
그림 IX-2.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체계(안)	403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⁹⁾. 청소년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가정의 노력 이외에 사회와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해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일차적인 문제는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개인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고, 이차적인 문제는 이들의 문제가 집단 간,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즉,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제는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사회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발·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격차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가 300만원 미만은 17만 8천원, 800만원 이상은 64만

8) 이 장은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9)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대한민국헌법(제10조).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3년 2월 3일 인출.

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2%, 9.2%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은 300만원 미만은 57.2%, 800만 원 이상은 88.1%로 전년대비 3.5%, 2.2% 증가하였다¹⁰⁾. 또한 부모의 소득수준은 자녀의 문화·예술·스포츠교육 및 근로소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10년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를 활용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문화·예술·스포츠교육 평균 참여시간이 길어지고, 자녀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소득 2분위 집단의 문화예술·스포츠 교육 평균 참여 시간은 1.71시간, 3분위는 1.91시간, 5분위는 1.95시간으로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참여시간이 길어졌고(이정우 외, 2022: 114), 첫 일자리 평균 부모소득이 1분위에 속한 경우에 자녀 소득은 199만원~212만원, 3분위는 208만원~227만원, 5분위는 226만원~257만원으로 나타났다(이정우 외, 2022: 81). 이밖에 청소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신규 발생 건수가 연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률은 ‘18년 0.92%(52,539명), ‘21년 0.80%(42,755명)에서 ‘22년 1%(52,981명)로 증가하고 있다.¹¹⁾¹²⁾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거나¹³⁾ 자살하는¹⁴⁾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수행해온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책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시행 상의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작동 실태를 점검·진단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사각지대를 비롯한 운영상의 개선점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해주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적용 연령 범위 확대, 비용 지원이 가능한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김주경, 허민숙, 2020). 또한

10) 통계청 (2023).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3. 3. 7.).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4071&act=view&mainXml=Y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11)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9. 8. 30.). https://kess.kedi.re.kr/post/6684864?itemCode=04&menuId=m_02_04_02_01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12)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3. 8. 30.). https://kess.kedi.re.kr/post/6795001?itemCode=04&menuId=m_02_04_02_01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13) 청소년 사이버상담건수 ‘19년 246건 건에서 ‘20년 321건 건으로 30.5% 증가

14) 10대, 20대 자살사망자 ‘19년 1,606명에서 ‘20년 1,772명으로 10.3% 증가

15) 여성가족부 (2021a).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9. 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8063에서 2023년 3월 13일 인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해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기존 규정이 청년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이들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이러한 사례는 기존 정책의 운용 과정에서 정책대상 발굴 및 지원 범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사각지대 및 누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종합적인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기존의 취약계층 청소년과 관련한 연구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장애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정책 대상이나 정책 내용이 한정되어 취약계층 청소년의 삶의 개선을 위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은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성윤숙, 문호영, 천정웅, 이희현, 2022: 6).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발생하게 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다. 셋째, 정부에서 저소득 가정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한부모 가정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 온 것¹⁶⁾에 비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 노력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취약계층 청소년의 삶을 전체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하여 2년에 걸쳐 연도별로 세부 하위 주제를 설정하여 각 영역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문제의 원인과 정책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2개년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중점을 두어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첫째, 생애발달주기를 고려한 정책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취약계층 청소년 연구의 대부분이 개별 정책영역 내에서 분절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보완하여 정책 대상자의 관점에서 생애발달주기를 고려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특성상 아동기, 청소년기 및 청년기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16)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98개, 2020년에는 194개, 2021년에는 186개로 나타나고 있다(성윤숙 외, 2022: 67-68).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였다. 둘째, 여러 정책 영역에서 특별히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정책을 진단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대상이 필요로 하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금년도에는 복지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을 발굴하여 정책 진단과 정책 개발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기존 정책의 진단’과 ‘신규 정책 수요 발굴’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토대로 정책의 누수 및 사각지대를 찾는 데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위해 구체적인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추진체계

1) 연차별 계획

이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과 개발을 위해 정책 영역별로 2개년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세부적인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은 [그림 I-1]과 같다.

1차 년도(2022년)에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이론적 논거 등을 제시하였으며, 국내·외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1차 년도 주요 연구 목적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 진단과 정책 개발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분야 분석을 위한 분석틀 개발과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관련 주요 법령 현황 분석,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인식 및 실태분석,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 및 평가·효과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차 년도(2023년)에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분야의 기존 정책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복지 분야의 ‘공정한 출발’ 보장을 위해 정책대상자인 청소년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출발선 보장에 필요한 정책 점검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즉, 복지 분야에서 취약한 청소년 대상과 지원 내용 등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1차 년도에 개발한 분석틀을 기초로 복지 분야의 법령과 정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현장의 요구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복지 분야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델파이조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년의 4개 유형 청소년을 선정하여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 (2022년)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정의 및 정책대상자 범위 도출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중요성 논의 •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교육 분야' 정책진단 및 제도 보완 방안 도출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기존 법령 및 정책 분석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지원 실태 분석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정책 욕구 및 제도 진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교육 분야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방법	• 문헌 연구(선행연구, 법령 및 기존 정책 분석) • 2차 자료 분석 • 개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FGI), 전문가 의견조사
▼		
2차년도 (2023년)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복지 분야 정책진단 및 제도 보완 방안 도출 (시설 보호·가족 돌봄·경제선 지능·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분야 기존 법령 및 정책 분석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분야 지원 실태 분석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분야 정책 욕구 및 제도 진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분야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방법	• 문헌 연구(선행연구, 법령 및 기존 정책 분석) • 델파이조사, 집단 면접조사(FGI),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의견조사

그림 I -1. 연차별 연구 추진 계획

2)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선정 절차 및 협동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2023년도 복지 분야의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 진단과 정책 개발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청소년복지 정책 현안 및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제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4개의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을 선정하였고, 각 청소년 유형별로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절차는 [그림 I-2]와 같다.

먼저 복지 분야 취약계층 청소년 연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중에서 정책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을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선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중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유형을 조사하였

다. 또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복지 분야 취약계층 청소년 중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책 개발이 시급한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중점 연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4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협동연구를 수행할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현장 및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정책 진단과 정책 개발을 수행할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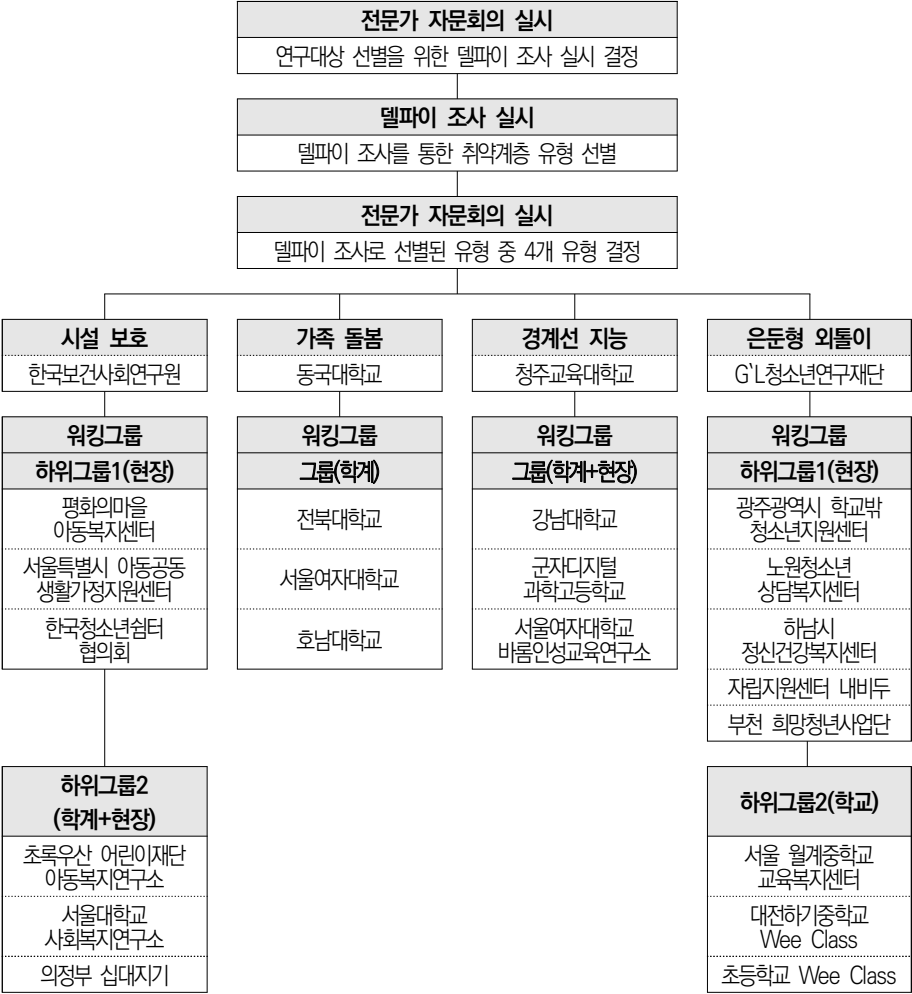


그림 1 -2. 세부 유형 선정 절차 및 협동연구 추진체계 조직도

3. 연구내용

1) 복지 분야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설정

1차 년도 연구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에서는 교육 분야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경제, 문화, 가정, 학교, 지리, 개인의 6개 발생 영역별로 분류하여 교육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개발하였다. 2차 년도인 2023년도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서 분류한 6개의 틀을 기초로 하였지만,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복지 영역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취약한 대상인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유형을 선정하여 각 청소년 유형별로 정책을 진단하고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 진단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대상의 정책을 진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관련 기관에 대한 정책 서비스 지원 실태에 대한 종사자 의견과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관련 법·제도, 정부 및 민간기관의 관련 정책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취약계층 관련 기관 종사자의 의견 조사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대상의 정책 서비스 수행 실태와 정책 지원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법·제도, 정부 및 민간기관의 관련 정책·서비스의 분석은 1차 년도에 Gilbert와 Terrell(2005), 이희현 외(2020)의 분석틀을 수정하여 개발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정책 대상, 정책 내용, 전달 체계, 재정의 4개 영역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에서의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만,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의 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적용하였다.

먼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지원 정책 분석을 통해서 정책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지원 예산 등을 분석하였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방

법, 서비스 이용원칙, 서비스 제공방식과 추진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의정부시 느린 학습자 돌봄 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종합사회복지관, 서울 학습 도움센터, 인천, 용인 등 교육청 위탁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현재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영역, 가정배경을 분석하였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지원 내용과 지원방식, 지원조직, 지원체계, 지원활동가, 재정지원 등을 분석하였다.

3)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이 법률이나 조례 등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여 입법 상 혹은 시행 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을 통하여 아동보호의 원칙,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가정위탁제도, 시설 보호, 보호종료 등을 분석하였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쉼터 관련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청년 지원 법안」과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과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느린 학습자,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학습지원과 관련된 조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례」 등을 분석하였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등 30개 지방자치단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분석하였다.

4)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 요구 분석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이 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정책 진단과 지원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현장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서비스의 수행 및 지원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서비스의 중요도, 필요도와 비교함으로써 복지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5)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 정책과제 개발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복지 분야 지원정책 분석과 현장 실무자 요구 분석, 그리고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정책과제는 크게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제도 제·개정, 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자료조사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선행 연구와 법·제도 및 정책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취약계층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파악과 정책 서비스 파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통계자료와 선행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과 제정 혹은 개정 중에 있는 법률안, 그리고 각 지자체 관련 조례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복지 영역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대상과 정책 내용, 주요 이슈,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8일 ~ 4월 17일 사이에 아동·청소년 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 관련 연구원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1차 조사는 개방형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하였으며, 3차 조사는 2차 조사에서 추가한 항목을 포함하여 재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후 조사내용이 타당한지와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 및 수렴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용타당도(CVR)를, 그리고 항목 간 우선순위 파악을 위하여 평균(표준편차)을 파악하였다.

3)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

연구의 방향과 연구 대상과 연구내용의 설정, 주요 연구방법, 연구 결과 등 연구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대상 설정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델파이조사를 제안하였으며,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1차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내용 검토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차	설문 및 면접조사 설문지 내용 검토	
3차	조사결과 및 정책 제언 검토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학계, 현장 실무자, 부모 등 취약계층 청소년 특성별로 3~4명 내외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며 정책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워킹그룹은 5월~10월 사이에 매월 혹은 격월로 온·오프라인 회의 또는 서면 자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과 대상 청소년 현황, 그리고 정책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표 | -2.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유형	횟수	참가인원	논의내용
시설보호	1차 (5/17)	3인 (현장전문가3)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어려움 및 지원의 사각지대 탐색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관련 법, 제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논의
	2차 (5/22)	3인 (현장전문가1, 연구원2)	- 설문조사 대상 시설(양육시설, 그룹홈, 청소년쉼터) 관련 논의 - 설문조사 시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 관련 문항 포함 논의 - 설문조사 세부 문항 검토 의견 공유
	3차 (10/17)	2인 (현장전문가2)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과제 검토
가족돌봄	1차 (5/19)	3인 (교수3)	-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관한 논의 및 설문문항(초안) 검토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FGI 질문 구성 논의
	2차 (6/19)	1인 (연구원1)	- 가족 돌봄 청(소)년 정의 논의 및 가족 돌봄 청(소)년 규모 파악 - 가족 돌봄 청(소)년의 복지욕구 파악
	3차 (10/11)	3인 (교수3)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선제적 발굴시스템 관련 구체적 방안 - 가족 돌봄 청(소)년의 포괄적인 대상과 방향 검토
경계선 지능	1차 (5/20)	3인 (교수1, 교사1, 연구원1)	- 전체 보고서 구조 및 경계선 지능인 설문 내용 검토 - 설문 그룹, FGI 참여 인원 검토
	2차 (6/1)	3인 (교수1, 교사1, 연구원1)	- 설문지 워딩 정리 및 공통문항 조정 및 설문문항 방식(순위, 리커트) 결정, 설문 누락 문항 및 참여 대상 논의 - FGI 참여 대상 선정에 관한 논의
	3차 (10/11)	4인 (교수2, 교사1, 연구원1)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거점 단위 논의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과 은둔, 고립 청소년 예방 사업 연계 필요성 논의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제·개정안 보완 사항 도출
은둔형 외톨이	1차 (6/1)	4인 (현장전문가4)	- 은둔 청소년의 범위 및 조기 발견과 개입 논의 - 은둔형 외톨이의 예방에 관한 논의 및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정의
	2차 (6/1)	4인 (현장전문가4)	- 은둔형 청소년 정책연구 관련 논의 - 은둔하는 청소년들의 원인 탐색 및 은둔의 징후 관련 논의
	3차 (6/5)	1인 (현장전문가1)	- 은둔형 청년의 증가 상황 및 경기도, 비영리 단체 지원 내용 공유 - 지역 활동가 양성 제도 검토
	4차 (10/18)	4인 (현장전문가2, 교수1, 부모1)	- 법·제도, 전달체계, 전문가 양성 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과제 검토

4) 설문조사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4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청소년 현황과 정책 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취약계층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온라인 웹조사로 진행되었는데, 취약계층 시설 종사자를 4개 유형별로 각 100명 내외로 할당하여 조사하였으며, 최종 511명(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102명,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96명,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149명,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기관 종사자 164명)의 설문지가 조사·분석되었다.

조사도구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서비스의 필요도·중요도와 수행정도·지원정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필요 정책·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비교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 파악을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하였다.

표 1-3. 설문조사

주요 요소	내 용
모집단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 종사자
표본수	기관 종사자 511명
조사내용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책 서비스 필요도와 중요도, 정책 수행 정도와 지원 정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 서비스 등
조사방법	온라인 웹조사
조사시기	7월 24일 ~ 8월 18일

5) 초점집단인터뷰(FGI)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의 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8월 8일 ~ 2023년 8월 21일 사이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부모 및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1~2시간 동안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서 각 유형별 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 필요한 정부 및 지자체 정책,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 기관에서 실제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경험하는 문제점과 기관에서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FGI는 총 3회 진행되었으며, 관련 전문가의 진행으로 시설 보호 기관 종사자 4명, 가족 돌봄 기관 종사자 5명, 경계선 지능 기관 종사자 4명 등 총 13명이 참여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과거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이겨낸 당사자와 그러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생애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당시 가족의 반응과 도움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계기로 은둔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FGI를 진행하였다. FGI는 당사자 그룹과 부모 그룹을 구분하여 2회 진행되었으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3명,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부모 4명으로 총 7명이 참여했다.

표 1-4. 초점집단인터뷰

주요 요소	내 용
면접참여자 수	취약계층 유형별 3~5명
면접참여자 특성 개요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 은둔형 외톨이 부모 및 당사자
면접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집단 면접
면접 시간	1~2시간
면접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동의 후 면접 녹취 및 기록
면접자	연구진

6) 워크숍 개최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부모 및 당사자 대상의 초점집단인터뷰(FGI) 조사 결과,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 워킹그룹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개발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2023년 10월 13일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각 유형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워크숍에 취약계층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토론에 포함하였다.

7)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방향을 검토하며, 연구 결과로 도출된 정책과제의 실행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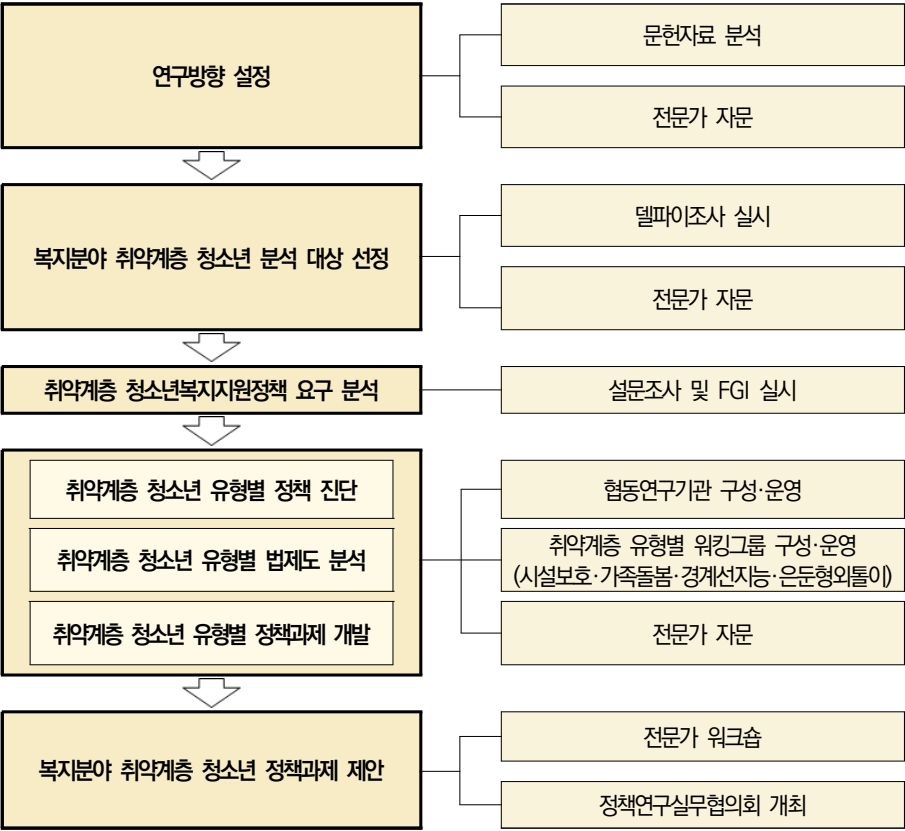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절차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개념과 복지 관련 정책

-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 2.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현황
- 4. 소결

1. 취약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

1) 학술적 개념과 범위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하며,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¹⁸⁾. 또한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이혜연, 박영균, 유성렬, 정선옥, 2012: 15). 취약계층은 취약한 내용에 따라서 노동취약계층, 고용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교통취약계층, 의료취약계층, 복지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¹⁹⁾

청소년은 그 자체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취약한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 중에서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을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부른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연구들이 취약계층 청소년을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정숙, 2016; 선미정, 전종설, 2021; 이혜연 외, 2012; 최정원, 전현희, 홍세희, 2020), 이밖에 가정해체로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이혜연 외,

17) 이 장은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1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취약계층”.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qury=%EC%B7%A8%EC%95%BD%EA%B3%84%EC%B8%B5&dicType=1&wordMatch=N&searchType=&currentPage=1&cateCode=&fieldCode=&spCode=&divSearch=search&infoType=confirm&rowPerPage=10&sort=W&side_data=0%7C1559525에서 2023년 1월 2일 인출.

19)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취약계층”.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qury=%EC%B7%A8%EC%95%BD%EA%B3%84%EC%B8%B5&dicType=1&wordMatch=N&searchType=&currentPage=1&cateCode=&fieldCode=&spCode=&divSearch=search&infoType=confirm&rowPerPage=10&sort=W&side_data=0%7C1559525에서 2023년 1월 2일 인출.

2012; 황진구, 이해연, 유성렬, 박은미, 2011),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결손가정 청소년(양경선, Grace H. Chung, 2019),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청소년(김은정, 이재인, 2006; 김지원, 박지연, 2014),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업중단 청소년(서정아, 권해수, 2010) 등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화라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과도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조규필(2013: 8-9)의 연구에서는 국내·외 취약청소년의 취약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수준, 경제적 형편, 취업능력, 가정환경, 기타 개인적·환경적 위험 등의 요소들로서 설명되고 있음을 볼 때, 위기청소년과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취약청소년을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황순길 외(2013: 5)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취약청소년의 범주에 학업 중단 청소년, 빈곤가정의 청소년, 가출 청소년, 시설 보호 및 퇴소청소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와 김영화(2010)의 연구에서는 취약청소년을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취약성으로 자립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시설청소년, 위탁보호청소년, 그룹홈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으로 범주화하고 통합적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와 대비하여 주로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나 발달상의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다루어 왔는데(이소희, 도미향, 정익중, 김민정, 변미희, 2005: 67), 이들 대상이 취약계층 청소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폭력피해청소년 등의 위기청소년과, 빈곤청소년, 근로청소년, 시설 보호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청소년 등의 소외청소년이 포함된다(송주미, 강경미, 2011; 이소희 외, 2005).

표 II-1.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의와 유형

출처	정 의	유 형
이혜연 외(2012)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가족의 자녀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청소년
조규필(2013), 황순길 외(2013)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여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고, 이로 인해 교육 및 고용 기회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빈곤가정의 청소년, 가출 청소년, 시설 보호 및 퇴소청소년
배주미 외(2010)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취약성으로 자립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양육시설청소년, 위탁보호청소년, 그룹홈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송주미, 강경미 (2011) 이소희 외(2005)	정신적·정서적·신체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	위기청소년(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폭력피해청소년 등), 소외 청소년(빈곤청소년, 근로청소년, 시설 보호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2) 법률적 개념과 범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도서관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등 저소득 가정,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자녀로 한정하고 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도서·벽지 거주 가족의 자녀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학생, 기초수급자 자녀인 학생, 한부모가족 자녀인 학생, 농어촌학교 재학 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생 등으로 정하고 있다. 기타 법령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고, 취약계층의 범위 안에 어린이나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표 11-2.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법령

법률	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4. “위기청소년”(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제2조(정의) 5.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제2조(정의) 6. “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1.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인 경우 2.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3. 장애아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4. 장애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조부 또는 조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5. 장애아동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의 자녀인 경우 6. 장애아동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법률	대상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취약계층의 범위)	1.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 출처: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월 12일 인출.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속한 대상을 정의하고 있고 각각의 청소년에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즉,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상담 및 교육,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의 특별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가족지원서비스(아동의 양육 및 교육, 방문건강관리,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등), 복지지원(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교육지원(교육비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부모의 양육 지도,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3. 취약계층 청소년 법률 및 서비스 내용

법률	대상	서비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4. “위기청소년”(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자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정의) 5. “가정 밖 청소년”(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6. “청소년부모”(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 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

법률	대상	서비스
		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 지원은 생활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 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

법률	대상	서비스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 출처: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월 12일 인출.

3) 본 연구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개념과 분류

1차 년도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즉, 취약계층 청소년은 ‘특정한 발생 원인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양질의 교육과 안정된 교육환경을 누리지 못함으로, 고용을 비롯한 자율적 행복추구권의 실질적 실현이 불안정하여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성운숙 외, 2022: 23)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교육환경과의 관련성에 국한한 개념 정의로 청소년복지의 원인과 특성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차 년도에서는 1차 년도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청소년복지 관련 선행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복지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정의하고자 하였다. 즉, 취약계층 청소년을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성장환경으로 인해서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어 발달 및 장애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교육 및 고용 기회 등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청소년 연령의 경우에는 1차 년도에서와 같이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하지 않고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아동 혹은 청년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청소년을 확인하고, 중복 발생 원인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 문화, 가정, 학교, 지리, 개인의 6개 취약성 발생영역에 따라 취약계층 청소년을 분류하고, 이에 기초해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성윤숙 외, 202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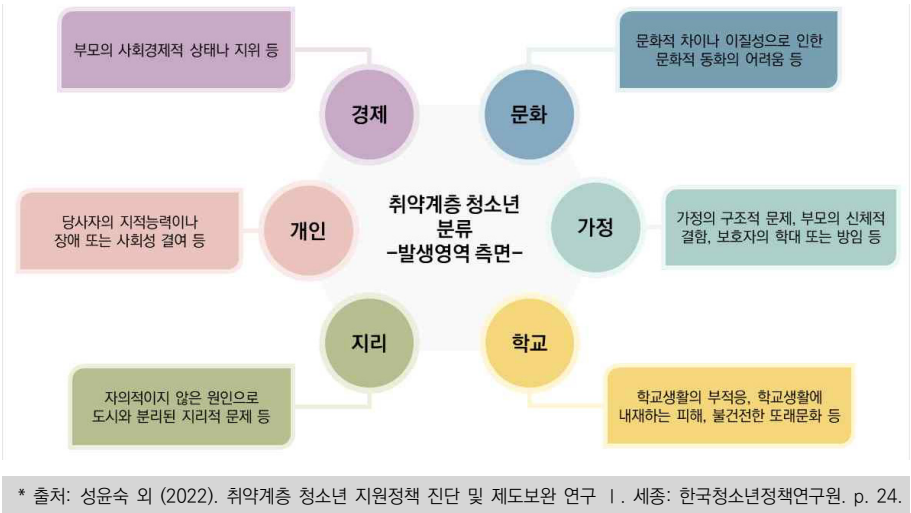


그림 II-1. 취약계층 청소년 분류

2차 년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체 분류는 1차 년도에서 분류한 경제, 문화, 가정, 학교, 지리, 개인의 6개의 틀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과 과제 개발은 복지 영역에서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특별히 취약한 대상을 선정하여 청소년 유형별로 정책을 진단하고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취약계층 조사 대상의 선정을 위해서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복지정책 분야의 사각지대 청소년 유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2.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에 기초해서 발생 원인 및 청소년 유형별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 영역을 보면, 청소년(한)부모의 규모는 2020년 현재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가 25,210명,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경우가 7,876명이며, 질병, 장애,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인 11세~18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2021년에 184,000명에서 29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서에 가출 신고된 9~19세 가출청소년은 2021년에 23,133명이고, 2019년에 23,783명이던 것이 2020년에 20,875명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019년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은 2021년에 37,605명이고, 국내 입양자 수는 2021년에 226명이고, 2009년에서 2021년까지 입양된 입양자 수를 합하면 9,7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가정 등 시설 입소되어 보호되어 있는 시설 보호아동은 2021년 현재 2,183명이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 등에 보호조치 후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은 2020년에 2,368명이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원은 12,85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2021년에 13세 미만이 1,155명, 13세 이상은 27,134명으로 28,289명이고, 2021년 4월 현재, 교정기관 수용자의 18세 이하 자녀는 12,1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2018년 기준 9~24세 빈곤가구(중위소득 기준 30% 미만)에 속한 청소년은 437,426명, 9~24세 차상위계층(중위소득 기준 30% 이상~50% 미만)에 속한 청소년은 564,050명이며, 2020년 15~24세 취업자 수는 1,343,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개인 영역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 등 장애아동·청소년은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103,695명이고, 2022년 현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188,978명,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134,832명으로 총 323,8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기준 19세 이하 경제선 지능학생은 1,214,000명으로 추정되며, 우울증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 39,868명, 불안장애 진료 받은 청소년은 23,590명이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24세 이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청소년은 4,80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는 2022년 12월말 기준으로 북한 이탈 후 입국한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은 5,108명, 20~29세 아동·청소년 9,601명으로 29세 이하는 총 14,709명이며,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는 289,5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 영역에서 2022년 초·중·고 학업중단자 수는 초등학교생 19,415명, 중학생 9,585명, 고 23,981명 등 총 52,981명이며, 지리 영역에서 2020년 농산어촌 초·중등 학생 수는 886,93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II-4. 취약계층 청소년 규모

발생 원인	대상		조작적 정의	추정 규모
가정 영역	청소년(한)부모 ²⁰⁾		2020년 현재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25,210(7,876)
	가족 돌봄 청소년 (영 케어러) ²¹⁾		질병, 장애,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청소년	184,000~295,000 (11~18세)
	가정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²²⁾		9~19세 가출 신고된 아동·청소년	23,133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 ²³⁾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및 진술로 인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7,605
	입양아동 ²⁴⁾		2009~2021년 국내 입양자 수	9,717(2021년 226명)
	시설 보호 아동 ²⁵⁾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가정 등 시설 입소되어 보호되어 있는 아동	2,183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 (자립준비청년) ²⁶⁾		아동양육시설, 동등생활가정, 가정위탁 시설 등에 보호조치 후 보호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청소년	2,368(2020년) 12,857(2016~2020년)
	성폭력범죄(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²⁷⁾		13세 미만(1,155명)과 13세 이상 (27,134명) 성폭력범죄 피해자	28,289
	수용자 자녀 ²⁸⁾		2021년 4월 현재 교정기관 수용자의 18세 이하 자녀	12,167
경제 영역	저소득 층아동· 청소년 ²⁹⁾	빈곤계층 청소년	2018년 기준 9~24세 빈곤가구(중위소득 기준 30% 미만)에 속한 청소년	437,426
		차상위계층청소년	2018년 기준 9~24세 차상위계층(중위소득 기준 30% 이상~50% 미만)에 속한 청소년	564,050
	근로청소년 ³⁰⁾		2020년 15~24세 취업자 수	1,343,000
개인	장애아동·청소년 ³¹⁾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	103,695

발생 원인	대상		조작적 정의	추정 규모
영역			생,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	
	중독청소년 ³²⁾		2022년 현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323,810 (인터넷 188,978, 스마트폰 134,832)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³³⁾		2020년 기준 19세 이하 경계선 지능학생	1,214,000
	정서행 동장애 청소년 ³⁴⁾	우울증	우울증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	39,868
		불안장애	불안장애 진료 받은 청소년	23,590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 ³⁵⁾		2020년 1월 1일 기준 24세 이하 산정 특례 대상 희귀질환 청소년	4,803	
문화 영역	이주배 경아동· 청소년	탈북청소년 ³⁶⁾	북한 이탈 후 입국한 19세 이하(5,108명) 및 20~29세(9,601명)의 아동·청소년	14,709
		다문화가정아동 청소년 ³⁷⁾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 국내 출생 자녀 등 다문화가족 자녀	289,529
학교 영역	학교 밖 청소년 ³⁸⁾		2022년 초·중·고 학업중단자 수	42,765(초 19,415, 중 9,585, 고 23,981)
지리 영역	농산어촌청소년 ³⁹⁾		2020년 농산어촌 초·중등 학생 수	886,931

- 20)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보고22-일반08-03). p17.
- 21) 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 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4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22) 김성철 (202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22-04). p8.
- 23) 보건복지부 (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53.
- 24)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 입양아동수 및 입양기관 현황 통계. <https://www.data.go.kr/data/15004310/fileData.do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 2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vw_cd=MT_ZTITLE&list_id=G_12&scrl=&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 26) 관계부처 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8634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 27) 법무연수원 (2022). 2021 범죄백서. p195.
- 28) 법무부 (2021).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2021. 5. 11.). <https://www.moj.go.kr/bbs/moj/182/547742/artclView.do에서> 2022년 3월 15일 인출.
- 29)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연구보고 20-R24). p87.
- 30) 여성가족부 (2021b). 청소년백서. p432.
- 31) 교육부 (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p21.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 현황

1)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서비스

각 정부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담고 있는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과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부처의 정책대상을 분류해 보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 아동·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 중독 청소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입양아동,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산재피해가정 자녀 학생, 기타 청소년 등이 복지서비스 대상이 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의 복지서비스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급식비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역사회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교육·문화·스포츠·생활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등을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업 능력개발 수당 지급,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서비스를, 그리고

-
- 32) 여성가족부 (2022b).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교 증가 추세 뚜렷.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 5. 2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4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 33) 박광욱,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202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보고22-일반08-04). p12. 원 출처 : 주은미, 최승숙 (2021). 경계선 지적 지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6(1), 1-30.
 - 34) 김성철 (202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22-04). p9.
 - 35) 질병관리청 (2022).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통계 공표.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2. 11. 30.).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21282#에서 2023년 3월 22일 인출.
 - 36)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2. 12월말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 3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7156#content-group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 38)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3. 8. 30.). https://kess.kedi.re.kr/post/6795001?itemCode=04&menuId=m_02_04_02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 39) 여성가족부 (2021b). 청소년백서. p398.

교육부에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WEE 클래스 상담 지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북한이탈주민)자립 자활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 탈북 및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언어발달지원, 상담·교육, 적응 및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내일이룸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대상의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경제선 지능 아동 대상의 서비스는 경제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중독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지원, 정서·행동 장애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맞춤형 치유·재활서비스 제공, 입양아동 대상의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통합 지원, 산재피해 가정 자녀 학생 대상의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선도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요양급여 및 서비스, 교육비, 직업체험, 심리상담, 법률서비스, 청소년활동 등의 청소년 특별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5.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서비스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정부부처 및 담당부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 지원 (1~6월 월 12,000원, 7~12월 월 13,000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이용권(연간 1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학생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급식비 지원	무료 급식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중 2~고 3 우수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월 25~45만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방과후학교자 유수강권	연간 60만원 내외(수강한 경우)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가구 자녀	지역사회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 제공(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8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3)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의 초·중·고 학생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PC: 가구당 1대, 인터넷통신비: 가구당 월 17,600원 상당의 1회선 사용,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교육부 이터닝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범죄피해가정 우선 선정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활동강좌비(월 85,000원 범위 내 10개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장애아동·청소년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청소년 발달 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 (훈련수당)	훈련참여수당(월 20만원) 교통비(월 5만원) 식비(월 66,000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활동 지원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만18세)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비용(연간 260만원 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	교내 교수·학습 활동 및 이동 보조, 방과후 교육 등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정부부처 및 담당부서
		학교 특수학급 지원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취업성 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지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장애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 후견법인 상한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한 가정당 연 840시간의 돌봄서비스, 휴식 지원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위기청소년	만 9~24세 위기청소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만 9~24세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 지원체계 (청소년안전망)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초·중·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WEE 클래스 상담 지원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위기청소년	청소년사이버 상담센터 운영	사이버채팅 상담, 게시판 상담, 웹 심리검사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경제활동 하고 있는 자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 제도(미래행복통장)	최대 4년간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지원	통일부 정책지원과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탈북 학생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기초학습 및 진로와 생활 지도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탈북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초기 적응 지원(레인보우스쿨 운영), 상담 및 사례관리(생활정보, 체류, 정착, 교육 등), 탈북청소년 적응 및 자립지원,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북한이탈주민(청소년, 청년)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강화 지원(바우처, 온라인교육, 취업	통일부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정부부처 및 담당부서
		자립자활지원	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정책지원과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만 15세 이상 24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내일이룸학교 운영	3월~11월 전문 직업훈련, 자립장려금 및 취업 지원 등 지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국 220개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증진 서비스 등 제공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7급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53%~60% 구간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교육비(학비)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실 보호 아동·청소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생계비 지원 (매월 30만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경계선 지능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 지능아동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 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교육매뉴얼 제공,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중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군 진단 청소년	청소년 매체 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중독 예방 및 상담·치료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등 자소득충, 취약계층 청소년 최대 60만원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환경과
정서행동 장애청소년	만 9~18세 정서와 행동 영역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맞춤형 치유·재활서비스 제공 장기: 1개월 1회, 4개월 2회 단기: 4박 5일, 2박 3일, 9박 10일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 환경과
입양아동	입양아동(~만 18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 20만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정책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20세 미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산재피해 가정 자녀 학생	산업재해 근로자 중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산재근로자복지지원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중 실납부액 (1년간 1명에 최대 5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 산 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과

대상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정부부처 및 담당부서
기타 교육선도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청소년특별 지원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월 55만원 이내) 요양급여 및 서비스(연 200만원 이내) 교육비용(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월 30만원 이내) 직업체험 등(월 36만원 이내) 심리상담(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법률서비스 비용(연 350만원 이내) 청소년활동비용(월 30만원 이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 교육 대상자 등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육,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r>에서 2023년 1월 30일 인출.

2)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예산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사이트에 등록된 지난 5년간 중앙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청소년, 유기 아동·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비행청소년, 입양 아동,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요보호 아동, 청소년 한부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중독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2022년과 2020년에 각각 학습특별지원과 멘토링 지원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에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에 대한 한시적인 지원이 있었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21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이후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지원을 하였으며,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및 정보화 지원 등을 하였는데, 매년 예산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다만,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은 2022년에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비용 14,616 백만원 대비 2023년에는 특수교육 내실화

40)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사이트. 재정사업(사업별 예산 시계열).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e/UOPKOBEO5?acntFrYr=2019&acntToYr=2023&offCd=076>에서 2023년 4월 15일 인출.

지원 비용 20,597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포함한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 72,596백만원으로 그 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으나 2021년 이후로는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이 변경된 2021년도에는 예산이 소폭 감소되었으나 2022년 이후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이후로 2023년 예산은 5,205 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323 백만원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지원과 그룹홈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립지원 예산은 2022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였고, 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은 2022년(39,704 백만원)에 비해서 2023년(47,131 백만원)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과 자립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3년 사업 예산(자립수당 27,467 백만원, 자립 지원 체계 구축 7,735 백만원)이 2022년(자립수당 43,745 백만원, 자립 지원 체계 구축 14,706백만원)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 유기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2019년에만 보건복지부에서 1,432 백만원의 지원이 있었다.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건립비용은 2020년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센터 운영 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정위탁 지원과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 지원을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가정위탁 지원은 2021년까지 예산이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매년 소폭씩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지원을 매년 확대해 왔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이후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청소년 비행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6.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예산

(단위: 백만원)

	담당부처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교육부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0	0	0	10,094	0
	교육부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	0	15,680	0	0	0
	보건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177,027	183,019	211,619	196,804	39,721
	보건 복지부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비 한시지원	0	0	30,000	0	0
	여성 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0	6,503	7,182	12,618	13,574
장애 청소년	교육부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0	0	26,305	18,153	17,403
	교육부	장애학생교육지원	0	0	13,321	13,005	14,273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0	0	13,733	14,616	0
	교육부	특수교육 정보화 자원(정보화)	0	0	1,266	1,268	1,269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	0	0	0	0	20,597
위기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등)	여성 가족부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54,901	63,229	63,687	66,961	72,59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여성 가족부	간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89,137	83,142	92,526	99,192	107,953
	여성 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3년 주기)	0	687	0	0	0
가정밖 청소년	여성 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9,549	22,963	0	0	0
	여성 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22,447	25,964	29,506
청소년한부모	여성 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4,674	4,100	5,895	6,323	5,205
요보호아동	보건 복지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3,218	3,028	3,164	1,276	1,276
	보건 복지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0	0	0	39,704	47,131

	담당부처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보호종료아동	보건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9,858	21,823	22,240	27,467	43,745
	보건 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0	0	0	7,735	14,706
유기 아동·청소년	보건 복지부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1,432	0	0	0	0
중독 청소년	여성 가족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525	8,503	1,297	875	2,700
	여성 가족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6,644	6,287	8,706	9,305	9,930
입양아동	보건 복지부	가정위탁 지원·운영	1,500	1,044	940	7,995	7,874
	보건 복지부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0	0	1,906	1,906	1,715
	보건 복지부	중앙입양원 및 입양단체 등 사후관리지원	6,220	2,083	0	0	0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여성 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5,904	15,245	0	0	0
	여성 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5,453	5,568	5,669	5,968	6,056
학대피해 아동·청소년	법무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2,500	24,808	28,736	0	0
	보건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0	0	0	38,128	41,305
비행청소년	법무부	청소년비행 예방	5,057	6,060	5,611	5,750	5,820

*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사이트, 재정사업(사업별 예산 시계열).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be/UOPKOBEO5?acntFrYr=2019&acntToYr=2023&offCd=076>에서 2023년 4월 15일 인출.

4. 소결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과도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와 대비하여 사용되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나 발달상의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 소외청소년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속한 대상과 각각의 청소년에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부모의 양육 지도,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법령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고, 취약계층의 범위 안에 어린이나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년도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청소년복지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적절한 성장환경으로 인해서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어 발달 및 장애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교육 및 고용 기회 등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청소년 연령의 경우에는 1차 년도에서와 같이 만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하지 않고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 아동 혹은 청년을 포함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은 1차 년도 분류의 틀을 사용하되 최종 분석 대상은 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하여 복지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4개 유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발생 원인과 청소년 유형별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제선 지능 아동·청소년 등 일부

청소년 유형의 경우에는 규모 추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고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 영역에서 청소년(한)부모의 규모는 2020년 현재 부모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가 25,210명,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경우가 7,876명이며, 11세~18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2021년에 184,000명에서 295,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서에 가출 신고된 9~19세 가출청소년은 2021년에 23,133명이고,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은 2021년에 37,605명이고, 국내 입양자 수는 2021년 226명, 2009년에서 2021년까지는 9,717명이다.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가정 등의 시설 보호아동은 2021년에 2,183명이며,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은 2020년에 2,368명이고,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원은 12,857명이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2021년에 28,289명(13세 미만 1,155명, 13세 이상 27,134명)이고, 교정기관 수용자의 18세 이하 자녀는 2021년 4월 12,167명이다. 경제 영역에서는 2018년 기준 9~24세 빈곤가구(중위소득 기준 30% 미만) 청소년은 437,426명, 9~24세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기준 30% 이상~50% 미만) 청소년은 564,050명이며, 2020년 15~24세 취업자 수는 1,343,000명이다. 개인 영역에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 등 장애아동·청소년은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103,695명이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은 2022년에 323,810명(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188,978명,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134,832명)이다. 19세 이하 경제선 지능학생은 2020년 기준 1,21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우울증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 39,868명, 불안장애 진료 받은 청소년은 23,590명, 24세 이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청소년은 4,803명(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 영역에서는 북한 이탈 후 입국자는 2022년 12월말 기준 29세 이하가 14,709명(19세 이하 아동·청소년 5,108명, 20~29세 아동·청소년 9,601명)이며, 다문화가족 자녀는 289,5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 영역에서 2022년 초·중·고 학업중단자수는 52,981명(초등학생 19,415명, 중학생 9,585명, 고 23,981명 등)이며, 지리 영역에서 2020년 농산어촌 초·중·등 학생 수는 886,93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부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서비스는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정부부처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 아동·청소년, 위기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경제선 지능 아동, 중독 청소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입양아동,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산재피해가정

자녀 학생, 기타 청소년 등을 복지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서비스도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수준 등에서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의 복지서비스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급식비 지원,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교육·문화·스포츠·생활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의료비 지원, 공공후견지원 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서비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WEE 클래스 상담 지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자산형성지원제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자립자활지원, 언어발달지원, 상담·교육, 적응 및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내일이룸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 대상의 서비스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중독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청소년 매체활용 역기능 해소사업 지원,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의 서비스는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정서·행동 장애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맞춤형 치유·재활서비스 제공, 입양아동 대상의 서비스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서비스는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통합 지원, 산재피해 가정 자녀 학생 대상의 서비스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등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선도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을 하고 있고,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사이트에 등록된 지난 5년 간 중앙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청소년, 유기아동·청소년,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비행청소년, 입양 아동,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요보호 아동, 청소년 한부모,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중독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보호 종료 아동, 중독청소년, 입양아동,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증가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 보호 종료 아동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장애청소년, 요보호아동, 유기청소년, 비행청소년 등에 대한 예산은 비슷한 규모이거나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21년까지 예산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였고,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교육 내실화 및 정보화 지원 등을 하였는데, 매년 예산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과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예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 예산이 2023년에 5,20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였다. 요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자립지원 예산은 2022년 이후로 매년 감소하였고, 그룹홈 운영 지원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아동은 2023년 사업 예산(자립수당 27,467백만원, 자립 지원 체계 구축 7,735백만원)이 2022년(자립수당 43,745백만원, 자립 지원 체계 구축 14,706백만원)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였다. 유기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2019년에만 보건복지부에서 1,432백만원의 지원이 있었고,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과 운영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다.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지원이 2022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지원 예산이 매년 소폭씩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비행예방 사업이 매년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 제3장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및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조사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3. 소결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및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조사⁴¹⁾

1. 조사개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의 대상과 내용, 정책 아이디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일차적으로 연구진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선행 연구 실적이 있는 학자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고, 이차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델파이 조사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20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조사과정 중에 1명이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 14명, 복지 관련 기관 연구원 5명 등 19명이 조사·분석되었다.

조사기간은 2023년 3월 8일 ~ 4월 17일 사이에 3차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1차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1번 문항(중앙 정부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취약계층 청소년은?)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주관식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여 2023년 3월 8일 ~ 3월 17일 사이에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2023년 3월 27일 ~ 3월 31일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1번 문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응답을 포함하여 재차 조사하고, 나머지 문항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객관식 질문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1차 조사결과 응답 문항이 너무 광범위하여 5번 문항(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의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은?)은 제외하였으며, 3번 문항(취약계층에 필요한 주요한 중앙 정부복지 정책 서비스는?)과 6번 문항(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제도 개선과 발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에 대한 응답이

41) 이 장은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유사하여 이를 통합하여 4번 문항(취약계층 청소년에 필요한 주요한 중앙 정부 복지 정책 서비스(정책제도 개선 및 발전과제)로 재구성하여 조사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3번 문항(최근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는?)과 4번 문항(취약계층 청소년에 필요한 주요한 중앙 정부 복지 정책 서비스(정책제도 개선 및 발전과제)는?)에서 추가한 항목만을 대상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2023년 4월 13일~4월 17일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내용타당도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내용타당도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 검증은 로쉬(Lawshe, 1975)가 개발한 산출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패널이 20명일 때 0.42 이상의 값을 가지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Lawshe, 1975: 567~568).

$$CVR = \frac{n_e - N/2}{N/2}$$

n_e : Likert 5점 척도의 '적합'과 '매우적합'으로 응답한 수

N : 델파이 전문가의 수

2. 조사결과

1) 취약계층 복지정책의 대상

(1) 중앙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

1차 조사에서 저소득청소년 등 19개 유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CVR 기준으로 농산어촌청소년,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 수감자 자녀를 제외한 16개 청소년 유형에 대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한 청소년 성 소수자, 은둔/고립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청소년 미혼모, 무국적/난민 아동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는데, 비행청소년, 농산어촌청소년, 근로청소년,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 수감자 자녀, 청소년 성 소수자를 제외한 청소년 유형에 대한 타당도가 높았다. 한편, 비행청소년, 근로청소년의 경우에는 1차 조사와는 달리 2차 조사에서 타당도가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2차 조사의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정 밖 청소년(4.74점), 유기·

학대피해 아동·청소년(4.68점),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4.58점), 학교 밖 청소년(4.58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4.47점),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4.47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1. 중앙 정부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취약계층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제1차 델파이 결과 (N=19)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M	SD	CVR
(1)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4.68	.48	1.00	4.74	.56	.89
(2)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	4.68	.58	.89	4.68	.67	.79
(3)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4.42	.96	.89	4.58	.61	.89
(4) 학교 밖 청소년	4.42	.69	.79	4.58	.51	1.00
(5)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청소년 포함)	4.32	.75	.68	4.47	.61	.89
(6)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	-	-	4.47	.61	.89
(7) 중독청소년(약물, 도박 등)	4.47	.77	.68	4.42	.77	.68
(8) 보호종료청소년(자립준비청년)	4.42	.51	1.00	4.37	.60	.89
(9) 은둔/고립 청소년	-	-	-	4.37	.68	.79
(10) 청소년한부모	4.26	1.05	.68	4.32	.75	.68
(11) 저소득청소년	4.42	.84	.79	4.32	.75	.68
(12) 장애 아동·청소년	4.26	.73	.68	4.32	.67	.79
(13) 가족 돌봄청소년(영 케어러)	4.26	.87	.68	4.26	.81	.79
(14)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	4.21	.71	.68	4.21	.63	.79
(15) 위기청소년	4.16	1.12	.58	4.21	.85	.68
(16)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21	.85	.68	4.16	.76	.58
(17) 청소년 미혼모	-	-	-	4.16	.83	.68
(18) 무국적/난민 아동	-	-	-	4.05	.71	.58
(19) 비행청소년	4.00	1.05	.47	3.79	.85	.26
(20) 근로청소년	3.89	.57	.58	3.74	.81	.26
(21) 수감자 자녀	3.63	.96	.16	3.68	.67	.16
(22)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청소년	3.58	1.02	.16	3.58	.77	.05
(23) 농산어촌청소년	3.42	.96	-.26	3.16	.90	-.16
(24) 청소년 성 소수자	-	-	-	3.53	.84	-.16

(2) 중앙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청소년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1차 조사에서 제안한 2개 청소년 유형에 대해서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청소년, 중독청소년, 수감자 자녀, 은둔/고립 청소년, 미등록이주 청소년, NEET 청소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무국적/난민 아동 및 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플랫폼 기반 노동 청소년의 12개 유형에 대해서만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은둔/고립 청소년(4.53점),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4.32점), 무국적/난민 아동 및 청소년(4.26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 중앙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제2차 델파이 결과(N=19)			
	N	M	SD	CVR
(1) 은둔/고립 청소년	19	4.53	.51	1.00
(2)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19	4.32	.67	.79
(3) 무국적/난민 아동 및 청소년	19	4.26	.65	.79
(4) 수감자 자녀	19	4.21	.63	.79
(5) 미등록이주 청소년	19	4.16	.76	.58
(6) 중독청소년(약물, 도박 등)	19	4.11	.74	.58
(7) NEET 청소년	19	4.11	.66	.89
(8)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19	4.11	.81	.47
(9) 플랫폼 기반 노동 청소년	19	4.11	.66	.68
(10) 가족 돌봄청소년(영 케어러)	19	4.05	.97	.68
(11) 청소년한부모	19	4.00	.75	.68
(12)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19	4.00	.67	.58
(13)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19	3.84	.96	.37
(14) 복합위기 청소년	19	3.84	.83	.16
(15)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	19	3.79	.92	.16
(16)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	19	3.74	1.05	.26
(17)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19	3.58	1.22	.16
(18)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9	3.58	1.02	.26
(19) 위기청소년	19	3.58	1.07	.16
(20) 보호종료청소년(자립준비청년)	19	3.47	1.17	.05
(21) 근로청소년	19	3.47	.70	-.05
(22)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	19	3.37	1.16	.05
(23) (희귀난치성질환소아임)청소년	19	3.37	.96	-.26
(24) 장애 아동·청소년	19	3.21	1.03	-.26
(25) 농산어촌청소년	18	3.11	1.02	-.47
(26)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가정위탁청소년 포함)	19	3.05	.85	-.37
(27) 저소득청소년	19	2.68	.89	-.68

2)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1차 조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2차와 3차 조사에서 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조사하였다.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심각해진 학습결손,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로 인해 더 커진 상대적 박탈감, 소득지원 연계 자립 역량함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일반가정 또는 중산층 가정 청소년과의 교육 격차 심화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심화,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매칭지원 서비스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집단감염과 의료의 사각지대, 청소년쉼터 출신 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복지지원 개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과 자립지원, 인터넷 성매매, 약물, 가출팸 등 사회문제 확대, 특화된 심리치료 지원서비스 지원, 중장기 쉼터 운영 확대 등이 타당성이 있었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학교생활 부적응, 언어문제와 학습장애 해결을 위한 한글교육이나 기타 학원 등 교육서비스 강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학교 진입 지원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부모의 돌봄의 어려움, 장애(틱 장애, 자폐, ADHD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왕따 문제,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정적 시각과 이기적 행동, 사회적 관계망 부재에 따른 고립,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대를 추진하여 장애아동의 근거리 학교 통합 강화 추진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 지원,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의 어려움, 국정과제 중 보호대상 아동의 탈 시설의 단계, 방식 및 보호체계의 재편, 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취업과 진로지도의 현실화를 통해 퇴소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모두에 대한 대처 및 회복체계 미흡, 잠재적 범죄자 혹은 심신미약자로 진행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 비슷한 환경 조건이지만, 이용시설이나 부처의 상이함으로 인해 유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충분한 서비스 부족,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적절하게 지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정서행동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확대, 정서행동장애 치료시설 부족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가정 밖 청소년이나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중독,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살 등 다양한 이슈 포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 중독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살예방, 심리·정서적 상담 및 지원 등 자살 등의 문제로 효과적인 정신보건 정책적인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개념 정의와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 범주의 포괄적이고 불분명함,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학교 밖 청소년 발달권 보장, 성매매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권, 발달권 보장, 근로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일자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 일과 학습 균형 보장, 쉼터 등 안전한 거주지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치료적 개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출산 후 자녀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제도 논의,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고, 자녀 양육 및 학업 병행의 어려움, 사회적 양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진로, 취업, 교육 기회 제공, 주거지원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정서 심리 돌봄 서비스,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 쉼터 부족, 성폭력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쉼터 제공,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 기회 연계, 성매수자 처벌 강화,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자립을 위한 장기적 지원, 탈성매매 지원 부족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가해)부모교육 및 치료서비스(원가족 회복 지원 서비스), 원가정 분리 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미흡, 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내실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심리치료, 치료적 가정위탁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정환경 안에서 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원가정 분리 후 일시보호 체계 구축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영 케어러 발굴, 부모 돌봄으로 인한 학업포기, 과도한 대출 등 금전 문제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락,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실태조사, 국가 및 지자체차원의 복지지원 제공 등이 포함된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법 제·개정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종료 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림, 자립 실패, 개인 파산문제, 정보 또는

지원의 불균형으로 자립준비청년 내 자립사각지대 발생,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멘토 집단과의 연계 혹은 선배(어른)역할을 해주는 조력자 배치, 보호 종료 아동의 위기문제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청소년들의 마약 등 ‘중독성 약물 구입경로’ 등에서 심각한 불법성과 폭력조직 등과의 연계될 것에 대한 안전 체계 구축과 학교교육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 강화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부모의 돌봄 부담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없었고,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은둔, 고립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은둔/고립 청소년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 체계, 일상생활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 방법 교육 강화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폭력/SNS, 모욕과 명예훼손 등 언어폭력 확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기간제 교사 등 경험이 적은 교사에게 떠넘김, 가해 청소년에 대한 불충분한 처벌/피해학생이 오히려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 발생, 피해자의 관점에서 지원 대책 미흡,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데 비해 매우 단기적인 치료적 서비스, 접근금지서비스 등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추가 피해 방지대책,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요 이슈로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지원금, 차별적인 지원, 청소년 쉼터 이후 안정적인 주거지원 필요, 대학진학 등을 원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 젠더 문제 등 퇴소청소년의 위기 관련 이슈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 최근(1~2년 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문제점 등)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주요 이슈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1) 저소득	1**	일반가정 또는 중산층 가정 청소년과의 교육 격차 심화	4.37	.68	.79
	2*	소득지원 연계 자립 역량 함양 서비스 시스템 구축	4.26	.65	.79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주요 이슈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청소년	3*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심각해진 학습결손,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4.21	.85	.47
	4*	코로나 디바이드로 인해 더 커진 상대적 박탈감	4.21	.71	.68
	5*	저소득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3.83	.86	.26
	6*	적정 수준의 생계 및 생활 지원	3.68	.75	.26
	7*	교육급여 내용의 충실화	3.47	.61	-.16
	8*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대학교 특례입학과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연계 활용	3.21	.63	-.37
(2) 학교 밖 청소년	1*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매칭지원 서비스	4.58	.61	.89
	2*	진로 지원	4.21	.63	.79
	3*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심화	4.16	.60	.79
	4*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심각해진 학습결손,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3.95	.85	.26
	5*	음주·흡연, 인터넷 중독 및 도박 등 중독 예방 및 안전교육	3.95	.85	.26
	6**	문화 체험활동 지원	3.68	.75	.05
	7**	대입 지원(입시 상담 등)	3.53	.70	.05
(3) 가정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과 자립지원	4.63	.60	.89
	2*	인터넷 성매매, 약물, 가출팸 등 사회문제 확대	4.58	.61	.89
	3**	중장기 쉼터 운영 확대	4.42	.69	.79
	4*	청소년쉼터 출신 청소년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복지지원 개선	4.37	.83	.79
	5**	가출의 원인이 가정폭력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화된 심리치료 지원 서비스 지원	4.37	.60	.89
	6*	집단감염과 의료의 사각지대	4.00	.94	.58
	7*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심각해진 학습결손,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3.79	.85	.26
(4)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1*	학교생활 부적응	4.32	.67	.79
	2**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학교 진입 지원	4.26	.73	.68
	3**	언어문제와 학습장애 해결을 위한 한글교육이나 기타 학원 등 교육 서비스 강화	4.05	.71	.58
	4**	이중언어교육 지원 부족	3.84	.76	.26
	5*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비용 증가	3.63	1.01	-.05
(5)	1*	부모의 돌봄의 어려움	4.53	.51	1.00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주요 이슈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장애 아동· 청소년	2**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대를 추진하여 장애아동의 근거리 학교 통합 강화 추진	4.47	.61	.89
	3*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정적 시각과 이기적 행동	4.37	.68	.79
	4*	생활권, 학습권 보장 미흡	4.11	.88	.37
	5**	사회적 관계망 부재에 따른 고립	4.11	.74	.58
	6*	장애(틱 장애, 자폐, ADHD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왕따 문제	4.05	.62	.68
	7*	장애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4.00	.75	.68
(6) 시설 보호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 청소년 포함)	1**	취업과 진로지도의 현실화를 통해 퇴소 이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4.58	.61	.89
	2*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의 어려움	4.53	.70	.79
	3*	경계선 지능아동의 자립지원	4.42	.51	1.00
	4*	국정과제 중 보호대상아동의 탈시설의 단계, 방식 및 보호체계의 재편 등	4.42	.69	.79
	5**	보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4.21	.54	.89
(7) 비행 청소년	1*	가해/피해 청소년 모두에 대한 대처 및 회복체계 미흡	4.68	.48	1.00
	2*	학교폭력	4.42	.61	.89
	3*	잠재적 범죄자 혹은 심신미약자로 진행, 사회적 비용 증가	4.05	.78	.47
	4*	비슷한 환경 조건이지만, 이용시설이나 부처의 상이함으로 인해 유사한 지원 받지 못하는 문제	4.05	.78	.47
	5*	자립지원 부족	3.89	.94	.05
(8) 정서행동 장애 아동· 청소년	1**	정서행동장애 치료시설 부족	4.32	.75	.68
	2**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적절하게 지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	4.42	.69	.79
	3**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확대	4.26	.73	.68
	4**	충분한 서비스 부족	4.16	.60	.79
	5**	무분별한 약물치료	3.89	.74	.37
	6*	존속상해치사	3.74	1.10	.16
(9) 위기 청소년	1**	쉼터 등 안전한 거주지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치료적 개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	4.42	.77	.68
	2*	가정 밖 청소년이나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중독, 심리정서적 어려 움, 자살 등 다양한 이슈 포괄	4.37	.68	.79
	3*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개념 정의와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이 명시	4.37	.60	.89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주요 이슈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자 범주가 포괄적이고 대상자 통계치도 불분명함			
	4*	성매매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권, 발달권 보장 등	4.32	.58	.89
	5*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터넷 중독이나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살 등의 문제로 효과적인 정신보건 정책적인 지원(자살예방, 심리정서적 상담 및 지원 등)	4.26	.87	.68
	6*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학교 밖 청소년 발달권 보장 등	4.26	.65	.79
	7*	근로 청소년에 대한 안전한 일자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자리, 일과 학습 균형 보장	4.11	.66	.68
(10) 청소년 한부모	1*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고, 자녀 양육 및 학업 병행의 어려움	4.63	.50	1.00
	2**	사회적 양육시스템을 강화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진로, 취업, 교육 기회 제공	4.47	.51	1.00
	3*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당사자 및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되나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4.26	.65	.79
	4**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4.21	.71	.68
	5*	출산 후 자녀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제도 논의(베이비박스를 대신하는 '공식적인 체계(법, 제도)')	4.05	1.31	.47
(11)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1**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 기회 연계	4.58	.51	1.00
	2*	정서 심리 돌봄 서비스	4.42	.61	.89
	3**	경제적, 심리적, 관계적 자립을 위한 장기적 지원	4.42	.69	.79
	4**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 쉼터 부족	4.37	.68	.79
	5**	성폭력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쉼터 제공	4.37	.60	.89
	6**	성매수자 처벌 강화	4.32	.75	.68
	7**	탈성매매 지원 부족	4.11	.66	.68
(12) 유기· 학대피해 아동· 청소년	1*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내실화	4.53	.70	.79
	2**	치료적 가정위탁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정환경 안에서 치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47	.61	.89
	3**	원가정 분리 후 일시보호 체계 구축	4.42	.51	1.00
	4*	(가해)부모교육 및 치료서비스(원가족 회복 지원 서비스)	4.42	.69	.79
	5*	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4.37	.68	.79
	6**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심리치료	4.37	.68	.79
	7*	원가정 분리 후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미흡	4.32	.75	.68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주요 이슈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8*	성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3.95	.78	.37
	9*	부모의 의도적 학대자녀 양육의 거부	3.89	.88	.37
	10*	아동·청소년 발굴 시스템 개선	3.89	.76	.26
	11*	독립적인 아동학대 정부 부서 설치(미국의 DCFS(아동국) 등)	3.42	1.07	.05
	12*	학대 피해 청소년에 대한 대학교 특례입학과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3.16	.69	-.37
(13) 가족 돌봄 청소년 (영 케어러)	1*	부모 돌봄으로 인해 학업포기, 과도한 대출 등 금전 문제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락	4.32	.58	.89
	2*	영 케어러 발굴	4.22	1.06	.58
	3*	간병수당 지급	3.95	.91	.37
	4*	가족 돌봄청소년에 대한 정의, 실태조사, 국가 및 지자체차원의 복지지원 제공 등이 포함된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법 제·개정	3.95	1.03	.47
	5**	부모돌봄을 ‘효도’라는 프레임으로 당연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도록 공익광고나 캠페인 추진	3.42	.84	-.05
	6**	돌봄 경력 인정	3.42	1.02	.05
(14)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1*	종료 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림	4.47	.61	.89
	2*	개인 파산문제	4.32	.82	.58
	3**	정보 또는 지원의 불균형(자립준비청년 내 자립사각지대 발생)	4.32	.67	.79
	4**	보호종료 아동의 위기문제	4.26	.65	.79
	5*	자립에 실패	4.21	.79	.58
	6**	자립준비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멘토 집단과의 연계 혹은 선배(어른)역할을 해주는 조력자 배치	4.16	.83	.68
	7**	자립지원금 현실화	4.05	.85	.37
	8*	부정적 경제활동에 참여	3.89	.88	.37
	9**	자립지원 기간 확대	3.84	1.01	.37
	10* *	자립 의지 계발	3.67	1.03	.16
(15) 중독 청소년 (약물, 도박 등)	1*	청소년들의 마약 등 중독성 약물 구입경로 등에서 심각한 불법성과 폭력조직 등과의 연계될 것에 대한 안전 체계 구축	4.42	.61	.89
	2**	학교교육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교육 강화	4.21	.71	.68
	3*	폭력조직과 연계하여 금품탈취 등의 문제 야기	3.95	.91	.37
	4*	청소년도박 예방을 위한 생산적 시간활용 방안	3.79	.79	.37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주요 이슈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16) (희귀난치 성질환 소아암) 청소년	1*	부모의 돌봄 부담	4.16	.83	.47
	2**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	4.16	.83	.68
	3*	치료비 부담	4.00	1.00	.26
	4*	대상 청소년의 진로 진학의 어려움	3.79	.92	.16
(17) 베이비 박스 유기 청소년	1*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자립(무연고아동 자립)	4.00	.88	.26
	2**	베이비 박스 폐쇄	3.50	1.15	-.05
(18) 은둔/고립 청소년	1**	은둔고립 청소년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 체계	4.53	.61	.89
	2*	은둔고립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4.06	.80	.58
	3*	은둔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둔으로 내몰린 것	3.95	.91	.37
	4**	일상생활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 방법 교육 강화	3.89	.81	.47
(19)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1**	피해자의 관점에서의 지원 대책 미흡	4.78	.43	.89
	2**	피해자가 장기간 심리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데 비해 매우 단기적인 치료적 서비스	4.56	.62	.79
	3*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폭력/SNS, 모욕과 명예훼손 등 언어폭력 확대	4.53	.70	.79
	4**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4.39	.61	.79
	5**	가해 청소년에 대한 불충분한 처벌 / 피해학생이 오히려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 발생	4.28	.75	.58
	6**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추가 피해 방지대책(접근금지서비스 등)	4.17	.79	.47
	7*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기간제 교사 등 경력이 적은 교사에게 떠넘김	3.89	.81	.47
(20)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1*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지원금	4.37	.76	.68
	4**	청소년 쉼터 이후 안정적인 주거지원	4.33	.59	.79
	2*	차별적인 지원	4.16	.76	.58
	5**	대학진학 등을 원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지원	4.06	.64	.58
	3**	지원대상자 특정 및 규모 추정의 어려움	4.00	.69	.47
	6**	퇴소청소년의 위기 관련 이슈(젠더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	3.94	.73	.37

주: * 제2차 조사 문항 ** 제3차 조사 문항

3)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

1차 조사에서 저소득청소년 등 18개 유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복지정책, 그리고 민간단체·시설에서의 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예산 등과 관련한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 중앙정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중앙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의 발굴과 선정기준, 서비스 지급형태, 지급 내용 및 현금 지급액, 전달체계와 인력, 접근방식 등에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즉, 정책 대상의 발굴 방안이 미흡하고, 정책대상 선정기준에서 융통성이 없어 주요 대상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며, 상담과 코칭과 같은 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금과 현물 등 경제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하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돌봄의 기능은 있지만, 담당 부처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인건비 부족으로 담당인력의 과로에 따른 소진과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청소년복지가 접근되는 문제점 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제도권(학교) 내의 '학생' 위주의 정책 중심이고, 기관을 탈피하고자 한 아동·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나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에 비해서 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은둔형 청소년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꿈드림센터의 경우에는 전담인력과 사업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며, 꿈드림센터 내 청소년 자유풀 공간도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서비스 위주의 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정책이 미흡하고, 정책 담당부서가 부재하고 전달체계 취약하며, 생활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공공전달체계가 미흡하며, 재정이 적은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국적 유무와 무관하게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한다는 서비스 제공 원칙 필요하고 밀착된 사례관리 체계 부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례 관리체계가

부족하고 치료비에 대한 재정지원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의 경우에는 최근에서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여 정책대상의 규모나 욕구 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은 거의 수립되지 않았고, 주거·의료·경제·학업 지원의 보장이 최우선적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심리지원 강화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며,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될 수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쉼터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나 가정 밖 청소년 인구 파악이 어렵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근거법 부재와 부처 간 단절로 인해 적절한 지원이 부재하며, '가출'에 초점을 두고 비행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쉼터 외 정책이 전무하며, 시설 보호 아동과 비교했을 때 지원 면에서 차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주거지원서비스가 부족하며 중장기간 보호받고, 쉼터가 아닌 대안의 주거에서 살고자 할 때의 지원이 부실하며,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자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부족, 복지부와 여가부의 이원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베이비박스를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계나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있고,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한 시설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유기학대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부모교육 및 치료서비스(원가족회복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점과 정책 방안이 부재하고, 성 학대 피해 청소년과 같이 심도 있는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료, 교육, 주거제공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 학대 판정 이후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부족, 학대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학대 판정 이후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며, 주로 취업/창업 지원은 대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편이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으며,

폭력 원인에 맞는 근본 대책의 마련보다는 폭력발생 이후 대증요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에는 원가정이 기초 수급 대상이 아니면 디딤씨앗통장에서 제외되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과는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자립수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자가 모두 중첩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다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나 대상자 규모(통계)나 실태(조사) 파악이 미흡하고 출산 후 자녀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만 집중된 중앙정부의 정책, 청소년 약물이나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과 정책의 부재, 서비스 제공기관 및 능동적 정책사업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에 대한 책임부여와 회복체계가 미흡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 등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보호종료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청년 대상 거시적 접근이 부족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추수과정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중앙부처간 통일성 있는 서비스 자격 기준 및 혜택 설계, 시설청소년의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 노력 미흡,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가정형 보호체계 보호에 따른 전달체계의 재편이나 재정투입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정의, 특히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 혹은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못하고, 정책대상자가 다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지만 대상자 규모(통계)나 실태(조사) 파악이 미흡하고, 전달체계가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의 현장 접근성이 낮으며, 지역 격차의 문제가 있고, 중장기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년간 재정 투입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표 III -4. 중앙 정부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문제점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저소득청소년	- 정책대상의 발굴 방안 미흡 - 정책대상 선정기준의 융통성 없음. - 현금과 현물의 형태 지급이 많음. - 경제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음. - 생계급여 수급자를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하여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함.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돌봄의 기능은 같지만, 담당 부처가 다름. - 인건비 부족하여 인력의 소진 및 이직 발생 -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청소년복지가 접근되는 문제점이 있음.
학교 밖 청소년	- 정책은 제도권(학교) 내의 '학생' 위주 - 은둔형 청소년에 접근하기 위한 기반 부재 - 학생에 비해 불균형적인 지원 - 기관을 탈피하고자 한 아동·청소년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나가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의 서비스 - 전담 인력 부족 - 꿈드림 센터 내 청소년 자유허 공간 부족 - 사업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부족
장애 아동·청소년	- 단기적이고 일회성 서비스 위주의 정책 - 지역사회에서 삶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정책 미흡 - 담당부서 부재, 전달체계 취약 - 생활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공공전달체계 미흡 - 적은 재정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국적 유무와 무관하게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국가 책임을 서비스 제공 원칙 필요 - 밀착된 사례관리 체계 부재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	- 청소년에 대한 사례 관리체계 부족 - 치료비에 대한 재정지원 취약
가족 돌봄청소년 (영 케어러)	- 최근에서야 주목을 하기 시작하여 정책대상의 규모나 욕구 등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 정책은 거의 수립되지 않음 - 주거·의료·경제·학업 지원의 보장이 최우선적이며,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심리지원 강화 필요 -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등 다부처에서 지원될 수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달체계 필요
가정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 쉼터 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나 가정 밖 청소년 인구 파악이 어려움. -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에도 근거법 부재와 부처 간 단절로 인해 적절한 지원 부재 - '가출'에 초점을 두고 비행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쉼터 외 정책 전무 - 시설 보호 아동과 비교했을 때 지원 면에서 차별적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부재 - 주거지원서비스 부족 - 현황 파악노력, 가정복귀 후 가출예방을 위한 지원 제도 미흡 - 중장기간 보호받고, 쉼터가 아닌 대안의 주거에서 살고자 할 때 지원 부실 -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자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부족 - 복지부와 여가부의 이원화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	- 베이비박스를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통계나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있음. - 베이비박스를 통해 입소한 시설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유기학대피해청소년	- (가해)부모교육 및 치료서비스(원가족회복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점과 정책 방안 부재 - 성학대 피해 청소년과 같이 심도있는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료, 교육, 주거제공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 필요 - 학대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부족 - 학대 판정 이후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부족
은둔/고립 청소년	- 주로 취업/창업 지원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지원 부족
학폭폭력 피해/ 가해 청소년	- 가해자의 편이가 상당히 반영 - 폭력 원인에 맞는 근본 대책의 마련보다는 폭력발생 이후 대중요법 중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 원가정이 기초수급 대상 아니면 디딤씨앗통장 제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과는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는 자립수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청소년한부모	- 정책대상자가 모두 중첩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다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나 대상자 규모(통계)나 실태(조사) 파악 미흡 - 출산 후 자녀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관련 법률 부재' -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와의 연계 미흡
중독청소년	-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만 집중된 중앙정부의 정책 - 청소년 약물이나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과 정책 부재 - 서비스 제공기관 및 능동적 정책사업의 부족
비행청소년	- 비행에 대한 책임부여와 회복체계 미흡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 등 체계적인 대처방안 미흡
보호종료청소년	- 자립청년 대상 거시적 접근 부족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추수과정 관련 제도 미흡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청소년 포함)	- 중앙부처별로 서비스 혜택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중앙부처간 통일성 있는 서비스 자격 기준 및 혜택이 설계되어야 함. - 시설청소년의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 노력 미흡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가정형 보호체계 보호에 따른 전달체계의 재편이나 재정투입 등 부재
위기청소년	- 위기청소년의 정의, 특히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 혹은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못함. - 정책대상자가 다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나 대상자 규모(통계)나 실태(조사) 파악이 미흡함. - 전달체계 또한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의 현장 접근성이 낮음. - 지역 격차의 문제 - 중장기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년간 재정 투입 확대 필요

(2) 지방정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

지방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누락되는 대상 청소년이 발생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적합한 욕구조사와 정책 없이 ‘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만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물지원 이외의 학습/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부족하며,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간 격차가 크고, 지역형 특화된 정책 서비스가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산상의 이유로 누락되는 대상 청소년이 발생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적합한 욕구조사와 정책도 없이 ‘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만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간 격차 큰 것 등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꿈드림센터의 획일적인 운영과 성과 평가 및 관리 체계의 미흡,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여건의 부족과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 및 자체 재정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 및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부족과 단기적이고, 일회성 서비스 위주의 정책, 그리고 시·군·구 센터 및 담당자의 부재,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공공전달체계 구축 미흡,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장애아동·청소년 학습을 위한 도구 및 보조교사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프라 부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역할 및 기능의 취약성,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복지부 시설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의 경력인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 그리고 재정적 취약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달체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대략적인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를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제도와 연계해야 하므로 대상자 현황 확인이 필요하며,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되더라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하며, 지방 정부 정책 대부분은 보조금 형식의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중심이며, 돌봄이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아웃리치, 인식개선 캠페인,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 부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부정적인 태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부재 등으로 인한 소극적인 쉼터 설치, 거리 배회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부족, 쉼터 환경의 취약성과 지원인력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보호,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쉼터, 상담서비스 등)를 위한 재정 지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서비스 체계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유기 학대 피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노력 부족,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계획 부재, 학대 발생 직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쉼터 부족, 지자체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경찰/복지 영역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차원 통합적 접근 노력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미비가,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입 지점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

원 부족,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비용지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지원 홍보,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노력과 의지 부족 등의 문제가,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개발의 소극성,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등의 문제가,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발생건수와 종료건수로 학교를 평가하는 등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 관련 비현실적인 대처와 지역사회 회복체계 인프라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마을 단위의 지원 전략,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지역사회 경제 활동터 개발 및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이들의 주요 컨택 포인트가 시설이며, 전담공무원의 양육점검조사에서 양육실태 뿐 아니라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원가정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내용의 차별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위기 청소년의 범주가 넓은 점, 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위기청소년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전달체계 부족 및 교육청, 지자체 등 공공체계 간의 분절, 형식적인 협의·연계에서 벗어난 학교, 민간단체 및 시설과의 협업, 아동·청소년 복지 적정 기준선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인력 양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표 III-5. 지방 정부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문제점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저소득청소년	- 예산상의 이유로 누락되는 대상 청소년 발생 - 취약계층 청소년에 적합한 욕구조사와 정책 없이 '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만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물지원 이외의 학습/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부족 -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간 격차가 큼. - 지역형 특화된 정책 서비스의 부족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학교 밖 청소년	- 예산상의 이유로 누락되는 대상 청소년 발생 - 취약계층 청소년에 적합한 욕구조사와 정책도 없이 '청소년'이라는 틀 안에서만 정책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간 격차 큼. - 꿈드림센터의 획일적 운영 - 성과 평가 및 관리 체계 미흡
	-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여건 부족 -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 및 자체 재정의 부족
장애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 구성 및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 단기적이고, 일회성 서비스 위주의 정책
	- 시·군·구 센터 및 담당자 부재 -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공공전달체계 구축 미흡 -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장애아동·청소년 학습을 위한 도구 및 보조교사 지원 부족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	- 인프라 부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담당부서의 역할 및 기능의 취약성 -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복지부 시설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시설에서 종사하는 인력들의 경력인정 등에서 불이익 발생
	- 재정적 취약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	- 전달체계 부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영 케어러)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대략적인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를 통해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기존 제도와 연계해야 하므로 대상자 현황 확인 필요 -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되더라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지 못함.
	- 지방정부 정책 대부분은 보조금 형식의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중심이며, 돌봄이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음.
가정 밖 청소년	-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아웃리치, 인식개선 캠페인, 조례제정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함
	-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 부재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부정적인 태도 - 쉼터 설치에 소극적임(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의 부재) - 거리 배회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부족
	- 가정 밖 청소년이 머무는 쉼터의 환경이 열악하고, 자원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보호를 받지 못함.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서비스(쉼터, 상담서비스 등)를 위한 재정 지원 미흡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	- 별도의 보호서비스 체계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기학대피해청소년	-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노력 부족 -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계획 부재 - 학대 발생 직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쉼터 부족 - 지자체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 부족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 학교/경찰/복지 영역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차원 통합적 접근 노력 부재
은둔/고립 청소년	-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미비
학교폭력 피해/ 가해 청소년	- 개입 지점 부재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	- 지자체 공무원 부족 -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비용지원 미흡
청소년한부모	-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제공과 지원 홍보 필요 -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노력과 의지 부족
중독청소년	- 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개발의 소극성 -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비행청소년	-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 관련 비현실적인 대처 - 지역사회 회복체계 인프라 및 전문성 부족
보호종료청소년	- 지역에서의 마을 단위의 지원 전략 미흡 -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미흡 - 지역사회 경제활동터 개발 및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미흡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청소년 포함)	- 지방정부의 지원의 주요 컨텍 포인트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사설인 점 - 원가정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미흡
위기청소년	- 지자체별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내용의 차별화 -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위기 청소년의 범주가 넓은 점 - 평가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위기청소년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전달체계(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부족 - 전달체계 문제(교육청, 지자체 등등 공공체계 간 분절) - 형식적인 협의·연계에서 벗어난 학교, 민간단체 및 시설과의 협업 - 아동·청소년 복지 적정 기준선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인력 양성 등

(3) 민간단체시설의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민간단체·시설의 복지정책 수행상의 문제점으로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사업운영 주체로서의 공신력 취약, 전달체계 부족, 불안정한 예산 등이,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노력 부족, 시설 자체의 특화 프로그램 부재,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부족, 불안정한 예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 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활동 전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부족, 돌봄 및 보호기관 부족 및 전문성 결여,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지원하는 순수한 민간단체 부재 등이, 그리고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인력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기준이 한국국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주배경 청소년 중 서비스 이용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밀착되고 개별화된 사례 관리가 부족하며, 일부 긴급한 상황이면 이주배경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이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며, 지원센터 및 인력의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당기관, 진료 및 진학을 위한 지원기관 및 인력 부족이, 그리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이 대부분이고, 일부 민간기간 차원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홍보와 연구 등을 수행하고 후원금을 모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달체계의 부족,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회적 이슈나 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등 지속적 운영의 어려움, 충분히 머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쉼터 또는 주택 서비스 부족, 남녀 분리가 되지 않는 다수의 일시 쉼터 공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불안정한 예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 입소 후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단체나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모두 종교단체로,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의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유기 학대 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대 신고 후 원가정에 대한 지원 미흡,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학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은둔고수 프로그램, 즉, 은둔 경험자 공동체 형성 및 지원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실천 기관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지원관 설치 등 최근에 비로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서비스 질 향상, 시설 및 전문가 양성과 확대 배치 부족 등이 문제이며, 시설 보호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 이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보호 기간 동안 구체적인 자립지원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부족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생활지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불충분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의 적극성 부족,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이,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공공전달체계와 연계된 회복 프로그램 부족, 비행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부족, 비행청소년 회복을 위한 전달체계 망 미흡, 관련 민간단체와 시설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 인력 전문성 부족, 관련 민간단체 및 시설 대부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위탁가정 차원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관심 부족, 실효성 있는 퇴소준비 프로그램 부족,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룹홈은 시설 대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담서비스 외에 위기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고,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한 정책대상 발굴 체계,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고, 인력이 부족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표 III-6. 민간단체·시설의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저소득청소년	-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 사업운영 주체로서의 공신력 취약 - 전달체계 부족 - 불안정한 예산
학교 밖 청소년	-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노력 부족 - 시설 자체의 특화 프로그램 부재 -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전달체계 부족 - 불안정한 예산
장애 아동·청소년	-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활동 전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 및 방과 후 프로그램 부족 - 민간단체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 부족 - 돌봄 및 보호기관 부족 및 전문성 결여 -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지원하는 순수한 민간단체 부재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	- 인력 전문성 부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시설 이용 기준이 한국국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주배경 청소년 중 서비스 이용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밀착되고 개별화된 사례관리 부족 - 일부 긴급한 상황이면 이주배경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이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음. - 지원센터 및 인력 부족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	- 담당기관 부족 - 진로 및 진학을 위한 지원기관 및 인력 부족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영 케어러)	-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이 대부분 - 일부 민간기관 차원에서 영 케어러에 대한 홍보와 연구 등을 수행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가정 밖 청소년	-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 전달체계 부족 -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사회적 이슈나 기관 사정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는 등 지속적 운영이 어려움. - 가정 밖 청소년이 충분히 머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쉼터 또는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 주택 서비스 부족 - 일시 쉼터의 경우 공간의 남녀 분리가 안 되는 것이 다수 존재 -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 불안정한 예산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	- 시설 입소 후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정부 차원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단체나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모두 종교단체로,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의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
유기학대피해청소년	- 학대 신고 후 원가정에 대한 지원 미흡 -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 학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 및 연계 부족
은둔·고립 청소년	- 은둔고수 프로그램(은둔 경험자 공동체 형성 및 지원 서비스)이 제한적 - 실천 기관 부족
학교폭력 피해/가해청소년	- 적절한 후속조치 미이행 - 연계 미흡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 자립지원관 설치 등 최근에 비로소 문제 인식 - 서비스 질 향상, 시설 및 전문가 양성과 확대 배치 부족
시설 보호 청소년	- 보호 종료 이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보호 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미흡
청소년한부모	- 관련 기관의 부족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생활지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불충분
중독청소년	- 대상자 발굴의 적극성 부족 -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 관련 기관의 부족(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비행청소년	- 공공전달체계와 연계된 회복 프로그램 부족 - 비행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부족 - 비행청소년 회복을 위한 전달체계 망 미흡 - 관련 민간단체와 시설 대부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
보호 종료 청소년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성 부족 - 인력 전문성 부족 - 관련 민간단체 및 시설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운영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청소년 포함)	- 시설/위탁가정 차원에서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관심 부족 - 실효성 있는 퇴소준비 프로그램 부족 -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그룹홈은 시설 대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부족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위기청소년	- 인터넷 상담서비스 외에 위기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관련 기관(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정책대상 발굴 체계 구축 - 인력 및 예산 부족

4)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 개선과제

복지 정책 청소년의 복지정책 개선과제에 대해서 1차 조사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2, 3차 조사에서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생계비 현실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현행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 교육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 자립지원 강화(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제공과 진로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초생활보장을 받았던 청소년에게 점진적으로 확대),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취·창업 연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사교육 바우처, 문화체험 바우처, 도서 바우처, 정신건강서비스, 진로 상담 등 교육·문화·진로·정신건강 지원 등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학업중단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과 대상을 고려하여 꿈드림 센터의 차별화,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e-learning/학습 멘토 등 교육지원, 진로지원, 정신건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력 인정 시스템 구축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쉼터 관련 시설의 확충, 주거 안정 지원,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지원 표준화, 가정에서 학대(특히 성학대)가 일어나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시설,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개선, 거리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규칙 등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개선, 쉼터 보호 종료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확대, 부모 또는 주 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격기

준 변경, 안전한 보호(원가정 복귀/일시보호 또는 대리보호서비스) 제공, 지역 내 자립준비 청년(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나 조례 제·개정, 관련 기관 설치, 대상 아동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기반한 정책방안 마련, 청소년 쉼터, 상담전화, 상담버스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다양한 자립/자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지원시설 확충, 가출뺨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을 청소년의 욕구와 트렌드를 고려하여 시설의 전면적 재정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지원, 자립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공동생활가정이나 독립생활을 인정하는 주거지원, 진로 상담 등 진로지원, 정신건강서비스 등 정신건강 지원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국적 취득 상태 이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격기준 변경, 사례관리 체계 강화, 일대일 학습 및 언어지원 확대, 무국적/난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촘촘한 개별적 사례관리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생활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제도 보완, 전국단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 조항 마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중장기적, 단기적 대책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장애인복지정책과 의료정책 등 부처통합 정책, 전국구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가정위탁 혹은 소규모 그룹홈으로 재배치하여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 부모가 있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원가정 복귀 혹은 원가정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등의 지원서비스 강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 인력의 전문역량과 환경 개선 지원, 퇴소 후 현금 지원 이외의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공공추진체계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전문적 회복체계 구축 등 비행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책임부여와 함께 회복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관련 법 보완,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정책 접근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심리상담비 지원, 부모 및 자녀 동시 상담 지원, 소규모 전문치료시설, 치유마을 등 전문치료(치유)개입서비스, 디딤센터의 소규모화 등 지역 단위의 전문성 강화, 학교사회복지사 1교 1인 배치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대상자가 중첩적이라는 점에서 분절적 지원 보다는 여러 기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지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비차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학교사회복지)의 보편적 확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에서 개입(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성매매,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온라인 포함) 강화, 근로 청소년의 안전한 일자리 보장(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의 근로(인턴) 문제), 일과 학습의 균형 보장, 정신건강 문제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생계지원, 교육지원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개선 과제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안학교 운영, 청소년 미혼부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자녀와 청소년 한부모 모두 사회적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종합적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생활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주거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지원, 경제적 지원, 보육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학교에 양육실 배치 등 학교 체계를 개선하여 학교가 청소년 한부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 개선, 청소년 한부모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진로지도 제공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 과제에 대하여 정서심리 돌봄 서비스, 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기반한 정책 마련,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서비스나 의료적 서비스 병행, 경제적 문제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적극적 양성과 업무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전문 위탁가정(그룹홈) 설치 운영 및 입양 지원 서비스, 안전한 보호 제공(재학대 예방), 성학대를 받고 돌아갈

집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비폭력 의사소통방법의 습득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학습 지원, 가정에서 학대 위험요인이 사라지기 전까지 아동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집합교육이 아닌 지역 공동체모임으로 부모교육의 의무화, 교육 지원, 심리 상담 지원, 치료서비스 지원, 장기적인 학대후유증 치료서비스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가사간병 지원, 교육비지원(학업 지원비), 심리/진로/학업 상담, 멘토링 등의 지원, 부모나 조부모 등 돌봄대상자들이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 연계, 행정데이터 분석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주거지원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담당자 증원 및 사례관리 강화, 청소년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자조집단 활성화, 멘토제도 강화, 기업과의 일정기간 연계, 해당기업에 대한 혜택, 성공적인 자립 시 대상 청년에게 추가 보상 등 자립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 꿈 프로젝트 서비스를 통한 성취 경험 기회 제공,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자원과 연계된 관리체계 및 전문적 지원체계 등 추수과정에 대한 체계적 방안 마련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를 통해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 개별화를 통한 보다 다양한 강점 개발과 지원 서비스 제공, 생산적 온라인 놀이 문화 보급, 활동체험 서비스 의무참가 등 상담서비스 외의 대안적 접근, 학교 내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중독단계로 가지 않도록 사전 차단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부모 휴가(respite care)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 수의 환자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등을 폐지, 단 1명이라도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을 통한 국가의료정책에서 치료비 문제 해결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 자녀의 경우에는 개선 과제에 대하여 수감자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 과제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 및 은둔·고립 상태를 초기에 진단·분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은둔이나 고립 이해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 상담이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종합지원 대책, 중앙과 지방정부의 단계별 맞춤정책, 유아/아동정책과 연계하여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정책 마련, 즉, 은둔고립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비율이나 잠재적 위험군 집단비율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안내하여 유아나 아동기에 예방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자녀관계 개선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실효성 있는 예방 방안 수립,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의 세부 내용을 초등, 중등, 고등 단계별로 차등화, 피해자 학습권 보장과 또래관계 유지,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가해자 부모의 재력에 의해 학교폭력 이슈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등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선과제에 대하여 후견인 등을 연계하여 사회적 가족이나 지지체계 마련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7.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 개선과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1) 저소득 청소년	1*	자립지원 강화(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제공과 진로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초생활보장을 받았던 청소년에게 점진적으로 확대)	4.26	.81	.79
	2*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취·창업 연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4.16	.69	.68
	3*	교육·문화·진로·정신건강 지원 등(사교육 바우처, 문화체험 바우처, 도서 바우처, 정신건강서비스, 진로 상담 등)	4.11	.74	.58
	4*	교육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 확대	4.00	.75	.47
	5*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	3.95	.62	.58
	6*	생계비 현실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5% 이하로 상향)	3.95	.71	.47
	7*	저소득 청소년 발굴 방법의 체계화로 정부지원에서 누락 방지	3.79	.79	.16
	8*	아동복지와 다른 청소년복지 개념 정립을 통한 지원 프레임 구축	3.37	1.01	.05
(2) 학교 밖 청소년	1**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력 인정 시스템 구축	4.32	.75	.68
	2*	서비스 제공 인프라의 다양화를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4.28	.67	.68
	3**	진로지원(진로 상담 등)	4.21	.63	.79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4**	정신건강 지원(정신건강서비스 등)	4.21	.54	.89
	5*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4.16	.76	.58
	6**	교육지원(e-learning/학습 멘토 등)	4.05	.71	.58
	7*	학업중단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4.00	.67	.58
	8*	지역 특성과 대상을 고려하여 꿈드림 센터의 차별화	3.95	.71	.68
	9**	문화지원	3.89	.81	.26
	10*	학교 내 청소년들과 차별화된 진로 로드맵 제시	3.89	.88	.16
	11*	담당 멘토제 도입	3.83	.86	.26
	12*	동아리 활동 및 문화 체험활동 지원 확대	3.79	.79	.37
	13*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시 상담 체계 구축	3.74	.65	.26
(3) 가정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1*	쉼터 보호 종료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 확대	4.58	.61	.89
	2**	정신건강 지원(정신건강서비스 등)	4.47	.61	.89
	3**	진로지원(진로 상담 등)	4.42	.51	1.00
	4*	청소년 쉼터, 상담전화, 상담버스 등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4.37	.60	.89
	5*	주거안정 지원	4.37	.60	.89
	6*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수당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지원 표준화	4.37	.76	.68
	7*	가정에서 학대(특히 성학대)가 일어나서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자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화	4.37	.68	.79
	8*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격기준 변경	4.32	.67	.79
	9*	안전한 보호(원가정 복귀/일시보호 또는 대리보호서비스) 제공	4.26	.73	.68
	10*	다양한 자립/자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지원시설 확충	4.26	.65	.79
	11*	대상 아동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기반한 정책방안 마련	4.26	.65	.79
	12*	가출팸에 대한 대응책으로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을 청소년의 욕구와 트렌드를 고려하여 시설의 전면적 재정비	4.26	.65	.79
	13**	공동생활가정이나 독립생활을 인정하는 주거지원	4.26	.73	.68
	14*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4.16	.83	.68
	15*	쉼터 관련 시설의 확충	4.16	.83	.68
	16*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기시설	4.16	.69	.68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17*	거리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규칙 등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개선	4.16	.50	.89
	18*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가정외보호 청소년 자립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이나 조례 제·개정, 관련 기관 설치 등	4.16	.76	.58
	19*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개선	4.11	.74	.58
	20**	교육지원(e-learning/학습 멘토 등)	3.95	.78	.37
	21*	청소년쉼터와 다른 유형의 주거 지원정책(장애인을 위한 지원 주택과 같은 개념의 지원주택의 제공과 지원)	3.89	.88	.37
	22**	문화지원	3.84	.76	.26
	23*	담당 멘토제 도입	3.74	.87	.16
	24*	가출 청소년 쉼터를 100% 충원할 수 있도록 확대	3.74	.93	.05
(4)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4*	무국적/난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4.37	.60	.89
	1*	국적 취득 상태 이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격기준 변경	4.26	.56	.89
	3*	일대일 학습 및 언어지원 확대	4.16	.83	.47
	2*	사례관리 체계 강화	4.00	.88	.47
	5**	촘촘한 개별적 사례관리	3.95	.78	.58
(5) 장애 아동· 청소년	1*	지역사회내 생활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제도 보완	4.37	.76	.68
	2**	중장기적, 단계적 대책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개선	4.21	.71	.68
	3*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 조항 마련	4.16	.69	.68
	4**	전국구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4.16	.69	.68
	5*	지역사회 이기심과 부정적 시각을 타파하는 정책과 정책 리더십	4.11	.88	.37
	6**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4.11	.74	.58
	7**	장애인복지정책과 의료정책 등 부처통합 정책	4.00	.75	.47
	8*	전국단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4.00	.67	.58
	9*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3.89	.81	.26
	10*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공익 광고 개발 및 공격적 전개	3.89	.81	.26
	11*	자력으로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 발굴과 사회적 보상제도 마련	3.47	.70	-.05
	12*	담당부서 설치	3.26	.93	-.47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6) 시설 보호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 청소년 포함)	1**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되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인력의 전문역량과 환경 개선 지원	4.58	.51	1.00
	2**	퇴소 후 현금 지원 이외의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4.47	.61	.89
	3**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	4.32	.58	.89
	4*	부모가 있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원가정 복귀 혹은 원가정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등의 지원서비스 강화	4.26	.73	.68
	5*	가정위탁 혹은 소규모 그룹홈으로 재배치하여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	4.21	.85	.47
	6*	개인별 전담상담원(Personal Advisor) 제도를 운영하여 퇴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개별적인 자립지원	4.11	.83	.37
(7) 비행 청소년	1*	비행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책임부여와 함께 회복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4.42	.61	.89
	2*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정책 접근	4.16	.69	.68
	3*	관련 법 보완	4.05	.78	.47
(8) 정서행동 장애 아동· 청소년	1**	학교상담사 → 학교사회복지사 1교 1인 배치	4.42	.77	.89
	2*	부모 및 자녀 동시 상담 지원	4.26	.56	.89
	3*	전문치료(치유)개입서비스	4.05	1.18	.68
	4*	심리상담비 지원	4.05	.71	.58
	5*	지역 단위의 전문성 강화	3.95	1.18	.58
	6*	학교상담사 증원	3.74	1.05	.16
(9) 위기 청소년	1*	대상자가 중첩적이라는 점에서 분절적 지원보다는 여러 기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지원	4.58	.61	.89
	2*	성매매,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온라인 포함) 강화	4.47	.51	1.00
	3*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비차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지원(학교사회복지)의 보편적 확대	4.42	.61	.89
	4**	교육지원	4.37	.60	.89
	5*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	4.32	.67	.79
	6**	의료지원	4.26	.56	.89
	7*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에서 개입(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21	.63	.79
	8*	근로 청소년의 안전한 일자리 보장(특성화 고등학교 청소년의 근로(인턴) 문제), 일과 학습의 균형 보장, 정신건강 문제 지원	4.16	.60	.79
	9**	주거지원	4.16	.69	.68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10) 청소년 한부모	10**	생계지원	4.16	.69	.68
	1**	주거지원	4.63	.50	1.00
	2**	보육지원	4.53	.51	1.00
	3*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출산후 자녀양육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경우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제도 검토)	4.42	.84	.79
	4**	청소년 한부모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과 진로지도 등 제공	4.42	.61	.89
	5**	심리상담지원	4.37	.50	1.00
	6**	경제적 지원	4.37	.60	.89
	7**	교육지원	4.37	.60	.89
	8**	취업지원	4.37	.50	1.00
	9*	자녀와 청소년 한부모 모두 사회적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종합적 지원	4.32	.75	.68
	10**	의료지원	4.32	.67	.79
	11**	학교체계를 개선하여 학교가 청소년한부모를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 개선(학교에 양육실 배치 등)	4.26	.65	.79
	12*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안학교 운영	4.26	.87	.68
	13*	청소년 미혼부에 대한 지원 서비스 확대	4.26	.73	.68
	14*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생활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4.21	.71	.68
	15*	익명 출산관련 법률 제정(미국의 Safe Haven Law, 독일의 비밀출산제, 프랑스의 익명출산제 등)	3.79	.98	.37
(11)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1*	정서심리돌봄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4.58	.51	1.00
	2*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기반한 정책 마련	4.32	.58	.89
	3**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서비스나 의료적 서비스 병행	4.26	.73	.68
	4**	경제적 문제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4.26	.73	.68
(12) 유기·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	1**	장기적인 학대후유증 치료서비스	4.68	.48	1.00
	2**	치료서비스 지원	4.58	.61	.89
	3*	성학대를 받고 돌아갈 집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4.58	.51	1.00
	4*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전문 위탁가정(그룹홈) 설치 운영	4.47	.70	.79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및 입양 지원 서비스			
	5**	심리상담지원	4.47	.61	.89
	6*	전문가들의 적극적 양성과 업무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4.37	.60	.89
	7*	안전한 보호 제공(재학대 예방)	4.37	.68	.79
	8*	가정에서 학대 위험요인이 사라지기 전까지 아동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4.37	.76	.68
	9*	부모교육의 의무화	4.37	.68	.79
	5*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비폭력 의사소통방법의 습득과 같은 보다 체계적인 학습지원	4.21	.71	.68
	10**	교육지원	4.00	.75	.47
	11*	정부의 '학대 전담 부서' 및 관련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 학대와 관련된 국가 시스템 재구성	3.89	.99	.16
	12*	지역의 대학 등과 연계하여 공무원 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3.79	.85	.26
	13*	주거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3.68	.82	.16
(13) 가족 돌봄 청소년 (영 케어러)	2*	부모나 조부모 등 돌봄대상자들이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 연계	4.37	.83	.79
	1*	가사간병 지원, 교육비지원(학업지원비), 심리/진료/학업 상담, 멘토링 등	4.21	.98	.79
	3*	행정데이터 분석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지원	4.21	.92	.89
	4*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3.63	1.12	.05
	5*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4.16	.90	.89
	6*	기존에 수행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안) 검토	3.63	.96	.16
(14) 보호종료청 소년 (자립준비 청년)	1*	주거지원 서비스 강화	4.58	.51	1.00
	2*	사례관리 담당자 증원 및 사례관리강화	4.53	.51	1.00
	3*	추수과정에 대한 체계적 방안 마련	4.26	.73	.68
	4*	자립과정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와 인 프라 구축	4.22	.81	.47
	5*	청소년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자조집단 활성화, 멘토제도 강화	4.21	.92	.58
	6*	꿈 프로젝트 서비스를 통한 성취 경험 기회 제공	3.89	.66	.47
	7*	보호종료 청년 인턴 고용 의무(고용 1년 동안 정부의 인건비 지원, 채용 시 추가 지원 정책 활용 등)	3.84	.83	.16
	8*	일상적인 일을 도와주는 복지기술 개발 및 활용	3.68	.82	.16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9*	사회서비스 고도화 과제와 연결	3.68	.89	.05
(15) 중독 청소년 (약물, 도박 등)	1*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를 통해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	4.42	.69	.79
	5**	학교내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중독단계로 가지 않도록 사전 차단	4.32	.67	.79
	3*	개별화를 통한 보다 다양한 강점 개발과 지원 서비스 제공	4.11	.74	.58
	2*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군을 사전 발굴하여 조기개입	3.95	.85	.26
	4*	상담서비스 외의 대안적 접근(생산적 온라인 놀이 문화 보급, 활동 체험 서비스 의무참가 등)	3.95	.85	.47
(16) (화귀난치 성질환 소아암) 청소년	1**	법개정을 통한 국가의료정책에서 치료비 문제 해결	4.42	.61	.89
	2*	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4.16	.96	.68
	3*	학습지원 강화	3.84	.96	.37
	4*	부모 휴가(respite care) 지원	4.32	.82	.58
(17) 수감자 자녀	1*	수감자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	4.26	.65	.79
	2**	청소년정책보다 법무부에서 정책개선을 통해 지원 확대, 또는 법무부와 통합지원 연계 추진	3.89	1.05	.37
(18) 은둔/고립 청소년	1*	은둔이나 고립 이해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	4.42	.61	.89
	2*	정확한 실태 분석 및 은둔·고립 상태를 초기에 진단·분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4.26	.65	.79
	3*	상담이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4.17	.71	.58
	4*	종합지원 대책	4.16	.69	.68
	5**	유아/아동정책과 연계하여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정책 마련(은둔/고립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비율이나 잠재적 위험군 집단비율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안내하여 유아나 아동기에 예방)	3.95	.85	.47
	6*	중앙과 지방정부의 단계별 맞춤정책	3.89	.57	.58
	7*	관계 맺기 가능한 전문가 양성	3.68	.95	.37
	8*	경제적 지원(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	3.21	.79	-.37
(19)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	1*	피해자 학습권 보장과 또래관계 유지	4.42	.69	.79
	2*	자녀관계 개선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4.00	.94	.58
	3*	실효성 있는 예방 방안 수립	4.37	.76	.68
	4*	학폭예방 및 처리의 세부 내용을 초등, 중등, 고등 단계별로 차등화	4.37	.68	.79
	5**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선임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가해자 부모의 재력에 의해 학교폭력 이슈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4.37	.60	.89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번호	복지정책 서비스	제2차 델파이 결과 (N=19)		
			M	SD	CVR
(20) 베이비 박스 유기 청소년	6**	학교장의 역할 조정(학교폭력 이슈에 대해 학교장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해서 학폭위소집 등에 대해 학교장이 반대하는 경우 원활하게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	4.00	.82	.37
	7*	국가가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학교장 자체 해결 보다는 기구 차원에서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3.95	.97	.26
	8*	학폭위원 선정 기준 및 방법 개선	3.84	.69	.37
	1*	후견인 등을 연계하여 사회적 가족이나 지지체계 마련	4.11	.88	.58
	2*	지정후원 또는 입양	3.95	.91	.37
	3*	심리치료	3.53	.96	.05
	4*	가정체험	3.42	.96	-.37

주: * 제2차 조사 문항 ** 제3차 조사 문항

3. 소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 주요 이슈, 주요 문제점, 개선과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 대상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은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정책 대상 중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중앙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과 중앙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청소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중앙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4.74점),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4.68점),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4.58점), 학교 밖 청소년(4.58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4.47점),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4.47점)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고, 중앙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청소년으로는 은둔/고립 청소년(4.53점),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4.32점), 무국적/난민 아동 및 청소년(4.26점) 등의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이슈는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습결손,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 일반가정 또는 중산층 가정 청소년과의 교육 격차 심화 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심화,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매칭지원 서비스 등이 주요 이슈였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집단감염 및 의료의 사각지대, 주거 및 자립지원, 인터넷 성매매 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한국 사회 적응, 학교 진입 지원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돌봄의 어려움, 왕따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이 주요 이슈였고,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경제선 지능아동의 자립 지원, 시설 퇴소 이후 자립의 어려움 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이,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서비스 및 전문 인력 부족, 정서행동장애 치료시설 부족 등이 주요 이슈였고,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중독,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살, 인터넷 중독, 심리·정서적 어려움, 자살예방 등이 주요 이슈였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출산 후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기는 제도,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고, 한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진로, 취업, 교육 기회 제공, 주거지원 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 심리 돌봄 서비스, 특별 쉼터, 성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쉼터 제공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부모교육 및 치료서비스,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등이 주요 이슈였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영 케어러 발굴, 신용불량자 전락,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법 제·개정 등이 주요 이슈였고,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림, 자립 실패, 개인 파산문제, 자립사각지대 등이 주요 이슈였고,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안전 체계 구축과 예방교육 강화 등이,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의 돌봄 부담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한 통합적인 지원이 주요 이슈였고,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발굴 및 지속적 사례관리 체계,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술 방법 교육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이버폭력/SNS, 모욕과 명예훼손 등 언어폭력 확대, 피해자의 관점에서의 미흡한 지원, 매우 단기적인 치료적 서비스 등이 주요 이슈였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에

는 아동시설 퇴소 청소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지원금, 차별적인 지원, 청소년 쉼터 이후 안정적인 주거지원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3)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정책 대상의 실태파악 부족 및 배제, 정책 및 제도 미비, 맞춤형 정책의 부재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는데, 청소년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의 발굴과 선정기준, 서비스 지급형태, 지급 내용 및 현금 지급액, 전달체계와 인력 등이 주요 문제점이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심의 서비스, 지원 부족, 은둔형 청소년 접근 기반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서비스 위주의 정책, 정책 담당부서 부재 및 전달체계 취약 등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국가 책임 서비스 제공 원칙, 사례관리 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례 관리체계 부족, 치료비 재정지원 취약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의 규모나 욕구 파악 부족, 중앙정부 정책 부재, 통합 관리 전달체계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인구 파악의 어려움, 지원 근거법 부재, 쉼터 이외의 정책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련 통계나 현황을 조사와 별도의 서비스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유기학대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부모교육 및 치료서비스에 대한 관점과 정책 방안 부재, 상담과 치료, 교육, 주거제공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 학대 판정 이후의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문제점이었고,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대졸 미취업자 대상의 지원 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편의 반영, 폭력발생 이후 대중요법 중심의 대책 등이 문제점이었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에는 원가정이 기초수급 대상이 아니면 디딤씨앗통장에서 제외되며, 아동복지법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자립수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는 관련 법률 부재,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와의 연계 미흡 등이 문제점이었고,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게임 중독에만 집중된 중앙정부의 정책, 청소년 약물이나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부족과 정책의 부재, 서비스 제공기관 및 능동적 정책사업의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에 대한 책임부여와 회복체계 미흡, 체계적인 대처방안 미흡 등이 문제점이었고, 보호종료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청년 대상 거시적 접근 부족,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추수과정 관련 제도 미흡 등이 문제점이었고,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중앙부처간 통일성 있는 서비스 자격 기준 및 혜택 설계, 시설청소년의 가정형 보호로의 전환 노력 미흡,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가정형 보호체계 보호에 따른 전달체계의 재편이나 재정투입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 혹은 차별성 부족, 정책대상자 규모(통계)나 실태(조사) 파악 미흡, 전달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인력 및 예산 부족, 전달체계 부족, 지역 특성화 정책 부족 등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청소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누락되는 대상 청소년 발생, 현물지원 이외의 학습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 부족,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간 격차, 지역 특화된 정책 서비스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누락되는 대상 청소년 발생, 지자체장의 마인드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자체간 격차 발생, 자치단체 중심의 정책 프로그램 및 자체 재정의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서비스 위주의 정책, 그리고 시·군·구 센터 및 담당자의 부재, 중앙정부와 연계되는 공공전달체계 구축 미흡, 지역사회 학교에서의 장애아동·청소년 학습을 위한 도구 및 보조교사 지원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인프라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역할 및 기능의 취약성, 시설 종사 인력들의 경력인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재정적 취약성 등이 문제점이었고,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달체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 현황 확인, 보조금 형식의 일정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중심 등이 문제점이었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확한 현황 파악 부족, 청소년 쉼터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서비스 체계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었고, 유기 학대 피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노력 부족,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계획 부재, 일시보호쉼터 부족, 지자체 차원에서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이나 여건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경찰/복지 영역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차원 통합적 접근 노력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미비가 문제점이었고,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입 지점의 부재가 문제점이었고,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 부족,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비용지원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지자체 자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노력과 의지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개발의 소극성, 소규모 지방정부일수록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의 한계 등이 문제점이었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의 학교폭력 관련 비현실적인 대처와 지역사회 회복체계 인프라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에서의 마을 단위의 지원 전략,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지역사회 경제활동터 개발 및 연계를 위한 추진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보다는 시설이 주요 컨택 포인트인 점, 원가정 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미흡 등이 문제점이었고,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자체별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내용의 차별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위기 청소년의 범주가 넓은 점, 위기청소년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단위의 전달체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시설의 복지정책 수행상의 문제점은 대상 발굴의 어려움, 전문 시설 및 전문 인력 부재, 자원 부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지나친 의존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는데, 청소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사업운영 주체로서의 공신력 취약, 전달체계 부족, 불안정한 예산 등이 문제점이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노력 부족, 시설 자체의 특화 프로그램 부재, 불안정한 예산 등이 문제점이었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민간단체의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 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회활동 전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지원하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부재 등이 문제점이었고,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인력 전문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주배경 청소년 중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시설 이용 기준, 일부 긴급한 상황이면 이주배경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짧은 서비스 기간, 지원센터 및 인력의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담당기관, 진료 및 진학을 위한 지원기관 및 인력 부족이 문제점이었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근본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 일부 민간기관 차원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홍보와 연구 수행, 후원금 모집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부족한 인력과 예산, 지속적 운영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이었고,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 입소 후 민간단체나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종교단체로,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의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유기 학대 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대 신고 후 원가정에 대한 지원 미흡,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학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 및 연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은둔 경험자 공동체 형성 및 지원 서비스, 실천 기관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절한 후속조치 부족, 연계 미흡 등이 문제점이었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경우에는 서비스 질, 시설 및 전문가 양성과 확대 배치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시설 보호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 종료 이후 구체적인 자립지원 서비스 미흡 등이 문제점이었고,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부족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한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생활지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의 적극성 부족, 일부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 전문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공공전달체계와 연계된 회복 프로그램 부족, 비행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 부족, 전달체계 미흡,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등이 문제점이었고,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및 인력의 전문성 부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의존 등이 문제점이었고,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관심 부족, 실효성 있는 퇴소준비 프로그램 부족,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원에서 소외, 그룹홈의 시설 대비 활용 가능 자원 부족 등이 문제점이었고,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을 발굴 방안 부족,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4)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정책 개선과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복지 정책 청소년의 개선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소득청소년의 경우에는 생계비 현실화, 교육급여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우대점수 상향 조정, 자립지원 강화,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취·창업 연계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교육 및 문화 바우처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꿈드림센터 자동 연계 시스템 구축, 지역 특성과 대상을 고려한 꿈드림 센터의 차별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학력 인정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쉼터 관련 시설의 확충, 주거안정 지원,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표준화,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도화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상태 이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자격기준 변경, 사례관리 체계 강화, 무국적/난민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 촘촘한 개별적 사례관리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생활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제도 보완, 전국단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 조항 마련, 전국구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혹은 소규모 그룹홈으로 재배치하여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 원가정 복귀 혹은 원가정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등의 지원서비스 강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기존의 인력의 전문역량과 환경 개선 지원, 퇴소 후 현금 지원 이외의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회복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관련 법 보완,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정책 접근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심리상담비 지원, 부모 및 자녀 동시상담 지원, 전문치료(치유)개입서비스, 지역 단위의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여러 기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지원,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강화, 교육복지지원(학교사회복지)의 보편적 확대, 정신건강·의료·주거·생계·교육지원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 전반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생활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심리상담과 진로지도 제공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정서심리 돌봄 서비스, 교육지원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나 의료적 서비스 병행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적극적 양성과 업무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전문 위탁가정(그룹홈) 설치 운영 및 입양 지원 서비스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사간병 지원, 교육비지원, 심리/진료/학업 상담, 멘토링, 지역사회 돌봄체계 연계,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거지원 서비스 강화, 사례관리 담당자 증원 및 사례관리 강화, 청소년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자조집단 활성화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제도화, 다양한 강점 개발과 지원 서비스 제공, 생산적 온라인 놀이 문화 보급, 상담서비스 외의 대안적 접근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부모 휴가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정 전제조건 등의 폐지, 법 개정을 통한 치료비 문제 해결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수감자 자녀의 경우에는 수감자 자녀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관제로 제안되었고, 은둔/고립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확한 실태 분석, 초기 진단·분류 기준 마련, 가족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 상담이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고,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의 세부 내용의 초등, 중등, 고등 단계별 차등화, 피해자 학습권 보장과 또래관계 유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용의 국가 지원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으며, 베이비박스 유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후견인 등을 연계한 사회적 가족이나 지지체계 마련 등의 과제가 제안되었다.



제4장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 복지 요구 분석

- 1. 설문조사
-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 설문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현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조사 거부, 소요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중장기청소년쉼터 등을 조사하였으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⁴³⁾ 등을 조사하였고,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소속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협회/단체 등을 조사하였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설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해당 시설에 종사하면서 해당 유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거나, 관련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 종사자로 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 현황과 정책 지원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42) 이 장의 1절은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절은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43) 월드비전 지원에 의해 현재 가족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선정했다.

24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 4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유형별로 100명 내외로 할당하여 온라인 웹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511명(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102명, 은둔고립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164명,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96명,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 14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 탐색을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 내 시설정보 등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에 협조요청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협조요청을 구하면서 기관에서 관련 유형의 아동·청소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 조사현황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중장기청소년쉼터 등)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지자체 소속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협회/단체)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시설 종사자(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표본수	490명(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102명,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96명,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131명,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161명)
표집방법	할당표집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기간	2023년 7월 ~ 8월
조사내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어려움, 정책/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정책 필요도와 수행정도,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정책/서비스 등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원은 최근 사회복지 기관 대상으로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조사원 총 10명을 선발하여 7월 17일에 조사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각 기관 유형별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설명과 조사 참여 거절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과거 민원발생 사례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종료 후 약 1시간 동안 조사원 간 시뮬레이션과 1주일 간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

여 본 조사에 익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조사 분석 대상은 511명 중에서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부적합한 사례 21명을 제외하고 최종 490명이 선정되었다. 본 실태조사에 앞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승인번호: 202303-HR-고유-001)을 2023년 6월 23일에 승인을 획득하였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남자 26.5%, 여자 73.5%로 여자가 남자의 2배 이상이고, 기관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 39.2%, 중장기청소년쉼터 32.4%, 공동생활시설 28.4%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6%, 경기/인천 18.6%, 광역시 22.5%, 그 외 지역이 41.2%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남자 24.0%, 여자 76.0%로 여자가 남자의 2배 이상이고, 기관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45.8%, 사회복지기관 42.7%, 학교 11.5%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5%, 경기/인천 13.5%, 광역시 37.5%, 그 외 지역이 36.5%로 광역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남자 26.0%, 여자 74.0%로 여자가 남자의 2배 이상이고, 기관 유형별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35.1%, 학교 32.1%,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사설 협회/단체 20.6%,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5.3%, 지자체 소속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2.3%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2.1%, 경기/인천 30.5%, 광역시 18.3%, 그 외 지역이 19.1%로 서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남자 19.3%, 여자 80.7%로 여자가 남자의 약 4배 정도이고, 기관 유형별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26.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4.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6%, 학교 17.4%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21.7%, 경기/인천 31.7%, 광역시 23.0%, 그 외 지역이 23.6%로 경기/인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명	백분율
시설 보호	성별	남자	27	26.5
		여자	75	73.5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40	39.2
		공동생활시설	29	28.4
		청소년쉼터(중장기)	33	32.4
	지역	서울	18	17.6
		경기/인천	19	18.6
		광역시	23	22.5
		그 외 지역	42	41.2
소계		102	100.0	
가족 돌봄	성별	남자	23	24.0
		여자	73	76.0
	기관유형	학교	11	11.5
		지역아동센터	44	45.8
		사회복지기관	41	42.7
	지역	서울	12	12.5
		경기/인천	13	13.5
		광역시	36	37.5
		그 외 지역	35	36.5
소계		96	100.0	
경계선 지능	성별	남자	34	26.0
		여자	97	74.0
	기관유형	학교	42	32.1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7	5.3
		지자체 소속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	3	2.3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46	35.1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시설 협회/단체	27	20.6
		기타	6	4.6
	지역	서울	42	32.1
		경기/인천	40	30.5
		광역시	24	18.3
		그 외 지역	25	19.1
소계		131	100.0	

		구분	명	백분율
은둔형 외톨이	성별	남자	31	19.3
		여자	130	80.7
	기관유형	학교	28	17.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24.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23.6
		정신건강복지센터	42	26.1
		기타	14	8.7
	지역	서울	35	21.7
		경기/인천	51	31.7
		광역시	37	23.0
		그 외 지역	38	23.6
	소계		161	100.0
	전체		490	100.0

(3) 조사도구 개발

본 조사도구는 연구진이 선행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4명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검토하였고, 4개 유형별 전문가 워킹그룹의 운영을 통해서 재차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연구진 및 조사기관이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IRB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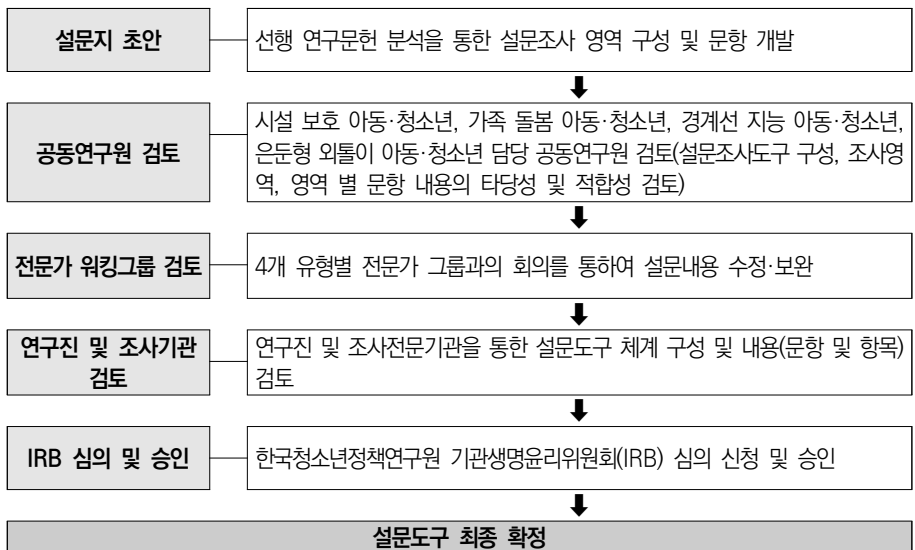


그림 IV-1. 조사도구 개발절차

(4) 조사영역 및 문항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서비스의 필요도·중요도와 수행정도·지원정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필요 정책·서비스 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주요 조사영역과 문항구성은 다음의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 주요 조사영역 및 문항구성

조사영역		조사문항
1)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1) 겪고 있는 어려움	Q1. 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어려움입니까?
	(2) 정책 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Q2. 시설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는?
	(3) 정책필요도와 수행정도	Q3. 시설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필요도와 수행정도는?
	(4) 정책 및 서비스	Q4. 시설의 아동·청소년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특별히 수정되어야 할 것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는?
	(5)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기관(시설) 소재지, 경력기간, 직종, 활용되는 자격증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1) 겪고 있는 어려움	Q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	Q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정책·서비스	Q3.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과 정책·서비스는?
	(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정의	Q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가장 가까운 정의는?
	(5) 사례 발굴	Q5. 어떠한 방법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돌봄의 범위	Q6. 아동·청소년이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7) 돌봄의 주체	Q7.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7-1.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Q7-2.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Q7-3. 원가정 분리 후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7-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장 적합한 보호서비스 유형은?

조사영역		조사문항
	(8) 정부 지원방안	Q8.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기관(시설) 소재지, 경력기간
3)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	(1) 겪고 있는 어려움	Q1.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2) 정책 필요도와 수행실태	Q2.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필요도와 수행실태는 어떻습니까? 또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3)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Q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4) 정책·서비스	Q4.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특별히 수정되어야 할 것과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서비스는?
	(5) 지원요구와 지원실태	Q5-1.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요구와 지원실태는?
	(6) 아동·청소년 선별	Q5-2. 학교에서 경계선 아동·청소년의 선별에 대한 의견은?
		Q5-2-1. 학교에서 경계선 아동·청소년의 선별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표시하면?
	(7) 지원체계	Q5-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로 적절한 형태는?
		Q6. 지역사회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주 전달 체계의 적절성은?
	(8) 지원 관련 문제	Q7. 경계선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9) 정책 및 제도 개발	Q8.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및 제도 개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10) 대안적인 용어	Q9. 경계선 지능 청소년 또는 경계선 지능인의 대안적인 용어는?
	(1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기관(시설) 소재지, 경력기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4) 은둔형 외 톨이 청소년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인식	Q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Q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Q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2) 은둔형 외톨이의 징후 및 은둔생활의 주요계기	Q4. 등교거부를 하고 은둔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사전에 보이는 징후는?
		Q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은둔 생활을 하는 주요 계기는?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 및 주요활동	Q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Q7.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특성은?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및 개입	Q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주로 어떻게 발견하였습니까?
		Q9. 처음 발견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는?
		Q1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Q1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가장 용이한 곳은?

조사영역		조사문항
(5) 학교·기관의 지원 및 연계		Q1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용이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Q1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해도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Q14.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요구와 지원 실태는?
		Q14-1. 어떤 기관에 연계하였습니까?
(6) 문제의 심각성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Q17.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은?
		Q18. 은둔형 외톨이 향후 증감 추세는?
		Q19. 은둔형 외톨이 변화 예측의 이유는?
		Q2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7)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서비스		Q22.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효과가 높은 지원대상은?
		Q2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Q2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8)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Q2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9) 실무자의 역량		Q26. 실무자로서의 역량은?
(10)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기관(시설) 소재지, 경력기간

2)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평균 4.00점 만점에 3.21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업 수행의 어려움(3.01점), 행동문제의 어려움(2.89점), 자립준비의 어려움(2.80점), 원가정과의 관계의 어려움(2.79점), 경제적 어려움(2.63점), 친구관계의 어려움(2.58점), 시설생활 적응의 어려움(2.30점), 건강 의료적 어려움(2.18점), 중독문제(2.12점), 여가문화 향유의 부족(2.10점)의 순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은 심리 정서적, 학업수행 및 행동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점)

문항 번호	문항	아동양육시 설(a)	공동생활가 정(b)	중장기 청소년쉼터(c)	전체	F	Scheffe 사후검증
Q1-3	심리·정서적 어려움	3.03	3.21	3.42	3.21	2.652	
Q1-5	학업 수행의 어려움	2.95	2.90	3.18	3.01	1.284	
Q1-4	행동 문제의 어려움	3.13	2.69	2.79	2.89	3.280*	
Q1-11	자립 준비의 어려움	2.63	2.66	3.15	2.80	4.705	
Q1-10	원가정과의 관계 어려움	2.48	2.76	3.21	2.79	9.259***	a<c
Q1-1	경제적 어려움	2.35	2.62	2.97	2.63	5.466**	a<c
Q1-9	친구 관계의 어려움	2.48	2.34	2.91	2.58	4.694*	b<c
Q1-8	시설생활·적응의 어려움	2.18	2.14	2.61	2.30	4.336*	ab<c
Q1-2	건강·의료적 어려움	1.95	2.10	2.52	2.18	8.052***	ab<c
Q1-7	중독 문제(알콜, 담배 등)	2.00	1.97	2.39	2.12	2.772	
Q1-6	여가문화 향유의 부족	2.03	2.03	2.24	2.10	1.050	

*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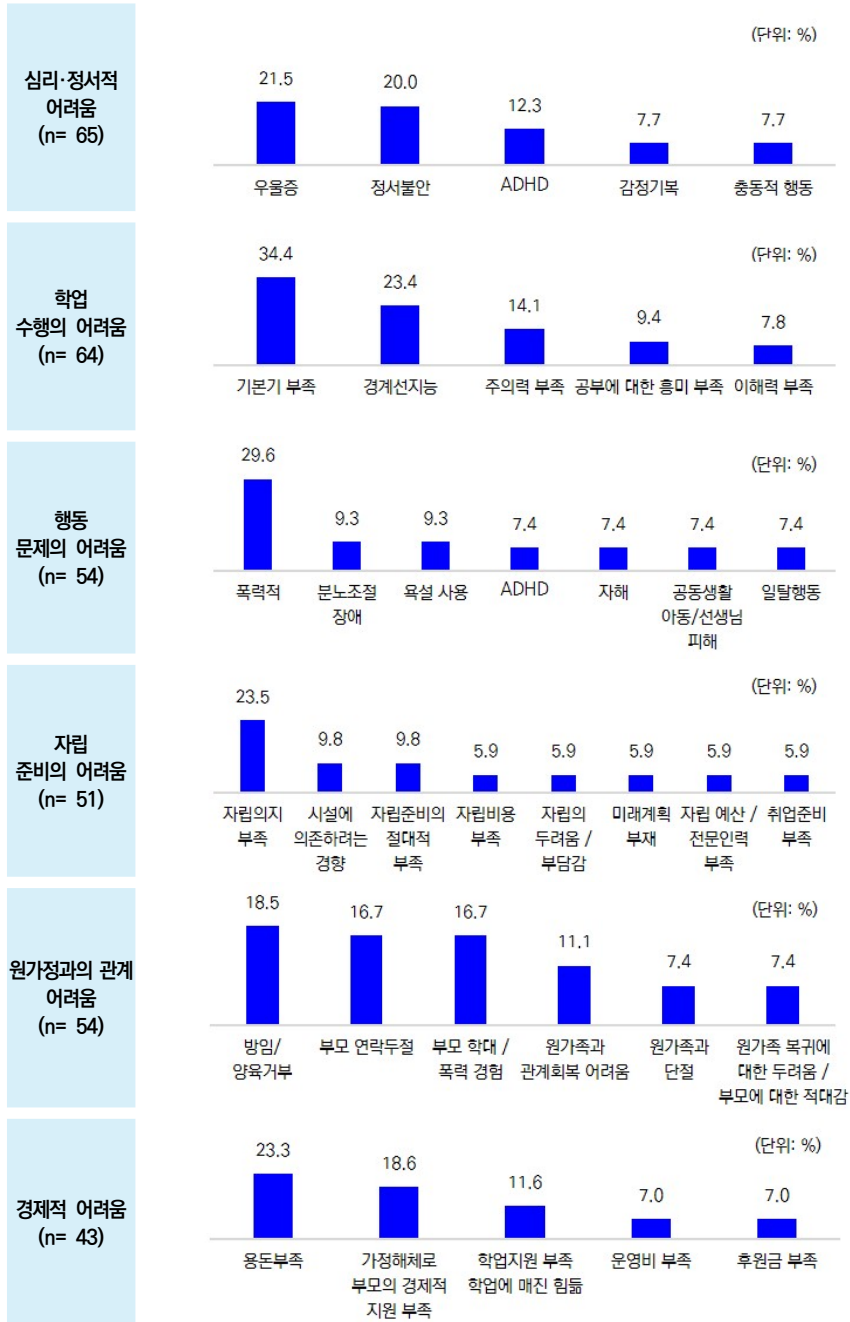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고,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친구관계의 어려움이 많았으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서 시설생활 적응의 어려움과 건강 의료적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우울증(21.5%), 정서 불안(20.0%), ADHD(12.3%)가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였고, 이밖에 심한 감정 기복(7.7%), 충동적인 행동(7.7%)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수행의 어려움은 기본기 부족(34.4%), 경계선 지능 아동(23.4%), ADHD로 인한 주의력 부족(14.1%)이 70% 정도를 차지하였고, 이밖에 공부에 대한 무관심(9.4%), 이해력 부족(7.8%)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문제의 어려움은 폭력성(29.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욕설 등 부정적인 언어 사용(9.3%), 분노조절 장애(9.3%), 자해(7.4%), 동료 아동 및 교사들에 대한 가해(7.4%), ADHD(7.4%), 성격장애(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 준비의 어려움은 자립의지의 부족(23.5%)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립

준비 부족(9.8%), 시설 의존(9.8%), 미래에 대한 무계획(5.9%), 자립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5.9%), 자립준비 진행 예산과 전문인력 배치 부족(5.9%), 취업준비 부족(5.9%), 자립비용 부족(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가정과의 관계의 어려움은 부모로부터의 방임, 양육거부(18.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의 연락의 어려움(16.7%), 부모로부터의 학대, 폭력(16.7%), 입소 전부터 원가정과의 갈등, 불화로 관계회복의 어려움(11.1%), 원가정과의 단절(7.4%), 원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에 대한 적대감(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은 용돈 부족(23.3%)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정해체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족(18.6%), 학업지원 부족(11.6%), 운영비(보조금) 부족(7.0%), 후원금 부족(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시설 거주 아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23.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성 및 대인관계성 부족(14.3%), 친구관계의 소극성(9.5%), 친구관계를 어려워함(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공동생활 규칙 준수(39.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수 인원으로서 인한 스트레스나 부적응(14.3%), 단체생활의 어려움(10.7%),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감 부족(7.1%), 시설 거주에 대한 스트레스(7.1%), 입소자 간 갈등(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의료적 어려움은 유전적 및 질환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적절한 치료 진행의 어려움(27.8%)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입원 및 진료 비용 문제로 적절한 치료 진행의 어려움(16.7%), 원가정에서 의료적 방임 및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성장 취약 및 좋지 않은 건강상태(11.1%),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부담(11.1%),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많은 아이들(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독문제의 어려움은 어린 나이의 흡연, 음주, 도박(40.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금연, 금주 의지 부족(14.8%), 스마트폰 중독(11.1%), 주변 친구들에 의한 음주, 흡연(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향유의 어려움은 충분하지 않은 예산(46.7%)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기회 부족(20.0%), 연령이나 욕구에 맞추기 어려움(20.0%), 시설 프로그램 외 여가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13.3%), 지역적 한계로 인한 여가문화 활동의 제한(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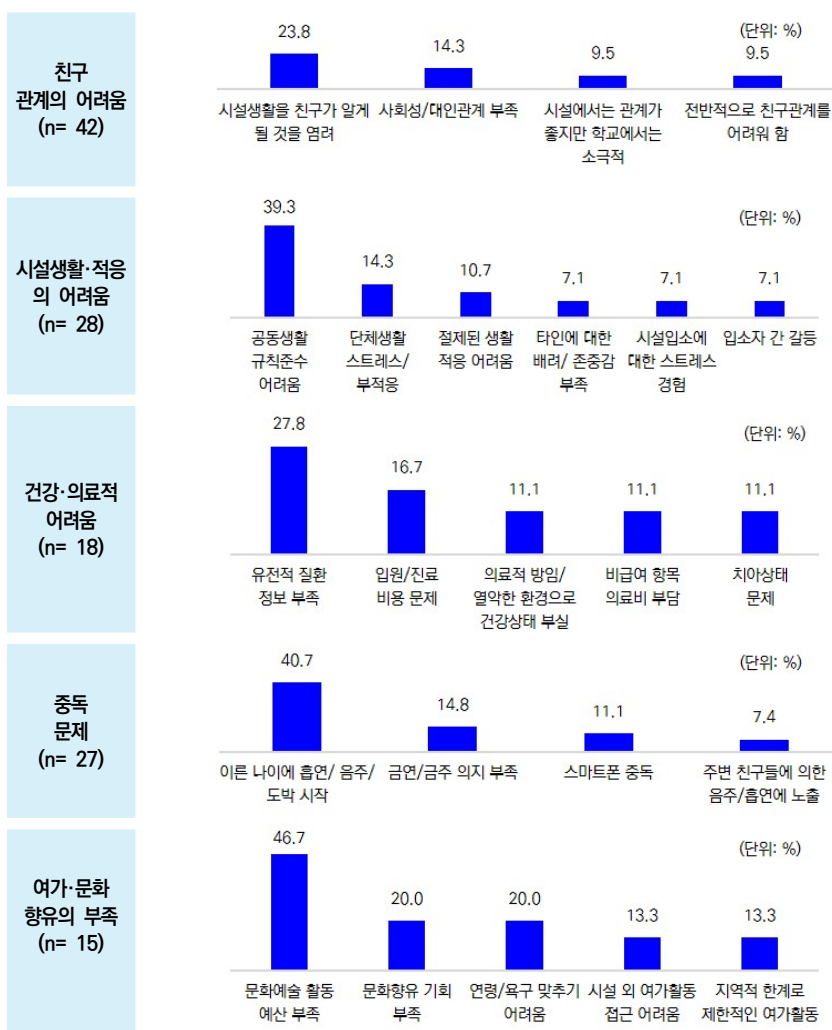


그림 IV-2.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 어려움

기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계선 지능이나 인지장애 등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자립하는 것이 어렵다”, “정서 불안이 많다”, “사적공간을 원한다”, “법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병원진료 동행 등 쉼터 아동이라는 것이 노출될 때 힘들어 한다”, “사회성·대인관계성이 부족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5. 기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문항	사례수
1	경계선 지능이나 인지장애 등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자립하는 것이 어렵다	2
2	정서 불안이 많다	2
3	사적공간을 원한다	2
4	법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	2
5	병원진료 동행 등 험터 아동이라는 것이 노출될 때 힘들어 한다	2
6	사회성/대인관계성이 부족하다	2
7	시설에 의존하려고 한다	1
8	거짓말을 한다	1
9	입소 전부터 원가정과 갈등/불화가 있어 관계회복이 어렵다	1
10	취업 준비가 부족하다	1
11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학습지원이 부족하다	1
12	부모로부터 학대/폭력을 당한 아이의 경우 원가정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1
13	아동카드 만들 때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	1
14	뭘 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1
15	지속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1
16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연계가 부족하다보니 그룹홈 아이들이 결심하거나 학업완수 기간이 길어진다	1
17	생활기술 습득과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고 있지만 퇴소 후 실제로 자립생활 하는 것에 어려워 한다	1
18	교대근무 특성상 계속 바뀌는 근무형태로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지 못한다	1
19	주거지 관련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1
20	ADHD 아동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다	1
21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을 케어하기가 힘들다	1
22	용돈이 부족하다	1
23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1
24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지도가 어렵다	1
25	자존감이 낮다	1
26	개별 핸드폰 개통이 어렵다	1

(2)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정책·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서비스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현재 까지 현장에 지원되고 있는 정책·서비스의 지원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정책·서비스의 중요도는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심리·정서·행동

치료 지원(3.71점), 진로취업·직업 지원(3.60점), 상담 지원(3.56점) 등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서비스의 지원은 건강·의료 지원(3.30점), 문화·여가 활동 지원(3.20점) 등이 높았으나, 심리·정서·행동치료 지원, 진로취업·직업 지원, 상담 지원 등은 그리 높지 않아서 심리·정서·행동치료 지원(D), 진로취업·직업 지원(G), 상담 지원(E), 경제적 지원(A) 등에 대한 정책·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관계 회복 지원(J), 법률 지원(H)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았지만, 지원정도가 매우 낮아, 추가적인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IV-6.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기술통계 (단위: 점)

정책·서비스	중요도(n=102)		지원정도(n=10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지원	3.46	0.61	2.86	0.81
주거 지원	3.50	0.61	3.07	0.79
건강·의료 지원(신체건강)	3.49	0.63	3.30	0.70
심리·정서·행동치료 지원(정신건강)	3.71	0.54	2.99	0.79
상담 지원	3.56	0.57	3.04	0.76
학업 지원	3.40	0.60	2.99	0.75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 지원	3.60	0.57	2.96	0.80
법률 지원	3.22	0.64	2.62	0.78
사회적 관계 지원	3.33	0.68	2.90	0.75
가족관계 회복 지원	3.16	0.73	2.68	0.83
문화·여가 활동 지원	3.29	0.65	3.20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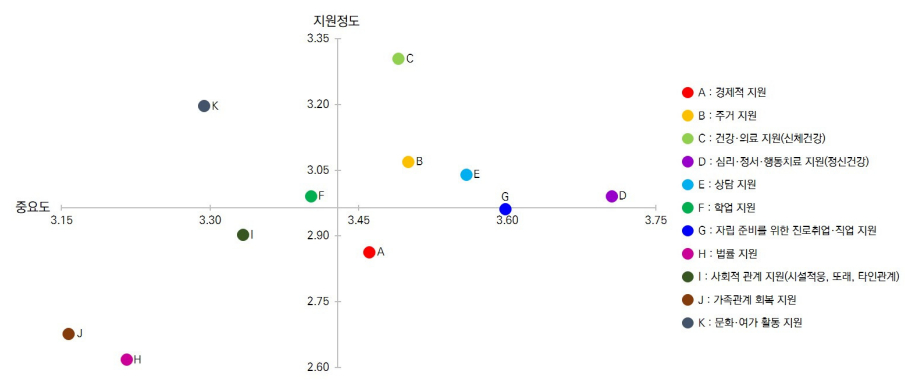


그림 IV-3.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IPA 분석

(3)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정책의 필요도와 수행정도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수행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정책의 필요도는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시설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지원(3.46점), 아동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추진(3.39점),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인식 개선(3.39점), 자립 지원 내실화(3.38점) 등은 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나, 이 중 아동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추진(J),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유연화(H) 등은 상대적으로 정책 수행 정도가 낮아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내 1인 1실 확충(F) 등은 상대적으로 정책 필요도가 낮았으나 수행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지원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표 IV-7.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의 필요도와 수행정도 기술통계

(단위: 점)

정책·서비스	필요도(n=102)		수행정도(n=102)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대상 아동·청소년 실태·현황 파악	3.21	0.53	3.24	0.69
관련 법·제도 개선(아동보호체계 포함)	3.28	0.60	3.10	0.96
자립 지원 내실화	3.38	0.63	3.09	0.87
가정(형)보호 활성화	3.06	0.79	2.98	0.96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인식 개선	3.39	0.66	3.02	0.91
시설 내 1인 1실 확충	3.05	0.94	2.35	1.22
시설 내 치료실·놀이실 등 확충	3.06	0.79	2.59	1.14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유연화	3.29	0.77	2.61	0.92
시설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지원	3.46	0.57	3.10	0.79
아동특성별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추진	3.39	0.68	2.73	1.03



그림 IV-4.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책의 필요도와 수행정도 IPA 분석

(4) 수정 혹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

① 수정 혹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앙정부 정책 및 서비스

중앙 정부의 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수정되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4.9%), 예산/보조금 확대(3.9%), 시설종사자 임금 상승(3.9%), 주거환경 지원 확대(2.9%), 자립지원 내실화(2.9%), 자립수당 지원 확대(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추가되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는 자립 지원 내실화(4.9%), 정신적 문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시설 설치(3.9%), 종사자 수 충원(3.9%), 교육비 지원 확대(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자립지원과 전문치료시설의 설치 및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IV-8.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서비스

(단위: %)

수정되어야 할 정책·서비스(n=102)		추가되어야 할 정책·서비스(n=102)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	4.9	자립 지원 내실화	4.9
예산/보조금 확대	3.9	정신적 문제 아동·청소년 전문시설 설치	3.9
시설종사자 임금 상승	3.9	종사자 수 충원	3.9
주거환경 지원 확대	2.9	교육비 지원 확대	3.9
자립지원 내실화	2.9	시설 내 1인실 확충	2.9
자립수당 지원 확대	2.9	시설종사자 임금 상승	2.9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통합사례관리 표준화	2.0	종사자수 배치기준 완화(인력배치 유연화)	2.9
종사자수 배치기준 조정	2.0	심리상담 지원 확대	2.0
시설 입소 시 시설장의 자동후견인 지정	2.0	심리·정서·행동치료 지원 확대	2.0
종사자 수 충원	2.0	자립관 지원 확대	2.0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2.0	아동·청소년 용돈지급 확대	1.0

시설 유형별로 수정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 서비스를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7.5%)와 시설종사자의 임금 상승(7.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은 주거 환경 개선 확대(6.9%), 그리고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예산(보조금) 확대(9.1%)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시설 유형별로 수정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서비스

(단위: %)

아동양육시설(n=40)		공동생활가정(n=29)		중장기청소년쉼터(n=33)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	7.5	주거환경 개선 확대	6.9	예산/보조금 확대	9.1
시설종사자 임금 상승	7.5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3.4	종사자 수 충원	3.0
종사자 수 배치기준 조정	5.0	시설종사자 교육지원 강화	3.4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3.0
자립지원 내실화	5.0	시설 종사자 임금 상승	3.4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3.0
자립수당 지원 확대	5.0	자립전담요원 배치	3.4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 개정	3.0
현금성 자립 지원이 아닌 정책 지원	2.5	자립지원 내실화	3.4	일관된 정책 서비스 확립	3.0
사회복지사 임금 상향	2.5	아르바이트 일정금액 이상 시 수급비 감면 해제	3.4	예산정책 일반회계 편입	3.0
시설종사자 근무체계 검토	2.5	심리상담 지원의 장기적인 계획 마련	3.4	단기 및 중장기 쉼터 역할 중복 통합	3.0
정신적 문제 아동·청소년 전문시설 설치	2.5	교육비 지원 확대	3.4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3.0
아동 인권 위주의 정책	2.5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정책 확대	3.4	만18세 이상 고등학생 지원 체계 점검	3.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통합사례관리 표준화	2.5	예산/보조금 확대	3.4	자립수당 지원 확대	3.0

시설 유형별로 추가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은 심리상담 지원 확대(5.0%), 교육비 지원 확대(5.0%), 자립지원 내실화(5.0%), 시설 내 1인실 확충(5.0%), 시설 종사자 임금 상승(5.0%), 인력 배치 유연화(5.0%) 등으로 나타났고, 공동생활가정은 종사자 수 충원(6.9%),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6.9%), 자립지원 내실화(6.9%), 교육비 지원 확대(6.9%) 등으로 나타났으며,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정신적 문제 아동·청소년 전문시설 설치(12.1%), 자립지원관 확대(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시설 유형별로 추가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정책/서비스

(단위: %)

아동양육시설(n=40)		공동생활가정(n=29)		중장기청소년쉼터(n=33)	
심리상담 지원 확대	5.0	종사자 수 총원	6.9	정신적 문제 아동·청소년 전문시설 설치	12.1
교육비 지원 확대	5.0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6.9	자립지원관 확대	6.1
자립지원 내실화	5.0	자립지원 내실화	6.9	자립지원 내실화	3.0
시설 내 1인실 확충	5.0	교육비 지원 확대	6.9	자립수당에 대한 사례관리 참여	3.0
시설 종사자 임금 상승	5.0	예산/보조금 확대	3.4	퇴소 후 전문모니터링	3.0
인력 배치 유연화	5.0	주거환경 지원 확대	3.4	퇴소 청소년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3.0
다양한 시설 확충	2.5	의료비 지원 확대	3.4	심리정서행동치료 지원 확대	3.0
학대 아동을 위한 시설 설치	2.5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정책 확대	3.4	예산/보조금 확대	3.0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2.5	아르바이트 일정금액 이상시 수급비 감면 해제	3.4	원가정 복귀 가족복귀 가족상담 지원 확대	3.0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2.5	자립전담요원 배치	3.4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정책 확대	3.0

② 수정 혹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수정되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는 예산(보조금) 확대(5.9%),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2.9%), 자립수당 지원 확대(2.9%), 종사자 수 총원(2.9%) 등의 순이었고, 추가되어야 할 정책 및 서비스는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5.9%), 종사자 수 배치기준 조정(5.9%), 자립지원 내실화(3.9%), 예산/보조금 확대(3.9%), 퇴소 후 전문모니터링(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종사자 배치 및 처우 개선,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예산 확대 등이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주요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표 IV-11.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서비스

(단위: %)

수정되어야 할 정책 및 서비스(n=102)		추가되어야 할 정책 및 서비스(n=102)	
예산/보조금 확대	5.9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5.9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2.9	종사자 수 배치기준 조정	5.9
자립수당 지원 확대	2.9	자립 지원 내실화	3.9
종사자 수 총원	2.9	예산/보조금 확대	3.9
무분별한 양육비 지원에 대한 검토	2.0	퇴소 후 전문 모니터링	3.9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정책 확대	2.0	심리상담 지원 확대	2.9
상담치료비 지원 확대	2.0	시설종사자 임금 상향	2.9
아동 특성별 상담 강화	2.0	상담치료비 지원 확대	2.0
교육비 지원 확대	2.0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2.0
정책지원금, 학자금 지원 시 경제교육 필수 이수	2.0	아동·청소년 용돈지급 확대	1.0
시설 종사자 임금 상향	2.0	보호연장아동의 생활비 지원 확대	1.0
종사자 수 배치기준 조정	2.0	주거환경 지원 확대	1.0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확대	2.0	심리·정서·행동치료 지원 확대	1.0

시설 유형별로 수정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은 예산(보조금) 확대(7.5%), 자립수당 지원 확대(7.5%), 시설종사자 임금 상향(5.0%), 종사자 수 배치기준 상승(5.0%) 등 이었고, 공동생활가정은 상담치료비 지원 확대(6.9%), 아동 특성별 상담 강화(6.9%), 교육비 지원 확대(6.9%),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6.9%),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확대(6.9%) 등 이었으며,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예산/보조금 확대(9.1%), 무분별한 양육비 지원 검토(6.1%) 등이었다.

표 IV-12. 시설 유형별로 수정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서비스

(단위: %)

아동양육시설(n=40)		공동생활가정(n=29)		중장기청소년쉼터(n=33)	
예산/보조금 확대	7.5	상담치료비 지원 확대	6.9	예산/보조금 확대	9.1
자립수당 지원 확대	7.5	아동 특성별 상담 강화	6.9	무분별한 양육비 지원 검토	6.1
시설종사자 임금 상향	5.0	교육비 지원 확대	6.9	자립정착금 명확화	3.0
종사자 수 배치기준 상승	5.0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6.9	자립정착금/학자금 등의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3.0
종사자 수 총원	2.5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확대	6.9	자립정착금/학자금 지원시 경제교육 이수	3.0

아동양육시설(n=40)		공동생활가정(n=29)		중장기청소년쉼터(n=33)	
시설종사자 근무체계 검토	2.5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정책 확대	3.4	정신적 문제 아동·청소년 전문시설 설치	3.0
용돈 지급 확대	2.5	주거환경 지원 확대	3.4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3.0
보호연장 아동 정책 확대	2.5	충분한 상담 및 조사	3.4	종사자 수 충원	3.0
의료비 지원 확대	2.5	냉난방비 지원 확대	3.4	그룹홈 활성화	3.0
무료 건강검진 확대	2.5	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3.4	예산지출 항목의 유연화	3.0
심리 정서 행동치료 지원 확대	2.5	종사자 수 충원	3.4	일관된 정책 서비스 확립	3.0

시설 유형별로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서비스는 아동양육시설은 예산(보조금) 확대(7.5%), 종사자 수 배치기준 조정(7.5%) 등이었고,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10.3%), 퇴소 후 전문 모니터링(6.9%), 자립 지원 내실화(6.9%) 등이었으며,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6.1%), 종사자 수 충원(3.0%) 등이었다.

표 IV-13. 시설 유형별로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서비스

(단위: %)

아동양육시설(n=40)		공동생활가정(n=29)		중장기청소년쉼터(n=33)	
예산/보조금 확대	7.5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10.3	시설종사자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	6.1
종사자 수 배치기준 조정	7.5	퇴소 후 전문 모니터링	6.9	종사자 수 충원	3.0
심리상담 지원 확대	5.0	자립 지원 내실화	6.9	조리사 지원 확대	3.0
자립 지원 내실화	5.0	상담치료비 지원 확대	3.4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3.0
퇴소후 전문 모니터링	5.0	충분한 상담 및 조사	3.4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3.0
시설종사자 인권보호 강화	5.0	심리상담 지원 확대	3.4	정신적 문제 아동·청소년 전문시설 설치	3.0
시설종사자 임금 상향	5.0	자립수당 지원 확대	3.4	시설 내 1인실 확충	3.0
인력 배치 유연화	5.0	자립수당 사례관리 참여	3.4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3.0
원가정 복귀 관련 지원 확대	2.5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원 확대	3.4	퇴소청소년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3.0
지역사회체험활동 지원	2.5	시설종사자 임금 상향	3.4	가정 밖 청소년 우선 채용	3.0
용돈지급 확대	2.5	인력배치 유연화	3.4	자립지원관 확대	3.0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2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어려움(3.18점), 학업문제의 어려움(2.97점), 친구관계의 어려움(2.49점), 건강문제의 어려움(2.44점)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정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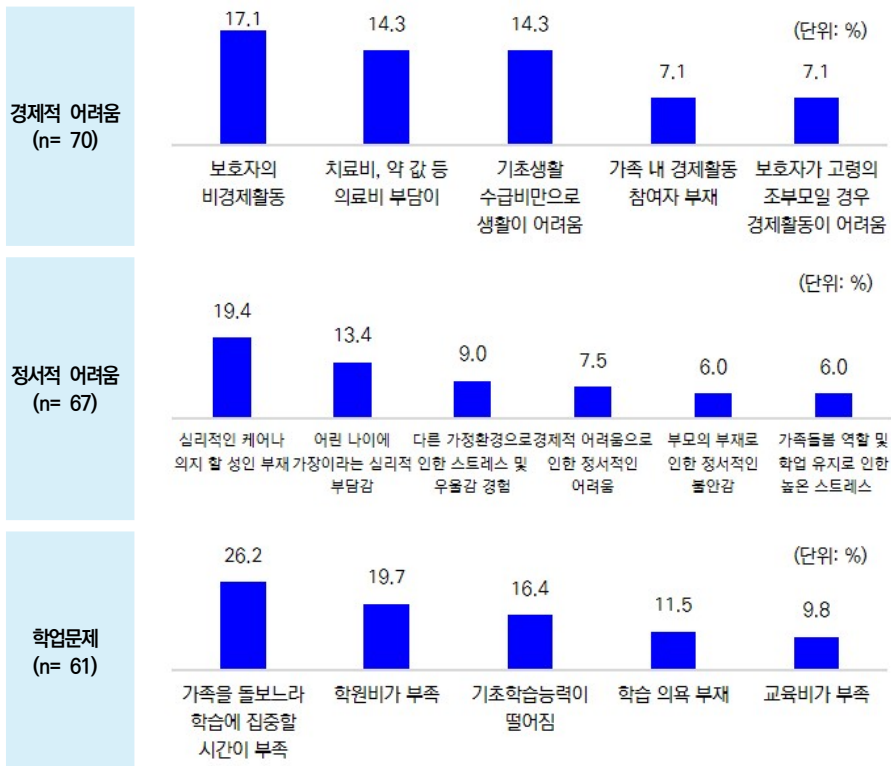
표 IV-14.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 점)

문항 번호	문항	겪고 있는 어려움				부정 (①+②)	긍정 (③+④)	평균
		전혀 어렵지 않다 ①	어렵지 않다 ②	어렵다 ③	매우 어렵다 ④			
Q1-1	경제적 어려움	1.0	7.3	60.4	31.3	8.3	91.7	3.22
Q1-2	정서적(정신건강) 어려움	-	15.6	51.0	33.3	15.6	84.4	3.18
Q1-4	학업 문제의 어려움	1.0	15.6	68.8	14.6	16.7	83.3	2.97
Q1-5	친구 관계의 어려움	2.1	52.1	40.6	5.2	54.2	45.8	2.49
Q1-3	건강(신체적) 문제의 어려움	2.1	60.4	29.2	8.3	62.5	37.5	2.4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어려움은 보호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17.1%)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가족 내 환자로 의료비의 큰 부담(14.3%),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활의 어려움(14.3%), 가족 내 경제활동을 하는 구성원의 부재(7.1%), 고령의 조부모로 경제활동이 어려움(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어려움은 가정 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인 케어나 의지할 성인의 부재(19.4%)가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책임져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13.4%), 또래친구들과 다른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9.0%),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7.5%), 부모의 부재로 인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정서적인 불안감(6.0%), 가족 돌봄의 역할과 동시에 학업 유지로 인한 스트레스(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의 어려움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습에 집중할 시간의 부족(26.2%)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학원비 부족(19.7%), 기초학습능력 부족(16.4%), 학습의욕 없음(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어려움은 가족을 돌보느라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의 부족(27.3%)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18.2%), 대인관계의 어려움(12.1%), 잘 놀아주지 않거나 괴롭힘, 왕따(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의 어려움은 가족 돌봄과 학업을 병행으로 체력적인 소모와 피곤함(16.0%)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 다음으로 비만(12.0%), 수술비 등의 병원비 마련의 어려움으로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여 악화된 건강(8.0%), 보호자의 많은 나이로 건강악화 및 질병 발생(8.0%), 즉석식품이나 편의점, 배달 음식으로 끼니 해결(8.0%), 또래에 비해 작은 체구(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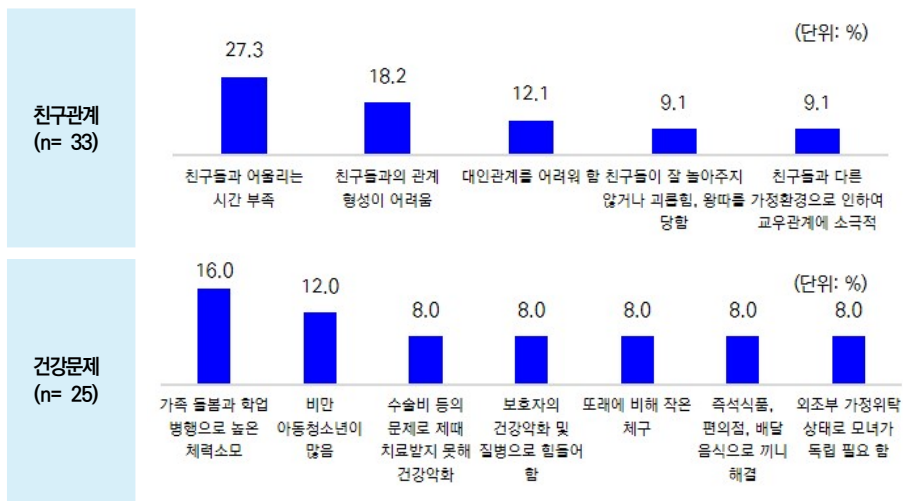


그림 IV-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기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돌봄으로 인해 외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함, 불안정한 교우관계, 가정에서 음식 등 식사 부실,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부담과 스트레스 과중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기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문항	사례수
1	돌봄으로 인해 외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함	5
2	불안정한 교우관계	4
3	가정에서 음식 등 식사 부실	3
4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부담과 스트레스 과중	3
5	부의 부재	3
6	스마트폰 중독	2
7	없음	2
8	가사수행	1
9	가사, 일상, 경제, 학습 등 미숙한 부분이 있음	1
10	엄마가 할 일을 아동이 하는 경우	1
11	보호자의 역할부재로 물리적 환경이 비위생적	1
12	아동 독립적인 공간 사용이 불가능	1
13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대체해서 영양의 불균형	1

구분	문항	사례수
14	거동이 어려운 조모를 집에 두고 군대에 가야함	1
15	경제적, 신체적, 상황적 어려움으로 가족여행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	1
16	아버지와 친척이 없어서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다	1
17	아버지의 알코올 문제	1
18	부녀가정의 경우 자녀의 초경에 대한 어려움	1
19	보호자의 공백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1
20	돌봄대상이 있어 진로고민에 집중 할 수 없다	1
21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체계 또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1
22	멘토 등 어른들과의 대화	1
23	센터 접근성이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살피고 상담하는데 어려움	1
24	정부보조금이 의료비에 집중되어 생활유지가 어렵다	1
25	주변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의 부재	1
26	교통비가 없을 때가 많다	1
27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1
28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의식 없음	1
29	미래에 대한 두려움	1
30	주변의 시선, 문제해결 능력 결여	1
31	친구와 비교하는 습관	1
32	부모와의 갈등	1
33	늘 따라다녀야 하는 어려움	1
34	법률적인 문제	1
35	서류 작성이 필요할 때	1
36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장 하며 알아야 하는 기초 정보 습득에 어려움	1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평균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상자 실태 파악이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3.56점), 정신건강 지원(3.49점), 학업 및 진로 지원(3.48점), 경제적 지원(3.41점), 가족 돌봄 관련 법·제도 개선(3.39점),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지원(3.38점), 돌봄 대상자 의료 연계 지원(3.38점), 취업 연계(3.34점), 문화여가활동 지원(3.27점), 주거환경 개선 지원(3.26점), 법률 지원(3.08점), 또래관계 지원(3.00점)의 순이었다.

표 IV-16.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서비스 중요도

(단위: %, 점)

문항 번호	문항	중요하다				부정 (①+②)	긍정 (③+④)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그렇다 ③	매우 그렇다 ④			
Q2-1	대상자 실태 파악	-	-	40.6	59.4	100.0	100.0	3.59
Q2-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	3.1	37.5	59.4	3.1	96.9	3.56
Q2-5	정신건강 지원	-	3.1	44.8	52.1	3.1	96.9	3.49
Q2-6	학업과 진로 지원	-	4.2	43.8	52.1	4.2	95.8	3.48
Q2-12	가족 돌봄 관련 법·제도 개선	-	5.2	51.0	43.8	5.2	94.8	3.39
Q2-3	경제적(생활비 보조) 지원	-	7.3	44.8	47.9	7.3	92.7	3.41
Q2-8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 지원	-	10.4	41.7	47.9	10.4	89.6	3.38
Q2-13	돌봄 대상자 의료 연계 지원	2.1	8.3	39.6	50.0	10.4	89.6	3.38
Q2-7	취업 연계	1.0	6.3	50.0	42.7	7.3	92.7	3.34
Q2-11	문화·여가 활동 지원	3.1	5.2	53.1	38.5	8.3	91.7	3.27
Q2-4	주거환경 개선지원	1.0	8.3	54.2	36.5	9.4	90.6	3.26
Q2-9	법률 지원	2.1	17.7	50.0	30.2	19.8	80.2	3.08
Q2-10	도래관계 지원	4.2	18.8	50.0	27.1	22.9	77.1	3.00
Q2-13	기타(n=16)	25.0	6.3	43.8	25.0	31.3	68.8	2.69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실태 파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정신건강 지원 등 다른 대부분의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의 경우에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부부처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책 및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법제화가 각각 1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 지원(11.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10.4%), 의료 지원 확대(10.4%), 교육비 지원(9.4%), 지원 예산 확대(6.3%), 정신건강 지원(6.3%), 주거환경 개선(5.2%), 여성가족부 정책 서비스 지원(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책 및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11.5%), 각 지자체 정책 서비스 지원(9.4%), 정신건강 지원(9.4%), 교육비 지원(6.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연계(5.2%), 여가문화 활동 지원(5.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5.2%),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발굴 지원(4.2%), 주거환경 개선(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단위: %)

중앙정부 정책 및 서비스(n=96)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서비스(n=96)	
경제적 지원	16.7	경제적 지원	12.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법제화	16.7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11.5
보건복지부 정책 서비스 지원	11.5	각 지자체 정책 서비스 지원	9.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10.4	정신건강 지원	9.4
의료 지원 확대	10.4	교육비 지원	6.3
교육비 지원	9.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연계	5.2
지원 예산 확대	6.3	여가문화활동 지원	5.2
정신건강 지원	6.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	5.2
주거환경 개선	5.2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 발굴 지원	4.2
여성가족부 정책 서비스 지원	5.2	주거환경 개선	4.2

(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의 대상과 범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79.2%의 응답자들이 부모, 조부모, 동생,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이(고)모, 삼촌 등 친인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9.4%, 그리고 가족, 친인척 이외에 함께 생활(거주)하는 친구나 이웃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대부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의 대상 범위를 가족 구성원까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18.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대상 범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족 구성원(부모, 조부모, 동생,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을 포함 친인척	가족, 친인척 이외에 함께 생활(거주)하는 친구,이웃 등	기타
전체 응답자		96	79.2	9.4	10.4	1.0
기관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	11	81.8	18.2	0.0	0.0
	지역아동센터	44	75.0	4.5	18.2	2.3
	사회복지기관	41	82.9	12.2	4.9	0.0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수준으로 식사 챙기기, 산책, 병원 동행 정도 수행할 수 있다” 37.5%,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9.2%, “공동생활을 함께 공유하면서 의료적 처치가 아닌 집안이나 주거지 근교에서 일상생활 조력정도 범위에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14.6%,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말벗이나 간단한 심부름 정도 수행할 수 있다” 14.6%,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이나 친인척,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동거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일원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수준이나 아동·청소년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돌봄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IV-19.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수행 돌봄 범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학업이나 학교생활의 지장 받지 않을 수준 (말벗이나 간단한 심부름)	가족의 일원으로 집안일 분담수준 (식사 챙기기, 산책, 병원 동행 등)	집안이나 주거지 근교에서 일상생활 조력	가족이나 친인척, 일상생활 공유하는 동거인이 원하는 수준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돌봄	기타
전체 응답자		96	14.6	37.5	14.6	3.1	29.2	1.0
기관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	11	0.0	63.6	9.1	0.0	27.3	0.0
	지역아동센터	44	18.2	18.2	18.2	6.8	38.6	0.0
	사회복지기관	41	14.6	51.2	12.2	0.0	19.5	2.4

(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주체 가능 여부

가족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들이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주체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이 47.9%,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52.1%로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높았으나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서 현장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0.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 주체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응답자	96	47.9	52.1
기관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	11	9.1	90.9
지역아동센터	44	47.7	52.3
사회복지기관	41	58.5	41.5

아동·청소년이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 돌봄 가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뿐일 때 부득이하게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고학년 청소년의 경우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보다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양육자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21. 돌봄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문항	사례수
1	가족 구성원 중 돌봄 가능한 사람이 아동·청소년뿐일 때 부득이하게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
2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5
3	상황에 따라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4	고학년 청소년의 경우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5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보다는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3
6	양육자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7	교육수준과 인권 상승,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8	아동·청소년 인권에 피해가 없는 한 방향에 맞추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2

한편, 아동·청소년이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봄의 주체가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에게는 부담감·책임감이 너무 크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학업이나 학교생활, 신체적 및 정서적 성장 등 아동·청소년 시기에 해야 할 발달과업이 따로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존재이다”, “미성년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 “보조의 역할은 가능하나 돌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22. 돌봄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문항	사례수
1	주체가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19
2	아동·청소년에게는 부담감/책임감이 너무 크다	7
3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7
4	아동·청소년 시기에 해야 할 발달과업이 따로 있다(학업이나 학교 생활, 신체적 및 정서적 성장 등)	7
5	정부 및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5
6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존재이다	4
7	미성년자로서 기본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	3
8	보조의 역할은 가능하나 돌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3
9	가정에 얽매어 자신의 진로나 꿈에 집중할 수 없다	2
10	가족 돌봄의 조력자이지 주체는 아니다	1
11	아동·청소년의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	1

(6)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발굴 방법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스스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등 사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례 발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사례 발굴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행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행정 체계를 통한 발굴이 31.3%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기관(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발굴(24.0%), 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교육청과 학교 밖 지원체계를 통한 발굴(22.9%), 지역사회의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보호대상 아동 유관기관 종사자를 통한 발굴(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발굴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행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 행정 체계	학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교육청과 학교밖 지원체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가정위탁, 지역아동 센터 등)	지역사회 드림스타트, 아동보호 전담요원 등	기타	
전체 응답자	96	31.3	22.9	24.0	19.8	2.1	
기관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	11	36.4	27.3	0.0	36.4	0.0
	지역아동센터	44	18.2	15.9	45.5	18.2	2.3
	사회복지기관	41	43.9	29.3	7.3	17.1	2.4

(7)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보호서비스 필요성과 보호서비스 유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원가정 분리 후 위탁가정, 시설 입소 등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은 58.0%, 부정적인 응답은 42.0%로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서비스 제공 필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응답자	50	58.0	42.0
기관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	10	80.0
	지역아동센터	23	65.2
	사회복지기관	17	35.3

또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서비스 유형에 대해서는 위탁가정이 41.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그룹홈(20.7%), 양육시설(17.2%), 입양(3.4%) 등의 순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서비스 유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위탁가정	그룹홈	양육시설	입양	기타
전체 응답자	29	41.4	20.7	17.2	3.4	17.2
기관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	8	50.0	0.0	0.0	12.5
	지역아동센터	15	26.7	26.7	33.3	0.0
	사회복지기관	6	66.7	33.3	0.0	0.0

(8) 정부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기존 돌봄 관련 정책과 서비스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로 서비스 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포괄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자체별로 조례 등을 수립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관련 정책과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한다”(29.2%), “중앙정부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독 법률, 정책, 서비스를 수립해야 한다”(14.6%)의 순으로, 기존 법률 개정과 정책 서비스 확대를 통한 포괄적 돌봄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정부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방안 추진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독 법률·정책·서비스 수립	지자체별 정책과 서비스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연계	포괄적 돌봄 체계 구축(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관련 법률 개정 및 돌봄 관련 정책과 서비스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
전체 응답자	96	14.6	29.2	56.3
기관유형	가정위탁지원센터	11	9.1	81.8
	지역아동센터	44	13.6	56.8
	사회복지기관	41	17.1	48.8

4)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평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업수행 문제가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4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친구 관계 맺기(3.38점), 자기관리 문제(3.32점)와 진로 및 취업 문제(3.32점), 심리정서문제(3.24점), 폭력 등의 피해 노출문제(3.19점), 경제적 문제(2.96점), 신체 건강 문제(2.84점), 여가문화 향유의 부족(2.82점), 가족이나 가족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음(2.7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은 무엇보다 학업수행과 자기관리 및 진로·취업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 점)

문항 번호	문항	겪고 있는 어려움(n=131)				부정 (①+②)	긍정 (③+④)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어렵지 않다 ②	어렵다 ③	매우 어렵다 ④			
Q1-7	학업수행 문제	-	8.4	35.9	55.7	8.4	91.6	3.47
Q1-4	친구 관계 맺기의 어려움	-	6.9	48.1	45.0	6.9	93.1	3.38
Q1-1	자기관리 문제	-	5.3	57.3	37.4	5.3	94.7	3.32
Q1-9	진로 및 취업 문제	0.8	13.0	38.9	47.3	13.7	86.3	3.32
Q1-2	심리정서 문제	-	11.5	52.7	35.9	11.5	88.5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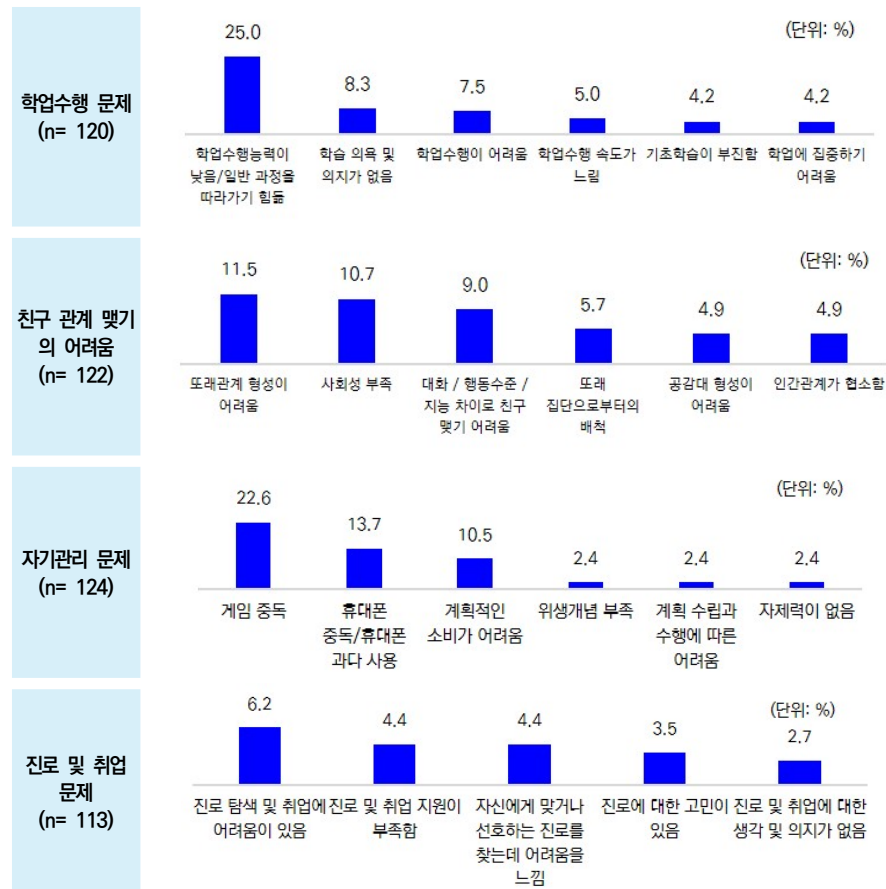
문항 번호	문항	겪고 있는 어려움(n=131)				부정 (①+②)	긍정 (③+④)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①	어렵지 않다 ②	어렵다 ③	매우 어렵다 ④			
Q1-6	폭력 등의 피해 노출 문제	0.8	11.5	55.0	32.8	12.2	87.8	3.19
Q1-10	경제적 문제	3.1	22.9	48.9	25.2	26.0	74.0	2.96
Q1-3	신체 건강 문제	1.5	28.2	54.2	16.0	29.8	70.2	2.84
Q1-5	여가·문화 향유의 부족	1.5	32.8	47.3	18.3	34.4	65.6	2.82
Q1-8	가족이나 가족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음	3.1	30.5	51.9	14.5	33.6	66.4	2.77

경제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먼저 학업수행의 문제는 학업수행 능력이 낮은 것이 25.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습 의욕 및 학업 의지 부재(8.3%), 학업수행의 어려움(7.5%), 학업수행 속도가 느림(5.0%), 기초학습 부진(4.2%), 학업 집중의 어려움(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 맺기의 어려움은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1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성 부족(10.7%), 대화·행동 수준·지능차이로 친구 맺기 어려움(9.0%),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5.7%),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4.9%), 인간관계의 협소함(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관리 문제의 어려움은 게임 중독이 2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휴대폰 중독 및 과다사용(13.7%), 계획적인 소비의 어려움(10.5%), 위생개념 부족(2.4%), 계획 수립과 수행에 따른 어려움(2.4%), 자제력 부족(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취업 문제는 진로 탐색 및 취업의 어려움이 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진로 및 취업 지원 부족(4.4%), 자신에게 맞거나 선호하는 진로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4.4%), 진로에 대한 고민(3.5%), 진로 및 취업 의지 부족(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 문제는 우울이 2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폭력성(5.2%), 감정 조절 능력의 어려움(3.4%), 낮은 자존감(3.4%), 심리적인 위축(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등의 피해 노출 문제는 왕따, 따돌림,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배척이 2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학교폭력 피해(5.2%), 성희롱(4.3%),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3.5%),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9.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움(7.2%), 계획적인 소비가 어려움(4.1%), 경제적으로 원 가족에게 의존함(4.1%), 기본적 경제 개념이 없음(3.1%),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임(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 문제는 비만, 과체중(12.0%)과 편식(12.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과식이나 폭식(9.8%), 과도한 인스턴트 섭취(3.3%), 식습관 조절능력 부족(3.3%), 운동 부족(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문화 향유 부족의 어려움은 휴대폰 중독 및 과다사용이 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여가문화 향유 부족(4.7%), 정보 부족(3.5%), 경제적인 어려움(3.5%), 여가문화 관련 이해도 부족(3.5%), 여가문화 향유 어려움(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가족처럼 도와줄 사람이 부재한 문제는 가족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가족의 무관심함(4.6%), 가족의 경계선 지능 수용의 어려움(4.6%), 가족의 인식 및 이해도 낮음(4.6%), 가족 부재(3.4%), 부모의 맞벌이로 시간 부족(3.4%), 부모도 경계선 지능 소유(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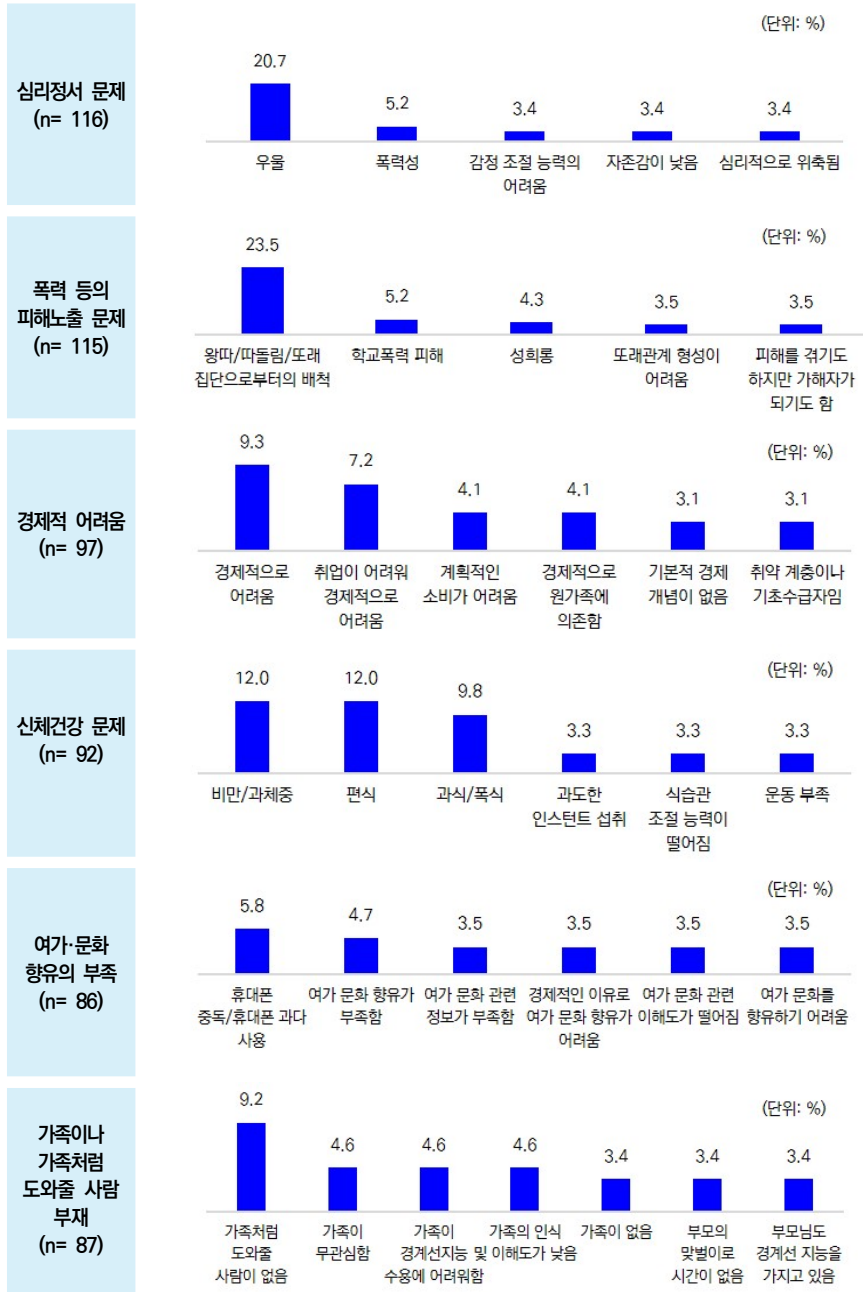


그림 IV-6.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기타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 부족, 사회성 부족, 상황 대처를 못해서 분란 발생,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클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 필요, 아동 청소년 귀가 후 돌봄 및 부모 부재로 인한 취약 환경 노출 등으로 나타났다.

표 IV-28. 기타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문항	사례수
-	전체	52
1	다른 사람과의 소통 부족	3
2	사회성 부족	3
3	상황 대처를 못해서 분란 발생	2
4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클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 필요	2
5	아동 청소년 귀가 후 돌봄 및 부모 부재로 인한 취약환경노출	2
6	개별 지도가 가능한 선생님 보내주세요	2
7	따돌림	2
8	친구와의 다툼을 해결하지 못함	2
9	ADHD 관련성	1
10	갑자기 말을 안 함	1
11	목표가 없이 단순호기심이나 즐거움 탐닉으로 도적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1
12	무기력함으로 반복된 실패	1
13	고학년 학생의 경우 게임에 몰두해 늦잠으로 학교에 지각	1
14	반사회적 태도 청소년 시기에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흔함	1
15	지적능력 외 예체능에도 영향미침	1
16	충동억제	1
17	개인 생활습관 지도가 어려움	1
18	교육의 사각지대 특수학교에 해당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어려움	1
19	학업수행의 어려움	1
20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	1
21	단어가 빨리 기억나지 않고 계산이 빨리 되지 않는 어려움	1
22	기초학습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계선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교재개발 필요	1
23	정확하게 아이의 상태를 진단하여 개별화된 맞춤교육을 받을 수 없음	1
24	학습능력부족	1

구분	문항	사례수
25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발생하는 학급내 문제	1
26	성욕해소	1
27	올바른 성인지 및 이성친구 연애폰칭 필요	1
28	가족관계의 어려움	1
29	생계형 보호자만 있는 경우 아동 청소년의 건강 상태 및 위생 문제가 심각함	1
30	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발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1
31	주변 어른이 경계선임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첫 진단이 어려움	1
32	경계선 지능 자녀를 이해하지 못해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	1
33	경계선 지능아동 보호자의 이해도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극적 개입이 어려움	1
34	지적장애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의 전문인력, 예산 지원이 필요	1

(2)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의 필요도와 수행실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 필요성과 정책 수행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의 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 정책의 필요도는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아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관련 법·제도 개선(G), 정책 접근성 제고(E), 예산 제고(D) 등은 정책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으나, 정책 수행 실태는 다른 정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표 IV-29. 경계선 지능 정책의 필요도 및 수행실태 기술통계

정책·서비스	필요도		수행실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태 파악	3.49	0.52	2.68	0.67
지원 기관의 양적 확대	3.45	0.60	2.56	0.71
지원 전달 체계의 확립	3.42	0.54	2.58	0.73
예산 제고	3.48	0.53	2.55	0.75
정책 접근성 제고	3.49	0.61	2.50	0.73
기관 종사자 역량	3.47	0.60	2.79	0.66
관련 법·제도 개선	3.50	0.62	2.39	0.76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3.33	0.59	2.55	0.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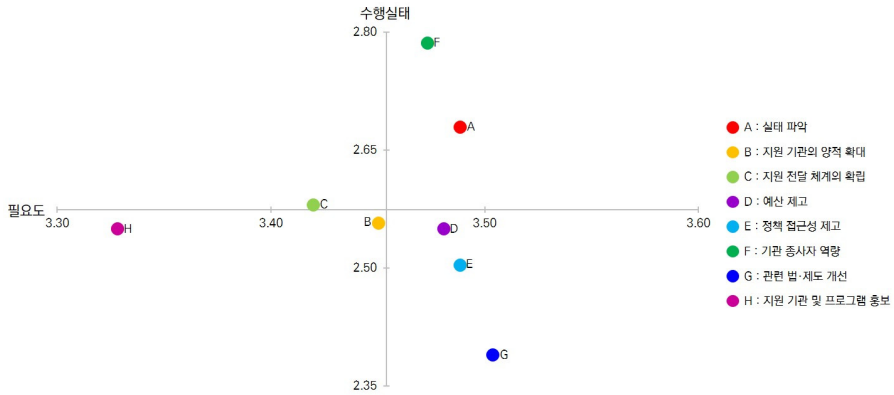


그림 IV-7. 경계선 지능 정책의 필요도 및 수행실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성과 지원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주거 지원 이외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는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지원 정도는 기타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서비스가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점미만으로 낮아, 대부분의 프로그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O), 자기 관리 프로그램(H),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G)는 상대적으로 중요도에 비해서 지원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30.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 및 지원정도 기술통계

정책·서비스	중요도		지원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지원	3.15	0.69	2.61	0.69
주거 지원	2.77	0.74	2.40	0.83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지원	3.25	0.79	2.72	0.76
학업 지원	3.40	0.63	2.82	0.73
상담 지원	3.43	0.61	2.89	0.76
법률 지원	3.02	0.77	2.49	0.80

정책·서비스	중요도		지원정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3.27	0.78	2.65	0.81
자기 관리 프로그램(신변 관리, 소비 계획 등)	3.34	0.70	2.67	0.78
가족 참여 프로그램	3.08	0.74	2.61	0.78
심리 정서 프로그램	3.44	0.68	2.85	0.74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3.22	0.73	2.60	0.74
신체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3.14	0.69	2.66	0.76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 (동료 모임 등)	3.21	0.70	2.66	0.82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	3.18	0.70	2.72	0.76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3.34	0.75	2.62	0.85
기타	3.67	0.58	3.00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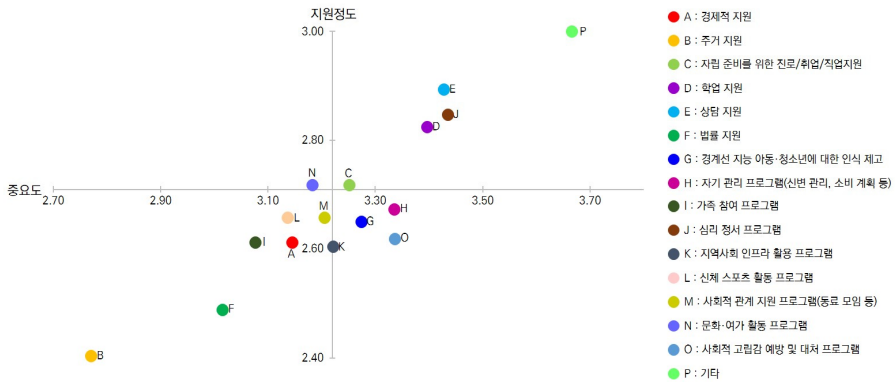


그림 IV-8. 경계선 지능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 및 지원정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

(4) 학교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요구 및 실태

학교 내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와 지원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는 평균 4점 만점에 평균 3.31점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지원 실태는 전체가 평균 2.91점 이하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 및 사회 전환에 필요한 교육(E)과 신변관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 적응 교육(D)에 대한 지원이 가장 낮았고, 사회성 교육(B), 심리 정서적 지원(C) 등은 지원요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학교 내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와 지원실태 기술통계

정책·서비스	지원요구		지원실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교육	3.36	.60	2.91	.64
사회성 교육(자기표현, 대화하기 등)	3.64	.51	2.63	.74
불안, 고립,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지원	3.53	.61	2.63	.80
신변관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 적응 교육	3.41	.65	2.50	.77
진로 및 사회 전환에 필요한 교육	3.31	.61	2.43	.75
공동체 활동 참여 지원	3.37	.60	2.64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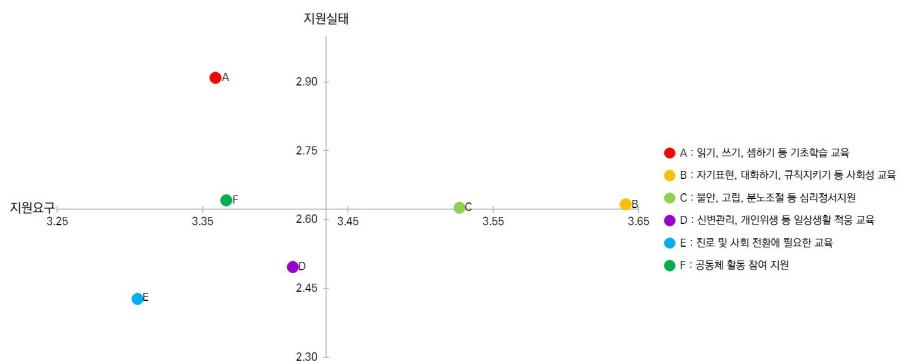


그림 IV-9. 학교 내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요구와 지원실태에 대한 IPA 분석 결과

(5) 수정 또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수정이 필요한 정부부처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는 예산 지원(7.6%), 관련 법·제도 개선(5.3%),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지원(4.6%), 제대로 된 정책 확립 및 기관 설치(4.6%),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3.8%), 홍보 강화(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부부처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도 예산지원이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상담 지원(6.1%)과 지원 확대(6.1%),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5.3%),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지원(4.6%), 학업 지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부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상담, 자립 지원,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2.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정부부처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단위: %)

수정되어야 할 정부부처 정책/서비스(n=131)		추가되어야 할 정부부처 정책/서비스(n=131)	
예산 지원	7.6	예산 지원	7.6
관련 법·제도 개선	5.3	상담 지원	6.1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지원	4.6	지원 확대	6.1
제대로 된 정책 확립 및 기관 설치	4.6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5.3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3.8	진로·취업·직업지원	4.6
홍보 강화	3.8	학업 지원	4.6
경제적 지원	3.1	관련 검사 및 판단 서비스	3.8
상담 지원	3.1	장애인 자원과 통합	3.1
정확한 실태 파악	2.3	주거 지원	3.1
사회적 고립 예방·대처 프로그램	2.3	법률 지원	3.1

수정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는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지원(6.1%), 정확한 실태 파악(5.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4.6%), 예산 지원(4.6%), 홍보 강화(3.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는 상담 지원(11.5%),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7.6%), 지원 확대(6.9%), 예산 지원(5.3%), 기관종사자 인력 확충(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정부부처의 정책 및 서비스와 유사했는데,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인식 제고, 자립지원 등이 중요한 정책 및 서비스로 나타났다.

표 IV-33. 수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서비스

(단위: %)

수정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정책/서비스(n=131)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정책/서비스(n=131)	
진로·취업·직업지원	6.1	상담 지원	11.5
정확한 실태 파악	5.3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7.6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4.6	지원 확대	6.9
예산 지원	4.6	예산 지원	5.3

수정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정책/서비스 (n=131)		추가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정책/서비스(n=131)	
홍보 강화	3.8	기관종사자 인력 확충	4.6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확대	3.1	홍보 강화	3.8
사회성 향상	2.3	학업 지원	3.8
상담 지원	2.3	진로·취업·직업지원	3.1
학업 지원	2.3	사회적 고립 예방·대처 프로그램	3.1
제대로 된 정책 확립 및 기관	2.3	가정 지원 서비스	2.3
지원기관의 양적 확대	2.3	가족 상담 지원	2.3

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징후 및 은둔 생활의 주요 계기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의 사전 징후

등교 거부를 하고 은둔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사전에 보이는 가장 큰 징후는 친구가 거의 없다는 것(88.8%)이고, 그 다음으로 무기력하며 만사를 귀찮아함(82.0%), 지각·결석을 많이 함(80.1%), 자기 의사표현이 서투름(68.9%), 수업시간에 잠(57.1%), 학교폭력 피해를 봄(5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교거부를 하고 은둔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친구가 없는 것과 무기력, 지각이나 결석 등이 은둔 성향의 주요 징후이며, 이 밖에도 의사 표현의 서투름 등의 다양한 징후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IV-34. 학교생활에서의 은둔생활 사전징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폭력 피해를 봄	수업시간에 잠	친구가 거의 없음	지각, 결석을 많이 함	자기 의사표현이 서투름	무기력하며 만사를 귀찮아함	기타
전체		161	55.9	57.1	88.8	80.1	68.9	82.0	0.6
기관 유형	학교	28	50.0	50.0	78.6	71.4	50.0	64.3	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59.0	53.8	89.7	82.1	61.5	92.3	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52.6	52.6	86.8	76.3	78.9	84.2	0.0
	정신건강복지센터	42	61.9	71.4	97.6	90.5	83.3	88.1	0.0
	기타	14	50.0	50.0	85.7	71.4	57.1	64.3	0.0

②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은둔생활의 주요 계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은둔 생활을 하는 가장 주요한 계기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것 등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서(86.3%)이고, 그 다음으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학교폭력 경험(84.5%), 학교·사회생활이 어렵고 무의미해서(72.0%), 성적 스트레스, 입시·진학 실패 등 학업 문제 때문에(52.2%), 과잉통제, 과잉간섭 등 부모 양육 태도로 인해(4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따돌림, 학교폭력 경험 등이 가장 큰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5. 은둔생활 주요 계기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인관 관계 맺는 것이 어려 워서	학업 문제 때문에	친구들 로부터 따돌 림·학 교폭력 경험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 양육 태도로 인해	학교· 사회 생활이 어렵고 무의미 해서	신체적 질병이 나 지병 때문에	인터넷 게임 등 재미있 는 일이 있어서	기타
전체	161	86.3	52.2	84.5	70.8	49.7	72.0	32.3	38.5	1.2
기관 유형	학교	28	57.1	32.1	67.9	67.9	46.4	57.1	17.9	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100.0	51.3	87.2	74.4	48.7	76.9	33.3	4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84.2	57.9	84.2	60.5	42.1	65.8	28.9	36.8
	정신건강복지센터	42	97.6	59.5	95.2	73.8	57.1	83.3	40.5	50.0
	기타	14	78.6	57.1	78.6	85.7	57.1	71.4	42.9	42.9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 및 주요활동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평균 비교를 살펴보면, 평균 4점 만점에 “타인의 시선을 불편해하고 회피한다”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가 각각 평균 3.4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매사에 흥미가 없어 보인다”(3.37점),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한다”(3.17점), “예민하고 자기혐오가 강하다”(3.01점),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2.8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며, 일상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

(단위: %, 점)

문항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 다 ①	가끔 그렇 다 ②	자주 그렇 다 ③	항상 그렇 다 ④	부정 (①+ ②)	긍정 (③+ ④)	잘 모른 다	평균
Q7-4	타인의 시선을 불편해하고 회피한다	-	6.2	42.9	47.8	6.2	90.7	3.1	3.43
Q7-9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	0.6	7.5	38.5	50.3	8.1	88.8	3.1	3.43
Q7-2	매사에 흥미가 없어 보인다	0.6	8.7	41.6	45.3	9.3	87.0	3.7	3.37
Q7-7	PC나 휴대전화 없으면 불안 해 한다	1.2	16.1	43.5	34.8	17.4	78.3	4.3	3.17
Q7-10	예민하고 자기혐오가 강하다	1.9	19.9	50.3	24.2	21.7	74.5	3.7	3.01
Q7-1	친구들에게 왕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0.6	24.8	59.6	13.7	25.5	73.3	1.2	2.87
Q7-3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적이 있다	2.5	50.9	37.3	7.5	53.4	44.7	1.9	2.51
Q7-6	큰 소리로 격분하는 경우가 있다	6.2	47.2	33.5	11.2	53.4	44.7	1.9	2.51
Q7-5	갈핏하면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두른다	3.7	52.8	29.2	9.9	56.5	39.1	4.3	2.47
Q7-8	사소한 것을 반복해서 확인한다	11.2	41.0	25.5	11.8	52.2	37.3	10.6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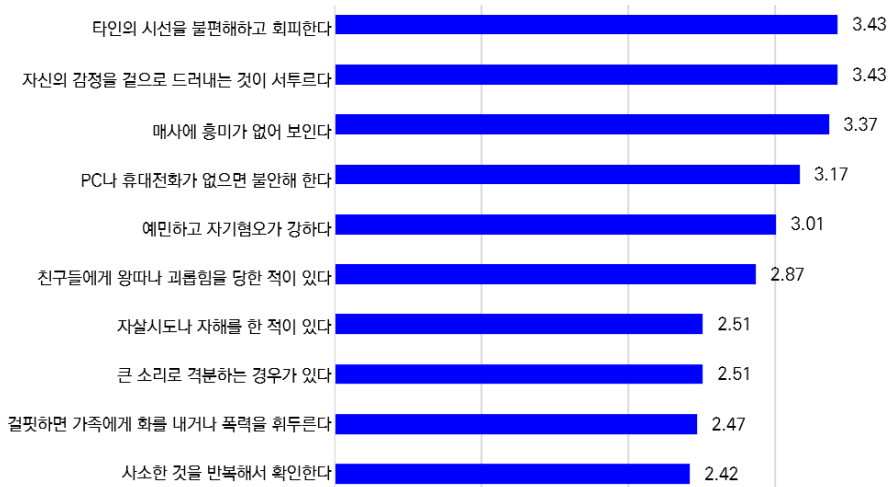


그림 IV-1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복수응답)(n=161)

②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주로 하는 활동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활동은 온라인 게임(83.2%)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77.0%), 수면(68.9%), 음악 듣기(24.8%), TV 시청(23.6%), 책 읽기(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주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7. 은둔형 외톨이 주요 활동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인터넷 사용	TV 시청	음악 듣기	책 읽기	온라인 게임	수면	실내 운동	기타	아무 것도 하지 않음
전체		161	77.0	23.6	24.8	11.2	83.2	68.9	3.7	0.6	6.2
기관 유형	학교	28	64.3	21.4	35.7	10.7	64.3	50.0	7.1	0.0	7.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76.9	25.6	25.6	20.5	89.7	79.5	5.1	2.6	5.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78.9	23.7	21.1	5.3	86.8	71.1	0.0	0.0	5.3
	정신건강복지센터	42	78.6	21.4	14.3	4.8	83.3	66.7	2.4	0.0	7.1
	기타	14	92.9	28.6	42.9	21.4	92.9	78.6	7.1	0.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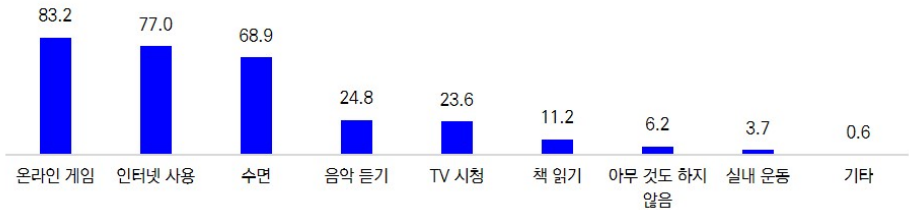


그림 IV-11. 은둔형 외톨이 주요 활동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및 개입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경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경로는 부모, 가족 등 주변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5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위 클래스 상담사, 교육복지사의 발견·의뢰(15.5%), 교사의 발견·의뢰(13.0%), 지자체에서의 의뢰(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부모, 가족 등 주변인이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에서는 교사가 발견하여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경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교사 발견·의뢰	위클래스 상담사·교육복지사 발견·의뢰	부모·가족 등 주변인 의뢰	지자체 의뢰	기타
전체		161	13.0	15.5	57.1	10.6	3.7
기관 유형	학교	28	42.9	14.3	32.1	10.7	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7.7	5.1	76.9	5.1	5.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5.3	23.7	57.9	10.5	2.6
	정신건강복지센터	42	9.5	19.0	54.8	16.7	0.0
	기타	14	0.0	14.3	57.1	7.1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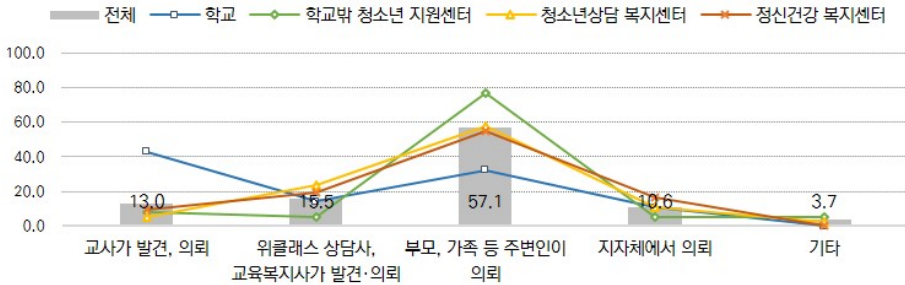


그림 IV-1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 경로

②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는 “평소에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29.2%)이고, 그 다음으로 “은둔의 심각성을 모르고 곧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서”(26.7%),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아서”(18.0%), “은둔형 외톨이를 알아채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역량이 부족해서”(14.9%), “업무 과중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다룰 여력이 없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는 “평소에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가 가장 어려운 이유였으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업무 과중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다룰 여력이 없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은둔의 심각성을 모르고 곧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아서”가 가장 어려운 이유로 나타났다.

표 IV-39. 조기발견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평소에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서	은둔의 심각성을 몰라서	역량이 부족해서	업무 과중으로	보호자가 협조 하지 않아서
전체		161	29.2	26.7	14.9	11.2	18.0
기관 유형	학교	28	42.9	14.3	10.7	10.7	2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25.6	23.1	12.8	33.3	5.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34.2	36.8	15.8	0.0	13.2
	정신건강복지센터	42	19.0	26.2	21.4	4.8	28.6
	기타	14	28.6	35.7	7.1	0.0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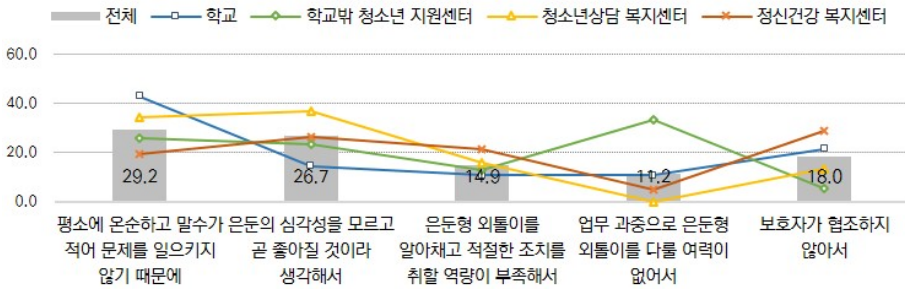


그림 IV-13. 조기발견이 어려운 이유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조기 발견이 가장 용이한 곳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가장 용이한 곳은 학교(41.6%)와 가정(41.6%)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6.8%), 청소년상담복지센터(3.7%), 정신건강복지센터(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보다는 가정을 발견이 가장 용이한 곳으로 응답하였다.

표 IV-4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가정	기타 (예시: 동사무소 등)
전체		161	41.6	3.7	6.8	3.1	41.6	3.1
기관 유형	학교	28	42.9	3.6	14.3	3.6	35.7	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25.6	2.6	7.7	7.7	53.8	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47.4	5.3	7.9	2.6	31.6	5.3
	정신건강복지센터	42	54.8	4.8	2.4	0.0	35.7	2.4
	기타	14	28.6	0.0	0.0	0.0	64.3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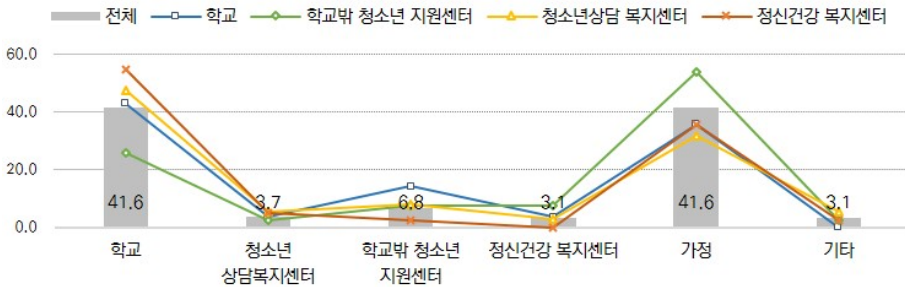


그림 IV-1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

④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각·결석이 잦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32.3%)가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고 돕고자 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28.6%), 교사 교육을 통해 담임교사 등의 관찰력 향상(14.3%), 또래상담·폭지 상담 등을 활용한 학급 내 투명 인간(존재감 없는 청소년)찾기(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를,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지각·결석이 잦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1.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정확한 진단도구를 통한 진단	지각·결석 이 잦은 아 이 관리	담임교사 등의 관찰력 향상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	학급 내 투명 인간 찾기	보건실 위클래스 이용학생 관리
전체		161	7.5	32.3	14.3	28.6	11.8	5.6
기관 유형	학교	28	3.6	21.4	14.3	35.7	14.3	10.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7.7	28.2	17.9	30.8	10.3	5.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13.2	42.1	7.9	18.4	13.2	5.3
	정신건강복지센터	42	4.8	40.5	11.9	26.2	11.9	4.8
	기타	14	7.1	14.3	28.6	42.9	7.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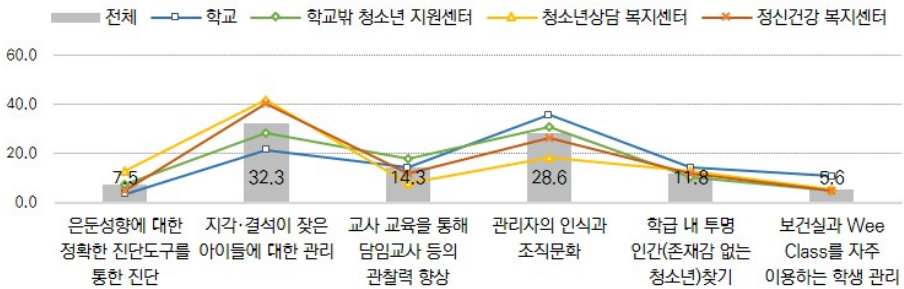


그림 IV-1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

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이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해도 쉽게 개입이 어려운 이유는 당사자의 거부(68.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13.7%), 진단치료비, 경제적 지원, 선호하는 활동 지원 등 보호자가 원하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10.6%),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움(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청소년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과 전문가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2.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당사자의 거부	부모 동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 부족	전문 인력의 부재	기타
전체		161	68.9	6.2	10.6	13.7	0.6
기관 유형	학교	28	50.0	17.9	14.3	14.3	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74.4	0.0	5.1	20.5	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76.3	0.0	13.2	10.5	0.0
	정신건강복지센터	42	73.8	11.9	9.5	4.8	0.0
	기타	14	57.1	0.0	14.3	28.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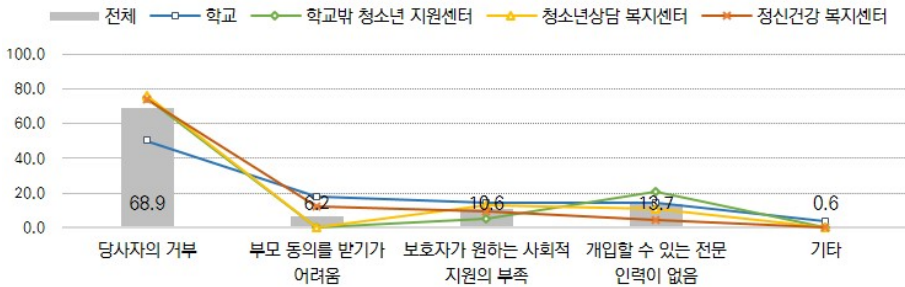


그림 IV-16.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이유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학교·기관의 지원 및 연계

① 장기적인 등교거부를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학교·기관의 지원

장기적인 등교거부를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학교·기관의 지원은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66.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51.6%), 외부기관과의 연계(47.2%), 가정방문 및 등교지원 서비스(37.3%), 학업 지속 지원(대안학교, 복교, 검정고시 등)(27.3%), 대인관계·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26.7%), 복지·생활 관련 안내 및 지원(생계급여, 수당 등)(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도 심리·마음건강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나, 그 다음으로 학교에서는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보다는 가정방문 및 등교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지원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업 지속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학교·기관에서의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외부기관 연계	가정방문 및 등교지원 비스	심리·마음 건강 상담	학업 지속 지원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	
전체		161	47.2	37.3	66.5	27.3	26.7	16.8	
기관 유형	학교	28	35.7	50.0	46.4	28.6	25.0	17.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33.3	20.5	64.1	38.5	17.9	20.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52.6	36.8	71.1	28.9	23.7	10.5	
	정신건강복지센터	42	59.5	47.6	73.8	16.7	35.7	11.9	
	기타	14	57.1	28.6	78.6	21.4	35.7	35.7	
구분		사례수	건강검진 치료	가족 교육 상담	공동체 교류 지원	문화·취미 지원	복지·생활 안내 지원	청소년 거부	기타
전체		161	11.8	51.6	9.3	11.2	21.7	8.7	1.2
기관 유형	학교	28	10.7	42.9	14.3	14.3	21.4	3.6	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15.4	25.6	12.8	12.8	28.2	15.4	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18.4	60.5	5.3	10.5	23.7	10.5	0.0
	정신건강복지센터	42	4.8	71.4	7.1	7.1	16.7	7.1	2.4
	기타	14	7.1	57.1	7.1	14.3	14.3	0.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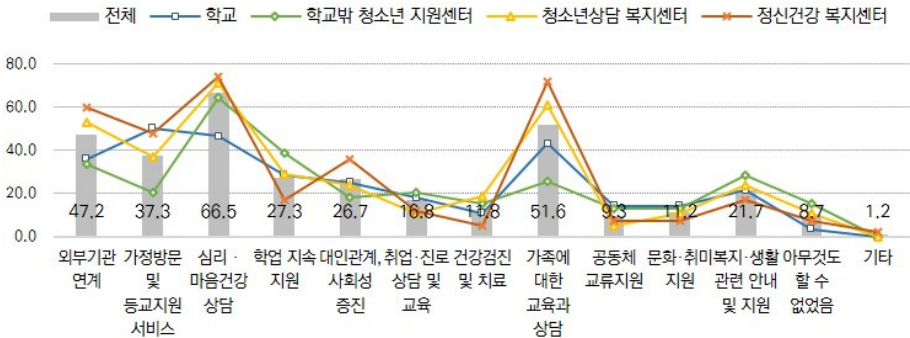


그림 IV-17. 학교·기관에서의 지원

② 장기적인 등교거부를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의 외부 연계기관
 장기적인 등교거부를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계 기관은 병원 및 의료
 기관(27.6%)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7%), 정신건강복지센터

(15.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4.5%), Wee센터(7.9%), 은둔형 외톨이 전문기관(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병원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가장 많았으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가장 많이 연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연계한 기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	Wee 센터	정신 건강 복지 센터	병원 및 의료 기관	은둔형 외톨이 전문 기관	기타
전체		76	23.7	14.5	7.9	15.8	27.6	5.3	5.3
기관 유형	학교	10	30.0	0.0	20.0	10.0	30.0	10.0	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	53.8	15.4	0.0	15.4	15.4	0.0	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	15.0	30.0	0.0	10.0	20.0	5.0	20.0
	정신건강복지센터	25	12.0	8.0	12.0	20.0	44.0	4.0	0.0
	기타	8	25.0	12.5	12.5	25.0	12.5	12.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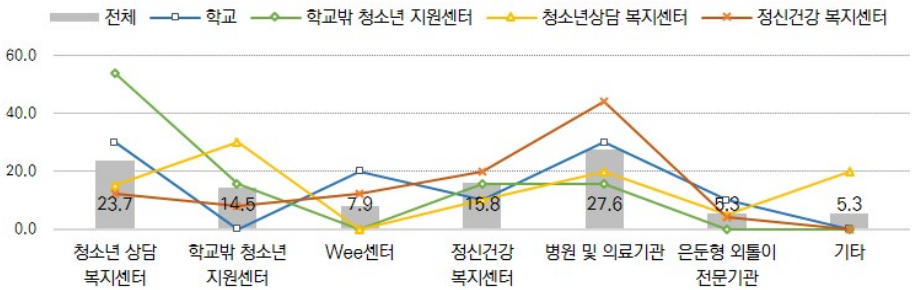


그림 IV-18. 연계한 기관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만날 때 주로 활용한 방법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만날 때 주로 활용한 방법은 담당자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집 방문(54.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기관 방문(26.7%),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10.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집이 아닌 카페, 공용 회의실

등 다른 장소에서의 만남(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만 담당자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집 방문보다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기관 방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만나는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기관 방문	담당자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집 방문	카페, 공용 회의실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	기타
전체		161	26.7	54.0	6.8	10.6	1.9
기관 유형	학교	28	17.9	39.3	21.4	21.4	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48.7	30.8	5.1	12.8	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18.4	71.1	2.6	2.6	5.3
	정신건강복지센터	42	14.3	81.0	0.0	4.8	0.0
	기타	14	42.9	21.4	14.3	21.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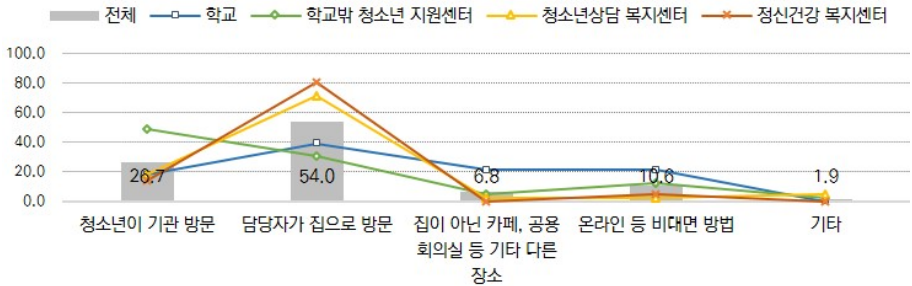


그림 IV-1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만나는 방법

- (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및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정도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96.3%(‘매우 심각하다’ 49.7%, ‘조금 심각하다’ 46.6%),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6%(‘심각하지 않다’ 0.6%, ‘전혀 심각하지 않다’ 0.0%)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도 심각하다는 응답이 85%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4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심각하다 ⑤	조금 심각하다 ④	보통이다 ③	심각하지 않다 ②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①	부정 (④+⑤)	보통 (③)	긍정 (①+②)
전체		161	49.7	46.6	3.1	0.6	-	96.3	3.1	0.6
기관 유형	학교	28	35.7	50.0	10.7	3.6	-	85.7	10.7	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46.2	51.3	2.6	0.0	-	97.4	2.6	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52.6	47.4	0.0	0.0	-	100.0	0.0	0.0
	정신건강복지센터	42	50.0	50.0	0.0	0.0	-	100.0	0.0	0.0
	기타	14	78.6	14.3	7.1	0.0	-	92.9	7.1	0.0

②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향후 전망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향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고, 줄어든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학교의 경우만 75.0%만 동의하였고, 다른 기관들은 90%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IV-47.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향후 전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늘어날 것이다	줄어든 것이다	잘 모르겠다
전체		161	90.1	1.9	8.1
기관 유형	학교	28	75.0	7.1	17.9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97.4	0.0	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94.7	0.0	5.3
	정신건강복지센터	42	90.5	2.4	7.1
	기타	14	85.7	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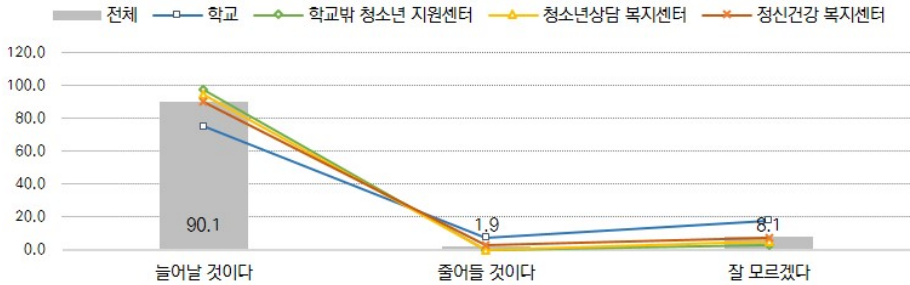


그림 IV-2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향후 전망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은둔이 시작되면 장기화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50.3%)이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은둔 징후를 보여도 마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41.0%), 대처방법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것임(6.8%),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문제로 개선될 것임(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기관이 일단 은둔이 시작되면 장기화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보았으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은둔 징후를 보여도 마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전망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둔 징후에 대처방법이 없음	은둔이 시작되면 장기화 됨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 시적인문제임	대처방법의 마련으로 개선될 것임
전체		161	41.0	50.3	1.9	6.8
기관 유형	학교	28	35.7	50.0	3.6	10.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48.7	48.7	2.6	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31.6	60.5	0.0	7.9
	정신건강복지센터	42	50.0	40.5	2.4	7.1
	기타	14	28.6	57.1	0.0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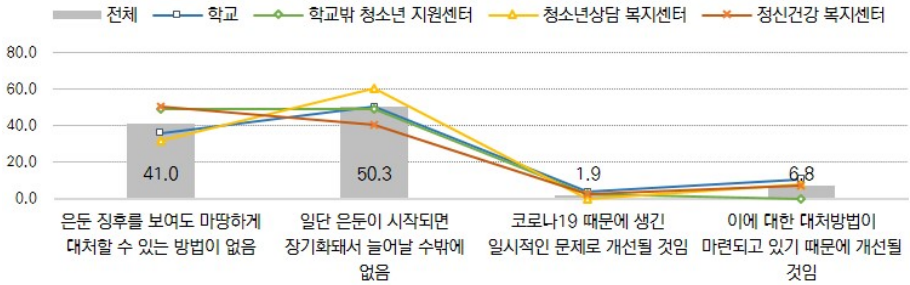


그림 IV-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전망 이유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6.3%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75.2%, ‘조금 필요하다’ 21.1%)고 응답하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2%(‘필요하지 않다’ 1.2%,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에 불과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표 IV-49.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필요하다 ⑤	조금 필요하다 ④	보통이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②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긍정 (④+⑤)	보통 (③)	부정 (①+②)
전체		161	75.2	21.1	2.5	1.2	-	96.3	2.5	1.2
기관 유형	학교	28	46.4	46.4	3.6	3.6	-	92.9	3.6	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87.2	10.3	0.0	2.6	-	97.4	0.0	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81.6	18.4	0.0	0.0	-	100.0	0.0	0.0
	정신건강복지센터	42	71.4	21.4	7.1	0.0	-	92.9	7.1	0.0
	기타	14	92.9	7.1	0.0	0.0	-	100.0	0.0	0.0

(6)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서비스

①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 효과가 높은 지원 대상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효과가 가장 높은 지원 대상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 등 가족(40.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26.1%),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16.8%), 심리상담사(1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 해결에 부모 등 가족이 가장 중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교에서는 가족과 함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표 IV-50. 은둔형 외톨이 문제 최우선 지원 대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 등 가족	학교교사	심리 상담사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기타
전체	161	26.1	40.4	5.0	11.2	16.8	0.6
기관 유형	학교	28	28.6	28.6	10.7	21.4	10.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33.3	48.7	0.0	2.6	15.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21.1	34.2	5.3	18.4	21.1
	정신건강복지센터	42	23.8	50.0	4.8	2.4	16.7
	기타	14	21.4	28.6	7.1	21.4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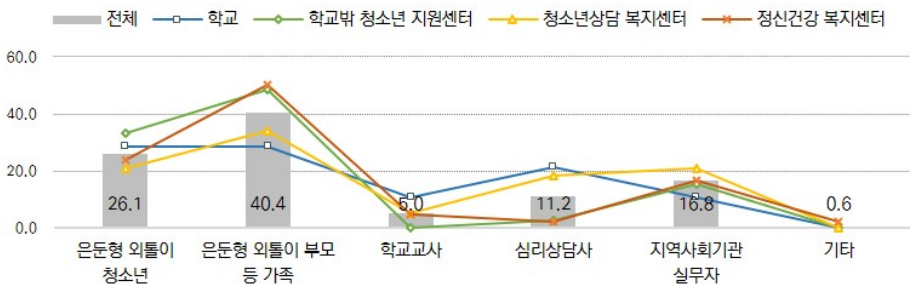


그림 IV-22. 은둔형 외톨이 문제 최우선 지원 대상

②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경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에게 가장 많이 제공했던 서비스는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50.9%)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로 인한 부모의 우울, 불안 등을 다루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21.7%), 자녀와 부부를 포함한 가족치료(7.5%),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대상 소그룹 멘토링(3.1%),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들의 자조모임(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학교의 경우에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보다는 자녀와 부부를 포함한 가족치료를 보다 많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은둔형 외톨이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은둔이 해·대처 방안교육	소그룹 멘토링	가족 치료	개인 또는 집단상담	유사 가족 자조모임	기타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전체	161	50.9	3.1	7.5	21.7	1.9	1.2	13.7
기관 유형	학교	28	25.0	10.7	28.6	10.7	7.1	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33.3	2.6	2.6	23.1	2.6	33.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71.1	0.0	0.0	23.7	0.0	5.3
	정신건강복지센터	42	71.4	0.0	4.8	19.0	0.0	4.8
	기타	14	35.7	7.1	7.1	42.9	0.0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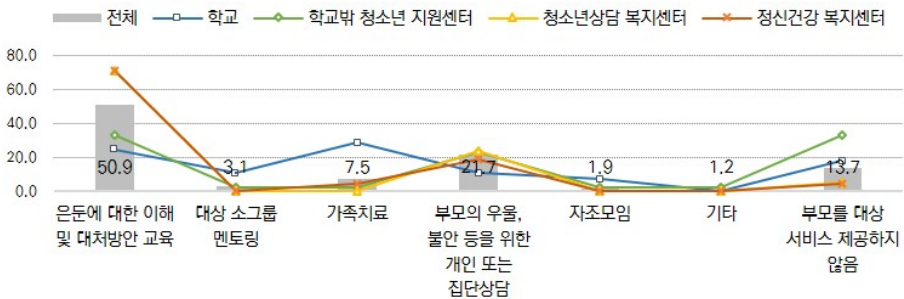


그림 IV-23. 은둔형 외톨이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심리·마음건강 상담(82.6%)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73.3%), 대인관계·사회성 증진(65.2%),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59.6%), 학업 지속 지원(46.6%), 문화·취미 지원(3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학교·기관의 지원이 심리·마음건강 상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중심으로 진행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5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심리· 마음 건강 상담	학업 지속 지원	대인 관계, 사회성 증진	취업 진로 상담 교육	공동체 교류 지원	가족 교육과 상담	건강 검진 및 치료	문화· 취미 지원	복지 생활 안내 지원	기타
전체	161	59.6	82.6	46.6	65.2	34.2	37.9	73.3	32.9	38.5	31.7	0.6
기관 유형	학교	28	35.7	57.1	39.3	46.4	14.3	25.0	10.7	35.7	25.0	0.0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56.4	92.3	43.6	74.4	33.3	41.0	74.4	41.0	43.6	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71.1	84.2	44.7	57.9	36.8	34.2	73.7	44.7	28.9	0.0
	정신건강복지센터	42	69.0	90.5	54.8	78.6	45.2	40.5	83.3	31.0	45.2	0.0
	기타	14	57.1	78.6	50.0	57.1	35.7	57.1	92.9	28.6	35.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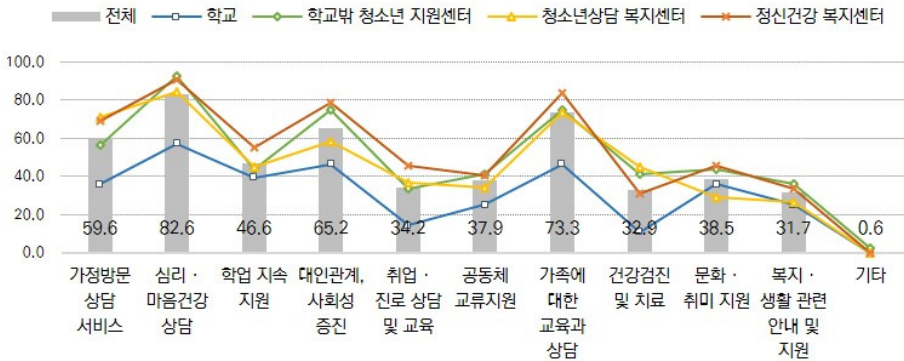


그림 IV-2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④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게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57.8%)이며, 그 다음으로 자녀로 인한 부모의 우울, 불안 등을 다루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18.6%), 자녀와 부부를 포함한 가족치료(17.4%),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대상 소그룹 멘토링(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인 부모(보호자)들이 무엇보다도 자녀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53. 은둔형 외톨이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 방안 교육	유사 문제 가족 대상 소그룹 멘토링	자녀와 부부 포함 가족치료	개인 또는 집단상담	유사 문제가 족들의 자조모임
전체		161	57.8	4.3	17.4	18.6	1.9
기관 유형	학교	28	35.7	10.7	25.0	25.0	3.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51.3	5.1	25.6	15.4	2.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68.4	0.0	18.4	13.2	0.0
	정신건강복지센터	42	73.8	0.0	7.1	19.0	0.0
	기타	14	42.9	14.3	7.1	28.6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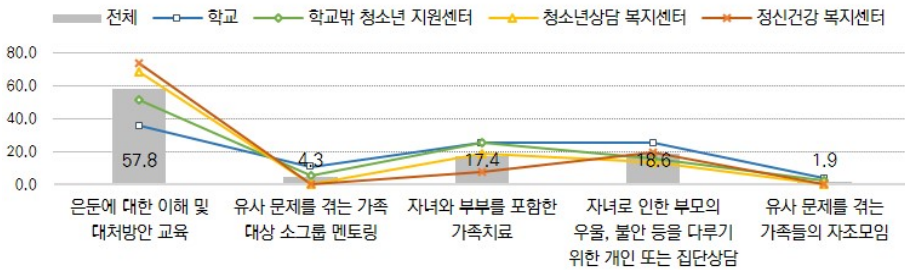


그림 IV-25. 은둔형 외톨이 부모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7)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학교·청소년 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54.0%)이고, 그 다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50.3%), 은둔형 외톨이(청소년) 전문 기관 설치(46.6%), 학교 교사, 청소년 기관 종사자 등 대상의 교육 실시(44.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고위험군 청소년 발견 시, 학교·청소년 기관 등의 개입 및 연계하도록 강제성 및 권한 부여(4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보았으나,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전문기관의 설치,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와 기관 종사자 대상의 교육 실시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IV-54.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한 지원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국민 인식 개선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개입·연계 강제성 및 권한 부여	전문 인력 배치·예산 배정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전문 기관 설치	전국 실태조사 국가 통계 관리
전체	161	28.0	50.3	43.5	54.0	44.1	46.6	25.5
기관 유형	학교	28	17.9	28.6	39.3	46.4	32.1	21.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9	23.1	48.7	38.5	53.8	38.5	20.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	26.3	55.3	44.7	55.3	42.1	36.8
	정신건강복지센터	42	38.1	61.9	47.6	52.4	61.9	40.5
	기타	14	35.7	50.0	50.0	71.4	35.7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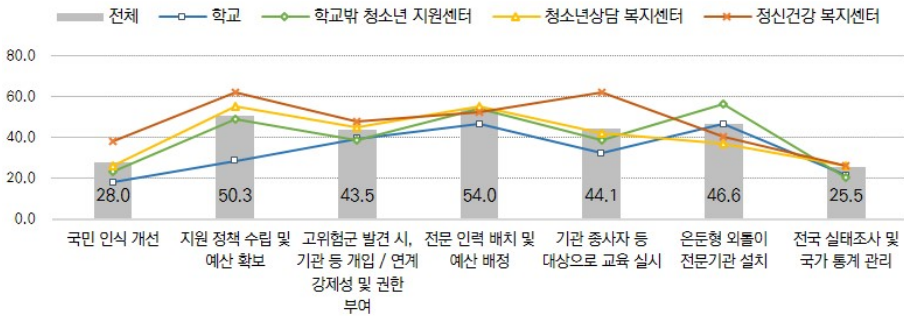


그림 IV-26. 조기발견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필요한 지원

(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무자의 역량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은둔 문제에 대한 이해도, 은둔 관리 역량, 지역 자원 역량으로 나누어서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실무자의 역량으로 은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점 만점에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이다” 3.97점, “은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무자의 이들에 대한 이해와 조력이 필요하다” 4.37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하는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4.26점으로 다른 역량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역자원 역량인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정의 위기 상황 시 도움이 될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할 수 있다” 3.62점, “은둔관리 역량인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다” 3.45점,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다” 3.44점 등의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실무자로서의 역량

(단위: %, 점)

문항 번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①	동의 하지 않는다 ②	보통 이다 ③	동의 한다 ④	매우 동의 한다 ⑤	부정 (①+②)	보통 MID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Q26-1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이다	-	5.6	19.9	46.6	28	5.6	19.9	74.5	3.97
Q26-2	은둔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자의 이들에 대한 이해와 조력이 필요하다	-	0.6	6.2	49.1	44.1	0.6	6.2	93.2	4.37
Q26-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하는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	3.7	4.3	54	37.9	3.7	4.3	91.9	4.26
Q26-3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다	0.6	5.6	47.8	41	5	6.2	47.8	46	3.44
Q26-4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다	-	6.8	48.4	37.9	6.8	6.8	48.4	44.7	3.45
Q26-6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코칭할 수 있다	-	9.3	55.9	28	6.8	9.3	55.9	34.8	3.32
Q26-9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	0.6	13.7	56.5	26.1	3.1	14.3	56.5	29.2	3.17

문항 번호	문항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①	동의 하지 않는다 ②	보통 이다 ③	동의 한다 ④	매우 동의 한다 ⑤	부정 (①+②)	보통 MID (③)	긍정 (④+⑤)	5점 평균
Q26-7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정 의 위기 상황 시 도움이 될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할 수 있다	-	6.2	34.8	49.7	9.3	6.2	34.8	59	3.62
Q26-8	나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	1.9	19.3	54.7	21.7	2.5	21.1	54.7	24.2	3.04
Q26-10	나는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고 개입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 관과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1.2	23	47.8	24.8	3.1	24.2	47.8	28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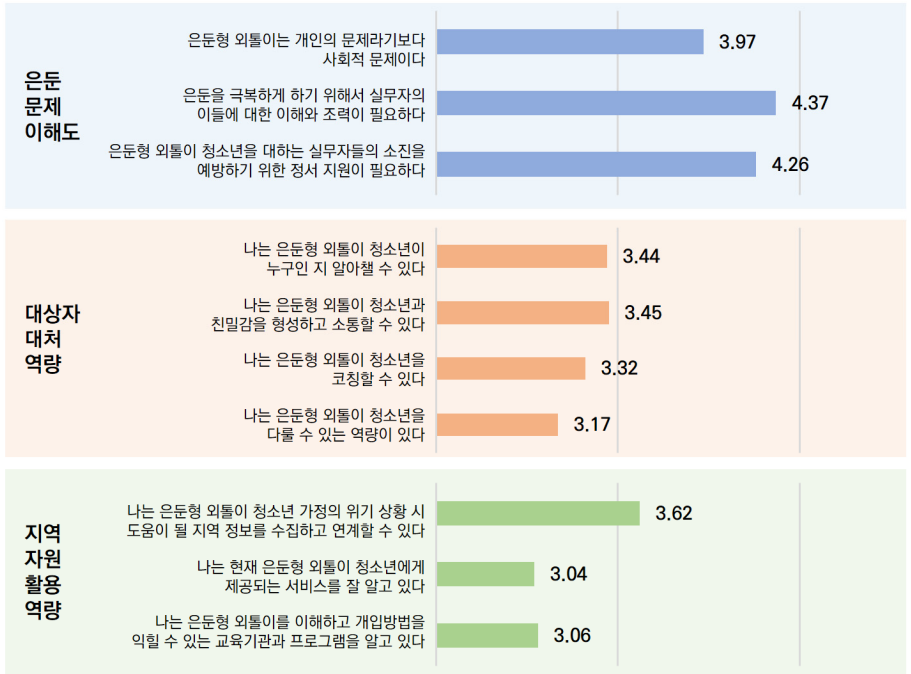


그림 IV-27. 실무자로서의 역량

6) 소결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 정책·서비스 요구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심리 정서적 문제(우울증, 정서 불안, ADHD 등), 학업 수행의 문제(기본기 부족, 경계선 지능, 주의력 부족 등), 행동문제(폭력성, 부정적인 언어사용 등), 자립준비의 어려움(자립의지 및 자립준비 부족 등) 등이었다. 또한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서비스는 심리·정서·행동치료 지원, 진로취업·직업 지원, 상담 지원 등이 중요도에 비해서 지원이 많지 않았고, 아동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추진,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유연화 등도 필요성에 비해서 정책 수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시설 예산 지원 확대, 자립 지원의 내실화, 상담지원 확대, 전문치료 시설 설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시설종사자의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으로 현재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보호자의 경제활동 부재, 가족 내 환자의 의료비 부담 등), 정서적 어려움(심리적인 케어나 의지할 성인의 부재, 가장으로서의 심리적 부담감, 가정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감 등), 학업문제의 어려움(가족 돌봄으로 학습 시간 부족, 학원비 부족, 기초학습능력 부족 등) 등이었다. 또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대상의 중요한 정부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는 대상자 실태 파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정신건강 지원, 학업 및 진로 지원, 경제적 지원, 가족 돌봄 관련 법·제도 개선, 심리치료 및 상담서비스 지원, 돌봄 대상자 의료 연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책·서비스 요구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경제적 지원, 정신건강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지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지원에 대한 법제화 또는 조례 제정 등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학업수행문제(학업수행 능력 저하, 학습 의욕 및 학업 의지 부재 등), 친구 관계 맺기의 어려움(또래관계 형성 부족, 사회성 부족, 대화·행동수준·지능차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 등), 자기관리 문제(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및 과다사용, 계획적인 소비의 어려움, 위생개념 부족 등)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관련한 법·제도 개선, 정책 접근성 제고, 예산 제고,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자기 관리 프로그램,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정책·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비해서 정책 지원이나 수행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어려움과 정책 실패를 반영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책·서비스 요구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정확한 실태 파악, 예산 지원,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진로·취업·직업 지원, 사회성 향상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처 프로그램 개발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재에 따른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실태 파악에서부터 정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및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며, 일상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PC나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은 평소에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 잘 드러나지 않고, 은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역량이 부족하고, 보호자의 협조가 부족한 것 등이 이유였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을 위해서는 지각·결석이 잦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고 돕고자 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 교사 교육을 통한 담임교사 등의 관찰력 향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은 학교·청소년 기관 등의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학교 교사, 청소년 기관 종사자 등 대상의 교육 실시 등이었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해도 쉽게 개입이 어려운데, 당사자의 거부,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 보호자가 원하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부모 등의 부족 등이 이유였으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이들 청소년에 대한 설득, 전문 인력의 충원, 부모의 협조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 우울, 불안 등을 다루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 등이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심리·마음건강 상담,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대인관계·사회성 증진 등으로 나타났다.

2.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 조사개요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네 가지 주제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실태와 요구 사항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와 부모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와 함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서 2023년 6월 23일에 승인(승인번호: 202303-HR-고유-001)을 획득하였다. 면접 기간은 8월 8일부터 21일 사이에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제별로 4명~5명의 면접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4장 2절에서는 FGI 진행 개요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였고, 면접내용 등 세부 결과는 5장부터 8장까지 네 가지 해당 취약계층 유형별 현황 분석 논의 흐름에 맞게 각 장별 본문에 근거자료로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표 IV-56. FGI 응답자 특성(시설 보호, 가족 돌봄, 경계선 지능 종사자)

구분 (면접일)	참석자	연령	성별	소속	직책	분야 경력	재직 기간	지역
A. 시설 보호 (8.16)	A-종사자 1	50세	남	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소장	15년	7년	인천
	A-종사자 2	48세	여	여자중장기쉼터	소장	20년	3년	경기
	A-종사자 3	43세	남	아동그룹홈	사무국장	13년	5년	서울
	A-종사자 4	46세	여	양육시설	사무국장	14년	12년	서울
B. 가족 돌봄 (8.17)	B-종사자 1	33세	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리	7년	2년	서울
	B-종사자 2	30세	여	월드비전	대리	6년	2년	서울
	B-종사자 3	51세	여	굿네이버스	본부장	28년	16년	서울
	B-종사자 4	41세	남	굿네이버스	팀장	16년	16년	경기
	B-종사자 5	31세	남	돌봄청년○○○	대표	6년	3년	서울
C. 경계선 지능 (8.8)	C-종사자 1	46세	여	○○문해력지원센터	교사	21년	6년	충북
	C-종사자 2	41세	남	○○○연구원	연구위원	12년	5년	서울
	C-종사자 3	50세	여	○○○ 특수교육과	교사	22년	16년	경기
	C-종사자 4	53세	여	경계선지능연구소○○○	센터장	16년	12년	서울

주제별 담당 연구진이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참석자는 종사자의 경우 시설보호 4명, 가족 돌봄 5명, 경계선 지능 4명 등 총 13명이며, 은둔형 외톨이 주제의 경우 직접

당사자와 부모의 생애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사자 3명, 부모 4명 등 총 7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IV-57. FGI 응답자 특성(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부모)

구분 (면접일)	참석자	연령	성별	은둔자녀/자녀 수	최초 은둔시기	은둔기간	지역
D1. 당사자 (8.18)	D1-당사자 1	27세	남	2째 / 2명	중학교 1학년	14년	경기
	D1-당사자 2	29세	남	1째 / 1명	고등학교 2학년	12년	인천
	D1-당사자 3	38세	여	4째 / 4명	대학 졸업 이후	3년	서울
D2. 부모 (8.21)	D2-부모 1	54세	남	1째 / 2명	중학교 1학년	5년	경기
	D2-부모 2	45세	여	1째 / 1명	중학교 2학년	2년	인천
	D2-부모 3	50세	여	1째 / 2명	군 제대 1년 후	2년	광주
	D2-부모 4	52세	여	1째 / 1명	고등학교 2학년 자퇴 후	2년	경기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각 유형별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지원 필요사항, 정책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시설보호가 전통적 복지지원 분야인 것에 비해 가족 돌봄, 경계선 지능, 은둔형 외톨이 주제의 경우 사각지대에 있다가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최근 정책이 형성되어가고 있는 영역으로 주요 개념과 용어, 현 지원 서비스의 한계와 필요한 지원, 법 제정과 정책 수립 방향 등에 대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당사자와 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성장과정과 초기 은둔 증상과 등교거부 원인, 현재의 은둔상황, 부모와 가족의 대처행동과 어려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도움 정도, 초기 은둔 시기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다.

표 IV-58. FGI 질문내용

구분	질문내용
1) 시설보호	•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그 중 특히 취약하고 어려움(지원 사각지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문제 •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중 유용한 것, 지원 중 불필요(중요도가 낮거나 무의미)한 것, 필요한 사항인데 지원이 미흡한 것 • 현재 지원내용과 지원수준의 적절(충분)성, 최우선 보완(추가) 필요 지원 •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주관부처 이원화(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발생하는 지원

구분	질문내용
	격차 해소 방안 •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자체 지원 필요사항 • 중앙정부, 지자체, 시설의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현황, 역량강화 지원 적절(충분)성, 보완(추가)될 사항
2) 가족 돌봄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생활을 파악하고 사례발굴과 사회복지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의 사업 추진 방법, 대상자 접근 방법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어려움 해소를 위해 우선 개입할 영역 • 학업과 취업/진로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수립해야 할 법/정책/서비스와 그 이유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추진 방향(공공기관 주도 또는 민간기관 중심으로 공공과 자원 연계 강화와 서비스 지원 확대 등)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방향(기존 돌봄 지원정책 틀 내에서 대상 확대 또는 단독 법률 제정과 정책수립 및 서비스 개발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을 통한 지원 가능성 등
3) 경계선 지능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심각한 문제, 정책 우선 반영 시급 사항) -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 대상자 선별 방법(사회 공적 정책의 지원대상 선별 방법) -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방안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전달 체계 방안 -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제도 개발 시 주안점, 보완/개선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정책·제도, 다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과 차별화될 지점 • 졸업 후 사회 적응/진로탐색/직업교육 등 사회전환 지원정책/제도 관련 정책방안(특수교육 전공과 모델과 유사한 방안에 대한 의견 등) • 용어 문제 : '경계선 지능'에 대한 대안 용어 의견 • 대상자 실태 및 지원 실태 - 학교에서, 해당 기관에서(대상자 선별 방법 및 지원내용, 생활 실태 등)
4) 은둔형 외톨이(당사자)	• 성장기 은둔 요인 탐색 : 어린시절, 성장과정에서 힘든 점, 학교를 가기 싫었던 이유, 부모 대처행동 • 가족 역동 탐색 : 은둔생활 중 발생한 문제, 부모 양육방식 등, 현재 은둔상태, 가장 큰 어려움과 마음상태, 가족들의 도움과 노력 • 사회적 지지체계 : 은둔 증상에 대한 학교의 대응,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 이용의 도움 정도, 은둔생활 시작 시(등교거부 등) 필요한 지원
5) 은둔형 외톨이(부모)	• 자녀의 성장시절과 은둔 요인 탐색 : 자녀의 어린시절, 은둔 초기 증상과 문제행동, 등교거부 원인,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대처 • 자녀와 가족 역동 탐색 : 자녀 은둔생활로 발생한 문제점, 부모의 양육태도 등, 현재 자녀의 은둔상태,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마음상태, 현재 자녀를 지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 • 사회적 지지체계 : 자녀의 은둔증상에 대한 학교의 대응,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이나 병원 이용의 도움 정도, 은둔생활 초기 증상 발현 시 필요한 지원, 현재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 건의

2) 조사결과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①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정신건강·정서적 문제와 인지기능 문제, 사회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고, 특히 더 취약한 대상으로 방임이나 학대로 중간에 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지적장애와 경계선 지능 아동의 경우 자립이 어렵고 심리정서·인지적 문제 지원은 미흡하다는 한계, 절도나 폭력, 성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사례 등이 언급되었다.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

- 정신적·정서적 문제, 인지기능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소년 증가
 - 우울증, 조울증, 경계선 지능 등 정서 조절이 현저히 어려운 아이들이 증가
 - 전반적으로 지능 수준이 낮은 입소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습득 및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경험
 - 인지적인 한계로 인해 저임금 직업을 전전하게 됨
- 사회 관계적 문제
 - 부모나 친척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함
 - 시설 생활에 따른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이 결여됨
 - 아이들마다 부모님의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고민을 겪으나 전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음
- 조직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
 - 처음 보는 시설에서 새로운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각각 다른 성향이나 그들을 부르는 호칭 등을 어색하게 느낌
 - 자신은 빨리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의해 시설생활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욕구의 다양화
 - 아이들의 인권 의식이 신장함에 따라 본인의 선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 요구

[더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

- 중간에 방임이나 학대로 들어온 아이들
 - 갑자기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서 사회적 낙인을 보다 강하게 체감함
 - 학대나 방임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자살 충동에 대한 욕구도 강한 편이지만 정신과 진료 외 시설에서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상황, 보호자가 유명무실한 상황도 있음.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청소년들도 확인됨
-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 아동
 - 일반 아동들에 비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함
 - 그룹홈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외 예산이 없음. 경계선 지능이나 ADHD 문제 등 심리적 부분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없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함

- 인지적 결함으로 취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제대로 된 자립이 어려움
- 범죄에 노출되는 아이들
- 남학생의 경우 절도, 폭력, 사기 등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 여학생은 정서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집단 따돌림, 성매매, 외설적 방송과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발생함

②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중 유용한 서비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서비스 중에 유용했던 것으로는 자립과 관련된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사업, 주거지원 사업 등이 있었고, 성장기 아이들이므로 기초적인 의식주 비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립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유용함
- 아이들에게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는 자립 지원수당, 자립 두배통장, 디딤씨앗 통장 사업 등 다양한 자립 관련 제도가 도움이 됨
- LH 주택지원, LH 주거소득 지원 등의 주택 관련 사업이 유용함
-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아이들 자립에 도움이 됨
- 아이들에게는 주거와 소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지원이나 주거소득 지원 등의 사업이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사업이라 생각함
- 시설에 잘 적응한 아이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센터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도 있어 긍정적임
-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의식주 비용 지원
- 성장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의식주 비용이 가장 중요함
- 다만 어린시절 생계비 지원을 받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③ 현재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사항

현재 어려움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자립지원 전담요원 부족,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부족, 센터 청소년이 자립지원관으로 이관된 후 사례관리 어려움, 통장 개설과 핸드폰 구입 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보호 아동의 자립을 담당하는 요원 부족
- 현재 자립 전담기관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자립은 담당하지 않음.
- 시설 내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룹홈 내 사회복지사들이 전담하면서 업무가 가중됨
-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청년만이 아닌 보호 중인 아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부족
-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부족함
-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업무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보습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지원비가 나라는 나고 있지 않아 외부 개인 후원자에게 받아야 하는 실정임
- 외부 투자자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며,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 기회가 없어 학업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함
- 컴퓨터 청소년들의 자립지원관으로 이관 후의 접근성 문제
- 자립 지원 요원들이 멀리까지 이동해야 하며, 자주 만나지 못해 라포가 형성되지 않아 일관된 관계 유지 어려움
- 사례관리가 되지 않으면 관리 부족으로 인한 아이들의 도덕적 해이, 지원금에 대한 아이들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음
- 통장 개설, 핸드폰 구입에 대한 제도 개선
- 현재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컴퓨터 청소년들은 통장을 만들 수 없음
- 핸드폰 구입도 보호자 동의 필요
-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기도 힘들고, 연락받기도 힘들

④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중앙정부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개선점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소관부처에 따른 지원 서비스 격차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게 제안되었고, 지자체 지원 필요사항으로는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 시설 설립과 운영예산 확보,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청소년쉼터의 경우 거주지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지원, 원가정 복귀 사업 필요성 등이 제안되었다.

[중앙정부 지원 개선사항]

-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소관 부처별 서비스 격차 해소
- 시설이 여가부 소속이나 복지부 소속이냐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른데, 부처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됨
- 서울에 있는 시설들은 혜택이 많으나, 지방에 있는 시설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도 함
-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시설을 똑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어떤 부처가 관리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정책 제공을 위해 주관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자립지원금이 나오지만, 청소년 쉼터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했었음.

[지자체 지원 필요사항]

-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 시설 설립 및 운영예산 확보 필요
- 정신 장애 및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입소 비율 남자 50%, 여자 80%에 육박하나, 이들에 대한 치료시설은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쉼터에 맡기는 상황임
-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시설에 떠안기는 상황이며, 실무자들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 아쉬움
- 각 지자체에서 의원들과 공조하여 국립 청소년치료 재활센터를 설치해야 함
-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
- 시설 개발을 위한 지자체에서의 지원금 후원 비용 연계 필요
- 전문기관과 연계해 활동할 수 있도록 거점 역할 필요
- 시설보호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도움 필요
-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
- 예산 책정을 위한 실적 관리를 할 때 지역 내 아이들이 몇 명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출 청소년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구인 경우가 많음

- 지방에 있던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가정으로 복귀할 아이들의 연고자 관리
- 아이들이 복귀하게 될 가정의 준비를 위한 특별한 관리나 교육이 필요함.

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고, 그룹홈 지원센터의 교육 등 지원프로그램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적절한 종사자 교육 필요
-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는 너무 적은 금액의 교육비가 책정되어있는 상황
- 온라인 의무교육은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으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집중 어려움
- 예산문제로 교육보다는 보험상품 홍보에 집중된 강의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음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종사자에게 필요한 강의만 들을 수 있도록 사이트 개설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 그룹홈 지원센터의 성과는 좋은 상황
- 정책이나 교육, 자원개발, 자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 광역시도별 지원센터가 생겨 거점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발굴·접근 과정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회적 낙인효과에 유의해야 하고 비밀보장과 라포 형성이 중요하며 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방안으로는 학교출결이나 건강보험 데이터 상 위기 감지 등 다양한 위기상황 추정 데이터 활용,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 공유, 가스검침원 등 방문 노동자 네트워크를 통한 발굴 등이 제안되었다.

[발굴과정 유의사항]

- 사회적 낙인효과 유의, 대상에 대한 배려 필요
- 사춘기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누군가 접근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봉사자가 다가가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기존에 다른 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아이들의 경우 접근이 매우 어려움.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최대한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지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도록 해야 함
- 복지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 영 케어러의 경우 사회복지 대상이라는 인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해당 아이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확인하고, 기관에서는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다양한 발굴 방안]

- 위기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 가족 돌봄 아동이 직접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출결이 나빠지거나, 건강보험 데이터 상 위기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지자체에서 확인되어 발굴
- 공공은 발굴과 제도적 지원, 민간은 자원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다른 기관에서 다양한 사례가 공유되면서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발굴이 도움될 것임
- 방문 노동자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굴
- 가스검침원 등 방문 노동자들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 가정에 방문했을 때 가정에 해당 아동·청소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발굴할 수 있음

②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필요사항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업 및 진로지원(가족 돌봄 출석 인정 등), 간병 돌봄 대상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동·청소년의 부담을 줄이고 학업과 또래관계 회복,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도 돌봄의 대상으로서, 이들의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돌봄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학업 및 진로 지원
 - 가족 돌봄으로 인해 발생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필요함
 - 가족 돌봄은 청년이 되어서도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근 사업장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게 연계가 필요함
 -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단순히 학업, 진로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간병 돌봄 대상 지원
 - 돌봄 지원을 통해 시간과 에너지, 마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
 - 학업이나 또래 관계를 챙기면서 가족 돌봄 청소년의 가족 돌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간병 돌봄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 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또한 돌봄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겁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함

③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형성 : 우선 수립해야 할 사항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정책영역과 대상, 서비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통해 중복 또는 사각지대 발생이 없도록 법체계와 규정 점검과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조사를 통한 현황파악과 정책 수립을, 지자체에서는 발굴과 자원 연계 전담 기구 설치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법적,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 돌봄 연령 및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명확한 대상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법적으로는 부양할 다른 가족이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등 자격 기준에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중앙, 지방 관계없이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재량권을 갖고 중복 지원, 개입이 필요함
- 중앙정부에서의 현황파악 및 정책 수립 필요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지자체에서 발굴과 자원 연계 전담 기구 설치
-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함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
- 지방 재원이 열악한 지역은 정부에서 보조해야 함

④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법·정책 방향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와 정책영역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고 대상 발굴 지원 등 민간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되어야 한다. 기존 정책만으로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법률은 단독법으로 제정하여 맞춤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 [공공과 민간의 역할]
-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진행해야 함
 -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주도 및 관련 지원을 마련해야 함
 - 공공기관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성하고, 사각지대 및 기금 연계를 기업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함
 - 민간/공공 전문영역 개발하여 역할을 분담해야 함
 - 병원, 학교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되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분담되어야 함
 - 영 케어러의 경우 지금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3년 정도 지나면 취약한 상태로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함
- [지원 법률 제정 방향]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을 위한 단독법 필요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청년과 다르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법률 제정으로 맞춤 지원해야 함.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동 권리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투자나 단독적인 법 필요
- 기존 정책으로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 발생
- 기존 정책만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받는 복지혜택은 조부모가 받는 노인장기보험요양서비스 등의 혜택을 함께 받아 아동·청소년의 교육비 등에 사용되기도 함.
- 하지만, 이러한 경우 조부모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더 이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게 됨

⑤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에 대한 평가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지역마다 돌봄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며, 지역사회 돌봄 사업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능동적 발굴 조사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점이 강조되었다.

-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영 케어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돌봄이기 때문에, 돌봄의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임
-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고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과 같은 사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서적 위로가 되므로 지역마다 커뮤니티를 만드는 시도는 좋음
- 개선 필요사항
- 지역사회 내 돌봄이 강화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황임
- 돌봄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요청에 따른 지원보다 적극적, 능동적인 발굴 조사가 필요함
-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마련해야 함
- 한 지역에서만 정책이 시행되어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정책 시행 지역을 확산시켜야 함

(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①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은 일반학급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와는 다른 특성과 상황에 있어 두 영역 모두에서 적합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성은 학습문제만이 아닌 사회성 등 여러 문제가 동반되므로 학업부진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

며 경계선 지능 문제의 담당 정책 영역과 부서, 세부 지원 방법이 수립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맞춤형 접근 필요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일반 학생 혹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되며, 단순히 일반 학생, 특수 학생으로 분류할 경우 학급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음
 - 현재 교육시스템은 일반학생 대상 교육 혹은 특수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의 교육 및 특수교육 모두에서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함
 -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이들을 관리할 주체가 필요함
- 학업 문제만이 아닌 사회성 문제 등 다각적 접근
 -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 가진 문제점을 학교 성적 부진의 관점에서만 바라봄
 - 경계선 지능 학생이 경험하는 문제는 단순 학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동반됨
 -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스템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학습 부진은 2차적인 문제이며, 학습문제보다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경계선 지능 학생 담당 정책영역과 관리주체의 불명확 문제 해결
 - 교육청에서는 현재 발생하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 문제들을 단순히 학습 방법의 문제, 교사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음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누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함

②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 사항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위생의 문제와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혼자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시설에서 찾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개인위생 문제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가정 중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음
 - 취약한 가정환경에 따른 문제로 돌봄 부족을 겪으면서 기본적인 개인 위생문제에도 영향을 미침
 - 개인위생 문제는 학교에서 도움을 주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함
-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상담, 교육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존재함
 - 해당 아동·청소년 혼자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님들도 매번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 시설에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함
 - 따라서 아이가 직접 담당 시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시설에서 아이에게 찾아오는 서비스가 필요함

③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방안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위탁학교 운영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들을 위한 제3의 학급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낙인의 우려가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일반학급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보다는 제3의 학급 개설이 낫다는 의견과, 제3의 학급을 개설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있는 교사가 부족할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한 학급에서 모든 경계선 지능 학생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공존하였다.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한 위탁학교 지원
 - 경계선 지능 학생들도 결국 사회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소속된 사회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함
 - 위탁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요 과목에 대한 교육 외에도 사회적 기술, 예체능적 기질 등의 교육을 통해 해당 학생이 지속적으로 인지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 학급으로 복귀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제3의 학급 개설 (찬성 의견)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일반학급 혹은 특수학급으로 분류하면 교육적 지원 등으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있음
 - 반을 따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 낙인의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여 현재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면 점차 방치됨
 - 따라서, 제3의 학급을 만들어 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제3의 학급 개설 (반대 의견)
 - 현재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이해,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임
 - 경계선 지능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며, 이들에게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교사들에게 업무 과부하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3의 반을 개설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 어려움. 제3의 반의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

④ 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 제안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타 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간의 차별이 없도록 할 것,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 필요, 진로직업교육 지원, 경계선 지능인 조기발견 시스템 마련, 교원양성과정 및 연수과정에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전문성 강화, 학교와 지자체 협력 등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 경계선 지능 학생 가운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 경계선 지능 학생 중 일반학생의 지적수준에 가까운 학생에게 우선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만 우선 교육대상으로 지원해서는 안됨
 - 경계선 지능 학생 개개인의 특징이 다르므로 그 학생의 수준 및 필요한 능력을 확인하여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일반학생과 구분되는 개별화된 교육제도 필요
 - 일반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습 능력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므로 이들의 평가 목표가 다르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들의 학습 능력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함
- 경계선 지능인에 적합한 진로교육 필요
 - 청년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이 진로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진로를 찾을

-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함
- 경계선 지능인 조기발견 시스템 필요
- 성인이 되어 경계선 지능을 진단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선별 과정이 학교에서 진행되어야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음
-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요
- 교사들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교원양성과정 및 재직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함. 또한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있을 경우, 이들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학교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
- 경계선 지능의 경우 학부모도 마찬가지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정문제, 개인위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학부모 교육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 지원이 필요함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세 명의 어린 시절 성격은 자기중심적 성향과,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 등 평범하였는데 성장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또래 괴롭힘, 부모님의 학업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및 돌봄 부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 조용하고 말수가 거의 없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성격
- 친구에 집착하지 않고, 친구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주로 혼자 지냄
-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과잉보호를 받으며 지냄
-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
- 남의 말을 거스르는 일 없이 얌전하게 잘 따르는 편이었음
- 주변 친구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음
-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아이였음
-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
- 활동적이고 공부도 잘해서 어른들의 기대가 컸음

[성장과정에서 힘들었던 점]

- 친구들이 괴롭힘
- 작은 키 때문에 괴롭힘의 대상이 됨
- 주변 친구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도 많이 봄
- 부모님의 학업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
- 부모님께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더니, 대치동의 과학 학원에 보내주셨음.
-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지만, 인천에서 강남으로 학원을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매우 힘들었음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부족
-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하였고, 어머니가 가장이 됨.
-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면서 늦게 귀가하셨기 때문에 본인을 돌봐줄 틈이 없었음

②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교생활은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 학원폭력으로 생긴 정신 질환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위생관념 부족으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모 문제로 자존감이 저하되어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학교생활의 어려움]

- 괴롭힘에 대한 트라우마
 - 괴롭힘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김
 - 주변의 괴롭힘 당하는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트라우마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감을 느낌
- 학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 질환
 - 학원에서 괴롭힘에 시달리면서 저장강박이라는 정신 질환에 걸리게 됨
 - 그만두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계속 다니게 됨
 - 정신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번아웃이 오게 됨
- 학교에서의 따돌림
 - 집에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위생 관념이 없어 주변 친구들이 피했음
 - 중학생 시절 친구의 외모 지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함

③ 학창시설 관심과 이해가 부족했던 부모님

면접대상자들이 기억하는 부모님은 바빠서 자신에게 관심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혼을 내거나 정서적으로 방임하였고, 공부를 잘하던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

- 두 분 모두 맞벌이로 바쁘심
 - 어머니는 자식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는 편이었음
 - 부모님 두 분 모두 바쁘셨기 때문에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자신을 돌봐주심
 - 주로 어머니께서 자녀를 관리했으나, 결국은 어머니도 바쁘셨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주기 어려웠음
- 이혼 후 어머니가 가장이 되셔서 관심을 줄 수 없었음
 - 어머니 혼자 네 명의 자녀를 길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고, 그로 인해 자녀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

[학교생활 어려움에 대한 부모님의 대처]

- 집에서 쫓겨남

- 맞벌이로 바빴던 부모님은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심하게 혼이 난 뒤 집에서 쫓겨나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됨
- 부모님이 바빴서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함
- 이혼 후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 바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어도 자녀를 정서적으로 돌봐줄 틈이 없었고, 오히려 자녀의 내향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 화를 냄
- 신경정신과에 다니게 됨
- 부모님은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던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함
- 부모님에 의해 신경정신과에 다니게 되었으나 큰 도움은 받지 못함

④ 현재 상황, 은둔생활 해결에 대한 가족의 도움

현재는 은둔생활을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으로 코딩 공부, 글쓰기 작업 등을 하고 있고, 한 참가자는 심리상담을 받으며 회복하여 공공근로를 하면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다. 은둔 생활에서 가족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어머니의 권유로 신경정신과에 다녔으나 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한 참가자는 신경정신과 약물치료가 도움이 되어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은둔상태]

- 은둔생활을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임
- 특별한 도움 없이 그저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게 됨, 현재는 하기 싫어도 코딩 공부 등을 하면서 변화하고 있음
- 지금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 글 쓰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으며, 영화 보면서 작업서도 읽는 등 꾸준히 일하는 중임
- 은둔 이후 심리상담 등을 받으며 회복하였으며, 현재는 주 5일 공공근로를 하는 중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취미 생활을 하며 살고 있음

[가족들의 도움]

-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함
- 은둔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가족들은 자식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음
- 금전적인 도움 외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음
- 어머니의 권유로 신경정신과를 다니게 되었으나 큰 도움을 받지 못함
- 인지 행동 치료 등 근본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고, 주로 진료 후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음
-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음
- 어머니의 큰 충격으로 뒤늦게라도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게 됨
-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조금씩 회복하게 됨

⑤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교육과 주거 등에 대한 금전적 지원, 상담지원,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사례 수집을 통해 해결책 제공,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상담기관이나 병원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약물치료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우울증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으로 점차 회복된 경우도 있었다.

[필요한 지원]

- 교육, 주거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교육지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 등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한 상담지원
-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지원이 필요함
- 주기적인 모니터링, 사례 수집을 통한 해결책 마련
- 당사자에 대한 부모님 혹은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 등을 제공해야 함
-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 가족 외에는 사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상담기관이나 병원 도움 여부]

-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큰 도움을 받지 못함
- 주로 약 처방을 받았으나, 큰 변화는 없었음
- 근본적인 치료는 받지 못함
- 병원에서의 약물치료, 개인·집단 심리상담 등이 도움이 됨
-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하게 됨
- 개인·집단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심리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

(5) 은둔형 외톨이 부모

① 자녀의 어린 시절, 은둔 초기 증상

자녀의 어린 시절은 소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 등의 행동이 있었으나 모두 평범한 정도로 볼 수 있다. 은둔 초기 증상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결석이 잦다가 등교거부를 선언하고 은둔생활을 시작한 경우, 부모의 강압적 지적에 대해 위협을 가하거나 자해, 자살 시도 등의 행동을 보인 경우, 피해의식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반격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어린 시절]

- 밖에서는 내성적이지만 집에서는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
- 소심한 성격으로 어떤 집단에 들어가면 탐색하는 기간을 가진 후에 그 집단에 참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집에서는 활발하고 쾌활한 아이였음
- 남의 시선에 다소 민감하지만 무난하고 모범생 성향
- 특별히 교우 관계가 넓지 않았으나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고, 성격도 무난하였음
- 다른 학무모에게도 좋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등 모범생과 같은 성격임
- 다만,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다소 민감했음
- 다소 산만한 성격
- 산만한 아이여서 걱정했으나 크게 손이 가지는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아이였음
- 고집이 세고 약간 예민한 성격

- 고집이 센 편이었으나 크게 말썽을 피우지는 않았고, 규칙을 어기거나 일탈적인 행동 등을 싫어하며, 약간 예민한 성격이었음

[은둔 초기 증상]

- 등교거부
- 학교생활, 단체생활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결석이 잦아지다가 등교거부를 선언
- 등교거부 후 은둔생활 시작, 이후 부모님과의 대화 거부, 부모가 나무라는 경우에는 가출 등의 반응을 보임
- 폭력적인 행동
- 은둔생활에 대한 부모님의 강압적인 지적이 반복되자, 반대로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자해, 자살 시도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함
- 피해의식
- 누군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반격하는 등 피해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지 못함

② 부모가 생각하는 등교거부 원인,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대처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등교거부 원인은 친구갈등으로 인한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 어린 시절부터 거의 혼자 지내다가 대학교 졸업 후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두려움, 강박증과 완벽주의 성향으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것 등이 언급되었다. 부모는 자녀의 등교거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혼내고 때리기도 했으며, 등교를 권유했으나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거부하면서 자녀를 방치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거부 원인]

- 교우 관계로 인한 문제
-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긴 이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함
- 미국 유학 시절 한인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 이후, 그로 인한 충격으로 한국에서도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느낌
-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혼자 지냈던 것으로 추정됨
- 초등학교부터 혼자서 지내던 생활을 지속하다가 대학교 4학년 2학기에 이제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강하게 느낌
-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 이전부터 강박증,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음
-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수업 참여의 어려움, 낮은 환경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함

[부모 대처]

- 자녀를 다그침
- 자녀의 등교 거부를 이해하지 못해 혼을 내고 때리기도 함
- 자녀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다투다가 갈등이 생기고 심한 경우 경찰까지 출동함
- 자녀 방치
- 자녀에게 등교를 권유했으나 심한 거부반응을 보인 이후부터 방치하게 됨
-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후 자녀를 방치하게 됨

③ 가족과 부모가 겪는 어려움

은둔 행동은 가족과 부모에게도 어려움을 주었는데, 동생도 따라서 등교거부를 하거나, 가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칼로 가족을 위협하거나 자해 시도를 하고 가족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부모는 은둔 자녀의 건강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고, 자녀의 자해와 자살 시도, 폭력적 모습 등에서 절망감과 안타까움, 두려움을 느끼고 이혼가정 탓으로 생각되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 가족들에게도 부정적 영향
 - 누나가 등교거부를 하자 동생도 등교를 거부함
 - 가족들과 다툼이 생기면 칼을 들어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자신의 팔을 그어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함
 - 가족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함
- 은둔 자녀의 건강에 대한 걱정
 - 집에서 게임만 하고 씻지 않으니 위생상태가 엉망이 됨
 -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며, 매일 게임만 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음식만 먹다보니 건강이 걱정되기도 함
-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절망감
 - 자녀의 자해, 자살 시도 등으로 절망감을 느낌
 - 자녀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낌
- 자녀에 대한 죄책감
 - 혹시 이혼가정이라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을 느낌
- 자녀의 폭력적인 모습에 대한 두려움
 - 자녀가 자신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낌

④ 학교의 반응, 부모의 지지 노력

자녀의 은둔 행동에 대해 한 참여자는 담임교사가 자필 편지를 써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했으나 자녀가 거부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현재 부모의 노력으로는 자녀에게 칭찬 등의 긍정적인 말과 좋아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 참여자는 언젠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말없이 기다린다고 응답하였다.

- [은둔 증상과 행동에 대한 학교의 대처]
-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해주거나 집에 직접 방문
 - 자필 편지를 써주거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하는 등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함
 - 직접 가정 방문을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녀가 거부함
 - 학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함
 - 자녀가 대학교 4학년 2학기부터 등교를 거부해서 학교에서 무관심했음
 - 자녀가 학교에 나간 기간이 길지 않아 학교에서 도움을 줄 수 없었음
- [현재 부모의 지지 노력]
- 자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함

- 자녀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해주기도 함
- 자녀가 나아지기를 말없이 기다림
- 언젠가 자신을 상대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저 기다림

⑤ 현재 자녀의 은둔 상태

현재 자녀의 은둔 상황을 살펴보면, 한 참여자의 경우는 낮과 밤이 바뀌었고 씻지 않으며 게임에 몰두하는 등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른 경우는 참여자는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나름의 정해진 루틴으로 일정한 활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모든 관계를 끊고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보임
- 주로 방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면서 잘 씻지도 않는 모습을 보임
- 아침에 잠이 들거나 새벽에 식사를 하는 등 불규칙하게 생활함
- 시간은 불규칙적이지만 일정한 활동을 반복함
-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식사시간 모두 정해진 시간 없이 생활하지만, 몇 시에 화장실에 갔으면 몇 시간 후에는 샤워를 하는 등 나름의 정해진 루틴으로 일정한 활동을 반복함
- 사회적 관계 단절
-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나오지 않으며,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 친구 관계를 모두 끊고, SNS도 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등 대인 기피적 성향을 보임

⑥ 은둔 초기 증상 발현 시 필요한 지원

은둔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지원해 줄 사항으로 학생이 결석할 시 학교 연계기관에서 가정 방문하여 자녀의 상태를 살피고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 은둔·고립 경험자들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의료보험을 통한 정신과 의료비 부담 지원, 등교거부 시 상담 지원 의무화 등이 제안되었다.

- 학생이 며칠 동안 결석할 시 연계기관에서 가정 방문
- 학생이 며칠 동안 결석할 경우, 학교 연계기관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자녀의 상태를 살피고 부모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 필요
- 은둔·고립 경험자들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 은둔·고립을 경험해본 청년들이 은둔 초기인 아이들에게 꾸준히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 필요
- 은둔·고립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보험 지원
- 은둔·고립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의료보험을 통한 지원 필요
- 등교거부 시 상담 지원 의무화
- 등교거부 초기에 다소 강압적이라도 의무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담, 교육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에 대한 의무화 필요

3) 소결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정책과 제도 보완을 위해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정신건강과 심리정서적, 인지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고,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과 주거지원 욕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 아동시설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로 이원화되어 같은 복지기능을 가진 시설임에도 서비스 격차가 있다는 점이 시급히 개선될 사항으로 제안되었고 종사자 역량강화 내용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포함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자신도 어린 돌봄의 대상이면서 가족을 돌봄으로써 학업과 또래관계, 진로 포기 등의 상황에 처해 있어 학업과 진로지원(돌봄 출석 인정 등), 간병 돌봄 대상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동·청소년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지원을 위한 근거법과 정책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 영역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단독법안을 마련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대인관계, 개인위생과 신변관리 등 여러 문제가 동반되므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과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보완 사항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실시, 진로직업교육 지원, 경계선 지능인 조기발견 시스템 마련,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에 포함 등 경계선 지능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은둔 행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방임이나 강압적 훈계로 폭력성이 강화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등교거부 등 은둔 초기 증상 단계에 서비스 지원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청소년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과 주거 관련 재정적 지원, 상담지원, 자녀의 은둔 상황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솔루션 제공, 인간관계 형성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부모는 결석 등 은둔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학교 연계기관에서 가정 방문으로 상담과 부모교육, 경험자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정신과 의료비 보험 부담, 등교거부 시 상담 지원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 제5장 시설보호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현황
- 2.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법·제도 현황
- 3.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 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 5. 소결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현황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 현황, 정책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은 관련 법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어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대는 중첩된다. 법과 정책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공통적으로 ‘원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적절하게 양육·보호받지 못하고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의 정의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기존에 가출 청소년으로 지칭되었던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외보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유형은 크게 시설입소를 통한 보호와 위탁가정을 통한 보호로 구분되는데, ‘시설입소’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이 해당하며, ‘가정보호’는 소년소

44) 이 장은 임성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녀가정, 가정위탁, 입양, 입양전위탁을 포함한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포함한다. 이 중 ‘청소년쉼터’에서는 일정 기간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설보호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설보호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⁴⁵⁾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자의 부재, 적합한 양육 능력 부족, 보호자로부터의 이탈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통계 현황을 제외한 정책 분석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중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와 양육, 자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중장기)’에서 보호받는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대상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2)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현황

(1) 시설보호 아동 현황

시설보호 아동 현황은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대내외적인 환경 요인에 따라 매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과 동반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의 수도 자연적으로 감소함을 시사한다.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귀가 및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을 제외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2013년 6,020명에서 2018년 3,918명으로 급감하였다가 2019년 4,047명으로 약간 증가하고, 이후 2020년 4,120명, 2021년 3,437명으로 감소하였다.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2,289명으로 2013년 대비 약 1/3 수준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5)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표 V-1.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2013~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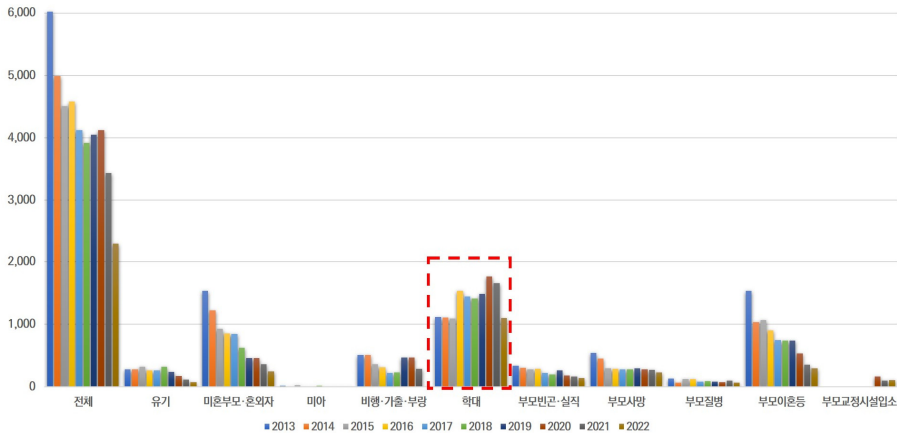
구분	전체	유기	미혼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가 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등	부모 교정시설 입소
2013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
2014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
2015	4,503	321	930	26	360	1,094	279	301	122	1,070	-
2016	4,583	264	855	11	314	1,532	290	286	126	905	-
2017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
2018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
2019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
2020	4,120	172	463	11	468	1,767	181	279	74	539	166
2021	3,437	117	366	0	293	1,660	170	275	101	356	99
2022	2,289	73	252	0	11	1,103	139	235	70	296	110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3년 5월 4일 인출.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원인은 기존에는 ‘미혼부·모나 혼외자’, ‘부모의 이혼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2015년 이후 최근까지 ‘학대’로 인한 가정외보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 추세이나, 학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의 경우, 미혼부모·혼외자가 1,53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이혼 등 1,535명, 학대 1,117명, 부모사망 545명, 비행·가출·부랑 512명 등의 순이었다. 학대는 2015년 1,094명에서 2016년 1,532명, 2020년 1,767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22년에는 학대가 1,103명으로 전체 중 절반 정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부모이혼 등 296명, 미혼부모·혼외자 252명, 부모사망 235명 등의 순이었다.

(단위: 명)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3년 5월 4일 인출.

* 주: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 원가정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아동을 제외한 18세 미만 아동 수

그림 V-1.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수 및 발생원인(2013~2022)

보호대상아동의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가정보호보다 시설보호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보호조치 현황은 2013년 시설보호 3,257명(54.1%), 가정보호 2,763명(45.9%)에서 2022년 시설보호 1,294명(56.5), 가정보호 995명(43.5%)으로 시설보호와 가정보호의 비중이 시계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가정보호의 수는 지속 감소하였으며, 2019년과 2020년에는 시설보호 아동의 수가 가정보호 아동의 수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2022년 통계부터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보호아동’과 동 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일시보호아동’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보호조치는 세부적으로 시설입소 913명, 일시 시설보호 381명이고, 가정보호 968명, 일시 가정형보호 27명이다. 즉, 아동복지시설 중 일시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단기간 보호받는 아동의 수는 일시보호아동 수에 포함된다.

(단위: 명)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3년 5월 4일 인출.

* 주: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 원가정 귀가 및 연구자 인도 아동을 제외한 18세 미만 아동 수

그림 V-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별 현황(2013~2022)

(2) 아동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말 기준,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아동복지시설은 전국에 총 299개소가 있으며, 이 중 아동양육시설은 236개소로 총 10,072명의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c).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가깝다. 공동생활가정은 617개소로 총 3,105명의 아동이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b).

시설보호는 대부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보호받게 된다. 시설유형 중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도록 배치된 아동의 비중은 2020년 41.5%에서 2021년 45.6%, 2022년 43.8%로 4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2020년 26.1%에서 2021년 25.0%, 2022년 22.2%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일시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입소율은 2020년 12.6%에서 2021년 11.1%, 2022년 29.4%로 증가하였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외보호 최초 진입기관으로, 3개월 내 단기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표 V-2. 보호대상아동의 시설유형별 시설보호 현황(2020~2022)

(단위: 명, %)

구분	시설입소 (소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 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기타
2020	2,727 (100.0)	1,133 (41.5)	712 (26.1)	343 (12.6)	20 (0.7)	451 (16.5)	68 (2.5)
2021	2,183 (100.0)	996 (45.6)	546 (25.0)	243 (11.1)	33 (1.5)	282 (12.9)	83 (3.8)
2022	1,294 (100.0)	567 (43.8)	287 (22.2)	381 (29.4)	0 (-)	12 (0.9)	47 (3.6)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3년 5월 4일 인출.

* 주: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시설보호 현황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시설로 구분함. 이에 따라 양육시설 등을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기타로 세분화하고 장애아동시설을 분류에서 제외함.

(3) 시설보호 청소년 현황

이정희(2022)는 가정으로부터 온전한 양육·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크게 네 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거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둘째,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셋째, 법무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만 12~22세 청소년 중 소년 보호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의뢰 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청소년이다. 마지막으로 거리나 부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현저히 열악하고 부적절한 곳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다. 이 중 통계로 수집·관리되는 시설보호 청소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 청소년으로 국한한 가정 밖 청소년의 정확한 현황이나 규모를 추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추세를 추측할 뿐이나 실제 가출하는 청소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해 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는 4%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6년 2.7%, 2018년 2.6%, 2020년 2.5%, 2022년 2.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년 발간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2021년 3.2%, 2022년 3.6%였으며, 주된 가출 이유는 모두 ‘부모님과의 문제’가 각각 62.4%, 56.6%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b; 여성가족부, 2023a).

표 V-3. 청소년의 최근 1년간 가출 경험률(2014~2022)

(단위: %)

2014	2016	2018	2020	2022
4.0	2.7	2.6	2.5	2.5

* 출처: 1) 임희진, 백혜정, 김희진, 황여정, 안지선 (2014).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2)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6, 2018, 2020, 2022).⁴⁶⁾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2020)⁴⁷⁾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입소 및 이용 중인 조사 대상자 중 남자는 51.3%, 여자 48.7%였으며, 평균 연령은 17.59세였다. 이들의 평균 가출 연령은 13.51세였고, 주된 가출 이유는 부모와의 갈등(60.7%)이 가장 많았다. 가정으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66.3%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72.8%)이 남자 청소년(60.4%)에 비해 가정 복귀 거부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 복귀 계획이 없는 이유는 가족들이 반기지 않고 이전에 겪었던 문제가 반복될까봐가 51.9%로 가장 많았다. 이들 청소년이 가출 기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청소년 쉼터 선생님 등 기관 선생님(30.6%)과 친구 또는 선후배(29.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 현황은 매년 경찰청이 발표하는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실종신고 처리 현황을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전체 실종자 중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의 실종 신고 건수는 매년 2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동 연령대의 실종 신고 대부분은 (반복)가출이다.

표 V-4. 18세 미만 실종 아동·청소년 현황 (2018~2022)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접수	21,980	21,551	19,146	21,379	26,416
해제	21,911	21,412	19,054	21,257	26,357
미해제	1	2	4	5	58

* 출처: e-나라지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쉼터 유형 구분 없이 전체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 현황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9,350명에서 2011년 11,657명, 2014년 24,079명, 2016년 30,329

46) 황여정, 김지경, 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정윤미 (202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47) 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 (2020).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2020 청소년상담연구·221).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명, 2019년 32,402명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0,401명으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 21,475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V-5.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현황(2012~2021) (단위 :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31,197	32,109	32,402	20,401	21,475

*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https://www.ypec.re.kr/mps/administrativeData/youthSupportByTarget/runawayYouthSupport?menuId=MEN-U00393>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4) 청소년쉼터 현황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에서는 ‘청소년쉼터’를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현재 기간을 중심으로 일시, 단기, 중장기 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137개의 청소년쉼터가 운영되고 있다.⁴⁸⁾ 17개 시·도 중 청소년쉼터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와 서울로, 각각 31개소와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 9개소, 강원 9개소, 제주 6개소이며, 충청권 22개소, 전라권 15개소, 경상권 28개소이다. 세종은 현재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다.

표 V-6.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2023) (단위: 개소)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37	17	5	6	9	5	6	5	31	9	7	9	6	4	7	5	6	0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청소년쉼터.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shelter/list.asp?basicNum=1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유형별로는 고정형 일시쉼터 19개소, 이동형 일시쉼터 14개소이며, 남자 단기쉼터 29개소, 여자 단기쉼터 36개소, 남자 중장기 쉼터 18개소, 여자 중장기쉼터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4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청소년쉼터.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shelter/list.asp?basicNum=1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표 V-7. 청소년쉼터 유형별 현황(2023)

(단위: 개소)

전체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고정형	이동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37	19	14	29	36	18	21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2.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법·제도 현황

1) 아동보호체계(보호대상아동)

시설보호 아동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아동복지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1) 아동보호 원칙

아동보호의 원칙은 첫째,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둘째,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셋째,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에 의거하면, 아동보호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 먼저 즉시 보호한 후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동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원가정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되므로 원가정 보전과 복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아동이 원가정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분리될 경우, 아동에 대한 보호는 가능한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이어야 하며, 원가정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동은 여전히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원가정 복귀보다 장기간 가정외보호를 받는 비율이 높다. 이는 최근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중 ‘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해자라 할 수 있는 가정으로 빠른 시일 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요 대비 위탁가정의 수가 적어 시설보호 중심의 가정외보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 아동복지법 〉

제2조(기본 이념) ① [생략]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2)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보호대상아동 발견 시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12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에 의한 아동 보호조치의 결정·변경·종료 과정 심의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형식적·절차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정선옥, 김형태, 김미숙, 공영숙, 이수천, 2023).

〈 아동복지법 〉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생략]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보호조치는 일시보호를 포함하여 크게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 입양으로 구분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가정외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이 연고자가 없을 시 국내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하되, 시설보호 역시 공동생활가정을 우선시하도록 한다. 아동에게 부모나 기타 보호자 등 연고자가 있다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순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설보호 중에서도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수가 적어 개별 사례관리에 유리하고 위치 특성상 시설거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아동이 보호조치에 이르는 원인은 가정 내 학대, 가정 위기, 유기 등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황과 특성도 상이하다.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여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대피해 아동, 장애아동, 문제행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개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이 시설보호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2023c)의 2023년 아동분야 사업 안내에 의하면,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하다면,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부서로 의뢰하여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보호하도록 조치하나,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복지전달 체계에서 보호되기 전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임시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의 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①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② 아동학대 및 방임 등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③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이다(보건복지부, 2023c).

〈 아동복지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제도는 세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과의 비혈연 관계인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며, ‘전문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보호·양육한다. ‘일시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으로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이 되,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일시보호 중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일반 또는 전문가정위탁, 입양, 시설로 보호조치되는 경우, 일시가정위탁은 종료가 된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민법」 제777조 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친족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드림스타트에 연계하도록 한다. 다만,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제시된 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동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친인척 가정위탁 신청이 가능하다.

(4) 보호조치 후 점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면,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의해 지자체 장은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주체는 아동의 보호의뢰 또는 서비스 제공의뢰를 받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근거로 작성한다.

한편, 동 법 제15조의5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권을 지자체의 장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하여 가족과의 관계 회복 및 지지체계 유지를 위한 조치이다.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면접이 가능하며, 면접교섭의 한 방법으로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족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단, 가족활동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아동 가정복귀 프로그램과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 아동복지법 〉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생략]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5) 보호종료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어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의 장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동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연령 초과로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이사항을 점검한다.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료인 경우, 아동 주소지의 전담요원이 1년간 4회 양육계획서에 따른 양육 여부를 점검하고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입양아동의 경우, 아동 주소지의 전담요원은 1년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한 사후관리보고서를 받아 특이사항 발생 시 입양기관과 동행하여 가정방문을 한다.

만일 보호가 종료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시설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의 장은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생략]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6) 아동복지시설 유형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유형을 시설의 목적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다음의 표에서는 시설보호가 가능한 5개 시설 유형을 제시하였다. 동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업무, 성과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와 업

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종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과 자격, 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에서는 동 법 제52조와 관련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시설별로 아동 수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은 총 15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입소아동 수를 바탕으로 직종별 종사자 수를 규정하고 있다.

표 V-8.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유형 및 기능

종류	기능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7) 아동보호체계 개편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민간기관 중심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공적 아동보호체계’로 개편하였다. 즉,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의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임을 강조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상에도 실질적인 보호조치의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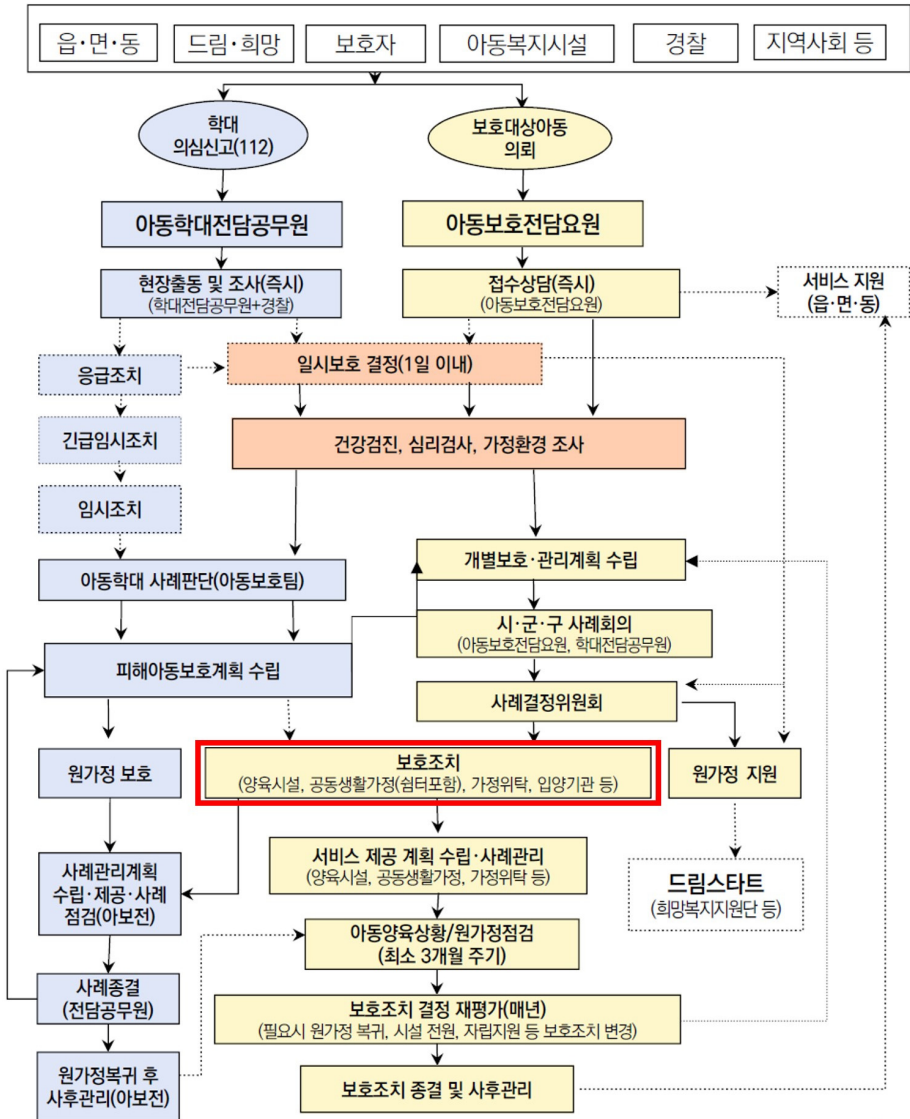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를 4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가정형 위탁 중심 아동보호 활성화’를 제시하였

다. 또한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 공적 아동보호체계 완비(아동학대 전담인력 배치 목표대비 완료율 100%)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민간기관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로 인해 아동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최초 의뢰된 민간기관의 판단에 따라 보호방식이 임의로 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제공, 가정복귀 결정 등을 공적으로 결정·수행하고, 지자체의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 조사업무 수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2022년까지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지자체의 업무절차는 다음의 [그림 V-1-3]과 같이 정리된다. ‘학대’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학대 이외의 ‘보호대상아동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투입되어 즉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아동보호계획 또는 개별 보호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보호조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보호조치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시설보호,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통한 가정보호로 구분된다.

한편, 2023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⁴⁹⁾에서는 아동보호체계 고도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아동친화적인 성장환경 마련, 양육·자립지원 서비스 질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을 세부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수를 시설당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시설은 1인 1실 기능보강을 우선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오랜 기간 논의되었던 아동양육시설의 특성화·전문화를 추진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아동양육시설을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기능으로의 전환과 소규모화를 도모하고,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등 10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49) 관계부처 합동 (2023).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37504&filenum=2&dtime=20230413174458>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 출처: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p13.

그림 V-3. 보호대상아동 보호 추진체계

이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적 아동보호체제로 개편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가정외보호는 기존의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심층연구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체제를 재정비하려 한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외보호가 반세기 이상 시설보호에 의존해왔으므로 현재는 가정형보호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 단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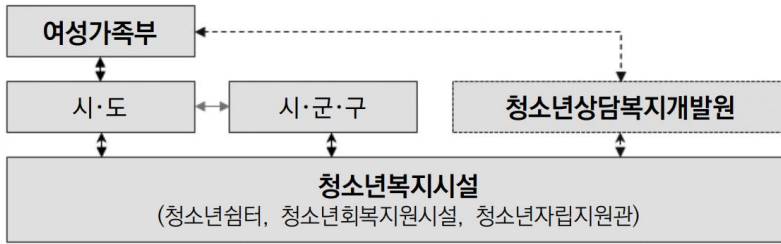
2) 청소년보호체계(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대상아동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원가정으로부터 이탈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보호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가정 밖 청소년은 자발적으로 가정으로부터 이탈하여 도움이 필요할 경우 청소년쉼터를 스스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거나 거주하면서 보호·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외부 개입을 통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가정위탁 등의 가정형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 또는 가출 징후 위기 청소년에게 가정·학교·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체계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여성가족부는 기본 운영계획 및 사업지침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관리 등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할 청소년복지시설 사업계획의 수립·검토·조정과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을 담당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수립·시행,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연수,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지원,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운영매뉴얼 제작 및 교육,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통계 관리, 청소년복지지원 정책 개발 지원, 청소년복지시설 홍보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맡는다. 청소년쉼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 출처: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II). p194.

그림 V-4.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추진체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들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보호·지원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가 청소년쉼터이다.

가정밖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입소 시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한 가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청소년이 보호자 연락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불가하더라도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을 일시·긴급 보호하면서 위기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종사자는 청소년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보호자 연락 거부 이유를 심층적으로 상담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72시간 내외로 보호자와 연락이 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단기 청소년쉼터에서 의뢰된 청소년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b).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은 입소기간 만료 후에도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로 인해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여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청소년이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2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2) 청소년쉼터의 역할

동 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31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쉼터의 목적은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원활히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 중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시설이다.

한편, 제31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중장기 청소년쉼터를 퇴소하였거나 이미 독립생활 중인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세, 취업, 건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설립 및 운영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 [생략]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청소년쉼터는 ① (대상) 가정 밖 청소년에게 ② (보호기간) 일시적으로 ③ (서비스) 생활지원 및 보호를 제공하고 ④ 사례관리를 하여 ⑤ (단기목표) 가정·사회 복귀와 ⑥ (중장기목표) 학업 및 자립 지원을 위한 ⑦ (시설 유형) 청소년복지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23b). 또한 청소년쉼터 입소대상자 선정 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 보호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안전망 또는 유관기관에 연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b).

청소년쉼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이 8개로 구성된다. ①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②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 활동, ③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④ 가정 밖 청소년 사례관리, ⑤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⑥ 그 밖의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⑦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⑧ 청소년전화 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3b).

(3) 청소년쉼터의 유형

청소년쉼터는 입소 기간을 기준으로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V-9>에서는 청소년쉼터 유형별 보호기간, 이용대상, 기능, 위치, 지향점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일시쉼터’는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노숙 청소년을 조기 발견·상담하여 청소년들을 긴급 보호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최대 7일 이내에서 일시보호를 하며, 버스와 같은 차량 형태의 이동형 일시쉼터와 청소년 유동지역이나 주요도심에 설치된 고정형 일시쉼터를 통해 개입한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리에서의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가출을 예방하여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 외에도 먹거리를 제공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단기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하는데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따라서 최장 9개월 간 단기보호가 가능하다. 주요 도심별로 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핵심기능은 심리정서 상담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이다. 이 밖에도 의식주나 의료 등의 기본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상황에 따라 일시·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계를 한다.

‘중장기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하나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이내 중장기보호를 제공한다. 1회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4년간 보호할 수 있다. 주택가에 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핵심기능은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소년쉼터의 핵심기능과 지향점을 볼 때, 일시쉼터는 청소년 가출 예방, 학교 밖 청소년 구조·발견, 단기쉼터는 가정복귀와 사회복귀 구분 후 연계, 중장기쉼터는 자립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장기 청소년쉼터에는 자립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청소년쉼터 유형과 청소년 정원에 따라 시설장, 보호·상담원, 행정원/조리원의 규모가 결정된다.

표 V-9. 청소년쉼터 유형 및 기능

구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최장 9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
핵심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상담지원 (아웃리치)	심리·정서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지원, 학업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기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서비스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저연령 청소년(13세 이하)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 기관 등에 연계 권장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비고	숙소, 화장실의 경우 필히 남녀용 분리 운영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리 운영	

* 출처: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II). p193.

3.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1) 시설보호 아동 지원 정책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경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원가족 관계회복 지원’, ‘자립준비지원’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 지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며 보호받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주부식비, 피복비 등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

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할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한다. 아동양육시설은 보장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쉼터는 보장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추가로 수급자의 거주 안정성을 위해 운영주체(법인 vs. 개인), 시설유형(자가 vs. 임차), 정부지원(운영비·인건비) 여부에 상관없이 임차급여 특례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기준임대료의 60%를 지원받는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이 일반생계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회계로 편입할 수 있다. 동일 공동생활가정에 형제, 자매, 남매 등이 함께 입소하는 경우 개인별 보장 대상이 된다. 외국국적 아동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의 생계비는 기초수급자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하게 된다. 부모 등의 생계비 사전 편취 문제나 미성년아동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워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양육수당은 아동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아동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하고, 시설 입소 아동 개인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계좌 개설 시까지 시설 명의 계좌로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개인 계좌 개설 이후 기 지급된 양육수당 전액을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야 한다.

(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 가입 시부 터 만 18세 미만까지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대상이며,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의 가정 밖 청소년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2022년부터 정부(지자체)는 월 최대 10만원, 만 18세 미만까지 1:2 매칭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아동이 만 24세 미만까지 추가로 자신의 아동계좌에 저축 가능하다. 아동수당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일 지자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 가정 아동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신규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3) 후원자 연계 및 후원금 관리

시설장은 지역 사회 내에서 독지가 및 후원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 인력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결연대상이 되어 후원을 받게 된다. 후원금 계좌 명칭은 아동 개인 명의로 하되, 아동 임의로 현금을 과다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에서 관리를 돕는다. 시설장은 후원금이 많이 입금되는 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 적금 적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차원에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후원이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후원 또는 결연은 공동생활 가정보다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다.

(4) 치료비 지원

지자체에서는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건강검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 중인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어 심리치료 개입이 필요한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 행동 개선 등을 돕는다. 아동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가 언어, 미술, 놀이치료를 통해 지원되며, 종합심리검사와 주양육자 상담 지원도 제공된다. 또한 아동-원가족 면접교섭 및 원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현재 시설보호 중인 아동의 대다수는 심리·정서적 취약성, 행동문제 등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심리치료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입소 아동들은 단체 생활 부적응, 시설에 대한 낙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다수 경험한다.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나 보호대상아동의 심리치료를 대해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바우처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설 내 정신 및 지능 문제가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종사자들은 보호아동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심리정서 지원 및 정신과 치료비 무상 지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5) 대학진학 자금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

시설보호 아동 1인당 5백만원 이상의 대학진학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입소 전·후, 시설적응 기간, 적응기간 경과 후, 보호기간, 보호종료 후 등의 10단계에 걸친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 1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설보호 아동에게 별도의 1인실 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해야 한다. 보호 종료 전에는 대학 진학, 취업(예정) 유무, 등록금 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자립수당 신청 여부 등에 대한 자립준비 점검을 실시한다.

보호종료 후 5년까지는 안정적 자립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정원이 30인 이상인 아동양육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인 이상(100명 이상일 경우 1명 추가) 배치되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은 필요 인원을 배치하며, 시·도별 아동 100명당 1명씩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아동 규모가 적은 시설에서는 자립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소규모 시설은 수급비, 학원비, 용돈 이외에 사업비나 후원금이 부족하므로 전문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 진행에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6)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연 1회 이상 원가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 교육 등도 연 1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있다.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은 원가정 복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원이다. 그러나 다수의 시설에서는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학대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즉, 가족관계 회복에 단계별로, 오랜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개입을 통해 부모나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 후 자녀와의 관계 개선과 부모교육 및 상담이 지속되어야 하며, 시설 종사자가

부모와 아동 간의 중간 매개자로서 역할하면서 원가족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면접교섭 등 형식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7) 아동양육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 생계급여(개별급여) 지급

보호연장 기간에 아동양육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아동이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아동 본인 계좌로 일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일반 생계급여 지급액은 2023년 기준 최대 약 62만원이나, 소득·재산에 따라 지급액 상이하다.

(8)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이후 행복e음을 통해 지급한다. 자립정착금은 1인당 최소 1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동 명의의 자립정착금, 아동발달계좌 지원금, 자립수당은 시설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40만원씩 현금 지급한다. 신청 자격 요건은 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되고, ②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이다(두 조건 모두 충족 필수). 지원방식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서울 50:50, 지방 80:20이다.

2) 시설보호 청소년 지원 정책

아동보호체제와 청소년보호체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기 구축되어 있으며,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보호 아동과 청소년은 입소시설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수준이 차별적인 문제점이 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입소 대상은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 중 학업 및 자립의지가 있거나,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 중장기 청소년쉼터 설치기준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 비하면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3]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의하면,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건물형태는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상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어 주거환경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침실의 경우,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침실 1개 당 정원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 2]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시설기준’에 따라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로 하되, 예외적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침실 1개 정원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6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전용면적 82.5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용이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거주하는 시설이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쉼터는 쉼터의 운영 목적에 따라 중점 지원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상담지원, 청소년활동지원이 제공된다. 둘째,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목적인 경우, 학업 유지와 직업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가 목적인 경우, 가정·사회적응 지원에 중점을 둔다.

이용대상	목적	서비스 요소	활동내용	산출근거	성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갈 곳 없는 청소년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 호	• 생활지원 • 건강지원 • 상담지원 • 청소년활동지원	• 의식주 지원 건수 • 의료지원 건수 • 개인·집단상담 건수 • 청소년활동 참여 건수	• 보호인원 • 만족도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립지원	• 학업지원 • 직업지원	• 교육지원 건수 • 자립지원 건수	• 학업취득 인원 • 취업인원
	청소년이 가정·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가정· 사회복귀 지원	• 가정·사회적응 지원	• 사회관리 건수	• 가정·사회 복귀 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p281.

그림 V-5.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최장 4년까지 10명 이내의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학업(검정고시 등 포함) 및 자립지원(취업지원 등)을 목표로 하되, 생활지원, 상담·진로·적응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고,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특성과 서비스 욕구를 고려하여 성별을 분리하여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운영된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제한적이며, 보호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또한 시설 입소기간 아동발달지원계획과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주요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관리서비스, 직업지원서비스, 학업지원서비스, 정서적 지지 및 상담서비스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V-10>에 정리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보호대상아동 대비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를 아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나, 청소년쉼터는 시설별 지원 형식으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표 V-10. 중장기 청소년쉼터 청소년 지원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기초생활관리 서비스	• 의식주 생활관리: 취침 및 기상, 식사, 공동생활규칙 준수, 공동생활 적응, 갈등 관리 • 경제 생활관리: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 등 • 건강 관리: 정기적 건강검진, 응급치료, 질병치료 등 • 문화체험 활동: 다양한 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직업지원 서비스	• 직업능력평가: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 등 • 취업준비: 직업정보 탐색, 구직전략세우기 등 • 취업훈련: 인턴십 체험, 직업전문학교, 자격증 취득교육 등 • 취업지도: 구직활동지원, 직업생활유지 지원 등
학업지원 서비스	•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준비 • 중·고등학교 복학지원 및 학교적응 지원 • 개인학습지도: 학습방법 교육 등 • 학비지원
정서적지지 및 상담서비스	• 개별사례관리 • 개인상담 • 사례회의 • 집단상담: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 훈련, 자존감 향상 훈련, 진로탐색,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등 • 교육훈련: 성교육, 금연교육, 금전관리, 경제교육, 식습관, 예절교육 프로그램(심폐소생술) 등

* 출처: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Ⅱ). p28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해서는 매월 40만원씩 현금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단,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며, 만18세 이후 퇴소하고,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퇴소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을 것)로 자격기준이 제한된다. 또한 시설 퇴소 시 지자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LH공공임대주택, 행복기숙사(사립),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사회적기업 취업, 청년 도전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도약 장학금, 청소년 국제교류가 지원된다.

지속해서 지적되어 온 부분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자립지원이 청소년복지시설의 역할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위 법령에서는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청소년의 보호기간 중 아동발달계좌 등의 자산형성 지원, 주거지원, 실태조사,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핵심요소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무엇보다 이들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간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내 자립지원에 관한 별도 조항이 아래와 같이 2023년 10월 24일에 신설되었고,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예).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19761,20231024\)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19761,20231024)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1) 법률 제·개정(안)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지속되는 난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이다. 복지와 관련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대표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다. 양 법에서도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은 중복된다. 이와 함께 아동 업무는 보건복지부,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보호체계가 분절적이고 지원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발달주기에 따른 용어와 연령대를 구분하고, 복지 관련 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하여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대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자립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제32조의3)을 신설(2023.10.24)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간 격차를 좁힌 바와 같이 보호대상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 제·개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설보호 아동인 보호대상아동과 시설보호 청소년인 가정 밖 청소년은 특성이 다르므로 지원내용과 수준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진입기관에 따라 지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점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립지원의 격차가 컸는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진일보한 점은 고무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 청소년쉼터 주거환경 개선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중장기 청소년쉼터 건물형태는 단기 청소년쉼터와 함께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상가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이상 숙식하는 곳이므로 숙박형 생활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과 동일하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제안한다. 청소년에게 가장 가정과 유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가지역 내 건물은 거주형태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침실은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공간’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중장기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19세 이상의 비율이 높으므로(이상정 외, 2020) 가급적 최소한의 인원이 침실에 배정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상적으로는 1인 1실이나, 침실

1개의 정원을 최소 2~3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추가하여 제한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 침실 1개의 정원은 3명 이하이다.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중장기 청소년쉼터의 주거환경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퇴소 규정 보완

「아동복지법」 상 보호대상아동은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과정을 통해 시설입소가 결정된다. 그러나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입소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입·퇴소 시 미성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보장될 수 없다. 「민법」 제913조와 제914조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양육권과 거소지정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이나 학대는 보호자 연락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일부 청소년은 보호자가 없다고 숨기거나 거짓 연락처를 안내하기도 한다. 일부는 청소년쉼터 이용을 거부하기도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에서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기타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등의 사유로 가출한 청소년을 퇴소 조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미성년자 양육권과 거소지정권 위배 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에서의 퇴소 규정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점이 있다. 동 조항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거나 청소년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문란한 행위를 한 경우 퇴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청소년보호체계에서의 공적 책임 규정 강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제4항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책임을 민간기관에 떠넘기는 듯하다. 아동보호체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책임을 강화하였듯이 청소년보호체계에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가야 한다.

넷째,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 정체성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을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나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의 중간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통계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수준, 종사자 자격기준이나 처우 등도 낮아 아동양육시설과 차이를 보인다. 공동생활가정이 위탁가정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 내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위탁가정의 부족한 공급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기능도 있다. 소규모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보호의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도 아동양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제도 보완이나 예산·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2)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사항

아동보호체제와 청소년보호체제는 공적으로 구축된 상황이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적 아동보호체제는 개편되어 현재 고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보호조치에 있어 아동에 대한 대규모 시설보호를 지양하고 소규모 인원이 보호받는 가정형 거주 형태의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을 통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체제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쉼터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이상적으로는 아동·청소년보호체계가 통합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자립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관련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법·제도 및 세부 지원정책 수립·시행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위기 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호대상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의 특성이 다르므로 완벽한 통합 체계 내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기관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되 지자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같은 별도의 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념 명확화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혼재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경우, ‘가정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형 거주’, ‘가정위탁’ 등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시설보호와 가정형 보호의 중간 형태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보호대상아동’,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중심의 용어 설정과 지원대상자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즉, 보호형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주무부처 이원화에 따른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정외보호 방향성과 지원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능 중심 청소년쉼터로의 개편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이용 기간 중심으로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되어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청소년쉼터의 수는 수요 대비 부족하고, 지역·유형별로도 불균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조기발견·개입,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중심 등으로 논의될 수 있다.

황진구와 김지연(2020)은 현행 기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청소년쉼터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일시 이동형 쉼터는 일시 아웃리치센터로, 일시 고정형 쉼터는 3일의 일시형 청소년쉼터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3년의 일반형 청소년쉼터로, 그리고 자립지원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특정 쉼터에 인력이나 예산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능만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종사자의 소진을 증가시켜 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표 V-11. 청소년쉼터 유형 개편안(기능 중심)

현행(기간 중심)			개편안(기능 중심)
일시쉼터 (일시~7일)	이동형 쉼터	(변경) ⇨	아웃리치센터(일시)
	고정형 쉼터	(변경) ⇨	일시형 청소년쉼터(3일)
단기쉼터(3개월)		(통합) ⇨	일반형 청소년쉼터(3년)
중장기쉼터(3년)			
자립지원관(1년)		(유지) ⇨	자립지원관(1년)

* 출처: 황진구, 김지연 (20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p86.

3) 전문인력 확보 방안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⁵⁰⁾, 「아동복지법」 시행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동분야 사업안내와 청소년사업 안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 방안보다는 종사자 역량강화와 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역량강화의 필수 요건은 적정 수준의 처우 보장이다.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원만 다를 뿐 시설 운영의 목적이나 기능,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는 자격요건은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지역 및 시설별로 처우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동양육시설은 전체적으로 호봉제가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나, 공동생활가정은 일부 지자체에 한해 최근 호봉제가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은 매년 인건비 금액을 특정하여 지원하므로 승진과 호봉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호봉제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모두 24시간 종사자가 상주하는 생활시설이다. 특히 청소년쉼터는 야간에 청소년의 자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밤에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휴게 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예산 배정 시 입소 청소년 인원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단기 청소년쉼터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예산 배정 시 수용인원과 보호기간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도 운영비 현실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종사자의 3교대 근무가 시행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인력 증원을 통해 적절한 업무량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은 상담, 서비스 지원, 돌봄, 사례관리, 행정업무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소진되는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 일부 아동·청소년의 자해나 자살 시도, 또래폭력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이나 보호자로부터의 종사자에 대한 폭력과 폭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종사자 인권, 안전, 건강지원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

5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다. 또한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의 교육보다 변화하는 아동의 특성과 정신건강 관련 교육, 사례관리 교육 등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대, (성)폭력 등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절실하다.

셋째, 자립준비 지원 인력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인원에 따라 종사자 직종, 수, 배치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인원이 10인 이상 30인 미만이거나 30인 이상이어도 동일하게 1명씩 배정이 되며,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인원이 10인 미만이거나 공동생활가정인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는다. 청소년쉼터에는 자립지원 관련 전문인력이 부재하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 준비로,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다수 아동의 자립지원 계획을 돕는 것은 업무부담이 상당하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이나 주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사회복지사들은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주요 공통점은 원가정으로부터의 학대로 인한 심리·정서적 취약성,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의 증가,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가족관계이다.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최근 시설보호가 아닌 가정형 보호 활성화와 원가정 복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반면, 시설보호 청소년은 자립(준비)지원 확대와 원가정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완전히 신규는 아니나 현 시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정신과 진료비 지원 확대

최근 시설에서는 심리·정서적 취약, 문제행동, 약물복용, 경계선지능, ADHD 등의 문제

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증가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다. 시설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아동·청소년에게 꾸준한 정신과적 진료와 치료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일부 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학대피해를 경험한 경우, 폭력성, 우울감, 자해 시도도 있어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특성 변화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나 특성화가 지속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상담·심리 치료비를 지원하고, 종합 심리검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필요한 아동에게 모두 지원할 수 없고, 신청주의가 적용되어 치료비 지원을 신청한 아동만 지원받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전국 시·도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지원팀을 두고, 전문 인력 3인이 학대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거점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동시에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시설보호 시범사업 확대

보호대상아동 가정외보호의 경우, 가정위탁제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보호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전국 시·군·구에 위치하고 있고, 아동보호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임성은 외, 2019).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의 집단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낙인감이 적고 소규모여서 상대적으로 개별서비스가 용이하고 사회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공동생활가정의 취약점으로는 보호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충분히 받기 어렵고,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증가에 따른 공공성 약화와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지적되었다(임성은 외, 2019). 시설보호 축소와 가정형 보호 확대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아동의 관점에서 소규모 인원의 아동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일시보호를 받다가 원가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아동이 보호받고, 적정 수의 종사자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정익중(2014)의 연구에서는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을 소규모 그룹홈 형태로 분화하고, 지역별로 개인이 운영 중인 여러 개의 그룹홈을 법인 중심의 위성형태로 구축하는 센터형 그룹홈 모델을 제안하였다. 1개 사무국이 종사자 교육과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그룹홈은 아동보호 업무에만 전담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구세군 서울후생원이 공동으로 소규모 가정형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1년간 추진한 바 있다.

셋째, 가족관계 회복 지원

가정외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외보호의 방식과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설에서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다수는 여러 이유로 가족과의 관계 회복이 힘들거나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거나 당사자가 완강히 거부할 경우, 원가정 복귀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5. 소결

본 연구에서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보호체계, 주무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 수행되었고, 법적 및 정책적으로도 일정 수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시설보호 아동 현황은 저출산 현상과 동반하여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 원인은 2015년 이후 최근까지 ‘학대’가 가장 많으며,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책방향의 전환으로 인해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대규모 시설보호보다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보호보다 양육시설 중심의 시설보호의 비중이 크다. 시설보호 청소년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3만 2천명까지 이르렀다가 코로나-19 이후 2만명대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의 수는 부족하며, 지역별·유형별로 공급의 편차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가 달라 초기 진입 기관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받는 지원의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법적·정책적 개선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자립지원’에 대한 별도 조항(제32조의3)을 신설(2023.10.24)하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간 격차를 좁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주요 법적·정책적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건물형태는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상가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장기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이상 생활하는 곳이므로 ‘상가건물’을 제외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과 동일하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제한한다. 또한 침실은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공간’으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침실 1개의 정원을 최소 2~3명 이하’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퇴소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입소 시 보호자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양육권과 거소지정권 위배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퇴소 규정에서 퇴소 이유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자립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관련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아동·청소년의 위기 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민간기관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되 지자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

넷째, 학계와 현장에서 지속된 요구로, 기능 중심 청소년쉼터로의 개편이다. 이용자에 초점을 맞추어 조기발견·개입,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중심의 쉼터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역량강화의 필수 요건은 적정 수준의 처우 보장이다. 지역 및 시설별로 처우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호봉제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 준비로, 시설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부재하여 자립준비 지원이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미흡할 수 있다.

일곱째, 최근 시설에서는 심리·정서적 취약, 문제행동, 약물복용, 경계선지능, ADHD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지원 중 정신과 진료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가족관계 회복과 원가정 복귀가 가정외보호의 중요한 원칙이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거나 당사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여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 제6장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현황
-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법 제도 현황
-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 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 5. 소결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⁵²⁾ 현황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일상적으로 가족 돌봄을 했기 때문에 가족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힘든 상황을 개인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효를 중요시하는 사회문화로 인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숨겨진 집단(hidden army)’로 불리기도 한다(Leu & Becker, 2022;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때로는 돌봄서비스의 가장 최일선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가족 돌봄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잊혀진 최전선(forgotten front line)’에 비유되기도 한다(Wayman & Sheila, 2022; 허민숙, 2022에서 재인용).

현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해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 2014(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에서 규정한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정의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장애, 질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이나 친척을 돌보는 자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경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지만 후생노동성에서

51) 이 장은 이은주(동국대학교 교수)가 작성하였음.

5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연령적 기준이나 명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 케어러와 혼용해서 사용되었음.

‘원래 성인이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이나 가족 케어 등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연령범위나 개념 정의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케어러 연맹의 홈페이지에 ‘가족 중에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른이 해야 할 케어의 책임을 떠안아 가사나 가족 돌봄, 개호, 감정적인 부분 지원 등을 행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안주영, 2022). 스웨덴의 경우 영국 사회학자 베커가 제시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들은 보통 성인이 감당하는 수준의 실질적인 돌봄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돌봄을 제공받는 이는 주로 부모이며 때로 형제자매나 조부모, 그 외 장애, 만성질환, 정신질환, 기타 돌봄이나 감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친인척인 경우도 있다(Leu & Becker, 2017)”는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하수정, 2022). 미국은 8~18세의 어린 간병인을 “Young Caregiver”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장애나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의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25세 이하 청년을 의미하여 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 이외에 친구와 같이 타인을 돌보는 역할까지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유정원, 강보민, 2022). 캐나다는 25세 이하 청년 중 가족구성원의 만성질환, 장애, 정신건강, 또는 약물 사용 문제, 노화로 인한 문제로 상당한 시간동안 무보수로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신미정, 장정은, 김진영, 2022). 이와 같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영국의 정의를 기준으로 정하고 비슷하게 개념화되었으며, 국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유정원, 강보민, 2022).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정의에 의하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 등을 돌보는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호주, 일본 지자체)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관계부처 합동, 2022). 정부는 2022년 전국 가족 돌봄청년 통계를 확보하고 즉각 지원 가능한 가족 돌봄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19세 미만과 19세~34세 집단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현황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픈 가족원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을 ‘가족 돌봄청년’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식적인 정의를 구체화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강선우 의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가족 돌봄 청소년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양능

력이 있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며,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영석 의원은 단독 법률 제정을 발의하였는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제2조(정의)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하 “돌봄 대상가족”이라 한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 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발생 비율과 현황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13~18세 가족 돌봄 청소년 응답자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소년’ 6.2%, ‘가족 돌봄 청소년’ 2.4%, ‘주돌봄자 청소년’ 0.9%로 나타났으며, 1~3%의 청소년이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함선유, 2023). 국가별로 연령 범위가 다르지만, 영국은 11~18세의 8%, 뉴질랜드 15~24세 8%, 스웨덴 14~16세 7%, 이탈리아 15~24세 7.2%, 스위스 10~15세 7.9%, 네덜란드 13~17세 6%, 독일 12~17세 5%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통계비율을 우리나라 11~18세 인구 368만 4,531명에 적용해보면, 약 18만 4천명 ~29만 5천명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허민숙, 2022). 미국의 8~18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추정인구는 130~140만 명이며, 일본은 18세 미만 중학생의 6%와 고등학생의 7% 약 10만명, 호주는 25세 이하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유정원, 강보민, 2022). 최영준, 김보영, 김윤영, 임소현과 오서은(2022)의 연구⁵³⁾는 ‘18세~34세 이하 청년 중 건강만족도가 1 이하인 가구원과 함께 사는 집단’을 영 케어리로 정의하여 약 3.9%의 청년집단을 추정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추출된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청소년 연령 18~25세 연령기준에 해당되는 잠재적 사각지대 집단을 영 케어리로 추정하였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일찍 시작한 영국은 Joseph, Becker, Becker and Regel(2009)이 개발한 다차원 사정목록(MACA-YC18)에 기초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서비스 활동을 조사하였다. 다차원 사정 목록 척도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돌봄서비스를 6개 영역(가사(청소, 요리 등), 가정관리(집기수리 등), 개인수발(탈착의 지원 등)), 정서적 돌봄(옆에서 지켜보기, 말벗하기 등), 형제자매 돌봄(등교길

53) 최영준 외(2022)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에 기인하였으며, 연구대상 표본은 저소득층 표본이 약 45%로 나타났다.

동행 등), 재정 및 실제적 지원(은행업무,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가사 83%, 가정관리 51%, 정서적 보살핌 48%, 형제자매 돌봄 34%, 개인수발 10%, 재정 및 실제적 지원 4% 순으로 나타났다(Joseph et al., 2019; 정소연, 서홍란, 홍순혜, 2023에서 재인용). 영국은 「돌봄법 2014」에 의해 목록이나 용변 보조와 같은 개인수발, (신체) 들어올리기와 같은 신체적 활동, 약물복용 지원을 아동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부적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성인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나 가정의 재정관리도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정소연 외, 2023).

우리나라 조사결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돌봄 제공으로 인해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 등을 준비하고 선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였으며, 정신건강 문제가 위험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약 59%는 가족을 돌보는 상황을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가족 돌봄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28%로 나타나 향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가능한 재가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지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계비 지원으로 나타나 75.6%는 돌봄 지원이나 취업, 심리상담 등 보다 경제적 지원을 더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함선유, 2023). 가족 돌봄청년들은 돌봄과 가사부담으로 일반 청년(8.5%)보다 우울감 유병률이 61.5%로 약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돌봄기간이 46.1 개월로 약 4년,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1.6시간으로 이들의 36.7%가 진로와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가족 돌봄 청년들은 휴식, 문화여가, 심리상담,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나타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표 VI-1>과 같다(보건복지부, 2023e).

표 VI-1. 가족 돌봄청년의 서비스 욕구(%) (단위: %)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휴식 지원	문화 여가	심리 상담	돌봄 지원	취업 지원	가사 지원	진로 교육	법률 지원
75.6	74.0	71.4	69.9	65.7	61.5	59.5	56.7	56.0	47.5

* 출처: 보건복지부 (2023e).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p8에서 발췌 및 수정.

3) 돌봄서비스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학교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를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 사회적 관계나 활동 등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우선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돌봄서비스 부담으로 인해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결석이나 지각의 빈도가 높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학교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최영준 외, 2022).

성장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돌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지장을 초래하는데, 학령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돌봄 활동으로 결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캐나다 연구결과 학교 결석비율이 10.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허민숙, 2022). 일본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학교 결석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학습능력 부진, 위생 상태, 또래와의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정원, 강보민, 202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에 경험해야 하는 돌봄 부담을 크게 느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돌봄으로 인해 병원이나 복지 행정, 간병과 치료 등에 대한 통합 정보 부재로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였고, 집안일과 일상생활 수발, 의료 관련 수발, 신체 돌봄으로 가족 돌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돌봄대상자를 밀착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보다 많은 책임감과 노동을 감당하고 있었다(관계부처 합동, 202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또래와 고민을 나누기 어렵고, 가족 돌봄 상황과 관련하여 상담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어 고립감이나 우울감이 심화되고 있었다. 청소년기 경험이 부족하여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심층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성인이 부재하고, 이전 세대보다 가족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형제자매 수도 적은 편이었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돌봄 과정에서 생계비·가사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장기적 돌봄 제공으로 인한 생계부담을 느껴 파산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 돌봄과 생계에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다보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위험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즉 현재 빈곤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당장 생계비 마련을 위해 취약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생애 전반의 취약 가능성이 높아져 빈곤의 대물림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관계부처 합동, 2022). 가족 돌봄 실태조사 결과 복지지원 이용 경험비율이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도 미이용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전부 또는 일부라도 돌봄서비스를 지출하는 경우 월평균 비용이 약 62만원인데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도 응답자 전체 14%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 2023e).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법 제도 현황

1) 국내 지원 제도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독 법률은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청년 지원 법안」이 있다. 이 법안은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돌봄 대상가족의 소득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계획)

제6조(실태조사)

제7조(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위원회)

제8조(가족돌봄서비스), 제 9조(상담지원), 제10조(교육지원), 제11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 12조(자립지원)

제13조(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 출처: 서영석 (2023b).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의안 원문】. p5-p11 일부 발췌.

강선우 의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기존의 위기청소년 범주 안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제2조제7호에 신설하였으며,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다. 제16조의2(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이 정책 수립과 시행의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조치를 법제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신속하게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다. 최근 가족 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 사례를 보면 다음 <표 VI-2>와 같다.

표 VI-2.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사례

내용	서울특별시 조례(2022.10.17.제정)	서대문구 조례(2022. 12. 30 공포)
목적	제1조 목적 -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제1조 목적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실현
목적	제2조 정의 -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제 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제2호 정의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가족·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지자체 장의 책무, 지원계획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	제4조 지원계획 수립 -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필요정책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하여야 함

내용	서울특별시 조례(2022.10.17.제정)	서대문구 조례(2022. 12. 30 공포)
실태조사	제 6조 실태조사 등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제5조 실태조사 -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제7조 지원사업 -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지원사업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	제3조 책무 2항.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의체 설치 운영		제7조 협의회의 설치·운영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법인·단체등에 자문할 수 있다	
예산지원, 시설 설치 운영	제7조2항 -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시설 설치·운영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업무 위탁, 협력체계 구축	제9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할 수 있다.	제 10조 업무의 위탁 -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1조 협력체계 구축 -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내용	서울특별시 조례(2022.10.17.제정)	서대문구 조례(2022. 12. 30 공포)
홍보 및 교육,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		제12조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정 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 고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대하여 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	

* 출처: 임정현, 김정현, 우아영, 윤연숙 (2022).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보고서. p12~p13.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관련 정책⁵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정책은 부재하지만 2023년 7월 시행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일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7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업 대상자는 질병(중증질환)·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만 13~34세 청(소)년인데, 연령 하한선은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체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령 상한은 지자체 조례나 지역 상황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에서 ‘가족’의 기준범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을 돌보는 경우로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하며 동거 가족⁵⁵⁾을 원칙으로 하였다. 돌봄서비스 제공 원칙은 청년이 돌보는 가족의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자 본인이 가족 돌봄청년인지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2023년 9월 기준 16개 시·도 51개 시·군·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가족 돌봄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은 서울(서대문구), 부산(영도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대구(서구, 달서구), 인천(연수구, 부평구), 광주(5개구 전지역), 울산(5개구 전지역), 경기(광주시, 광명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강원(동해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54)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7~p12.

5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여 실질적으로 동거하는 경우를 포함.

부여군, 홍성군), 전북(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영암군, 해남군), 경북(안동시, 구미시,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울진군), 제주도(제주시)이다.

① 서비스 내용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 대상에게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병원동행, 심리지원, 교육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로 구성되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서 일정시간 동안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3. 기본 서비스 내용

	내용
재가 돌봄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 신체·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가사 지원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서비스 제공
동행 지원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 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 출처: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7.

나. 특화 서비스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모델 중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기획하는 것이다.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특화서비스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요 서비스 유형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휴식 지원, 간병 교육, 독립생활 지원이다.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단가는 다음과 같다.

표 VI-4. 특화 서비스 내용

종류	단가(월 만원)	내용
식사·영양관리	25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병원 동행	24	가동이 불편한 돌봄대상 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 수납 지원(월 16시간 이내)
심리 지원	24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휴식 지원	6.3	돌봄 대상 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간병 교육	과정 당 15	간병 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독립생활 지원	12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 출처: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8.

지역별 특화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는데 가족 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전남 영암군과 제주 제주시에서 제공될 서비스 계획을 사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전남 영암군

영암군은 가족 돌봄청년을 대상으로 간병교육과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병교육은 간병과 돌봄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가족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간병 기술과 응급상황 대처법, 돌봄 스트레스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총 8회 1회기 1시간씩 1~4회는 질병에 대한 이해, 식사, 이동 욕창 관리 등을 안내하고, 5~8회는 낙상, 기도 막힘 등 응급상황 대처와 돌봄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기술을 교육한다. 독립생활 지원은 월 3회 1회기 100분씩 진행되며, 자산 평가 및 관리, 경제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 임대차 계약 등 일상 법률 지식 교육을 하는 일상 법률, 심리지원, 진로 멘토링과 취업 컨설팅 등 심리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나. 제주도 제주시

제주시는 가사부담이 큰 가족 돌봄청년과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초기상담을 통해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 음식 기호, 알레르기, 치아상태 등을 파악한 다음, 맞춤형 식단 구성 및 식사제공(도시락 배달 등)을 하면서 식습관과 위생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는 주3회 이상 제공한다. 심리지원 서비스는 초기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를 한 다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대처 훈련, 정서적 지지,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한다. 심리지원 서비스는 “마음 디딤돌” 서비스로 월 4회 1회

50분씩 1:1 개인상담 및 1:3~1:5 집단상담으로 제공된다.

② 서비스 제공방법

가족 돌봄청년이 돌보는 대상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서비스 제공량(시간)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개인별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과 서비스 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A형은 돌봄과 가사 모두 필요한 경우, B형은 가사 서비스만 이용할 경우이며, C형은 돌봄 대상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나 자체장의 인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5. 서비스 제공 방법

유형	시간(월 시간)	이용 조건
A	36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가사 모두 필요
B	12	가사 서비스만 필요
C	72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해서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조건인 경우

* 출처: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7.

③ 서비스 이용원칙

일상생활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가 높은 사람이 우선 이용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을 차등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가.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지자체는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하고 이용자는 특화서비스를 선택한다. 서비스 필요에 따라 A, B, C, D형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이용에 차등이 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A형, 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형,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C형,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 등)를 받고 있는 경우 D형을 이용할 수 있는데, A~D 형 이용 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특화 서비스를 기준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상자가 정부 지원 내에서 이용한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표 VI-6. 서비스 이용원칙

유형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A	36시간	1개 이용
B	12시간	2개 이용
C	72시간	
D		2개 이용

* 출처: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10.

나. 이용자 본인부담금 결정

일상돌봄서비스는 기존 지역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와 이용 유도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비가 부과된다. 대상 간 형평성과 서비스 필수성에 의해 본인부담비율을 설정하였는데,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 중위 소득 160% 이상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단 본인부담 100%이다.

표 VI-7. 서비스 본인부담비율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160%	20	30
160% 초과	100	100

* 출처: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10.

④ 제공방식과 추진체계

가. 서비스 제공방식

지자체는 발굴과 신청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욕구사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바우처를 사·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 후 바우처로 결제한다.

나. 서비스 추진체계

중앙부처인 복지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앙과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VI-8. 서비스 추진체계

복지부	지자체 공모, 선정 및 사업 총괄 관리, 중앙-지역, 지역-지역간 협업 체계 구축
광역 지자체	시·도 단위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제공기관 확보 등 지역사업의 총괄 관리 - 시·도 단위 추진단은 복지정책 총괄 부서 등에 지역사회서비스 담당, 사업대상 담당 등으로 구성 - 기초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시·군·구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배분,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지역사업 총괄 관리
기초 지자체	시·군·구 단위 추진단 및 민·관 협업체를 구성, 지역 내 대상자 발굴, 신청 등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가족 돌봄청년: 학교, 병원, 청년센터 등 기존 체계 활용
중앙-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	지역의 사업기획부터 실행까지 전과정 지원, 주기적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애로사항 해소 등

* 출처: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10.

⑤ 모니터링 및 평가

정부는 일상돌봄서비스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점, 고도화 효과 등을 분석하고, 실증적 근거를 확보한 다음, ‘일상돌봄서비스’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홍보물을 마련하고 보도자료 등에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대상자 수 및 사업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가. 모니터링

사회서비스지원단(중앙, 지역), 지자체, 지역 전달체계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과 주기적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비스별 제공기관과 함께 서비스 제공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나. 효과성 분석

돌봄서비스에 대한 별도 연구를 통해 사업 효과 및 개선점을 분석한다. 서비스 제공 전·후 대상자의 삶의 질 변화, 이용자 만족도 및 지역의 변화 등을 지표화하여 분석하고 실증근거를 확보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효과 분석을 통해 서비스별 효과성 분석 및 제도 운영상 개선방안 등을 분석해 차년도 추진 시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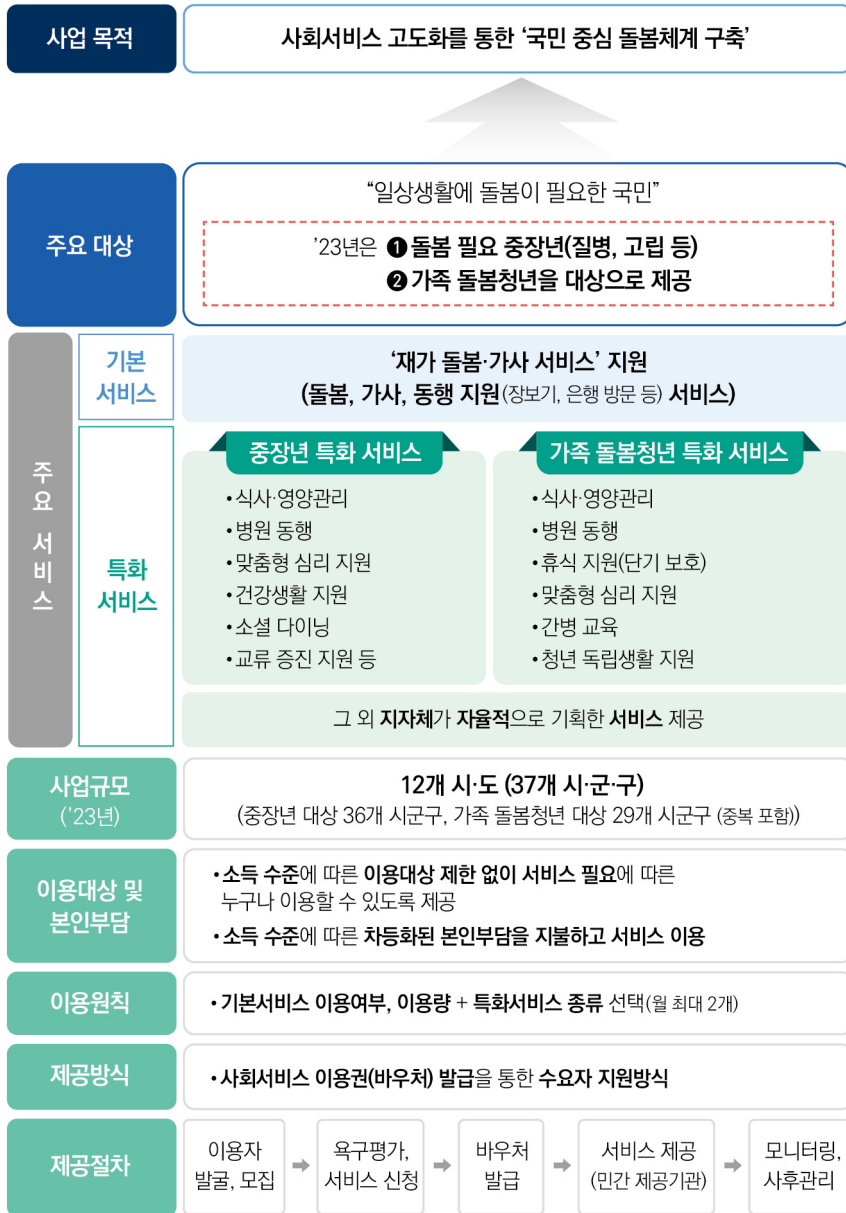


그림 VI-1.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체계도

* 출처: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p5.

(3)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①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정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목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 모델을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여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기초욕구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와 대행을 하는 것이며, 인구 규모에 따라 전담인력(케어전담팀 신설 등)을 배치하고, 케어안내창구 업무 등을 지원하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한 수요 파악이나 신청·접수를 지속하거나 병행하였다.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케어회의’ 운영하여 읍면동 등에서 의뢰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종합적 욕구사정과 심층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운영은 시·군·구 본청 융합서비스팀이 간사를 담당하며 보건소, 시·군·구 서비스 담당부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기관 등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여 안산 ‘거점형 케어안심 주택 통합돌봄 협력모델’, 청양 ‘찾아가는 의료원’ 부천 ‘방문 간호센터’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거주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의료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의 추가 특화 프로그램인 광주 서구 ‘재택 의료센터’, 안산 ‘집으로 온 주치의 2.0’, 부천 ‘재택 의료센터’, 진천 ‘생거진천 재택 의료센터’와 같은 방문의료 사업을 추진하였고, 진천 ‘우리동네 돌봄 스테이션’ 통합 간호 사업, 부산 북구 ‘찾아가는 통합안내 창구’ 방문진료를 실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2d).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하여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그러나 사업지원 대상자 중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중복 수급을 차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b).

③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노인의료돌봄 지원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마련하여 지역에서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주거 등 돌봄과 재가의료 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존에 살던 주거지에서 생애 말까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가 의료 서비스 확대와 지역자원 및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계 및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의 추진원칙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유사서비스 중복지원은 지양하지만 시간이나 유형에 따른 서비스 중첩 지원은 가능하다. 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과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다(보건복지부, 2023a).

④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만 18세~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 20%이상을 선정하여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가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23f).

(4) 지방자치단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① 서울특별시 지원사업

서울특별시는 2022년 12월 ~ 2023년 3월까지 서울거주 14~34세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조례」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을 가족 돌봄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조사결과, 참여 응답자 2,988명 중 가족 돌봄 청(소)년은 900명으로 추정되는데, 중고등학생 146명, 학교 밖 청소년 30명, 대학생 108명, 일반 성인 616명으로 일반 성인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청소년은 돌봄 대상 가족으로 조부모와 기타(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가 많았으며,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은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과 돌봄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었고, 돌봄 자체에 대한 어려움으로 외부 지원을 가장 필요시 하고 있었는데, 특히 학업 유지를 위한 외부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욕구는 생계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움 경로에 대한 구체적 정보제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수영, 민소영, 장연진, 양효안, 2023).

서울특별시는 2021년 11월부터 서울특별시청년지원센터 ‘생활안정지원사업’,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동안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립된 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 사업은 가족간병과 돌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위기돌봄지원금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청년층을 발굴하여,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돌봄청년들에게 생활위기지원금 이외에 자기돌봄지원금을 일정금액 이상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여 그들을 사회적 돌봄자로 인정함으로써 자기돌봄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하였다(임정현 외, 2022).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영 케어러 케어링’ 위기지원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 케어러의 위기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위기돌봄지원금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청년층을 발굴하는 것이다. 둘째, 영 케어러의 긴급 혹은 만성 위기상황 개선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셋째 영 케어러 위기지원사업을 통해 영 케어러의 사회정서적인 고립감을 해결하여 니트(NEET)청년, 은둔형 고립청년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한다. 사업기간은 2021년 11월 1회, 2022년 3회, 총 4회로 진행되었으며, 사업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만 19세~39세 미만 중위소득 150% 이하의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를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위기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생활위기지원금(생계비와 의료비)과 자기돌봄지원금(교육비, 심리정서지원비, 문화지원비)으로 구분된다(임정현 외, 2022).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 사업

서대문구는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먼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취약계층으로 조사된 전체 4,689명중 44명의 영 케어러를 발굴하여 관련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후 ‘서대문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고, 최초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뉴스로, 2022. 10. 4.). 서대문구는 2022년 3월 [가족 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협약식]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가족 돌봄청년’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22년 12월 ‘서대문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영 케어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돌봄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 심리·취업·학습지원, 인식·제도변화 등 4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돌봄 SOS 서비스’ 지원대상을 가족 돌봄 가구까지 확대하여 5대 돌봄(일시제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과 5대 중장기돌봄(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 사례관리, 긴급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연간 이용 한도는 일반 대상자의 2배인 320만원이며, 일시제가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지원 횟수도 2배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마음돌봄키트’를 제작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이 초기방문상담시 제공하며, 가족 돌봄으로 취업과 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영 케어러에게 교육비(교재와 학원비 등)로 회당 50만원씩 최대 2회 지급, 간병 최대 100만원 지급 등 맞춤형 비용을 지원하였고, 심리검사와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여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마을 변호사와 법률상담터 연계, 통합사례관리,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와 학습멘토링, 진로·문화멘토링,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서대문구는 2022년 기준 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 이후 가족 돌봄 청(소)년 44명을 발굴하여 지원하였는데, 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관내 40개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안내문을 제공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경우 서대문 복지 사각지대 신고창구로 연락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현황파악과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였다. 영 케어러에 대한 간병과 복지지원을 위해 ‘병원-복지서비스 원스톱 돌봄지원체계’를 확대하기 위해 관내 5개 병원(강북삼성, 동신, 서울적십자, 세란, 세브란스)과 실시하고 있는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병원들과 MOU 체계를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상담 매뉴얼’을 통해 복지종합상담, 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영 케어러의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안정 지원을 계획하였다(임정현 외, 2022).

서대문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특별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와 행정안전부 ‘적극 행정 신규 사례’로 선정되었다(한겨레, 2023. 7. 11.). 2023년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동행, 심리지원, 간병교육, 독립생활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서대문구는 영 케어러를 발굴하는데 기반을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구 희망복지팀은 ‘행복 이음’이란 시스템을 통해서 영 케어러는 발굴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등 영 케어러 구성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카카오톡 천사톡’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오마이뉴스, 2023. 4. 27.).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통합사례관리 체계로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까지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 VI-2]와 같다.



그림 VI-2. 서대문구 통합사례관리 체계

* 출처: 뉴스로 (2022. 10. 4.). 서울 서대문구, 전국 최초 영 케어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https://www.newsro.kr/%EC%84%9C%EC%9A%B8-%EC%84%9C%EB%8C%80%EB%AC%B8%EA%B5%AC-%EC%A0%84%EA%B5%AD-%EC%B5%9C%EC%B4%88-%EC%98%81-%EC%BC%80%EC%96%B4%EB%9F%AC-%EC%A7%80%EC%9B%90-%EC%A2%85%ED%95%A9%EA%B3%84%ED%9A%8D-%EC%88%98%EB%A6%BD-%EC%8B%9C%ED%96%89/>에서 2023년 9월 29일 인출.

③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는 2022년 8월 1일부터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가족 돌봄 청(소)년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복지담당자들이 장기요양급여, 장애인활동지원, 희귀질환자 등 돌봄서비스 수혜자가 있는 5,917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해당 가구의 돌봄 제공자, 돌봄에 해당하는 시간,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여 발굴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광주 in, 2023. 8. 22.). 광주광역시는 2022년 9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발굴을 위해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족돌봄 청년 발굴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서구는 중증장애인가구, 희귀난치질환자, 법정 한부모 가구 등 돌봄고위험군을 선정하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굴을 하고, 광주광역시 교육청, 청소년 지원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등을 통해 사례발굴을 시도한 다음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겨레, 2022. 9. 27.).

광주광역시 서구청과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돌봄사업’ 신청자격은 13~34세까지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돌봄대상자가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돌봄서비스 지원 시 기본 돌봄 서비스로 돌봄지원사를 파견(월 16시간)하여 청년들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식사지원, 만성 질환 돌봄, 장애 가족 돌봄 등을 들 수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공통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바로 서비스를 받지 못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 둘째, 본인의 자가 격리 또는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기격리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셋째, 갑작스런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전액지원하고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이며, 무료 이용한도는 연간 60만원 이내이다(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

가족 돌봄 청(소)년들을 위해 ‘내일희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자립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배움과 쉼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교육비(학원비 등)나 쉼 여행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서비스 대상자에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용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선결제

후 영수증 증빙을 통해 해당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립이나 자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

④ 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강남복지재단을 주축으로 2023년 3월 6일~23일까지 14~34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청년지원사업: 행복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업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50명이었으며, 사업 내용은 생계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자기 계발과 문화 여가를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강남구 특화 서비스는 세탁과 청소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주1회 2개월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지원 대상은 17명이었는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업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율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금 급여 지급 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할 수 있을 것이다(오마이뉴스, 2023. 4. 27.).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2022년 8월부터 ‘영 케어러 사회적 돌봄사업: 부모의 부모가 되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요양비 등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직접 파견하고 있다.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를 직접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급여 지급 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오마이뉴스, 2023. 4. 27.).

2) 국외 법률과 정책 지원

(1) 영국

① 정의와 근거법

영국은 「아동 및 가족법 2014」(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에서 가족 내 성인 및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를 영 케어러로 규정한다. 한편 후기청소년(18~24세)은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 이하 청년돌봄자)로 영케어러와 구분하며, 「돌봄법」(Care Act 2014)에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는 장애, 질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영 케어러)으로 정의하고 있다(김령희, 2021).

② 정책과 서비스

영국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문제에 대해 의회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는 정책 사안으로 2020년 초에 ‘영 케어러 의원협회(All-Party Parliamentary Group for Young Carers)’ 설립을 발표하여, 당파를 초월하여 모든 의원들이 영 케어러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개선을 논의하여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 케어러들이 직접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하여 자신들의 문제와 현안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김령희, 2021). 2014년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을 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 케어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지방정부 역할을 규정하였다.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역 내 영 케어러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 16세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당 최소 35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간병인 수당을 지급한다. 주 소득이 £128(약 20만 7천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주급 £67.60(약 1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간병인이면서 소득 지원(income support)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면, 간병인 프리미엄 제도의 적용을 받아 주당 £37.70(약 6만 1천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서 2019년 10월 최초로 ‘영 케어러 보조금(Young Carer Grant)’을 복지급여로 도입하였으며, 2021년 3월 기준 2,900명의 청소년들에게 86만 파운드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16~18세 영 케어러들에게 연간 1회씩 약 300파운드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용돈 개념의 지원금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영 케어러들이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또래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하에 보조금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소외된 영 케어러들에 대한 지원이 더 건강한, 더 멋진, 더 부유한, 더 공정한(Healthier, Smarter, Wealthier, and Fairer) 사회를 구축한다는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김령희, 2021). 스코틀랜드 UWS(Univ. of the West of Scotland)와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Oxfam)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 케어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보조금으로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보조금 정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령희, 2021).

표 VI-9. 영국 스코틀랜드 보조금 체계

기준	내용
신청자격	- 직전 3개월간 총 돌봄평균 16시간 이상인 스코틀랜드 16~18세 청소년 - 복수의 친인척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 합산 평균 16시간 이상 가능 - 돌봄시간이 35시간 초과인 경우 돌봄자수당(Carer's Allowance) 신청 가능
돌봄대상자 요건	- 복지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을 직전 3개월 이상 수령한 가족이나 친척을 돌볼 경우 신청 가능
금액	- 2021년 기준 연간 308.15파운드(약 48만원)
신청방법	- 직접신청, 온라인, 전화

* 출처: 김령희 (2021). 영 케어러 자원: 영국, 호주의 사례. p3.

아일랜드는 케어러 웰빙 리뷰를 통해서 영 케어러의 돌봄 역할, 자신을 위한 시간, 가정생활, 경제적 어려움, 평소 감정, 건강, 학업 또는 근로 상황 등 영 케어러에 대해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한 다음, 결과에 따라 영 케어러와 함께 가족 돌봄 계획을 수립한다. Family Carers Ireland Center의 간병인 지원 매니저는 간병인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개인과 가족별 여건에 따라 상담, 가정방문 서비스, 간병 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등 지원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 케어러의 고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 케어러 그룹을 운영하며, 그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지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24세 영 케어러들이 도서구입이나 온라인 강의 등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 케어러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임정현 외, 2022).

③ 법률과 지원정책 변화과정⁵⁶⁾

영국은 기존의 3개 법률과 6개 정책으로 분산된 지원방안을 통합하여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과 '돌봄법(Care Act, 2014)' 개정안을 마련하여 무급의 돌봄을 제공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영 케어러를 발견하고 그들의 욕구 평가와 지원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영 케어러의 권리를 증진시키도록 하였다(Alexander, 2021). 영국은 표 VI-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 6월 영 케어러를 포함한 케어러를

56) 박지영, 김병철 (2023). 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 케어러 정책에의 시사점 탐색. 발체 및 수정.

위한 국가전략(Dept of Health and Social Care, 2008)을 발표하여, 2018년까지 케어러 지원에 대한 국가정책과 10년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매년 2~4년 단위로 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박지영, 김병철, 2023). 영국의 영 케어러 정책은 지역사회 책임 강조, 가족접근방법,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아동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책임으로부터 아동 보호 원칙 아래 ‘사례발굴과 조기발견-인식 제고-성인 전환기 지원’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박지영, 김병철, 2023).

표 VI-10. 영국 영 케어러 정책 변화 추이

단계	연도	정책	정책 목표
1단계: 식별 및 조기발견	2008	국가케어러 전략(National careres strategy) 2002-2018	- 부적절한 돌봄으로부터 보호 - 교육, 성장 및 개발, 긍정적인 유년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공
	2010	인정, 존중, 지원: 케어러 전략을 위한 다음 단계 (Recognised, Valued and Supported:Next steps for the cares strategy) 2010-2014	- 학교 내 식별 및 지원 강화 - 자아 돌봄 인식 지원 - 학습 잠재력 및 지원 서비스 개선 - 조기 식별
2단계: 인식 제고	2014	케어러 전략-2차 국가 시행계획(Carers strategy-Second national action plan)2014-2016	- 인식 제고 및 촉진 - 영 케어러 식별 - 평등한 교육기회 - 영 케어러 평가 관련 법령 자문
	2016	2014년 돌봄법 개정 이후 각 지방 정부별로 Carer strategy 또는 Carer action plan을 수립·시행	
3단계: 전환기 지원	2018	케어러 시행계획(Carers action plan)2018-2020: 국가 간병인 전략의 대안	- 영 케어러 식별 - 교육 기회 지원 - 지원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청년 케어러로의 전환 지원
	2023	무급 케어러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unpaid carers)	

* 출처: 박지영, 김병철 (2023). 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 케어러 정책에서의 시사점 탐색. p2121의 〈표1〉 부분 수정.

영국 정책 변화 과정 1단계는 식별과 조기발견 시기이다. 이 시기에 수립된 2010년 전략은 영 케어러 식별을 위해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돌봄자로 인식하고 돌봄 기여의 가치를 인정하여 지역사회 정책 수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014년

실행계획을 통해 영국은 교육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영 케어러 식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에서 조기발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아동 및 가족법’과 ‘돌봄법’ 개정을 통해 영 케어러 식별과 조기발견의 주체를 지방정부로 법률에 명시하였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성인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도가 있는 18세 미만
- 둘째, 동일한 목적이라도 계약 관계이거나 자원봉사로 돌봄을 하는 영 케어러는 제외
- 셋째, 지방 정부가 돌봄을 제공하는 18세 미만 돌봄 당사자와 성인의 관계가 영 케어러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조건을 무시
- 넷째, 제공하는 돌봄은 신체적이고 정서적 지원을 포함

2단계는 인식 제고시기인데, 영 케어러의 욕구에 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인식 증가와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자선단체 Carers Trust와 Children’s Society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영 케어러 우수 학교(Young Carers in Schools Award)’를 시범운영하였는데, 이 학교는 영 케어러의 욕구파악을 위한 담당자를 배정하여 영 케어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인식증가를 유도하였다. 3단계는 성인 전환기를 지원하는 것인데, 지방정부가 청소년에서 청년기로의 전환기 평가 의무를 책임지고 있다. 전환기 평가대상자 조건은 첫째, 성인으로 전환이 필요한 돌봄과 지원 대상 18세 미만 영 케어러, 둘째, 성인기를 스스로 준비하는 18세 미만 영 케어러, 셋째,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의 성인보호자이다. 16세 전후에 ‘청년 케어러 평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주거, 대학교 및 추가 교육, 직업센터,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 지원체계 특징을 살펴보면, 영국은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 정부,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체계화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중앙과 지방정부는 조기발견과 성인 전환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 및 가족법’에 의해 조기발견의 의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중앙정부 보건사회복지부는 Carers Trust와 함께 조기발견을 위해 사회복지사, 교직원, 청소년 지도사, 스포츠 지도사 등의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 케어러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돌봄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청년 케어러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는 조기발견과 인식 제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2023년 1월부터 영국 정부는 영 케어러 조기발견을 위한 학교역할 강조를 위해 인구조사에 영 케어러 조사 항목(young carer indicator)을 추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학교에 '영 케어러 전담(Young Carer Lead)'을 배치하여 학생 대상 인식 제고 교육과 영 케어러 학업지원을 하고 있다. 영국 Sunderland는 '영 케어러 카드(Young Carer Card)'를 지급하는데, 이 카드는 돌봄 활동으로 인해 학교 활동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다. 이 카드를 제공할 경우, 영 케어러가 학교에 지각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방과 후 수업에 빠지거나 숙제를 하지 못할 경우 교사들은 이유를 묻지 않게 된다. 또한 이 카드를 소지할 경우 돌봄 대상자와 수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소지 가능하고, 형제나 자매를 데리러 갈 경우 학교에서 조퇴 할 수 있다. 그 다음 체계인 지역사회는 인식제고와 서비스 연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는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인식제고를 촉구하는데 대표단체 중 하나인 Carers Trust는 매년 '영 케어러 행동의 날(Young Carers Action Day)'을 개최하여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Action For Children 단체는 '영 케어러 헬프라인'을 운영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Family Action 단체는 영 케어러가 직면한 가족 문제해결과 지원을 하는데, 돌봄 방법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정보제공,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호주

① 정의와 근거법⁵⁷⁾

영 케어러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 가족, 친척, 친구를 돌보는 12~25세 이하 청소년을 지칭하며, 2022년 기준 15~24세에 해당하는 비율은 전체 가족 돌봄 제공자 중 4.4%로 최소 11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호주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관련법은 「돌봄법(Carers Act)」이며, 이 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고, Carer Gatewa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Carers Recognition Act 2022는 돌봄 제공자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하고 있으며, 돌봄 제공자의 경험과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57) 김정현, 박선영 (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발췌 및 수정.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정부와 비정부 조직의 책무가 요구되고 있지만,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독 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호주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돌봄 제공자의 하위범주로 인식하여 관련법에 기초하여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정책과 서비스

호주의 정책과 서비스는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포털 사이트 Carer Gateway를 통해 알 수 있다. 호주는 모든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요 서비스는 자조집단,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 상담, 교육, 긴급 돌봄 등이다. 호주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에 대해 자각하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코칭(carer gateway self-guided coaching)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필요한 실제 정보와 이용 자원이 무엇인지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다(김정현, 박선영, 2023). 또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1:1, 집단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Lifeline’이나 ‘Kids Helpline(5~25세 대상)’을 운영하고 있다(김정현, 박선영, 2023).

영 케어러를 위한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프로그램(Young Carer Bursary Program)’은 2015년부터 비정부기구인 Carers Australia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영 케어러들의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2019년 호주 정부는 돌봄자 270만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Carers Australia에 3년간 1,300만 호주달러 예산 지원을 발표하여 학비보조금 확대를 추진하였다(김령희, 2021). Young Carers Network는 더 많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SNS에 배너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김정현, 박선영, 2023). 2017년 평가 결과에 의하면, 학비보조금 정책은 학업 성취도 개선, 돌봄과 학업 병행 목적 달성, 상담이나 스포츠 활동 등 과외활동 증가, 경제적 부담 완화로 파트타임 중단이나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김령희, 2021).

표 VI-11. 호주 보조금 체계

기준	내용
신청자격	보조금 수령기간에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수학하며,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12~25세 영 케어러
선정과정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구분 - '가중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지원 필요성을 상, 중, 하로 구분 - 1~2단계를 통해 추천된 신청자 중 독립평가패널이 최종 선정
자격유지	- 선정 이후 6개월에 한번 자격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학교 미등록, 호주 영주권자 자격 상실, 다른 보조금이나 장학금 수령, 설문조사 미응답, 돌봄 역할 수행 중단, 학업을 미루거나 휴학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중단
금액	- 2021년 기준 연간 3,000달러(약 255만원) -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

* 출처: 김령희 (2021). 영 케어러 지원: 영국, 호주의 사례. p4.

(3) 스웨덴⁵⁸⁾

① 정의와 근거법

스웨덴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영국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친족으로서의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애, 질환 또는 중독이 있는 어른과 함께 사는 아이를 뜻한다. 이 용어는 지원이 필요한 환경에 노출된 피해자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연령기준도 명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18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18세 이상 성인이 가족 돌봄을 할 경우 「사회복지법」에 근거에 지원을 받지만 18세 미만을 위한 지원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하수정, 2022). 스웨덴은 영 케어러를 파악하기 위해 돌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는데, 청소, 설거지, 동생 등하고 돕기,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용도 따로 받지 않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민자 가정이 많은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부모를 위한 통번역 활동을 포함하기도 한다. 스웨덴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중점을 두기보다 아동을 돌봐야 하는 성인들의 변화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김정현, 박선영, 2023).

58) 하수정 (2022). 스웨덴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연구 현황과 시사점. 발췌 및 수정.

② 정책과 서비스

스웨덴은 생애주기단계별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숨은 인구’로 묘사하며 사회적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 보육시설, 부모휴가 등의 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 케어러에 대한 관심보다 위탁 가정 아동이나 이민 가족 청소년의 가족 돌봄 경험에 관심을 두었다. 이후 영 케어러에 관한 프로파일링 연구를 통해 조기 발굴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 1월 설립된 가족돌봄역량센터는 가정 내 돌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데, 관리 주체는 국가건강 복지위원회다. 가족돌봄역량센터는 국가공공건강기구, 지자체, 지역건강관리단체, 아동 복지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주도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돌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보로스시와 영 케어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킨 다음 영 케어러 지원과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으며, 11월부터 온라인 교육과 자조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돌봄 활동을 6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돌봄(예: 환복, 세면), 형제자매 돌봄(예: 동생 등교 지원), 가사(예: 설거지, 그릇정리), 정서 돌봄(예: 가족 구성원의 건강 등을 항상 살핌), 가계 관리(통역, 공공기관 방문), 재정·실리적 지원(예: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족 경제에 기여)이다. 스웨덴의 영 케어러 조사 결과 응답자의 20%는 돌봄 활동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었다. 스웨덴의 정부가 주도해서 영 케어러 가족 프로파일링 연구를 2010년부터 진행해왔는데, 연구 결과 사회복지정책이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성인을 폭넓게 지원한다면 경제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영 케어러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돌봄 지원을 받게 되면(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재가 복지 등)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가족 돌봄 활동이 줄어들지만,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가족 돌봄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스웨덴은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이후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조사하여 영 케어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조기 개입으로 아동기에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면 성인기에 제공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매년 350억 크로나(약4조 5천억원)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본⁵⁹⁾

① 정의와 근거법

일본은 영 케어러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수립하고 있지 않지만, 후생노동성은 ‘원래 성인이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이나 가족 케어 등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적 정의와 돌봄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후생노동성은 일본 케어러 연맹의 정의를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일본 케어러 연맹에 따르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가족 중에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어른이 해야 할 케어의 책임을 떠안나 가사나 가족 돌봄, 간호, 감정적인 부분 지원 등을 행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 케어러 연맹은 2015년 「개호자 지원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제안하였지만 중앙차원의 단독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지자체 차원의 조례가 먼저 제정되었다. 선진적 사례로 사이타마현은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케어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조례는 케어러 지원 기본 이념, 지자체(현)의 책무와 역할, 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의 역할, 추진 계획 책정, 홍보, 인재 육성, 민간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체계 구축, 재정상 조치 등을 명시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홋카이도 구리아마초에서 구리아마초 케어러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며, 6월 미에현 나바리시에서 「케어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② 정책과 서비스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2018년 아동협의회 대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사결과뿐만 아니라 영 케어러 개념과 관련 문제에 대한 아동협의회 역할을 정리하였다. 후생노동성의 조사는 영 케어러 개념을 가족 케어 시 영 케어러 자신의 성장과 교육에 영향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의한 다음, 아동협의회에 등록 또는 신규 등록하는 아동의 지원방침을 검토하여 그 대상이 영 케어러일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아동이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학교 출결 상황이나 가족 전체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족 돌봄 대상자들의 병원 통원 유무, 학교 출결 상황, 가족 구성, 지원이 필요한

59) 안주영 (2022).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 발췌 및 수정.

가족 유무, 가족 돌봄 내용 등을 파악하는 조사표를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영 케어러 조기발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실시해야 할 정책방향을 조기발견과 현황 파악, 지원정책 추진, 사회적 인식 향상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 지원정책은 첫째,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 둘째 학습 지원 체계 구축, 셋째, 영 케어러가 아동이라는 전제로 복지서비스 운영, 넷째, 어린 형제자매가 있는 영 케어러 지원이었다.

2022년 정부 예산에 기초하여 수립된 정부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 케어러 지원 체계 강화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지자체의 영 케어러 실태조사와 관계자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과 영 케어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영 케어러 고립을 막고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육아를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지원 도우미를 파견하여 상담과 가사 및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2022~2025년까지 중고등학교 생생의 인식 수준을 50%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고베시의 경우 복지국의 상담 창구에 새로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영 케어러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조기 개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진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선정과 전달체계를 살펴보았다.

1) 서비스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대상 연령은 13~34세로 청소년과 청년층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은 발달단계상 청년과 달리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고 경제활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연령범위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법률로 지원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처를 묻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학비를 제공하는 등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포함하여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특성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청년과 연령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결과 가족 돌봄 청소년은 가족 돌봄청년과 돌봄 대상 가족이나 어려움, 외부자원 욕구 등 특성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기초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18세를 기준으로 가족 돌봄청년과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법

정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재가 돌봄이나 가사 및 동행지원 중심의 기본 서비스와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화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부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내용이 중첩되고 있으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학업지원이나 또래관계 지원 등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학업문제나 불안정한 교우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으며, FGI 조사 참여자들은 학업과 진로지도 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과 문화생활 및 여가서비스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아이들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아이구나...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병과 돌봄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진로를 노인요양사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친구도 있더라구요. 가족을 돌보는 것과 구분되어서 본인의 진로를 생각할 수 있는 학업이나 진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어린 아이에게 격차가 생기게 되면 20~30대가 되어서도 다른 청년들하고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학업이나 진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B-종사자2).

아이들 학업 진로...성장 단계에 맞게 교육을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되고..18세 미만 어린 아이들 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 발달에 맞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B-종사자3).

돌봄 역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기 보다는 그것에 따른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요. 심리정서적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돌봄에 너무 시간이나 에너지가 많이 빼앗기다보니까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거나 문화 여가 시간을 보내는 여유가 없어서...아이가 자리를 비우면 돌봄에 공백이 생겨요...돌봄 공백을 메우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 부담 완화를 위한 상담이나 심리정서 연구가 필요해요. (B-종사자1).

정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가족 돌봄 대상자의 질병 등 개인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을 구분하여 유형화하였다. 이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주요 서비스 제공자로 발견될 경우 이들은 사회적으로 돌봄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 등교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서비스 제공시간을 산정할 때 돌봄 대상자의 상황과 돌봄 제공 청소년의 특수성을 모두 고려해야하고, 각 지역의 특화 서비스 지원 횟수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성인보다 가족 돌봄의 부담감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본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 이용 횟수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손자녀는 할아버지가 수저도 못 들고 몸도 일으키지 못하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죠. 돌봄서비스를 붙여줘도 4시간 이러니까 와서 그냥 남은 시간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가족 내에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나 영 케어러가 돌봄하는 양을 확 줄여 버리니까 너무 많이 개선되더라구요. (B-종사자5).

3) 서비스 이용원칙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소득수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 서비스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선순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복지서비스 정보이용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원칙이 모호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연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 지적되었는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통합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상돌봄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선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FGI 참여자들은 낙인감 등 한계점이 있으므로 시스템적으로 사례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이들에게 당자 너의 필요를 이야기하라고 하고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라는 식의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종사자1)
신청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상으로 행정이나 복지 시스템 상으로 위기를 캐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종사자4)
본인이 뭔가 상황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적어내고 증명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낙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B-종사자2)

설문조사 결과, 보호자의 비경제활동이나 의료비 부담, 수급자 지원비로 생활이 안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실태조사에서도 외부 지원으로 '생계지원'을 가장 우선적 욕구로 나타났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지역 사회서비스처럼 본인이 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가족 경제활동의 주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의 돌봄 대상자가 이용하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는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는 사업내용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경제활동의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여 서비스 이용 비용을 다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제공방식과 추진체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과 유사한 전달체계에 의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즉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데, 중앙-지역, 지역-민간 기관의 협업체계는 기존 서비스 모델과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발굴과 대상자 선정과정을 담당하고 바우처를 제공하면, 지역사회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물론 중앙에서 지역의 사업기획과 실행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적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나 서대문구의 경우 단독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될 경우 서비스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보다 주체적으로 정책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돌봄서비스 사업 성공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국가수준 단계

Leu et al.(2022)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률 제정,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 및 정책적 대응 수준에 따라 국가수준을 7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완비되는 수준인데 현재 해당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들은 1980년부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지원해온 영국을 2단계로 여겨 가장 선진국가로 선정하였다(임정현 외, 2022). 이들이 제시한 국가 대응 수준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7단계 무반응 국가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 제정과 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지만,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나 개입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수준은 6단계에서 5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12. 영 케어러 대응 수준

수준		특징	해당국가
1 단계	통합적·지속가능한(Incorporated·Sustainable)	- 영 케어러의 욕구나 경험에 국가와 사회가 모든 수준에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 - 영 케어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건강, 웰빙,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 지원 마련 -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명확한 법적 권리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대응과 법률이 마련됨	없음
2 단계	- 신뢰할 수 있는 연구와 명확한 법적 권리들을 기반으로 구축된 대응과 법률이 마련됨	- 대중, 전문가, 정책가들 사이에 영 케어러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의 확산 - 민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기반, 성장 - 명확한 법적 권리 - 복지전문가와 중앙 및 지자체 전략들을 위한 광범위한 규정과 지침 - 다양한 서비스와 개입	영국
3 단계	중간급(Intermediate)	- 대중, 정책입안자, 전문가들 사이의 영 케어러에 대한 어느정도(some)의 인식 수준 - 중형의 연구 기반과 성장 - 일부 지역에서의 부분적 권리 - 적지만 발전적인 전문가 지침 - 대부분 지역적이지만 일부는 전국적인 일부 전담서비스와 개입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수준		특징	해당국가
4 단 계	준비단계 (Preliminary)	- 영 케어러에 대한 대중, 전문가들의 인식이 약간(little) 있음. - 제한된 연구 기반 그러나 성장중 - 특정 법정권리는 없지만 다른 법률이 적용되거나 관련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역 수준의 전담서비스 또는 개입이 전혀 없음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5 단 계	인식, 정책 신생국(Emerging)	- 영 케어러에 대한 대중과 전문가 인식이 생기는 중 - 작지만 성장중인 연구 기반 - 영 케어러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또는 개입 없음. 그러나 다른 서비스들이 적용가능 함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미국
6 단 계	인식초기단계 (Awakening)	- '취약한 아동'인구집단 속의 별개의 사회적 집단으로서 영 케어러에 대한 초기 인식	방글라데시, 그리스, 인도, 일본, 네팔, 폴란드, 슬로 베니아, 아랍 에미레이트
7 단 계	무반응 국가 (No response)	- 뚜렷한 사회적 집단으로서 영 케어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사회적 인식이 나타나지 않음.	그 외

* 출처: 임정현 외 (2022).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보고서. p7~p8.

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1) 법률 제 개정(안)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설문조사 결과 56.3%는 '기존 통합 돌봄서비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기존 돌봄 관련 정책과 서비스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로 포괄적 돌봄 체계 구축', 29.2%는 '지자체별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 체계 구축', 14.6%는 '중앙정부가 단독 법률, 정책, 서비스 수립'이라고 응답한 반면, FGI 참여자들은 전체 100%로 단독 법을 제정하여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주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독법 제정 또는 기존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법률제정과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국가 돌봄 체계를 갖추어나가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개별 법률에 근거한 돌봄 관련법과 정책을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이를 해소시켜야 하며, 각 제도 간 정합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유관 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발의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안」,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역 의료와 개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료법」과 「개호보험법」을 포함한 유관법률 19개의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였다(복지타임즈, 2023. 7. 20).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인구분포는 전체 1~3%임을 고려하고, 단독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보편적 국가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대상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예산안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와 대상별 파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현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돌봄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돌봄 주요 제공자 역할이 아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와 FGI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발의된 단독법과 기존 유관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1) 단독법 제정: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안)

단독법 제정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령

우리나라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아닌 ‘가족 돌봄청년’으로 정의하여 20대와 30대 초반(만 34세 이하)까지 포괄적으로 연령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자립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는 13~34세를 연령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다.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충북, 충남, 경북, 제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19~39세 이하, 부산시 18~34세, 대전시, 강원도 전북, 전남 18~39세, 경기도, 울산시, 세종시, 경남 19~34세로 되어있다. 위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과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은 연령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연령 구분에 따라 돌봄 대상이나 돌봄 관련 현황 차이가 나타났으므로(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복지재단, 2023)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구분하여 연령범위를 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집중하는 시기이므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기와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연령 범위와 역할 수행에 관한 정의와 명칭을 청년과 구분해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처럼 18세를 기준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과 「가족 돌봄청년법」으로 구분하거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령으로 대상자를 세분화해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지원법(안)」을 제정할 경우, 연령범위는 18세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근거는 가족 돌봄 정책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는 영국과 우리나라와 복지관련 체계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18세를 연령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2년 6월 시설거주 아동을 제외한 재단 지원 만 7~24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가족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초등학생이 157명으로 전체 22.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한국일보, 2023. 5. 5.), 이러한 결과는 가족 돌봄을 시작하는 연령이 사회적 통념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GI 참여자들은 조손가정 사례 등 특정 연령을 규정하면 저연령 아동의 돌봄 사례가 누락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특정 연령을 시작 연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연령 범위는 아동·청소년 관련법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8세 이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에 정의가 없어서 정의대로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현재는 13세 이하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세부터 연령을 정의해서 지원을 대상 명시하는 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례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14세 아동 사례는 발생하고 있고 돌봄이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고 해서 돌봄 시작이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요 (B-종사자1)

② 돌봄 범위와 내용

설문조사 결과 가족 돌봄의 범위는 ‘부모, (외)조부모, 동생 등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높게(79.2%) 나타났는데,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결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대상 가족은 가족 돌봄청년과 달리 ‘외조부와 기타(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으로 나타나 돌봄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돌봄 내용은 ‘가족의 일원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수준으로 식사 챙기기, 산책, 병원 동행 정도 수행’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37.5%),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돌봄 역할을 수행’(29.2%)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수행하는 돌봄 내용은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현실은 응답자의 74%가 ‘주3~4회에서 매일’ 집안일을 하고 있었으며, 집안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가족돌봄아동·청소년지원법안」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 보조를 원하는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범위에서 제공되는 돌봄 범위와 내용은 사회적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실태조사

「가족돌봄 지원법안」 제 6조는 3년 주기로 가족 돌봄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보완조치가 부족하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가족 돌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제시하여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설문조사에서 결과, 응답자 전체 100%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대상자 실태 파악’을 언급하여, 실태조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은 2023년부터 인구조사에 영 케어러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행하거나 인구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편차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가족 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민간기관의 실태조사는 대상자의 연령기준이 상이한데 최소한 초등학생부터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즉,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는 7~18세를 대상으로 학교와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률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④ 인식개선과 홍보

우리나라는 가족 돌봄을 ‘효’로 간주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당연한 가족 의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영 케어러 행동의 날’이나 일본의 ‘중·고교생 인식 개선 홍보’처럼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돌봄서비스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돌봄이 가족의 책임, 부양하는 가족, 함께 사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거나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영 케어러이고 이걸 도움을 청해야 하고 이런 인식을 알려주는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B-종사자3)

‘가족 돌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사회적 인식개선을 증진시킨다면 다양한 유형의 방문노동자들을 통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비교적 낙인효과 없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노동자들에게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것이다. 방문의료 뿐 아니라 도시가스검침원, 설치수리 기사, 상수도계량검침원, 재가요양보호사,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 등 방문해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들에게 영 케어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곧바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가족 돌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때 드는 낙인감이 많이 줄어 들 것입니다. (B-종사자5)

⑤ 선제적 발굴 시스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발굴해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발굴 방법의 순위는 첫째, 행정복지센터 등 사회복지 행정체계(31.3%), 둘째, 가족 돌봄 지원기

관(예: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등)(24.0%), 셋째,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9%), 넷째,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19.8%)로 나타나 특정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 전체가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안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방법을 지역사회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복지체계 등과 촘촘하게 연계하도록 명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의 특징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경험 부족이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사회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사전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대상자라는 낙인감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원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뭔가 상황을 겪고 있고 어려운지 적어내고 증명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 부분에서 낙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B-종사자2)

(2) 가족 돌봄 대상자 관련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나 고령, 질병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지원 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은 돌봄 주체가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므로 가족 돌봄 대상자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하여 돌봄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관련 지원 사업은 서비스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24시간 돌봄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서비스 중복지원을 통해 최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관련법은 「사회보장기본법」이며, 관련조항은 제3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조, 제22조, 제23조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대상자는 주로 장애나 질병 등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서 제공한다면,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의 돌봄 부담이나 책임이 해소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법의 실효성을 높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개정방안은 관련 법률에 ‘아동·청소년은 돌봄서비스 대상자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 서비스 주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발생 할 경우 지역사회 사회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6조(국가 등과 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한편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이들의 돌봄 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조항은 제30조의2, 제32조의4, 6, 7이다. 제32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에 ‘아동·청소년 주요 돌봄 제공자인 경우 추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32조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인 돌봄 제공자 현황’을 추가 조사하도록 하며,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 ‘신청인의 가족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32조의6과 7에 ‘아동·청소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복지서비스 확대’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

해보아야 할 것이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의 수급자격, 양 및 내용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3. 제6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신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의 신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장애인학대 등 안전문제 또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 대한 방문 상담
3.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4.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5.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6.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제32조의7(민관협력력을 통한 사례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원)를

‘~제공할 수 있다’에서 ‘제공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29조의 2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법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를 지역사회 사회보장체계에서 상담서비스 제공과 이용내역 등 상담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안에 포함시킨다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현황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지원 모니터링 체계를 추가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가족구성원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의무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추가 지원해야 한다’와 같이 형제·자매를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이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 한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통합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2)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인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게 돌봄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사회서비스 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이 돌봄서비스 주체자가 아닌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개정안은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①항에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질병이나 장애 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등 이용자 욕구에 기초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세분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대상자 제외대상자 중 가족 돌봄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제외기준을 폐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제외기준은 서비스 중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준인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누락을 경험할 수 있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2) 전달체계 구축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를 단독법에 따라 구축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온라인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할 주요 서비스는 돌봄 대상자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부담 완화, 학업이나 진로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돌봄 대상자에 대한 돌봄 지원은 일일 서비스 시간제한을 정하지 않고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이지 돌봄 제공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순위는 간병 돌봄 대상에 대한 간병이나 돌봄 지원이 필요하고...두번째는 학업이나 진로라고 생각해요. (B-종사자2)

돌봄에 대한 것들이 기준으로 하루에 4시간 이런게 아니라...돌봄에 대한 걸 확대해서 간병 돌봄에 대한, 의료적인 전문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도 그 시간에 자기 학업이나 또래 관계를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B-종사자3)

아동의 경우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이지 가족을 돌봐야 되는 주체가 아니잖아요.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에게 오히려 필요한 게 역설적으로 돌봄과 양육부분, 넓은 범위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종사자4)

(1) 중앙정부

앞으로 제정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법안에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단독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유관 법률을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원 정책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인력 교육과 배치, 실태조사, 대상자 발굴 시스템,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재원 조달 방안의 책무를 명시해서 중앙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돌봄서비스는 사회보험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높고, 공공부조인 의료급여기금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급여 향상 및 신규사

회서비스 개발과 함께 통합 돌봄 기금 조성과 포괄적 보조금 형태의 국고보조금 지급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복지타임즈, 2023. 7. 20).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지원 법안 제16조에 제시된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필수 의무조항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가족돌봄역량센터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민간단체의 협업을 주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우리 정부도 가족 돌봄 지원위원회가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중앙과 지자체, 지역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보편적인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 구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다양한 돌봄 인프라 확충과 관련 돌봄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 서비스 전달방식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사례 발굴 및 보건과 복지의 협업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방향이나 예산지원은 간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사례발굴과 서비스 개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역사회 행정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하여 가족 돌봄 대상자 발굴부터 대상자 욕구파악, 서비스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 NGO 단체나 기업 등과 협업하여 캠페인을 통한 후원금 모집이나 기금을 통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예산을 마련하여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인구증가와 정주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확대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돌봄의 연속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체 서비스 개발과 돌봄 체계를 통한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재정과 인력확보, 사업 중복과 유사사업 추진, 지역사회 열악한 인프라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통합적 돌봄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광역지자체 단위와 기초지자체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돌봄을 확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조직을 통해 돌봄서비스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 민간단체

중앙정부의 서비스 계획과 재정조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제공은 지역기반의 민관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적 지속성과 포괄성을 확보하고 본질적으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와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조정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공공과 민간의 협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역사회기반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적책임과 함께 민간기관과 주민참여를 돌봄 주체로 인정하여 지역의 생활 환경 안에서 상호 연계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국의 Carers Trust나 Carer UK, 호주의 Carers Australia, 일본의 케어러 연맹은 지역사회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과 법률개정, 사회적 인식 개선,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NGO기관도 사례관리나 지역사회 복지관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여전히 가족구성원들이 사적 공간에서 무상의 돌봄 노동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역사회 민간단체도 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 서비스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구성이나 협동조합 등을 스스로 구성하여 공동의 돌봄 제공자들의 지역연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자조집단을 구성하는 등 상호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서비스, 자조집단, 홍보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돌봄 주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학교에서 학업 지원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족 돌봄 정의와 돌봄 범위 등을 상세히 소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의 돌봄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행연구(좌현숙, 권지성, 2023)에서 제안된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요 담당 기관을 중심으로 연계되어야 할 유관기관은 다음 그림과 같이 체계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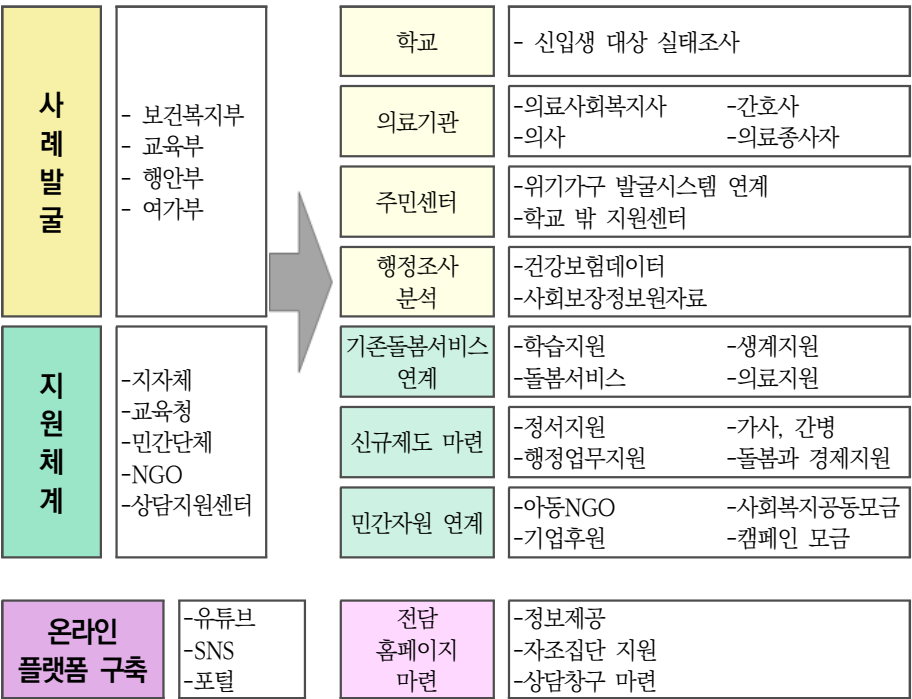


그림 VI-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안)

(5) 현행 돌봄 지원체계 연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대상자는 대부분 ‘장애, 정신·신체 질병, 고령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가족들이므로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의 전달체계와 연계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전문 인력 확보 방안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관련법과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돌봄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와 연계되고 있으므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지원서비스의 인력과 관련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 <표 VI-13>과 같다. 지원 사업 유형에 따라 자격요건이나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이 상이한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독사업이 시행된다면 기존 교육에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I-13. 사회서비스 인력안내

관련 법률과 사업	제공인력과 교육안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이수 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제공인력 교육훈련 가. 교육개요 1) 교육대상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제공인력 재직자 2) 교육시간 : 연 8시간 이상 -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 시간은 보수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할 수 없음 * 법정교육(예시)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보건·안전교육 등 - 단, 사업장 법정교육이라도 교육 내용을 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한 경우는 교육 시간으로 인정 * 맞춤형 교육(예시) :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성희롱에 대한 대처, 이용자 안전사고 유형 및 응급 대응법 등 3) 시행주체 : 제공기관

관련 법률과 사업	제공인력과 교육안내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교육 및 권고사항 안내 (시·군·구 추진단) 12개 시범지자체 시·군·구 추진단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획, 네트워크, 자원개발 등 필수역량 교육과정 집합교육 운영 (읍·면·동 상담실무자) 12개 시범지자체 읍·면·동 통합지원창구 실무자 및 통합안내창구(유관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초기상담, 대상자 이해 등) 집합교육 운영 (이러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홈페이지에서 지역 사회통합돌봄 기초교육(17과정) 상시 제공(운영기간: 2023.3.20.~12.15.) -읍·면·동 상담실무자는 「통합건강돌봄모형의 실증사업이해(평가도구 작성법)」 이러닝 교육 수료 권고 전 교육과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운영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2개 지자체 실무자는 집합·이러닝 교육 합산하여 연간 14시간 이상 교육수료 권고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a).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6. 28.).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6950&page=1에서 2023년 7월 1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4843에서 2023년 7월 16일 인출.

영국의 돌봄자 조직인 Carers UK의 활동을 통해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영국 Carers UK는 가족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돌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전국 돌봄자 민간 조직이다. Carers UK는 돌봄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데 이 활동은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활동이다. Carer UK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은 전문가와 공무원, 돌봄자,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돌봄 제공자의 권리와 사정, 돌봄 제공자 지원과 옹호활동,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 돌봄 제공자 복지혜택과 수당제도 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 훈련 프로그램은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심층 연구,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식이나 조언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훈련과정에서 다른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들과의 만남과 교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강사들의 70%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으며, 경험에 기초하여 전문강사로 양성된 이후 전문가 훈련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Carer UK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속적 전문가 개발 과정(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돌봄서비스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과 가족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최희경, 2014).

4)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1) 커뮤니티 케어 허브

가족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커뮤니티 케어 허브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관리기관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 허브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이 논의하여, 제공 서비스의 우선순위나 선정집단, 서비스 지원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이 적은 서비스 기관이나 대형 서비스 기관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 연계기관이 재정을 일원화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합하여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허브기관을 구축하면, 이용자의 정보가 기관 간 공유되어 행정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와 돌봄서비스, 의료보건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사정(assessment)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백지혜, 2023).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데, 커뮤니티 케어 허브 등을 도입하여 자원이 부족한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 연계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허브를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공공과 민간의 연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체계 구축을 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방문서비스 제공자 활용

본 연구의 FGI 조사결과에서 제안된 신규 사업은 방문노동자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체계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돌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보건의로 서비스 분야는 가족 돌봄 대상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장기요양 심사를 할 때 가족 돌봄 제공자를 같이 조사해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거나 돌봄자의 인적 사항이나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3) ‘가족 돌봄(Family Care)’ 카드(가칭)

영국은 ‘영 케어러 카드’를 발급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학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족서비스 카드(가칭))를 발급해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결석이나 사전 통보 없이 조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긴급하게 가족 돌봄 대상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될 때 교사나 학급 구성원들에게 사례별로 설명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족 서비스 카드(가칭)’은 호주의 학비 보조금 제도처럼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카드 소지자들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영수증 제출 없이 용돈개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

피치못할 결석이 있을 때 이후에 진학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B-종사자5)

학교에서의 결석 문제들..선생님들께서 이 아이가 왜 결석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현재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그걸 결석으로 인정을 안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거든요.(B-종사자1)

(4) ‘Self-Care Day’(가칭)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돌봄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휴가 개념의 휴식일을 보낼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학 기간 동안 최소 일주일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가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간은 가족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돌봄 대상자로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

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또는 문화 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또래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가족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지역사회 ‘돌봄 매니저(가칭)’ 배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는 이들이 사회가 제공해야 할 돌봄서비스 영역을 대체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돌봄 대상자이며 제공자라는 이중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돌봄 매니저(가칭)’을 배치하여 이들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해 줄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진학과 진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성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돌봄 매니저(가칭)’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논의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5) 필요 예산 확보 방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 비용추계서에 기초하여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률안은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보다 높게 추계되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 추계 안은 지원 법안 제 5조, 제6조, 제7조, 제13조만 포함하고 있고, 주요 서비스 방안인 가족돌봄서비스(안 제8조), 상담지원(안 제9조), 교육지원(안 10조), 직업 체협 및 취업비원(안 11조), 자립지원(안 제12조)에 관한 예산 추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 발의안의 예산추계는 5년간 총 425억 1,300만원(연 평균 85억 300만원)이상으로 나타났는데(서영석, 2023a), 청년 대상은 제외하고 지원 서비스를 포함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강선우 의원 발의 안에 따르면,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 실시되는 추가재정예산은 2024~2028년 5년 동안 총 6억원, 연간 1억 2,000만원으로 예상되었다(강선우, 2023).

표 VI-14. 가족 돌봄 지원 5년 간 필요예산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계획(안 5조)	99	0	0	0	0	99	20
실태조사(안 6조)	200	0	0	200	0	400	80
지원 위원회(안 7조)	8	8	8	8	8	40	8
지원 센터 설치와 운영(안 13조) ⁶⁰⁾	8,813	7,885	8,160	8,422	8,694	41,974	8,395
-국비	6,985	5,988	6,197	8,630	6,603	32,170	6,434
-지방비	1,828	1,897	1,963	2,026	2,091	9,803	1,961
합계	9,120	7,893	8,168	8,630	8,702	42,513	8,503
국비	7,292	5,996	6,205	6,605	6,611	32,709	6,542
지방비	1,828	1,897	1,963	2,026	2,091	9,803	1,961

* 출처: 서영석 (2023a).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p13.

5. 소결

1) 연구결과 요약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적 기준이나 돌봄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 등 외국의 경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일상적으로 장애, 만성질환, 정신질환, 기타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18세 미만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가족 돌봄서비스는 가사, 가정관리, 개인수발, 정서적 돌봄, 형제자매 돌봄, 재정 및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돌봄서비스와 가사부담

60) 유사사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참고하였으며, 국비는 2023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6%(인건비), 75.4%(사업운영비), 100%(자산취득비)를 추계 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

등으로 더 높은 우울증 유병률을 보이는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계비 부족 등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어 취업이나 진로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학업부진이나 또래관계 문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단독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중심이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된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학업지원, 진로지도, 심리정서 및 문화생활 여가 등에 관한 지원은 미흡한 수준이다. 2023년 정부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특화 서비스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정책인데, 재가 돌봄과 가사지원, 동행지원 중심의 기본 서비스 이외에 식사나 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휴식지원, 간병지원, 독립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지역사회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 광주광역시 서구 등의 사례가 있는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례발굴부터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등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부담 완화와 그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외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이 가장 먼저 법률제정과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단독법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돌봄 제공자의 하위범주로 이들을 인식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공식적 정의를 수립하지 않았지만 돌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영 케어러 프로파일링 연구를 수행하여 조기 발굴과 지자체와 민간 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인 케어러 연맹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조기 발굴을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은 국가별 대응 단계 수준을 구분한 기준에 따르면 7단계 ‘무반응 국가’에서

5단계 ‘인식과 정책 신생국’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정책 개선과제는 근거법을 우선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근거법은 단독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유관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과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단독법 제정과 유관법률 개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은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대상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근거법률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돌봄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발달 특성과 기존 유관법률에 기초하여 연령기준은 18세를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 범위와 내용은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 인력 확보는 기존 돌봄서비스 체계의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서비스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신규 사업으로 ‘커뮤니티 케어 허브’, ‘가족돌봄카드’, ‘Self-Care Day’, ‘돌봄 매니저’ 배치 등을 제안하였다. 필요예산 추계는 연 평균 약 85억인데, 청년대상을 제외하면 다소 감소될 수 있다.

2) 제언

돌봄서비스는 보편적 복지체계 안에서 돌봄서비스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구성원 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야기된 돌봄 부담은 가족갈등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공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이해수준으로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폭발적 증가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보편적 국가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기존 돌봄서비스 유관 법률의 서비스 대상 및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발달적 특성상 이들을 돌봄 제공 주체자가 아닌 돌봄 대상으로 간주하고 가족 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발의된 단독법안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연령과 돌봄의 내용과 범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 및 선제적 발굴 시스템 등을 관련 법률안에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 돌봄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별로 파편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돌봄 공백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된 공공의 돌봄서비스 지원체계에 의료지원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와 협력시스템을 통해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 정주인구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마련이 시도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추진하여 사업 중복과 유사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누수 문제나 인프라 부족 등의 장애물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서비스 체계 안에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발굴과 지원서비스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서비스 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여 이들의 돌봄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 조달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 인프라 차이와 돌봄서비스 격차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재정기여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 기금을 조성하거나 포괄적 사회서비스 재원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차이를 볼 때, 국고보조금 지급을 확대하여 지자체간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돌봄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유관 돌봄서

비스 인력체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가족 돌봄 경험이 있는 돌봄 제공자를 적극적으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하여 이들을 주요 교육강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민간단체인 Carer UK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방법을 벤치마킹해서 돌봄서비스 유경험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가족 돌봄 제공자들의 경험을 돌봄서비스 제공자 교육과 훈련과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 인력 양성과정에서 현재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문가 확보는 요원하게 된다. 돌봄서비스 질은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돌봄서비스의 공공화 추진과 함께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사적 영역에서 무상 노동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 부담으로 인한 가족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돌봄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공공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적 돌봄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으로 구축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대상자를 돌봄서비스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서 이들의 돌봄서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은 돌봄서비스 대상자라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여 이들이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정책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제7장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경계선 지능 청소년 현황
- 2. 경계선 지능 청소년 법·제도 현황
- 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진단
- 4.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 5. 소결

1. 경계선 지능 청소년 현황

최근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지만 ‘경계선 지능인’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 아주 친숙한 용어는 아니며 용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여전히 정의나 판별 기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장애인이나 다른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분류되지는 않지만 지적 기능상의 제한이 있어 학업,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느끼며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일 외(2021)는 경계선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적 능력의 제한(지능지수 71~85)으로 인해서 학업 수행이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가지지 못하므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성공적인 성인지 전환이 기대되는 9~24세 청소년을 말한다.” 이 정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인지, 학습, 언어, 정서, 사회성, 운동기능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전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학령기에는 학업 성취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고립감을 경험하기도 한다(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2022). 학령기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패는 학령기 이후에 삶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2019; 송하웅, 김현성, 원석현, 2020; 주은미,

61) 이 장은 이은주(청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작성하였음.

최승숙, 2021). 경계선 지능인의 인지적 능력의 취약성은 개별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며 시스템과 제도를 통한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다. 사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교 시스템에서는 학습 부진자로 방치당하기도 했으며 주변의 따돌림이나 사회부적응자 등의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의 어려움과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초·중등교육법」이 2016년 개정될 때 28조에서 ‘성격장애나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신설되었다. 2021년에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만들어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업 지원에 대한 근거는 더 공고해진 면도 있다.

또한 2021년 「평생교육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지원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의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 센터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센터도 만들어지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어려움에 대하여 당사자나 보호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나 연구자 또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연구 공동체나 지원 공동체 등을 구축하여 민간 차원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렇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 필요성도 분명하고 제도가 태동되는 움직임도 있지만 2023년 현재는 ‘경계선 지능인’ 관련법의 부재로 지원의 근거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명확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원도 다양한 논리와 방향성을 지닌 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지원 제도와 정책의 현 주소를 잘 진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경계선 지능의 정의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겠다.

1) 경계선 지능 정의

경계선 지능이란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하기 시작(김동일, 2023, p12)하였는데 경계선급 지적 기능성, 경계선급 지능 등 비슷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경계선 지능보다는 경계선 지적 기능성(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지만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호명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김동일, 2023). ‘경계선 지능’은 WHO에서 1952년 발간한 국제 질병 및 건강 문제에 관한 분류체계(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에서 ‘지능지수가 70에서 85사이인 사람으로 지능은 평균 이하이지만 지적장애의 정도는 아닌 경우를 설명’하는데 처음 사용되었다(WHO, 1952). 한편 미국에서는 1959년과 1961년 정신지체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Mental Retardation)에서 지적장애를 경계선급, 경도, 중등도, 중도, 최종도로 나누고 경계선급은 지능분포 -1표준편차부터 -2표준편차 까지 즉 70이상 84이하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1980년 미국 정신의학회가 펴낸 정신장애에 관한 진단 및 통계 편람-III(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II)에서도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지능지수 70이상 84이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경계선이라는 용어는 정신지체와 분리하기 위한 용어라는 것도 명시하였다. 1994년 DSM-IV와 2000년 DSM-IV-TR까지는 ‘경계선 지능’이 지적장애의 하위 카테고리에 있다가 2013년 DSM-5에서는 DSM 가장 마지막 ‘주의 또는 치료의 초점인 정신 장애에 기인하지 않는 상태 V코드’에서 경계선 지능을 다루고 있으며 지능지수도 삭제되었다(Schalock, et al., 2021).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 1979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지적장애 분류기준으로 지능지수 75이하로 명시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에서 경계선 지능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의 경계선 정의 지능의 예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다소 복잡하게 설명한 경계선 지능의 정의를 정리하면 경계선 지능은 한때는 지적장애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지적장애와는 분리되었으며 대체로 지적장애로 분류될 정도보다는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일상생활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지원 요구는 분명히 있는 집단이다. 최근에는 경계선 지능의 분류에 지능지수보다는 지적 기능의 수행 여부를 중요하게 판별의 기준으로 삼는 추세이다.

표 VII-1. 지자체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의 경계선 지능 정의

지자체	경계선 지능의 정의
서울특별시(2020.10.05. 시행) 광주광역시(2021.06.01. 시행)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경기도(2022.04.21. 시행)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인천광역시교육청(2022.04.21. 시행)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 능력
강원도(2022.10.14.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 시설아동 및 취약계층의 높은 출현율

위에서 서술한 ‘경계선 지능’의 정의에 따라 IQ 71이상 84이하에 속하는 아동들을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 보았을 때 인구의 약 13.59%에 해당하며, 국내 경계선 지능 아동 수는 약 80만명 정도로 추정하는데(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강옥려, 2016) 이는 특수교육대상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이다. 참고로 가장 최근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교육부, 2022)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103,695명이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높은 출현율도 주의를 요하지만 아동의 양육환경에 따른 경계선 지능 출현율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 중 경계선 지능 출현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IJzendoorn, Luijk and Juffer(2008)의 연구에 따르면 19개국 시설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해 메타 분석 결과 시설 보호 아동의 지능평균은 84.40(SD=16.79)이었고 일반가정 아동의 지능평균은 104.20(SD=12.88)으로 나타나 시설아동의 지능평균은 가정보호 아동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지능지수점수도 경계선 지능 진단 가능 수준으로 드러났다. 시설보호아동의 낮은 인지수준은 국내연구에서도 조사된 바 있는데(이선주, 조혜수, 오상우, 2014), 이 조사에서도 시설보호아동의 평균 지능지수는 83.26(SD=14.36)이었으며 조사대상의 38.4%가 경계선 이하에 해당하는 지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청주시에서 105개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경계선 지능 진단(병원 및 심리검사를 통해)을 받거나 의심 군에 포함되는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였다(충북인뉴스, 2020. 10. 7.).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아동 267명 중 99명(37.1%)이 의심 및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의심 아동 수는 56명으로 21.1%를 차지하며 실제 진단을 받은 아동은 43명으로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의 16.1%를 차지했다. 또한 생활시설 뿐 아니라 다른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788명 중 의심 아동은 6.2% 진단 아동 수는 1.6%였다. 이 숫자는 IJzendoom et al.(2008)의 2008년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시설보호 아동과 취약계층의 아동의 경계선 지능 출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eltzer et al., 2005).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출현율이 시사하는 것은 명확하다. 첫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높은 출현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양육 아동의 평균 지능 차이는 인지발달에 양육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아동의 지원은 양육 초기부터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신체, 정서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시설보호 아동의 경계선 지능 높은 출현율은 이들 대상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지원 요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생애 주기에 따라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면 계속 누적되어 복합적인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 어려움을 양태별로 구분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전민경(2021)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다양한 어려움에 조기개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친구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좌절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져 있거나 학습된 무기력이 심화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생애 주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령전기: 전반적으로 느린 발달

우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유아기에 겪는 어려움은 언어, 신체, 인지, 정서 등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또래보다 느린 발달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시기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당사자가 겪는 문제도 있지만 양육자가 겪는 문제도 많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느린 발달로 유치원 등에서 의사소통(류인혜, 2020; 정희정, 이재연, 2005)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또래 관계에서 실패를 일찍부터 겪기 시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해

무기력해지거나 충동성이 높아지기도 하며 이런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 주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여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박찬선과 장세희(2018)의 연구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유아기를 지나면서 일상생활 기술을 배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근육이나 소근육의 사용에도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유아기의 어려움은 발달의 지체와 일상생활 수행에서 제한성은 있지만 그것이 지적 기능의 손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지원이 빨리 시작되지 못하기도 하며 보호자도 제대로 아동을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2) 초등학교;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교생활의 시작으로 학습에서의 어려움과 교육관계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초등학교 전반기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상대적으로 기초학력과 관련된 학습 과제가 많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추상적 사고와 추론적인 수행의 지적 기능을 요구하는 학습량이 늘어난다. 많은 연구들이 경계선 지능인의 가장 두드러진 어려움으로 학습의 내재화나 일반화와 같은 개념적 지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김선경, 황민아, 최경순, 2021). 이런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화된 지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학교 학습을 따라가기 힘들 수밖에 없다. 지적 기능의 손상에서 기인하는 학습 문제 이외에도 어린 시기부터 누적된 학습 실패는 학습 결손을 초래하여 결국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학습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박현숙, 2018).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습에서의 어려움은 학급에서 교우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알팍한 관계는 사회발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초등학교 시기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들은(강옥려, 2016, 신남철, 박정화, 2005) 이들의 정서적 위축이 심각한 문제임을 밝히고 있으며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중·고등학교; 또래관계, 진로

중·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는 사회성 문제이고 특히 또래관계와의 어려움이다(김태은, 2016). 학년이 올라갈수록 누적된 부정적인 평판과 또래와의 학습

격차 등이 발생하는데 보호자나 교사의 개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스스로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다. 학습과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자아개념이 적극적으로 발달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야기할 뿐 아니라 때로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Hassiotis, Tanzarella, Beggington & Cooper, 2011).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적 기능의 손상은 분명하지만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과업의 수행 문제는 진로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져온다(김고은, 김혜리, 2018).

경계선 지능 아동이 겪는 문제는 학업 능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학업 능력의 취약성이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학업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아니다(Kavale & Forness, 1996). 경계선 지능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취약성이 공동체 적응과 사회적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Salvador-Carulla et al., 2013). 예컨대, 경계선 지능 아동의 학업적 실패와 주의집중 부족,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은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 부적응 등 사회 적응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임성은, 구병두, 신혜원, 신윤승, 2020).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적응은 또다시 경계선 지능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4) 학령기 이후: 사회적응, 진학, 취업, 자립

학령기 이후에는 학령기에 겪은 문제가 심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188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연구(박광옥 외, 2022)를 보면 면담 대상자의 31.5%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자기 효능감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면담 당시 1주간의 우울 수준을 보면, 약 54.7%(111명)이 일주일 내내 우울감을 느꼈다고 표현했으며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비율도 14.8%나 되었다. 문제들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적절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들이 중첩된 것이기도 하다. 학령기 이후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직업과 사회 부적응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다(박찬선, 장세희, 2018).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eltopuro, Ahonen, Kaartinem, Seppälä & Närhi, 2014).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군대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관심병사로 분류되기도 한다는 EBS⁶²⁾의 보도도 있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지적 기능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여서 조기 개입과 지원 시스템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으며 지적 기능의 손상은 발달의 전 영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경계선 지능 청소년 법·제도 현황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대체로 장애로 판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제도 및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은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공적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요구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어 2023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이 각기 다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3개가 입법 제안되어 있고, 1개가 개정 제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새롭게 제정을 요구한 3법과 개정 발의한 1개의 법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여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법 제정의 요구가 있음은 분명하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 요구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현 제도하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지원을 받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도 꽤 있다. 예를 들어 학습의 취약성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설 보호 및 지원 대상 청소년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관련 법에 지원대상의 범위에 ‘지적 능력’을 지원 요건에 명시한 경우도 있다.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제도는 크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과 지자체별로 마련된 조례이다. 지자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느린 학습자, 난독증 또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학습지원과 관련된 조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례」 등으로 나누어진다. 지자체별로 1개 또는 2개의 조례가 2022년

62) EBS (2014). 심층취재-경계선지능 12편, 그는 왜 ‘관심병사’가 됐나. EBS Culture (EBS 교양). <https://www.youtube.com/watch?v=KNm4pTouPmE>에서 2023년 9월 8일 인출.

부터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의 <표 VII-2>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법·제도 현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표 VII-2.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 법·제도 현황

연령	법, 조례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
유아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9세까지 발달지체로 등록하여 특수 교육대상자 관련 지원 받을 수 있음	초등학교 3학년에 특정한 장애로 다시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받아야 함
학령기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 28조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음	학년 초 평가와 기초학력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기초학력 지원대상으로 선정 의뢰함
	기초학력보장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2조에 시설보호 이후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대상으로 '지적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함으로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표시함	아동복지법 전반에 걸쳐 보호대상, 지원대상,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보호, 지원, 취약계층일 경우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 4항에서 위 기청소년의 정의에 '가정 문제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정의의 일부가 경계선 청소년을 포괄하고 있음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발달장애인 정의 '다'항은'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 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발달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하지만 현재 경계선 지능인은 등록 불가
	지역 교육청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 (8개 교육청) & 난독증 관련 조례 (7개 교육청)	경계선 지능 혹은 난독증 정의를 포함 하고 지원을 명시함	
	교육청 제외한 지자체 조례 (23개 지자체)	느린 학습자 조례 13개 지자체 난독증 조례 10개 지자체	

연령	법, 조례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
학령기 이후 청소년	평생교육법	정규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평생교육법은 지자체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조례의 근거를 제공해 줌	평생교육법의 대상은 교육기본법 10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의 장려를 명시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 16조의 3 ②항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적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시설보호 아동의 보호조치를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적능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경계선 지능인이 포함될 수 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	학령기 이후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8조의 4	제 8조의 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의 대상에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중략)'으로 기술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지자체 조례 (68개 조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조례 (23개 지자체) 경계선 지능인 조례 (15개 지자체) 느린학습자 관련 조례(13개 지자체) 난독증 관련 조례(17개 지자체)	같은 지자체에서 여러 개의 조례를 제정한 경우도 있음

※ 지자체의 조례는 2023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조례만 포함

위의 표를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일부나마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 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유아기부터 학령기 이후까지 지원의 연계가 어렵다. 생애 주기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의 요건에 맞추어 지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지원은 학교를 중심으로 어떤 지원은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원을 꾸준히 받아도 필요한 지원 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관 부서도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촘촘하고 필요한 지원을 조직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기초학력보장법」을 통한 지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뿐 아니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공적인 지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근거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별부터 지원까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초·중등교육법」제 28조와 「기초학력보장법」부터 살펴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기초학력보장법 제1, 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학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말한다.

2. “학습지원대상학생”이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3. “학습지원교육”이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을 말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학력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기초학력보장법>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두 법의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학업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지원 대상은 비교적 법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조에 ‘지적 기능의 저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이 법의 중요한 지원 대상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학습지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개별 요구에 부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에 따라 지원의 범위는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상담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경계선 지능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 맞는 포괄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보장법을 근거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비롯하여 학습클리닉과 같은 프로그램에 고용되고 있는 지원 인력은 대체로 학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를 보장할 수는 없다.

반면에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조례는 용어 자체도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천천히 배우는 학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조례의 내용은 주로 지자체의 역할에 국한하고 있다. 즉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또는 실태조사, 지원센터의 설립 등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가 인프라를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개인에 대한 지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 「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한 지원

「아동복지법」 제 3조에서 아동복지법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시설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이므로 이 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1조의2에서 보호 대상 아동의 구체적 지원에 해당하는 개별 보호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시설보호아동이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인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의 개별 관리 항목에는 건강, 심리검사와 양육 상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에도 심리검사의 결과에 따라 개별보호 관리계획의 범위가 지적능력을 지원하는 영역으로 확대될 여지는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1조의 2와 11조의 2〉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 정도
 2. 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내용·제공방법 및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3. 보호대상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9조 및 이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수립된 자립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는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보호기간 추가연장 대상 중 하나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지적 능력’이라는 표현은 경계선 지능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 37조 3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 37조와 38조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취약계층에 해당할 경우 학습 및 발달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16조의 3〉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2조〉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아동복지법 제 37조와 38조〉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중략)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37와 38조〉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제 37조 38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시설보호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에 속해있는 청소년은 자립과 관련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지원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아니지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앞의 경계선 지능인 출현율을 보면 시설보호 청소년의 경계선 지능 출현율이 높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제 38조에 의거하여 자립지원 대상이 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많다. 아동권리보장원이 2021년부터 시행한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경계선 지능 아동 사회 적응 지원 사업은 시설 보호 청소년의 높은 경계선 지능 출현율과 무관하지 않다.

3) 현행 법·제도의 문제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현행 법·제도와 정책, 사업의 문제는 분명하다. 첫째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에 맞게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법적인 근거의 취약이다. 학습지원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과 복지 지원 및 자립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포괄할 수는 있으나 명확히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법을 넓게 해석해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2항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과 같은 구절이 경계선 지능을 포괄할 수는 있지만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모호하게 정의된 측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적 능력’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의 법의 부재와 현행법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하다. 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의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원 정책 실행을 어렵게 한다.

둘째는 학령기 가정양육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서 명시한 학습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시설보호 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서 시설보호 아동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경계선 지능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서울특별시에 유일하게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가 있을 뿐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례만 있을 뿐 실제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보다는 강력하게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법 또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에서 경계선 지능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느린학습자, 난독증, 경계선 지능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등 용어의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진단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에 관한 진단은 현재 실질적인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다. 우선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업들의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 연령 및 지원 영역

지원 기관 및 사업		연령			지원영역			가정배경		
		유아	학령기	학령 이후	학습	진로취 업자립	기타심 리정서	보호 대상	취약 가정	일반 가정
자자체 위탁 센터 및 사업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 능인 평생교육지원센 터		✓	✓	✓	✓	✓	✓	✓	✓
	의정부시 느린학습자 돌봄 가족지원센터	✓	✓				✓		✓	✓
	서울 학습 도움센터	✓	✓	✓	연수, 자료개발			✓	✓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시범사업		✓	✓		✓		✓	✓	✓
	인천, 용인 등 기초학 력지원센터		✓		✓		✓	✓	✓	✓
보건복지부, 아동권 리보장 원 사 업들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					✓		✓	
	아동·청소년정서 발달지원서비스		✓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		✓	
	경계선지능아동 사회 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			✓	✓		
	경계선지능아동 맞춤 사례관리서비스		✓				✓	✓		
교육부	기초학력보장 관련 사업		✓		✓			✓		
여가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		✓		✓		
기타	동대문구종합사회복 지관 경계선지능인 취 업진로 지원 사업		✓	✓		✓		✓	✓	✓
	예림, 예하 위탁형 대 안학교		✓		✓	✓	✓	✓	✓	✓
	춘천 느린소리									

※ 각 홈페이지에 제공된 정보를 근거로 연구자가 정리한 내용임. 이 외에도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지원대상, 지원영역들을 파악하고자 만든 표임.

〈표 VII-3〉에 정리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관한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와 시설, 기관들이 있으며 민간 기관들은 대체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표 VII-3〉에 나타난 것처럼 연령별로 보면 유아와 학령기 이후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진로 취업 자립 지원은 주로 보호대상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가정양육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취약하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정책도 대부분 학습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다양한 영역의 요구와 생애주기별 요구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양육환경에 따라 발달상의 어려움이 유아기부터 일찍 파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적절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생태학적인 환경에 따라 지원의 범위가 다른 것이 현실이다.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지원받는 경로의 사례는 대략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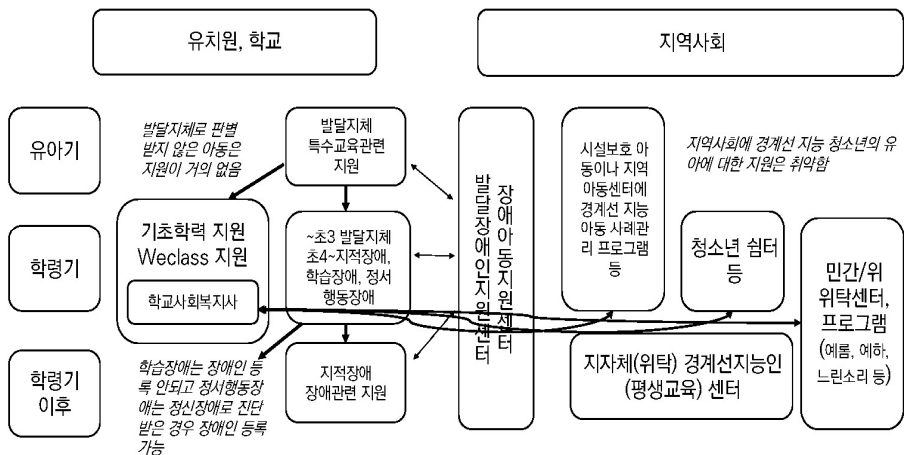


그림 VII-1.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경로 도식

첫째, 영유아기에 발달지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별되어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 발달지체는 만 9세가 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됨. 이때 지적장애나 학습장애로 판별 받는 경우가 많음. 지적장애아로 판별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로 등록하고 관련 지원을 받게 됨. 둘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취약계층이거나 시설 보호 대상인 경우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어 개별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원을 연계하거나 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직접 지원도 제공할 수 있음. 셋째, 유치원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초등학교 시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해 기초학력지원교사, 학습클리닉, 두드림학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 사업은 중, 고등학교에도 지속되지만 매년 교사가 성취검사를 통해 판별하여 서비스를 의뢰하므로 지원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넷째, 초등학교 시기 정서, 행동문제를 겪으면서 Wee class등 상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음. 기초학력보장 사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음. 다섯째, 학교에서 기초학력 지원을 받으면서 주변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센터, 사회적 기업, 사단 법인 등이 있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여섯째, 시설보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보건복지부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적응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례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일곱째, 시설보호, 취약계층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위의 사례를 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유아기에 발달지체로 진단받고 초등학교 3학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지원의 통합과 연계가 약간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애주기에 따라 통합적으로 지원이 연계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은 추진 주체도 모호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상자들의 요구에 맞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이며 정책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개념 확립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 환경과 깊은 연관이 있고 기질적인 지능의 손상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서해정 외, 2019; 한운선, 박현숙, 정희재, 강한솔, 이유

진, 2017) 공적인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3년 현재 ‘경계선 지능’은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부처별로 하는 사업에서 경계선 지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차원의 법이나 정책에서는 공적인 정책대상자로 따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용어 자체가 공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단순히 지능지수(IQ)의 범위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능 지수의 범위가 지능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능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의 개념이 좀 더 분명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김동일 외, 2023, 박광옥 외, 2022; 박윤희, 박승희, 한경인, 2022)에서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성, 정신건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학업수행(M=3.47), 친구관계(M=3.38), 자기관리(M=3.32), 심리정서문제(M=3.24)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응답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지능의 범위와 지원 요구가 함께 개념화되어야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2)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은 지능검사 분포를 통해서 약 13~14%로 추정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샘플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출현율을 조사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어서 시급하게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의 정책 필요도 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법 제정(M=3.50) 다음으로 실태 파악(M=3.4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실태 파악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 경우가 응답자의 약 36%였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파악은 출현율을 포함하여 지원 실태, 생활 실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2019년 청주시의 시설 보호 대상 아동의 경계선 지능 출현율은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숫자보다 훨씬 높는데 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출현율에 대한 실태 파악이 계층, 지역, 양육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따라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정책의 개발에서 아동의 배경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3) 경계선 지능 청소년 당사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법의 부재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음을 의미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계선 지능인 관련 조례들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확산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적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거점센터를 만든 곳도 서울과 강원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은 생애주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박찬선, 장세희, 2018; 엄경남, 이재경, 문정희, 2019; 황지은, 2022) 대상자의 개별적 요구에 따른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김동일 외, 2021; 주은미, 최승숙, 2021). 설문 응답자의 93.9%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40%의 응답자가 지원 전달체계가 전혀 확립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당사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필요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기초학력지원, 정서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각기 다른 주체에서 각기 다른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경계선 지능 청소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내용 중심의 시스템에 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영역에 대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예를 들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학습을 중심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학습문제는 지능, 발달, 환경 등 복잡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학습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는 바록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습지원보다는 발달지원이 더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승숙, 한경근, 김수완과 임은주(2023)의 연구에서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체계를 위한 제안에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였고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정책에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미 5년 전 서울 동북권 NPO 지원센터(엄경남 외, 2019)의 느린 학습자 생애주기별 어려움에 대한 기초조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할 거점 센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FGI 참여자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학습지원, 정서지원, 자립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정한 영역 중심으로 사업만 확장되면 애들이 참여하는 곳은 이 곳 저곳 정신없는 데 정착 필요한 내용은 없는 경우도 많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요. 정책 주무부처가 없으니 학교에서 기초학력 지원 사업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또 프로그램 하는데 정착 애는 학교에서 친구 하나 없어서 사회성 프로그램이나 정서 문제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뭔가 거점센터 같은데 있어서 아동들 사례 관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해야 종합적으로 죽 지원이 연계 될 수 있을거 같아요. (C-종사자1)

경계선 지능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정책은 아니지만 국정과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연구의 설문에서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학업수행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약 55.7%였고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도 35.9% 정도 였다. FGI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사이면서 기초학력 부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습의 어려움은 말할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공부 열심히 한다고 따라 갈 수 있냐 저는 그거 보다 심각한 수준 같아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별학습 형태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말 수업시간에 나와서 리소스 룸에서 지원 받아야 하는 정도의 격차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C-종사자1)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겪은 문제는 학업문제 뿐이 아니다. 오히려 설문참여자들이 지적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친구관계 맺기(어렵다+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 93.1%)와 자기관리문제(어렵다+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비율 94.7%)이다. 그러나 <표 VIII-3>을 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사업 중 이런 문제를 지원해 줄 사업이나 정책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실시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적응 사례관리 사업과 지자체 위탁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사회적 관계나 자기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FGI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원 영역이 확대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공동체나 사회성 이런 걸로 경계선 지능에 대한 시각이 강화될 필요는 있다. 학습도 어렵지만 적응의 기본 요소 중에 사회성 중요하다. 이 말씀은 복지관 이런데서 학습 열심히 시키는데 사실 성과이 한계가 있고요. 잘하는 기관 보면 사회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차라리 성과는 있어요. 사회성 중심으로 전환도 고민해 봐야 하고요. 공동체에 적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여러 요건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학습 이외의 종합적인 지원...특수학급으로 분리는 적절하지 않지만 특수아동처럼 개인에 따라 필요한 지원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그나마 지원의 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C-종사자4)

4) 취약한 영유아 및 가정양육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는 정책들을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초 학력보장정책, 지자체 경계선 지능인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시설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룬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일찍 판별 받아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지원 정책이 대부분 학령기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 영유아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 선별과 지원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은 영유아기,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늦은 편이어서 소외감, 위축, 사회적 미성숙, 학습된 무기력(변관석, 신진숙, 2017; Hallahan, Kauffman & Pullen, 2009)등의 문제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 불안정성은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질 남용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Duijvenbode & VanDerNagel, 2019). 이런 문제들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선별은 대체로 초등 저학년 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초등 저학년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영유아기 진단의 어려움이 있고 이른 진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시행하는데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영유아기에 위험군을 선별하여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견 없이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앞의 <표 VII-3>에 기술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 사회성 지원사업과 사례관리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설보호 아동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양육 이동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금까지 실태조사도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하여만 이루어져 온 실정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을 보면 시설 보호 아동이 월등히 높지만 그건 전체 시설보호 아동에 비해서 많은 것이고 절대 인구로 보면 가정보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 취약계층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지원이 필요함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4.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1) 법률 제·개정(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99.2%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임을 표현하였다. 법률 제·개정은 3가지 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는 가칭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있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의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 또는 장애위험군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4.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개정(안)

법률 제·개정(안)	장점	필요한 조처 및 쟁점
1안 가칭 「경계선 지능 청소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규 제정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 마련	지원 대상 선별방법의 문제 소득분위에 근거하지 않은 자원체계가 계발될 필요가 있음
2안 현행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관련 법의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함. 「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청년기본법」「청소년복지법」「평생교육법」등이 개정 대상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취약계층에 경계선 지능이 편입되는 효과가 즉시 발생함	청년기 이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다시 마련해야 함 「평생교육법」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여야 함
3안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경계선 지능인 포함	현재 장애인 관련 지원 체계에 바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거가 취약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존재함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한 예산이 많이 들

※ 현재 경계선 지능인 관련해서 4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2개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1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발의되어 있고, 1개는 아동복지법의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 아동을 포함하는 개정안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상과 지원의 범위, 지원체계,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 등을 명시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법 제정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을 개정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도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법들에 보다 명확히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현행 법 개정은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는 것이다. 어느 한 법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정이 되면 그 법을 근거로 다른 법들의 개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법들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면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의 근거가 바로 확보될 수 있어 빠른 시일에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다.

표 VII-5. 현행 법 개정(안)

현행 법	개정 제안 및 장점	필요한 조치 및 쟁점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함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의 근거를 제공해 주므로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여 대학의 특례입학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 검토 필요
아동복지법	제3조에 제5호 2를 신설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을 명시함 제 3조의 개정과 연동하여 제4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을 명시함 위의 개정과 연동하여 제 4절 경계선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같은 내용을 신설하고 제 44조2에 지원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현재 영유아기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관한 지원이 매우 취약한데 이 법의 개정으로 빠른 시일에 9세 이하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특히 가정보호 아동 중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만 18세 아동이 대상인 법이므로 18세 이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등과 연동하여 개정해야 함 청년기 이후는 「평생교육법」 등에서 지원을 보장할 수 있으나 지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현행 법	개정 제안 및 장점	필요한 조치 및 쟁점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항의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근거로 취약계층에 '경계선 지능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의 2항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을 명시할 때 특별한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청년기본법에 취약계층이나 우선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복지법의 대상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연령을 포함하므로 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는 아동복지법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함 「청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법」은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 주지만 교육, 고용, 직업재활과 같은 부분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정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청소년복지법	「청년기본법」의 개정과 연동하여 「청소년복지법」 제2조 4항의 “위기청소년”과 하위 조항으로 4항의 1을 신설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할 수 있음	

둘째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 2조 1호의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 설문참여자의 13.7%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데 장애등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처럼 장애로 등록 가능하게 해 주는 것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사항이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법적 요건을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지원의 범위에 포함해야 법적 요건이 완결될 수 있으므로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의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지적장애를 지능지수 85 미만으로 규정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적장애의 범주에 포함하여 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Nouwens, Smulders, Embregts & van Nieuwenhuiz, 2017; Wieland & Zitman, 2016). 네덜란드의 경우 경계선 지능인을 지적장애에 포함시킨 결과 지적장애에 사용하는 예산은 공공 예산 지출의 25%에 달한다(최승숙 외, 2023, p77). 이런 지원은 취약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삶의 초기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하여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있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분배에 있어 중증장애인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표 Ⅶ-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법	개정 제안 및 장점	필요한 조치 및 쟁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구체적으로 명시 현재 이 조문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하위 규정이 없으나 하위 규정을 신설하여 경계선 지능인이 지원 대상임을 명시할 수 있음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이 가능함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이 발달장애인 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는 발달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 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발달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함. 현재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만 포함되어 있음. '경계선 지능'을 장애로 규정하는데 따르는 여론, 예산 등의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사항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정책대상자로 공식적으로 분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는 공적인 전달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산발적으로 실행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실행주체들이 달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매우 취약한 여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 전달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앞 장의 정책진단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보면 영유아와 가정양육 아동의 지원이 취약하고 학령기 이후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정책과 지원 대상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설문응답자들의 약 58.8%가 1순위로 지역별 거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센터를 구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19.8%는 1순위로 동 주민센터 취약계층 지원 체계와 통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 내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전달체계에 대하여 설문응답자의 46.6%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8.3%는 학교 밖 경계선 지능 청소년 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1순위로 응답하였다.

FGI에서도 전문가들은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분리하여 지원

하는 시스템이나 전달체계는 적절하지 않으며 다양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지원을 연계하고 통합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당사자 뿐 아니라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도 지원 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소속된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출현율 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출현율은 워낙 높아서 13.59%. 이들을 따로 모아서 원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원은 나누어서 하고 그것들을 통합 관리하는게 중요한거 같고요.
 소속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러면 학교 적응을 위해 무엇을 도와 주어야 하고, 가정에서의 적응은 무엇을 도와 주어야 하고, 지역사회는 고용과 관련하여 또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나누어서 실행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C-종사자4)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기 보다는 현재 지원을 일원화시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아동들이 지원 받으려면 학부모가 움직여야 하는데요. 학부모가 매우 바쁘세요. 지역은 교통수단도 불편하고요. 어느 센터에 가서 지원을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신들이 많이 움직이는 공간에서 지원 받는게 좋죠. 학교, 가정 등등요. (C-종사자1)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특성상 평생 주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학습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팎에서 연계가 필요하고요.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대상자들은 지원 대상으로 묶어서 지원하기 보다는 여러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고 원가 통합 관리해 주는 그런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C-종사자2)

이런 내용을 고려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전달체계 구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따로 분리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며 적절한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관리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둘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이 지원에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
- 셋째,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영아부터 성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인지발달, 사회적 관계, 자기관리, 지역사회 생활 등 지원의 광범위한 요구와 아동에 따른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 넷째,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받고 있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섯째, 가정양육과 시설보호 아동 둘 다 고려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원의 성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인천투데이, 2020. 11. 16.; 최승숙 외, 2023).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들 간의 통합 및 연계가 필요하고 이를 전담할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은 다양한 영역의 지원들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취약계층, 시설 보호 등 지원대상과 겹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를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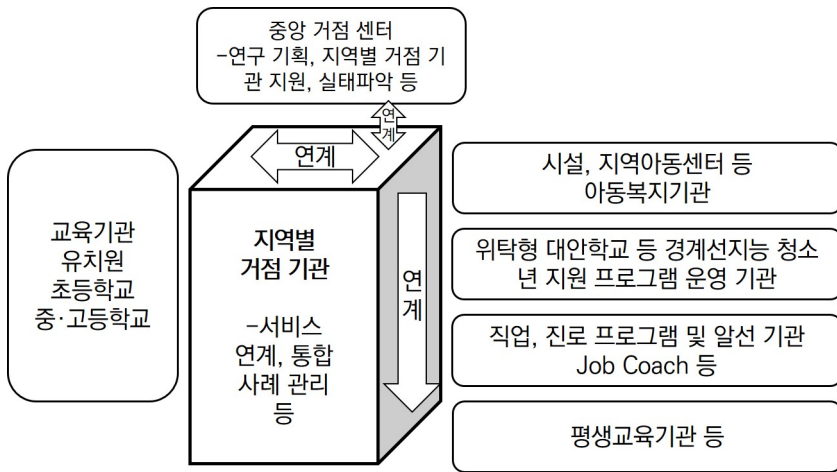


그림 VII-2. 지원 체계 구조

【그림 VII-2】가 시사하는 바는 서비스 연계,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거점기관이 어디가 되는가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전달체계의 핵심 문제이다.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을 새로 설립하여 그 기관을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현재의 전달체계 안으로 편입할 것인지에 따라 전달체계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이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앞에서 제안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법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따라 지원 전달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전달체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7.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안)

법 개정(안)	전달체계		장점	단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법」 신규 제정할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 등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	1안	지역별 경계선 지능인 지원 거점센터 구축	• 사회복지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고 지원의 접근성이 높아짐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 사례 관리 등이 가능하므로 지원의 연계를 높일 수 있음	• 취약계층, 시설보호 청소년 등의 지원과 통합하기 어려움 • 취약계층 대상의 국가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 있음(임대주택, 고용쿼터제 등) • 센터 구축에 따르는 초기 비용과 시간 • 거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원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 새로운 지원 집단이 생길 때마다 센터 구축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센터가 너무 많아짐
	2안	취약계층 복지 전달 체계에 편입	• 사회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 중복지원의 문제 줄임 • 지원 대상이 생길 때마다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를 줄임	• 현재의 경계선 지능인 출현률 통계 13.56%를 고려하면 국가 사회복지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남 •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인원이 대폭 늘어나야 함 • 행정과 지원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 짐 • 학교의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음
	3안	발달장애인 지원 전달 체계에 편입	• 기존의 발달장애인 장애인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 광범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과는 다른 요구들이 적절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보호자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당사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체제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별 거점 센터를 설립하여 당사자의 개별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하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지원하는 것이 전문 영역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를 통해서는 개별화된 요구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 전문 인력 확보 방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전문 인력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지원 역량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Ⅶ-8. 경계선 지능 청소년 종사자 역량 및 역량 제고 방안

전문 인력	전문 인력 구비 요건		전문성 제고 방안	
	공통요건	직무 관련 요건	현 종사자 대상	새로 진입하는 전문 인력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 기획, 권리보장 등의 전문가		행정역량	일정 시간 이상의 관련 교과목 이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례관리 및 지원 연계 전문가		사회복지, 상담 등의 사례관리		
학습지원 전문가	-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문성 - 경계선 지능인 지원 역량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요구에 대한 이해	학습지원 및 교육 역량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 내용의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경계선 지능 서비스 자격과정 신설 - 국가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경계선 지능 지원 관련 과목 수강 -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전공을 이수
정서지원 전문가		상담 및 행동중재 역량		
일상생활지원 전문가		일상생활지원 및 교육 역량		
진로직업지원 전문가		진로 지원 및 교육 역량		
가족 지원 등 기타 전문가		상담, 사회복지 역량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현재 학교,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서비스 자격’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선 지능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어서 자격증을 부여할 수도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과 같이 전 생애에 걸쳐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원요구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증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델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자격 부여〉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가칭)경계선 지능인 지원 국가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둘째, 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관에서 지정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셋째, 대학원에서 지정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자격 부여의 경로를 보면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가르칠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실태 파악, 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지원기관이 확대,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잘 수행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사업은 실태 파악(M=3.49)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지원 종사자 역량 제고(M=3.45)도 높게 나타났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예산이든 지원이든 다 기준이 학급 배치거든요. 학급 기준인데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학생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맞춤형, 개별화 그렇게 가야 적절한 지원이 되는데 (종락) 지금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출현율조차 명확하지 않으니. 경계선 아이 하나 하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모형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만들어야 하고요. (C-종사자2)

이런 자료를 종합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업은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표 Ⅶ-9.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신규 사업		내용	주무부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조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영유아기에 유아건강검진(발달선별검사)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통해 발달종합검사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험군 선별	보건복지부 교육부
	출현율 조사 경계선 지능 청소년 및 위험군 파악	초, 중, 고 전 학교 급에 걸쳐 경계선 지능 선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전수조사 연령, 지역, 양육환경 등에 따른 출현율	교육부
	실태 파악	인권 실태 현재 학업,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진로 등 삶의 전반에 관한 status	보건복지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제도 구축 및 인식 개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5년 기본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가칭(중앙)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센터 설립 또는 지정	보건복지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 홍보 자료 및 영상 제작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 및 지원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방송을 통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 홍보	문화체육부 지자체

첫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출현율 조사는 시급하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의 출현율은 지능분포에 근거하여 추정할 뿐 실제로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 인구 배경에 따른 출현율은 광범위하게 조사될 필요가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시설보호 청소년, 경제적 취약계층 출신 청소년의 경계선 지능 출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분석할 필요도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5세 유아 대상의 실태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어려움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부터인데 이때 조사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도 있다. FGI에 참여한 초등학교사도 이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도 특수와 마찬가지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지원을 해주면 좋겠거든요. 학교에 적응으로 따지면 특수보다 나을 것도 없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실패감을 너무 오랫동안 생의 초기부터 누적되면...너무 오래 겪지 않도록. 유치원 때 선별해 주면 좋고 발달 전수 조사 같은 것을 시기별로 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1학년 때라도 선별하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검사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잘 안하세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제가

지원학교 나가는데 읽기 집중 지원학교 지원 나가는데 거기는 1학년 전수검사해요. 문해력 검사. 그러니까 부모님이 다 동의하세요. (C-종사자1)

둘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몇몇의 지자체 또는 정책과제로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전국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업,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진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는 분명하지 않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나 사업의 대상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포함될 경우가 있지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반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의 개발과 실행은 발달장애인 지원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출발해야 하는 단계이다.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 장에서 제시한 방안들 중에서 예산, 인력 등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우리 사회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은 편이다. 경계선 지능이라는 용어가 관련 전문가들과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정착되는 단계이므로 일반 시민에게는 용어 자체도 낯선 편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당사자들도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요구가 있어도 지원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실정이고 설령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도 서비스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조사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초기에 강한 추진력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사업과 동시에 현재 있는 정책들 사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들 이외에도 많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하고 포함될 수 있지만 우선 시급하고 편익이 높으며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표 Ⅶ-10.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적응 사업(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내용	주무 부처
교사, 사회복지사, 경계선 지능인 사례 관리 담당자 등 종사자 역량 강화	• 아동 보호 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기초학력지원인력, 기초학력전담교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 내용 개발 및 연수 실시	교육부 보건복지부
	• 특성화 고등학교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들이 은둔 고립될 가능성도 높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함 • 특성화 고등학교 내 경계선 지능 청소년(체크리스트 활용해서 대상자 선별)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역사회 다양한 공간, 공연, 전시회 등을 탐방하면서 흥미를 찾아내고 흥미에 따른 역량 개발 지원	교육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전환 (transition)지원사업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특수학교 전공과, 한경대학교 평택캠퍼스,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 학부 인간재활학전공 참조 • 경계선 지능 청소년(예, 학습장애, 발달지체, 기초학력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 등) 학생의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성을 도와줄 수 있는 학과 신설 또는 대학 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역사회 적응 지원	•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transition)을 위한 지원 사업 • 지역사회 시설 이용하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찾기, 지역사회 social community 탐색하기 등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지원	• 경계선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역량 강화 •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교과 개발 • 대학에 진학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적응 지원 • 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취업 알선 및 직장 적응 지원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내용	주무 부처
지역별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지원 사업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모델 참조 - 지원 기관 모집 및 선발 -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역량 강화 - 경계선 지능 청소년 보호자 교육 - 프로그램 참여시 이동지원	여성가족부 지자체

첫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선별하지는 않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시설 보호 경계선 지능 아동의 적응지원 사업도 있고 교육부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경계선 지능에 대해 덜 알려진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높은 편이 아니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 설문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대해 ‘용어와 개념을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설문응답자의 43.5%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경계선 지능은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어 더욱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다. 학습 환경이 문제인 경우도 있고 정서행동의 문제인 경우도 있다. 물론 경계선 지능의 문제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방법도 달라야 하며 특히 경계선 지능의 문제는 기질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는 더욱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 적절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정책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94.2%의 응답자가 ‘종사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FGI에서 전문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와 학교 기초학력 지원인력,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이해와 지원에 대한 자료,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되어 빠르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OO초에서 경계선 지능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쟁점을 드러내는데, 교사의 전문성,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책임 주체도 없어요..(종락). 담임교사가 책임져야 하냐고 하는데 어찌 보면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경계선 지능 아동의 공격적인 모습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다면 그렇게 그렇게 까지 처참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C-종사자4)

모든 교원은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심화 교육을 일정 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게,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학교내에서 계속 적응 못하면 교사는 학생이든 점점 어렵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하게 지고요. 교사가 기본적으로 학급 내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능에 대한 심화 연수가 의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C-종사자3)

교대 같은 경우는 경계선 지능 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교대에서 교사가 교대 뿐 아니라 일반 사립대에서도 교육 쪽을 전공하는 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고요 학교에서 교사 전문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동 발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요. 다른 보조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수 든 뭐든 꼭 필요합니다. (C-종사자1)

둘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전환 지원 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 앞서 정책진단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었지만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업들은 학교나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 학교 밖 또는 학령기 이후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이 취약하다. 학교나 시설로부터 사회로 전환할 때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많지만 현재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시설보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자립과 관련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이 연구의 설문응답자들은 신변관리나 소비계획(M=3.34), 사회적 고립감 예방(M=3.34),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M=3.22)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광옥 외(2022)의 연구에서도 사회 전환 지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학령기 이후 경계선 지능 청년은 자립과 사회적응을 위해 고용, 주거, 권리구제 및 자산관리, 평생교육, 정신건강 등 광범위한 영역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지원이 없다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지역사회로 편입되지 못하고 고립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며 정신 건강도 상당히 위협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우선 제안하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내 경계선 지능 청소년 네트워킹 및 흥미 탐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고 이 들 중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도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고립은 청년기 사회에서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박광옥 외, 2022),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신의 흥미를 찾아내어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함으로써

써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이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취업 지원 거점 대학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경대학교 평택캠퍼스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과 교육과정, 나사렛 대학교 인간재활학과, 특수학교 전공과 등의 장애인 고등교육 모형을 참조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으로 선별된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관련 전공을 개설하는 거점대학을 모집하여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대학에 진학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 것이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 수업을 잘 소화하지 못하거나 조별 과제와 같은 대학의 학습 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학의 학습은 자기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교 학습과는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학습과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전화 지원 사업의 두 번째 영역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하는 진로 취업 지원 사업이다. 연구의 설문응답자의 83.2%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 취업, 직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응답자의 33.4%는 이 영역에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도 진로 취업 지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 지원의 가장 취약한 곳은 저발전된 영역 중의 하나가 ‘진로직업 파트가 아니냐’ 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이 부분이 취약하다 하는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정말 취약해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입시를 통한 성취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는 측면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학력도 일자리도 없게 되는 거죠.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초등학교에 학습지원 한다치고...시설에 사는 아이들 자립지원 정도고 학교 졸업할 때 지원이 너무 취약합니다. (C-종사자2)

이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직업 역량 강화, 맞춤형 일자리 개발, 취업 알선, 직장 생활 적응 지원의 4개의 영역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직업 역량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을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상 학생들을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하고 직장 적응과 정까지 밀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 진출과 자립의 발판이 되는 효율적인 진로 및 취업 지원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지원 사업이다. 앞선 정책진단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가정양육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가족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가족의 전반적인 이해도 낮은 실정일 뿐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경우에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설문응답자의 79.4%가 가족참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42.0%가 이에 대한 지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FGI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가족 이해와 가족지원 사업이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무수히 봐 왔는데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항상 가정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어 되는데 예전에는 교사가 가정방문을 갔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못하고요. 지자체에서 이걸 해줘야 해요. 가정에서의 아이의 삶을 봐줘야 하고 가족들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당사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한 거 같아요. 학부모 교육도 엄청 중요하고요. (C-종사자1)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무수히 봐 왔는데 대부분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정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예전에는 교사가 가정방문을 갔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못하고요. 지자체에서 이걸 해줘야 해요. 가정에서의 아이의 삶을 봐줘야 하고 가족들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당사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C-종사자1)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원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지원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부모 교육, 부모 상담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5) 필요 예산 및 예산 확보 방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경계선 지능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다른 사업안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여서 예산 소요액을 추정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일단 현재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이거나 일부 포함되는 사업 관련하여 사용되는 예산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주요 대상인 될 수 있는 사업은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이다. 이 둘을 합치면 약 16억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약 11억 정도는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예산이다.

표 VII-11. 2023년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주요 사업 예산

사업	내용	2023년도 예산
요보호아동 행사지원	보호대상 아동이 심신단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2억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아동을 대상으로 선별 비용(종합심리검사) 및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10억7천6백
장애학생취업지원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에게 진로설계컨설팅, 사회성 훈련(일배움, 현장체험 등) 취업 준비프로그램 제공 및 졸업 후 사회진출	3백2십억6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지원	- 지적장애(IQ70이하)는 아니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IQ71~84) 학습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진단 및 학습 심리 정서 지원 -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및 분석 -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인지 및 사회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 현장교사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가이드북 개발	5억

출처: 강기윤 (2023a).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3R0P7O1N0O0W9V3T2S0A0Z1Z0N1에서 2023년 9월 2일 인출.

장애학생취업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이거나 장애로 등록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극히 일부만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에도 경계선 지능 청소년 참여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연 비율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예산이 적게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의 다른 정책 기반으로 비슷하게 운영되는 사업 추진 등을 참고하고 제안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VII-12. 경계선 지능 청소년 예산 추계

사업	내용	추계 비용	주무부처 예산 확보 방안
출현율 및 실태 조사	5세~24세 대상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 추정 5세~24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인권실태를 포함하여 생활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2023년 10억 편성을 준용하여 예산 추계	10억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보다 출장 인원이 덜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조사의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태조사 준비에 따르는 비용 포함해야 함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기본 계획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비용 1억원을 준용하여 예산 추계할 수 있음	3억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데 따른 비용을 포함해야 함	보건복지부 경계선 지능인 지원 인프라 구축 예산 신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 체계 구축	(가칭)중앙 경계선 지능인 지원 센터 설립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필요함 ** 2023년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약 76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이를 준용하여 추계함.	15억 운영비 (5억) 인건비 (10억)	
종사자 역량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자료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위탁	3억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 위탁 운영비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거점 대학	경계선 지능 청소년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과 신설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선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당	교육부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 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거점 대학 요건 신설
특성화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네트워킹 지원 사업	특성화고등학교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 공연, 전시, 문화 체험 흥미를 기반으로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4억 한 학교에 2천만원씩 약 20 개 학교 지원	교육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적응 지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적응, 진로 취업 및 가족 지원 시범 위탁 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15억 사업 위탁기관 운영 및 경계선 지능 청소년 취업 교	고용노동부

사업	내용	추계 비용	주무부처 예산 확보 방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지원	*** 장애인 근로자 고충상담 등 장애인 근로지원 센터 6개소에 총 17억원 지원	육 프로그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지원	과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민간위탁운영 64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여 추계함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취업하 기관에 훈련비 지급	
계		50억	

*출처: 강기윤 (2023a).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비용추계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3R0P7O1N0O0W9V3T2S0A0Z1Z0N1에서 2023년 9월 2일 인출.

**출처: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10-p13.

***출처: 고용노동부 (2023). 2023회계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p61, p64. https://www.moel.go.kr/agency/budget/budgetView.do?bbs_seq=20230200030에서 9월 1일 인출

예산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청년 진로 취업 고용 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예산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일반, 아동 보육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경우 대학에 대학혁신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각 대학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학력보장 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여 종사자 역량강화, 실태조사와 같은 사업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개선과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적장애로 분류될 정도보다는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일상 생활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발달, 학습, 사회적 관계, 정서, 신변관리 등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은 지능 분포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56%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시설보호 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서 더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것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셋째, 2023년 현재 법 조항에 ‘경계선 지능’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없다. 그러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능력의 제한’, ‘지능지수의 범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포괄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지자체 조례가 있다.

넷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지원 정책은 전체적으로 취약하지만 그중에서도 유아기, 학령기 이후의 정책이 거의 없으며, 학습 이외의 영역과 가정양육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많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개념도 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인 실태파악도 미흡하며 지원체계도 갖추어 있지 않다.

다섯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은 (가칭)「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신설과 현행 법에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2개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행 법의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대상이 되는 법은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할 경우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장애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법 개정(안)과 연동하여 제안하였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법이 신설되거나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는 경우 거점센터 설립을 통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과 취약계층 복지 전달체계에 편입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만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명시하면 장애인 복지법의 전달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곱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는 종사자들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에 관한 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여덟째, 신규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 적응 사업의 두 영역을 제안하였다. 사회 적응 사업은 구체적으로 종사자 역량강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거점 대학 시범사업, 지역사회 적응 지원, 진로 취업 지원과 가족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다.

○ ————— 제8장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분석 및 개선과제

-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현황
-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제도 현황
-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진단
-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 5. 소결

청소년의 무기력이 심화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드러난 학교폭력 등 학교현장의 병리적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온 가운데 학교 내 경쟁구조는 여전히 강화, 유지되어 오고 있다. 급속한 정보 환경의 변화로 넘치는 정보의 양과 글로벌 환경은 청소년의 삶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새로운 교육양식과 진로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전통적 학교교육은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무기력은 경쟁교육과 경쟁사회에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기 어렵다는 인식,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착된 계층구조로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인식, 각종 플랫폼과 SNS 등을 접하며 성장한 세대에게 무의미하고 참을 수 없게 느껴지는 교실, 이러한 삶의 환경변화 속에 동료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 교실문화 등에 기반하고 있다.

은둔은 관계의 단절, 희망의 좌절로 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이러한 청소년·청년들이 소리 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학교, 대안교육기관 현장, 청소년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 방임, 억압적 양육태도 하에 의사소통 능력을 못 키운 청소년이 동료관계에서 고립되면서 살아갈 힘을 잃어가면서 서서히 멈춘 것이다. 이들에게는 왕따 등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흔하다.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은둔·고립 청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곳이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차단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대상 발견과 지원이 매우 어렵고 발견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해서 서비스 제공의 난이도가 높다. 또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매우 적다. 은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63) 이 장은 윤철경(G·L청소년연구재단 상임이사)이 작성하였음.

40대 이상의 고연령 은둔형 외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책이 없는 관계로 방치되고 있다.

정책의 큰 줄기는 먼저 은둔형 외톨이의 신규진입을 막고 은둔형 외톨이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은둔형 외톨이부모나 당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정책 연령대상을 9세에서 24세로 잡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생과 장기화 예방에 초점을 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현황

1)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1990년대 장기간 경제침체에 빠진 일본사회에서 방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접촉 없이 혼자 지내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을 ‘히키’와 ‘코모리’의 합성어인 ‘히키코모리’로 칭하게 되었다. ‘뒤로 끌려 박힌다’는 의미의 ‘히키’와 ‘스스로를 격리시킨다’는 의미의 ‘코모리’가 합쳐져 ‘격리하여 꼭 박힌다’ 뜻을 갖고 있다(이영식, 최태영, 2022: 7).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이토 다마키(1998)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병명이나 진단명이 아니며 등교거부나 가정폭력과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를 ① 6개월 이상 집에 틀어박혀 (자택에 틀어 박혀) 있으며 ② 사회참여를 하지 전혀 하지 않는 상태, ③ 다른 정신 질환이 없고 ④ 기능의 저하,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했다(최태영, 2021: 48에서 재인용). 일본 후생노동성의 은둔형 외톨이 평가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적 참가(의 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제 등)를 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에 걸쳐 대개 가정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의 외출 포함)를 지칭하는 현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윤철경 외, 2021:7에서 재인용).

국내에서는 2001년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이시형 소장와 여인중 박사 연구팀이 히키코모리를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로 명칭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고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로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기도 한다(여인중, 2005).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지원조례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9,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2조).

일본과 국내의 은둔형 외톨이 개념을 정리해보면 <표 VIII-1>과 같다. 은둔형 외톨이는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일정 기간’, 외부와의 적절한 관계가 없는 ‘관계 단절’(학교·직업생활, 친구관계, 가족관계까지 다양함), ‘한정된 공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불안 등으로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윤철경 외(2021)는 은둔형 외톨이 일반 개념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장애나 정신질환 등이 은둔의 계기가 아니면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친구가 1명 이하인 9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서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되었다.

표 VIII-1. 국내·외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학자	은둔형 외톨이 개념
사이코 다마키 (1998)	① 6개월 이상 집에 틀어박혀(자택에 틀어 박혀) 있으며 ② 사회참여를 하지 전혀 하지 않는 상태, ③ 다른 정신 질환이 없고 ④ 기능의 저하,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초래하는 상태
일본 후생노동성 (2019)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적 참가(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제 등)를 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에 걸쳐 대개 가정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의 외출 포함)를 지칭하는 현상 개념
황순길 외 (2005)	(1)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고 있고, (2) 진학취업 등의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3)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명도 없고, (4) 자신의 은둔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5)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
오상빈(2021)	(1) 3개월(6개월) 이상 자신의 방이나 집에서 틀어 박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못하는) 사람, (2) 학업이나 직업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학업, 사회참여에 동기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못하는) 사람, (3) 정서적 교류를 요청할(친구가 한 명이거나 한 명이 없는) 사람, (4)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안하는 사람, (5) 자신의 은둔상태에 대한 무기력감과 불안감 호소, (6) 자신의 생활에 변화의 욕구는 있으나 현실부적응으로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가진 경우, (7) 지적,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제외

학자	은둔형 외톨이 개념
광주광역시 조례 (2019)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윤철경 외 (20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은둔의 계기가 없으면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1명 이하인 9세에서 24세 청소년으로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를 추정하거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작적 개념이 필요하다. 일본 내각부(2016)는 은둔형 외톨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추정하였다.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위 같이 응답한 사람 중 장애, 정신질환, 신체적 질병이 원인인 자, 임신, 출산, 육아를 하고 있거나 자택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례는 제외하고 은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추출하였다.

위 문항에서 ⑤, ⑥ 응답자는 준 은둔형 외톨이, ⑦, ⑧ 응답자는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구분하고 전체를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청년의 관계·참여를 보기 위해 일본의 위 문항을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규모가 보고된 적은 없다.

윤철경 외(2020, 2022)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규모를 분석하였다. 즉, 일본과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조작적 개념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은둔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며 장애나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질병, 가사, 출산, 육아 등이 은둔 계기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념은 윤철경의 개념에 따른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국 조사 결과는 아직 없다. 광주광역시(2020) 실태조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규모 분석이 없으며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에서는 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조작적

개념이 본 연구와 상당히 다르다. 은둔 개념과 고립 개념을 각기 달리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정책대상을 많이 포괄하려는 의도에서 조작적 정의에 따른 개념조차 유연하게 적용하여 규모를 추출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원자료와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녔다(서울특별시, 2022: 34).⁶⁴⁾ 또한 은둔 개념과 고립 개념을 다른 기준으로 정의하면서도 ‘은둔’을 ‘고립’의 한 형태, 포함관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은둔 청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활동형 외톨이를 계속 은둔 청년으로 볼 것인가, 고립 청년으로 볼 것인가 개념적 혼선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고립과 은둔을 동의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천현장에서는 ‘집에 틀어 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접촉할 수 없기에 ‘관계에서 고립되고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 밖으로 나와 접촉 가능한 청년을 고립 청년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은둔’을 ‘고립’의 한 유형이자 단계로 보고 접근하고 있기에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일 뿐이다.

은둔형 외톨이를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조작적 개념을 적용하면서 ‘현재와 과거 경험자’로 정의한다면 은둔과 고립은 동일한 개념이며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이 관건이다.

2)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

은둔형 외톨이의 전국 규모에 대한 추정은 윤철경 외(2020, 2022)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2017~2021 각 년도)를 활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표 VIII-2>에 따르면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은둔형 외톨이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에 갑자기 증가하여 코로나 이전인 2017년 0.90%에서 2021년 2.1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64) 서울특별시 조사에서는 은둔 청년을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의 항목에 해당 하면서 6개월 이상 은둔한 사람, 지난 1주일간 경제 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 학업활동,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19-39세 청년을 정의하였으며 고립청년은 물리적·정서적 고립 상태에 있는 자로 정서적 고립이란 ①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②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③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④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등 앞 4가지 상황에서 도움 받을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 물리적 고립이란 ①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②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대면교류가 1년에 한 두번 이하인 사람. 고립청년이란 위 정서적·물리적 교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임. 은둔·고립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는 은둔 청년, 아닌 경우는 고립 청년으로 구분함(서울특별시, 202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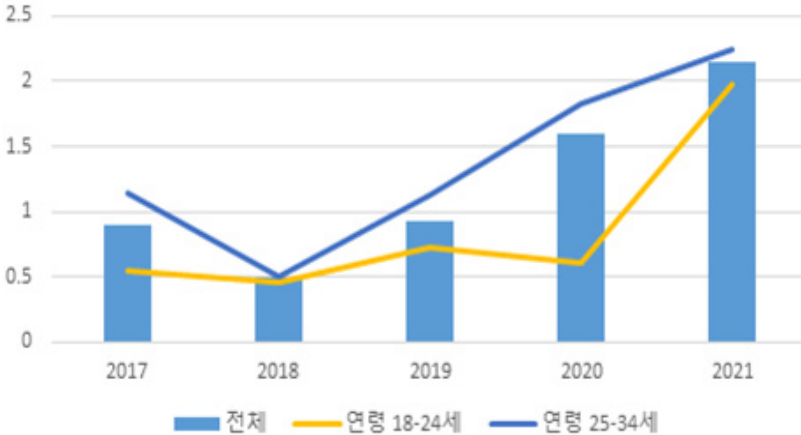
표 Ⅷ-2. 은둔형 외톨이 발생비율의 변화(2017~2021)

(단위: %)

년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0.90	0.49	0.93	1.59	2.15
성별	남성	0.83	0.75	1.17	1.51	2.05
	여성	0.98	0.19	0.66	1.68	2.28
연령	18~24세	0.55	0.46	0.73	0.6	1.97
	25~34세	1.14	0.50	1.12	1.83	2.25

* 출처: 윤철경 외 (2022). 2022 고립·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p15.

연령별 증가 경향이 좀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 Ⅷ-1>에 따르면 18~24세 청소년집단은 코로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타고 있다.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 계속될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가 2021년으로 종료되어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 출처: 윤철경 외 (2022). 2022 고립·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p17.

그림 Ⅷ-1. 고립·은둔 청년 발생률 연령별 변화

윤철경 외(2022)의 연구는 발생률에 기초해 전국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표 VIII-3>과 같이 추산하고 있다. 청소년연령에 해당 하는 18~24세에서 82,785명이 추산되었다. 자료의 한계로 9-17세 학령기 인구가 빠진 숫자이다.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2022)에서는 19-39세 전체 은둔 청년 비율이 1.2%로 추정되었다(서울특별시, 2022: 30)⁶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년 조사결 과 1.97%보다 낮은 숫자이다.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연령 범위, 조사지역 범위 등이 달라 시계열적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표 VIII-3. 2021년 전국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 규모(2021년 18-34세 인구 기준, 추정치)

단위: 명(%)

구 분	전 국			서울	
	해당 구간 인구	은둔형 외톨이 비율	추정치 (해당인구수×비율)	해당구간 인구	추정치 (해당인구수×비율)
전 체	10,920,381	44(2.15)	234,788	2,341,354	50,339
성별	남성	5,713,137	22(2.05)	117,119	23,494
	여성	5,207,244	22(2.28)	118,725	27,252
연령	18-24세	4,202,316	14(1.97)	82,785	15,510
	25-34세	6,718,065	30(2.25)	151,156	34,965

* 출처: 윤철경 외 (2022). 2022 고립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방안 연구. G·L학교박청소년연구소. p14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1년 6월 기준) 활용. 추정치는 비율 상 오차로 인해 성별, 연령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3)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역별로 실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광역시 (2020), 부산광역시(2022)⁶⁶⁾, 서울특별시 실태조사(2022)이다. 본 글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살펴보았다.

65) 서울특별시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살펴보면,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윤철경 외 연구(2022)에서 서울특별시의 2021년 18-34세 인구 중 은둔형 외톨이 인구수는 해당 인구 2,341,354명 중 2.15%에 해당하는 인구인 50,339명으로 추정하였다. 남성 23,494명, 여성 27,252명, 18-24세 15,510명, 25-34세 34,965명이었다. 서울특별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2022)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5,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5%가 고립 또는 은둔 상태로 나타났다. 이를 서울특별시 청년 인구에 적용하였을 때, 서울특별시의 고립·은둔 청년은 12만 6천 명~12만 9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은둔상태는 1.2%로 33,009명~33,796명으로 추정되었다.

66) 박주홍, 손지현, 서두삼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표 VIII-4. 은둔형 외톨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별/학력별)

(단위: %)

지 역	연령별						학력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고졸이하	대졸이상
부산광역시	1.5	26.1	42.2	16.3	3.4	.4	30.0	70.0
광주광역시	.3	44.4	26.6	12.3	5.4	4.9	22.9	41.5

〈표 VIII-4〉는 두 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광주광역시 조사에서는 20대(44.4%), 30대(26.6%), 40대(12.3%), 10대(6.3%), 50대(5.4%), 60대 이상(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조사에서는 30대(42.2%), 20대(36.1%), 40대(16.3%) 중심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각각 전체의 71%, 78.3%에 달할 만큼 청년층에 있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은둔당사자의 최종학력은 광주광역시는 대졸 이상(41.5%), 고졸(22.9%), 대학교 중퇴(16.0%), 대학교 재학(7.7%)의 순으로, 부산광역시는 대졸 이상(70.0%), 고졸 이하(30.0%)로 나타났다.

표 VIII-5. 응답자의 평소 외출 정도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7.0	10.2	13.1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7.0	20.0	27.4
보통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함	24.3	57.5	50.6
보통 집에 있지만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17.3	5.8	8.9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함	8.6	2.5	-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함	5.3	-	-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함	5.3	4.0	-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함	25.1	-	-

*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실태조사. p51; 박주홍 외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143; 광주광역시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37의 표를 내용에 맞게 편집하였음.

〈표 VIII-5〉는 응답자의 평소 외출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응답자의 은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 방이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비율이 서울특별시 14.0%, 부산광역시 30.2%, 광주광역시 40.5%로 광주광역시 조사에 은둔형 외톨이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조사에는 은둔이 아닌 응답자 45% 내외 포함되어 있다.

(1) 은둔생활을 하게 된 계기

은둔은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가정 폭력, 실패에 대한 낙인 등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영향도 크다. 수많은 실패를 겪던 청년들이 취업마저 성공하지 못하면서 사회에 섞이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실태조사에서도 취업 실패가 고립·은둔의 계기로 가장 많이 거론됐다.

〈표 Ⅷ-6〉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실태조사에서 모두 취업 실패 등 직업 관련 어려움을 은둔 계기로 꼽고 있다. 은둔의 계기가 취업 실패만이라면 오히려 해결이 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은둔을 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 은둔 계기로 꼽고 있는 요인 중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크다. 서울특별시 조사에서는 이 두 요인이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고 부산조사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광주광역시 조사에서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더 중요한 계기로 응답하고 있다. 취업, 대인관계,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주요 은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조사마다 선택지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서울특별시 조사에서는 은둔 계기가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39.9%)'라는 응답도 많아 코로나 등의 사회적 영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족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이나 왕따 경험 등이 은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학업 실패도 주요 은둔 계기 중 하나이며 서울특별시 조사와 광주광역시 조사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Ⅷ-6. 은둔생활을 하게 된 계기

(단위: %)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직업관련 어려움(취업준비, 취업실패, 실직, 퇴직 등)	45.5	37.5	37.9
대인관계 어려움(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 인간관계 맺는 것의 어려움)	40.3	30.2	17.3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어려움	40.9	6.2	26.6
가족 관련 어려움(관계악화, 가족간 갈등, 이혼, 사망, 가정폭력, 학대 등)	35.6	10.5	1.3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서	39.9	-	-
학업관련 어려움(성적, 입시, 학교생활의 무의미 등)	30.7	2.2	-
학업중단, 진학실패	19.5	-	13.5
친구나 주변인의 따돌림, 괴롭힘, 폭력 경험	21.0	-	-
건강상의 어려움(신체적 질병 등)	11.7	6.2	-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특별한 이유 없음	-	7.3	-
기타	2.7	6.2	3.4

*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실태조사. p87; 박주홍 외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144; 광주광역시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39의 표를 내용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복수응답 통계수치임. 광주광역시의 경우 '실직해서' 문항의 통계수치는 '직업관련어려움' 항목에 포함함

(2) 은둔생활 기간

〈표 Ⅷ-7〉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조사에서는 은둔 생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 28.1%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장기 은둔' 생활을 한 비율은 2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조사에서는 1년~3년 미만 39.6%, 6개월~1년 미만 17.1%, 3개월~6개월 미만 13.5%, 5년~10년 미만 12.4%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조사에서는 6개월~1년 미만이 31.2%로 가장 많았고, 1년~3년 미만 24.9%, 3개월~6개월 미만 21.1%, 3년~5년 미만 13.1%, 5년~10년 미만 7.2%, 10년 이상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지자체 모두 은둔 기간은 1년 이상 ~ 3년 미만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Ⅷ-7. 은둔생활 기간

(단위: %)

지 역	3개월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이상
서울특별시	7.0	7.8	11.9	28.1	16.7	17.0	11.5
부산광역시	-	13.5	17.1	39.6	10.9	12.4	6.5
광주광역시	-	21.1	31.2	26.6	12.3	5.4	4.9

*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실태조사. p54; 박주홍 외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142; 광주광역시(2020). 2020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37의 표를 내용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함

(3) 은둔이 최초로 시작된 시기

〈표 Ⅷ-8〉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조사에서는 연령별로는 만 20~24세가 39.0%, 만 25~29세가 31.3%로 각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20대 초반과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중후반에 은둔을 최초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았다. 은둔 최초 시작 연령은 평균 24.43세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조사에서는 현재 은둔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52.4%가, 과거 은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73.9%가 20대에 은둔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 조사에서는 만18세 이하 13.5%, 만19~24세 32.5%, 만25~29세 29.5%, 20대에 은둔을 최초로 시작하는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만30~39세 이하 12.7%, 만40세 이상 11.8%로 나타났다. 3개의 지역조사를 종합할 때 은둔을 시작하는 주요 시기는 20대에 집중되며 30대 은둔, 10대시기에 시작하는 은둔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Ⅷ-8. 은둔이 시작된 최초 시기

(단위: %)

지 역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서울특별시	13.2	70.3	16.5	-
부산광역시	9.9	52.4	27.3	10.5
광주광역시	13.5	62.0	12.7	11.8

*출처: 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실태조사. p57; 박주홍 외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141; 광주광역시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p40의 표를 내용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함

(4)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본 연구 면접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1-당사자 1	맞벌이 가정. 경제적 여유. 학교자퇴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집에서 쫓겨나 친외조부모 집에서 생활함. 컴퓨터와 휴대폰을 아버지가 부셔서 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TV와 뉴스만 보고 지냄. 은둔했으나 부모의 냉담한 반응. 우울과 불안증세. 중학교 등교 거부. 학교에 대한 두려움
D1-당사자 2	맞벌이 가정. 부모의 과보호. 과학자 꿈을 이루기 위한 학원 학습. 부모의 과잉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다가 번아웃 됨. 학원 폭력과 정신적인 어려움, 저장강박이라는 정신질환. 중 2때 학원에서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저장강박증이 생김. 신경정신 치료가 별로 도움이 안됨.(약만 주고 근본적 치료는 없었음). 부모의 냉담과 방치. 유일하게 있었던 1명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자살. 은둔하면서 비교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은 없었음.
D1-당사자 3	이혼 가정. 친아버지의 가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아버지와의 갑작스런 단절. 어머니의 바쁜 직장생활, 어머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중학교 때 따돌림 당한 기억, 학업(수학)스트레스 및 외모의 문제 느낌.

개인적인 특질 면에서 내향적이고 순종적인 성향, 인정 욕구 크다.

개인적 특질 면에서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타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비판과 자책을 많이 하는 성향이 강하다(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조용하고 말수가 거의 없었던 애였고 그리고 확실히 친구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저도 마음이 여렸던 애로 기억을 해요~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면서 된 거기는 한데 제 댁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무르고 싶기는 한데 너무 많이 와 버렸고 하니까. 공부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엄마 같으면 그냥 그래, 그러면 그만해라. 원한다면. 그렇게 하실 분인데 저는 그 때는 그런 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던 애였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런 애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선생님 말도 잘 듣고 그런 애였으니까요. (D1-당사자2)

거스르는 일 없이 조용하게 암전하게 있고~애들이 저보고 착하다는 평을 한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니까~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표현했을 때 나를 싫어하면 어찌지 라는 걱정, 그래서 말을 안하고 살았어요. 걱정, 불안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수줍어하고, (D1-당사자3)

무기력함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

자존감이 낮아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고 내향적이며 무기력함을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

어머니는 제 성격을 안좋아 하셨던 거죠. 굉장히 화를 내셨고 그 일로 되게 상처가 되었어요~어머니 병간호하고 있을 때도 정신이나 마음이 우울하고 그랬는데 언니한테 욕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되게 좀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밤낮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되고 밤에 새벽까지 인터넷만 하고 깨어 있고 낮에 자고. 아침이랑 낮에 자고.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밤낮 뒤바뀐 생활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울증 증상이잖아요. 아침에 기분이 나쁘고 뭔가를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가족들은 제가 아픈 걸 몰랐어요. (D1-당사자3)

학교 폭력, 왕따 경험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마다 가해자와 폭력의 수위나 지속성 등은 달랐지만, 대부분이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신체·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실태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성인이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57.2%)',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51.2%)'이 있었다. 광주광역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의 70.9%가 왕따·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8.1%가 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 당사자 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은 아니고 그냥 한 두명이 괴롭혔어요. 저는 괴롭힘 당한 건 얼마 길지 않아요. 길지않고 오히려 제 친구들이 당한 것도 많이 봤죠. 제 친구들이 당한 것도 많이 봤어요...어두운 얘기지만 친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지속되면 그럴 거라는 게 미리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그게 스스로 예상되더라고요. (D1-당사자1)

그냥 군데 군데 큰 사건은 아니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냥 학교폭력 같은 게 드문드문 있어서. 그런 것들 기억이 나고. 그거 있었거든요. 그게 공교롭게도 중학교 2학년 때 학원폭력 같은 것. 맞지는 않았는데 언어적으로 괴롭힘 당했거든요. 그런 시기랑 겹쳐요. 그 때부터 김새가 나타나서 물건을 버리는 게 싫은 거예요. 물건 잃어 버리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외출을 하게 되면 물건 잃어버리면 어쩔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 확인하고 옷도 털고. 그러다 진이 빠지는 거예요. 학교 가기 전에. 외출 전에 그런 작업을 하니까. 주머니 확인하고 상의에 있는 주머니 확인하고 이게 너무 고역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이 오다 보니까 나 못 해. 이탈. 이렇게 되는 거죠. (D1-당사자2)

그 때 위생 관념이 없었어요. 애들이 보통 싫어하잖아요. 여학교인데 청결, 깔끔한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위생관념이 없어서 속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런 자각이 왜 없었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잘 몰랐던 거죠. 주변 가족들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각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따돌림은 조별 활동이 있었는데 친하게 지낸 그룹이 있었는데 조를 짤 거 아니에요. 저도 하겠다고 했는데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가벼운 따돌림인데. 그래서 다른 애들은 조를 다 짜고 남은 애들 한두 명은 모자라는 조에 끼워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D1-당사자3)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교우관계 때문에 등교거부가 시작 됐는데요. 친구하고 같이 입을 맞추기로 했는데. 어떤 말에 대해서 입을 맞추기로 했는데 입을 맞춘 친구가 어떤 다른 그룹 애들로부터 배제를 당한 거예요. 따돌림 당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그룹에서 따돌림 당한다 라고 하면서 절친인 친구하고 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등교 거부가 시작 됐고 그러면서 가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D2-부모1)

(5) 은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계기

은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선적 계기는 은둔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실태조사에서는 자신의 은둔이 문제라는 인식이 88.7%였다.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스스로 깨달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상으로, 부모/형제/친구 등의 자극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실태조사에서는 은둔 생활을 했던 응답자의 40.3%는 취업을 하면서 은둔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 본 연구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가족의 지지체계와 인간관계를 통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족의 도움과 지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집을 나가면 되겠네. 죽어 버리면 되겠네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놀라셔서 신경정신과에 데려가셨어요. 그 때 약물 치료 받게 된 계기가 돼서 그게 약간 한 번 바닥을 친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니가 데려가 주신 것.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건 감사하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웠다가 약물치료 효과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고 잡생각도 많이 없어지고 강박 우울도 나아지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나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장기 일을 찾기 시작 했어요. 전에는 단기만 하다가. 장기 일 찾기 시작 했고 그러면서 변화는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친언니 중에 둘째 언니가 저를 잘 돌봐줬어요. 두 번째 엄마라고 표현한 적이 있을 정도로 둘째 언니가 저를 어릴 때부터 보살펴줘서...언니가 만약 없었으면 나한테 관심 주고 나한테 귀기울여 주고 없었으면 더 힘들거나 더 안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정도예요. (D1-당사자3)

좋았던 인간관계의 추억

좋았던 인간관계도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만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만화동아리 있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만화동아리. 그래서 친구들 만화 좋아하는 애들끼리 동아리로 모이니까 회지도 만들고 추억이 있어요. 만화 동아리 활동한 추억이 있어요. 저를 좋아해줬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자주 그리니까. ...그런 좋은 기억이 없으면 나오기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좋은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은둔 이후로 심리상담 받은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약물치료도 도움이 되고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치유효과도 있었고 글쓰기를 블로그에 일기를 많이 썼었어요. 공개로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D1-당사자3)

나오고 싶은 의지

도움 같은 건 없었어요. 저는 도움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살고 싶었어요. 먹고 살려면 노트북도 부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음악을 못 하잖아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하려면 노트북 있어야 되고 노트북 가져야만. 공부하면 노트북 줄 것 같더라고요.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하면서 변화시켰어요. (D1-당사자1)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관계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가족은 답답함과 후회, 상실감과 불안,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 정서적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는다. 자녀가 장기 은둔을 하면 부모 또한 사회적 고립 경향을 보이게 된다(윤철경 외, 2021; 79-82).

① 학업중단, 은둔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악화, 부모와 자녀의 힘 겨루기

은둔 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족과의 관계 악화다. 학교를 안다니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등 가족과의 단절이 가장 먼저 나타났다.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더욱 고립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름 되고 겨울 되고 할 때 옷 챙겨서 나오고 그런 게 전부죠. 13년 동안 집에는 1년에 1-2번 들어가고 집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피아노도 못 치고 피아노도 1년에 2-3번 밖에 못 친거죠. 나머지는 할아버지 댁에 쫓겨 났는 데 그마저도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몇 번 가져가고 몇 번 부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이 빼앗기고 너무 많이 부서져서. 기억도 안 나요....할아버지 집에서도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 해요. 왜냐하면 집안에 손님이 가끔 오시는데 거기가 집성촌이라서 같은 동네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학교 안 다니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방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진짜. (D1-당사자1)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인내심에 한계가 오잖아요. 너는 어떻게 나갈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사소한 걸로도 되게 별로 아닌 걸로도. 가깝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D1-당사자2)

초반에 조그만 병원 다니다가 그 때 아빠하고 크게 마찰이 있어서 경찰도 오고 했는데 그 뒤로 병원을 옮겨서 다니고...아빠가 하루는 마음 먹고 밖으로 꺼낸다고 얘기를 걸고 했나 봐요. 아빠가 막판에 엉덩이도 때리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일 있고 나서 아빠랑 밥도 먹고 그 일 있고 나서 3시간 후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빠를 때리려고 몽둥이 찾고 다니고 그랬어요. (D2-부모3)

그 때 무지해서 다그쳤어요. 학교는 다녀야 되는 거다. 학교를 안 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논리였어요....때리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겁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사회 나가서 생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겁도 주고. 그랬습니다.....그렇죠. 조금이라도 화가 나서 저한테 물건이라도 던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문 부터 걸어 잠그고 자기도 칼을 준비해서 방 안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D2-부모1)

② 가족관계의 악화의 요인: 부모의 폰대 짓, 가르치기

부모-자녀 사이의 힘겨루기는 은둔 초기에 부모가 폭력적인 경우가 많다면 점차 자녀의 폭력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은둔 당사자의 61.5%가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이 느끼는 폭력의 정도는 69.6%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2020: 69, 111).

예를 들면 제가 방에서 자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아이가 바스락바스락 먹길래 야, 뭐하니 뭐 먹니 물어봤을 때 나 배고파서 뭘 먹어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시끄러워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딱 그만둬야 돼요. 거기에서 너 아빠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때부터 물건을 집어 던지고 내가 집어 던질거야 그러면서 던지고 칼을 들고 자해를 하고 자살시도를 하고 집에서 베란다에서 떨어지려고 창문을 열고 그런 행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개되는 겁니다. (D2-부모1)

아빠가 하루는 마음 먹고 밖으로 꺼낸다고 얘기를 걸고 했나 봐요. 아빠가 막판에 엉덩이도 때리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일 있고 나서 아빠랑 밥도 먹고 그 일 있고 나서 3시간 후에 집에 왔는데 갑자기 아빠를 때리려고 몽둥이 찾고 다니고 그랬어요. (D2-부모3)

③ 은둔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인식 차

은둔에 대한 가족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의 인식 차가 있다. 은둔에 대한 이해와 인식, 관점이 서로 상이하였다. 은둔에 대해 은둔 당사자는 ‘외출하지 않거나 소통하지 않는 상태’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은 등교 등 ‘정해진 사회적 과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박주홍 외, 2022: 125).

은둔의 원인에 대해서도 가족참여자는 정신질환에 의한 은둔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면 은둔 당사자는 길고 복잡한 이유로 은둔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박주홍 외, 2022: 125).

부모의 긴장과 불안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가 악화되며 은둔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상담기관 방문, 정신과 진료, 자녀 이해 교육, 대화를 하며 자녀를 믿고 격려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윤철경 외, 2021: 83-85).

가족들의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성공적 경험들은 부족한 상태이다. 가족과 은둔 당사자 모두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찾았으나, 사회적 지원 또한 부족하고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홍 외 2022: 125).

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은둔형 외톨이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상담 등 심리적 지원(34.8%), 경제적 지원(18.8%), 진단 및 치료 지원(15.2%), 취업 지원(9.8%) 순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2021: 130).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에 대해 은둔형 외톨이의 74.3%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은둔 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광주광역시, 2020: 128).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은둔형 외톨이에 최적화된 전문적 상담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 면접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상담, 부모를 통한 모니터링과 솔루션, 지속적인 상담 또는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 필요, 은둔 초기부터 지속적인 상담 및 멘토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지원은 상담과 직업을 위한 교육지원이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도 일주일에 한번 씩 은둔을 겪은 형제와 가볍게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소통을 바라고 있다. Wee 클래스나 학교에서 한 두번 하다 끝나버리는데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 주었으면 이렇게까지 안되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다른 부모는 자녀들이 주1회 상담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모들은 자신들에게도 지속적인 부모 교육이 필요하지만 은둔 자녀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주1회 상담을 받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저는 괜찮은데 상담지원 필요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상담지원이 필요하고 (D1-당사자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솔루션 지원, 다양한 사례 수집 ”일단은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사자를 알 수가 없다면 부모님 통해서든 해서 뭔가 모니터링 같은 걸 주기적인 그런 걸 해서 애가 밥은 먹는 지. 어떻게 지내는 지.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래서 그걸 모니터링 하면서 그거에 맞게 솔루션이든 뭔가 계획이든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지. 구체적인 어떤 증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례를 수집을 많이 하셔서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1-당사자2)

위클래스 선생님이 봐야 될 아이가 많았던 거예요. 몇 번 하다가 손을 놔 버리시더라고요. 막판에 저희 이사하고 전학하고 할 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하실 때는 부모가 뭘 잘못했는 지 취조하듯이 다 그렇게 하셔 놓고 그렇게 했었고 이번에 고등학교 때에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딱 세 번 밖에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 그 아이가 등교 거부할 때에는 자퇴하고 나서 은둔으로 이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은둔으로 이어지고 은둔이 장기화 되고 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싶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등교거부 초기에 조금 강압. 의무적으로 개입을 해서 집안에 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략적으로 개입해서 아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부모교육도 하고 아이도 이 상담도 아이가 거부하면 못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더라도 아이 잡아요. 학교 등교 거부하면 의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고 해서 상담도 하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꾸준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몇 번 하다 말면 안하는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기에 하되, 꾸준한 개입과 지원. 교육. 이런 것들 해 주면 좋겠습니다. (D2-부모4)

저희 아이 입장에서 초기에는 그래도 상담선생님이 전화 몇 시에 할 게 하면 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그때라도.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이미 은둔을 겪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렇거나 지금 형처럼 느껴지는 멘토. 대학생들이나. 자기 경험담도 가볍게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라도 일주일 어떻게 지냈니. 나도 옛날에 학교 안 갔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뭐가 되면 애가 소통하는 거라도 마음을 열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D2-부모2)

상담선생님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야 되고 이것이 계속. 상담 선생님 계속 오게 하는 게 문제네요. 그것이 문제네요. 그렇게 하고 상담선생님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D2-부모3)

직업을 위한 교육 지원과 취업 연계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딱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저는 괜찮은데 상담지원 필요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상담지원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이 필요해요. 저는 인터넷강의 사는데 돈이 엄청 들거든요. 교육을 하는데 부담이 엄청 돼요. 어디든 제가 배울 수 있다면 아니면 배우는데 돈을 쓸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테니까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요. (D1-당사자1)

교육지원 및 취업 연계, 인간관계 지원, 주거 지원 ” 제가 만화 웹툰에 관심이 많아서 웹툰학원 다니고 싶고 배우고 싶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비 이런 것도 안 되고 개인이 다 내야 되는 건데 교육을 받아서 직업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고 싶고요. (D1-당사자3)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티 필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제가 친구도. 사회적인 관계 말고 사적인 관계는 가족 밖에 없어요. 친구 지인도 없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사람들과 네트워킹 이룰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좋겠고 사람을 살 곳이. 요즘 주거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집 마련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아는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D1-당사자3)

둘째,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둔 초기 부모 교육

부모들은 자녀의 은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때 적절한 도움이 있었더라면 자녀들이 이렇게 오래 은둔을 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도움은 학교를 그만 둔 후 연계기관에 넘겨줄 때 당시 부모 교육을 받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다른 부모도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절실하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몇 일 지나면 학교에서 연계 기관에 넘겨줘서 부모교육 지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당시에.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쉽습니다. (D2-부모1)

저도 지금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 아이 입장에서 초기에는 그래도 상담선생님이 전화 몇 시에 할 게 하면 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그 때라도.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이미 은둔을 겪은 청년들 있잖아요. 그렇거나 지금 형처럼 느껴지는 멘토. 대학생들이나. 자기 경험담도 가볍게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30분 정도라도 일주일 어떻게 지냈니. 나도 옛날에 학교 안 갔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꾸준히 뭐가 되면 애가 소통하는 거라도 마음을 열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D2-부모2)

지금 필요한 건 부모 교육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고 .. (D2-부모3)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제도 현황

1) 법·제도 현황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관련 법령·조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다.

①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청소년, 청소년복지, 보호자, 위기청소년, 가정밖청소년, 청소년 부모에 대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다(동법 제2조 4항).

당초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은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기청소년 유형으로 추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3c).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성장지원(5조), 상담 및 교육(13조), 특별지원(14조), 예방적·회복적 지원(19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전달체계로써 지원기관형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제29조)를 규정하고 있다.

표 VIII-9. 청소년복지지원법

위기 청소년 정의	제2조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구 추가 예정)
건강한 성장 지원	5조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상담 및 교육	제13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제1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	제19조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할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29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간담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령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학교를 장기간 결석하게 되고 결국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학교 등교가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상황에 부합한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조기발견의무(제3조), 상담지원(제8조), 교육지원(제9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10조), 자립지원(제11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달체계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연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15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유효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표 VIII-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정의	2조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3조	③ 학교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상담지원	8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지원	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대안학교로의 진학 3.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0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자립지원	1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12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지원센터와의 연계	15조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법정대리인 연락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앞서 살펴본 법령들은 청소년의 범주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지만 구체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은 없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가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표 VIII-11.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 현황

순번	조례명	공포일자	실태조사	정책기구	지원시설
1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0. 11.	○	○	센터 설치
2	고양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2. 21.	○	○	센터 설치
3	광명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5	○		
4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 11. 4.		○	
5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 3. 24.	○	○	단체 지원
6	광주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7.	○	○	

순번	조례명	공포일자	실태조사	정책기구	지원시설
7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4.		○	
8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19. 10. 15.	○	○	센터 설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2023. 9. 20			
10	대전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7			
11	대전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7. 14.	○		센터 설치
12	대전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0. 10			
13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 7. 14.	○	○	단체지원
14	부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2023. 4. 7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4. 7.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7. 6.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6.		○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 12. 30.	○		
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 9. 30.		○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5. 4.	○		
21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10. 4	○	○	
22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 5. 6.	○	○	
23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 12. 26.		○	
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2. 10. 17.		○	
25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9. 27	○	○	
26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4. 17.	○		
27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 9. 30.	○		
28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2. 11. 11.	○		
29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3. 9. 21	○		
30	화성시 은둔 고립형 가구 지원 조례	2023. 7. 12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ventGubun=060116>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조례별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적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발견,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자조모임, 활력 조성, 문화예술체육, 자립지원 등으로 지원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이 은둔형 외톨이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지원만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은둔형 외톨이지원조례는 모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30개 지역중 실태조사를 명시한 지역은 17개 지역이었으며, 별도의 정책기구(지원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는 지역은 15개 지역이었다. 3개 지역은 지원센터 설치, 2개 지역은

지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두었다. 일부 지역은 재활촉진지원으로 명시하기도 하였고(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남구)와 ‘밀착지원’을 조례명에 담은 경우도 있다(제주도).

(3)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조례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 연령을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고(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년 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24세 연령 구간은 청소년이면서 청년인 시기에 해당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단기간에 은둔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고 많은 경우 청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은둔형 외톨이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16개 지자체에서 고립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⁶⁷⁾

고립청년 지원조례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내용상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립청년을 규정하고 있다.

표 VIII-1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 제정 현황

순번	조례명	공포일자	실태조사	정책기구	지원센터
1	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7. 1.	○		
2	나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2. 24.	○		
3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1.	○		시설 설치
4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0.	○		시설 설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22.	○		시설 설치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9. 22.	○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2. 31.	○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0. 29.	○		
9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2023. 10. 10.	○		사업 위탁
10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2. 11.	○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5.	○		
12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 2.	○	○	
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20.	○		

67) 부천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류하였음.

순번	조례명	공포일자	실태조사	정책기구	지원센터
14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16.	○		
15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5. 13.	○		
16	태백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19.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으로는 발견, 사회성 향상을 위한 공동체 참여활동, 심리정서 지원,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며 일부 지역은 건강지원 또는 위기대처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지원조례와 비교해보면 ‘맞춤형일자리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가 많다는 점이 차별된다.

모든 지역에서 실태조사 실시 조항을 두었으며 은둔형 외톨이지원조례와 달리 별도의 정책기구(지원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1개 지역 뿐이었다. 지원시설 설치나 사업위탁을 명시한 경우는 4개 지역이었다.

2) 지원 사업사례

(1) 청소년 동반자 사업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만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뚜렷한 정책 및 사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일정부분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III-13. 청소년동반자 현황

(2022.12.31. 기준. 단위: 명)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획)
청소년 동반자 수	880	980	985	1,000	1,044	1,066	1,146	1,261	1,313	1,349	1,354	1,363	1,398
수혜청소년 수	26,324	31,226	31,190	33,471	34,775	35,710	38,456	41,392	43,246	36,974	42,023	-	

* 출처: 여성가족부(2023a). 「2023년 청소년 사업안내」, p161.

‘청소년 동반자’는 상담사가 직접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안전망에 유입된 위기(징후) 청소년이며, 유입 경로는 청소년

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전화 1388,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기관들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살(징후), 범죄 탈선 등으로 인한 소년범(보호관찰청소년 포함), 약물·인터넷 중독,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유형의 중·고위험군 청소년 발견 강화를 통한 서비스 소외(탈락) 청소년에 대한 구호 및 지원강화를 사업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사업목적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a: 16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지원시설이나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관계 형성단계부터 시작하는 청소년동반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미 상담관계가 형성된 후 상담을 중단하는 청소년이나 고위험군 등으로 분류되어 장기사례 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도 청소년동반자 서비스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동반자 사업에서 접촉하는 위기청소년 중 은둔형 외톨이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관계형성을 거부하거나 사회관계가 장기간 단절되어 온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2) 공공영역의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청년 지원사업

①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2019년) 이를 근거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외부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 일시적 외출 등의 외부활동을 하거나, 가족 이외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 또는 가족과도 교류가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이며 단계별 지원체계를 갖추면서 당사자 특성에 맞는 1:1 서비스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56명의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하였다(광주광역시의회, 2023: 19-2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구축, 회복력 강화기반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당사자 특성에 맞는 단계별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자조모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표 Ⅷ-14.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업목표

전략	은둔형외톨이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은둔형외톨이 전문 교육과정 운영	은둔형외톨이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은둔형외톨이 회복력 강화 기반 구축	은둔형외톨이 수용성 확대
목표	은둔형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출처: 광주광역시 (202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p73.

상담	집안활력서비스	집밖활동서비스	사회복귀준비
1. 상담 절차 자가체크리스트 작성 접수면접 상담사 매칭 2. 치유 프로그램 당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3. (저항형 유형) 당사자 가정 방문	1. “원, 원, 원해요” 프로젝트 30일 간 진행되는 당사자 마음 보고서 2. “은돌씨 표류기” 온라인을 기반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생활습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게 함으로써 작은 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되는 프로그램	1. “토리, 여행을 떠나다” 대인관계향상 집단 프로그램 2. “명랑한 은둔자 모임” 당사자간 소그룹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개선과 당사자간 유대관계 형성 3. 당사자 자조모임 당사자 모임을 통해 관계형성과 은둔 회복력 강화	1. 역량강화 진로, 취미 등을 탐색해 직업,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기반을 다짐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건강검진 동행 지원 진로탐색/취업활동 도움 2. 기관 연계 당사자 특성에 따른 연계 기관 발굴 및 통합 사례 관리

이바소(당사자 안전지대) 마련
공동주거공간(광산구 예정)

*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2023). 제55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성과와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p21.

그림 Ⅷ-2.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단계별 지원서비스

② 서울특별시 고립 은둔청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는 고립과 은둔을 포괄하여 청년의 활력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립 청년은 ‘구직 단념,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커뮤니티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 및 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청년’으로 정의하며 은둔 청년은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일대 일 밀착 상담, 사례관리(생활관리, 서비스 연계), 자신감 회복(자기 이해, 동기부여, 대인관계 이해), 진로탐색(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계획), 취업 역량강화(구직기초, 구직기술), 인센티브 지급(1인당 20만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다.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심층상담(온라인 병행), 소규모 자조모임, 정서회복

프로그램, 취미·체험형 프로그램, 공동생활(상호돌봄) 프로그램, 가족 지원(상담, 코칭 등)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연계(마음건강지원사업) 등이다(박주홍 외, 2022: 24-25).

활동형 고립	사회적응력		·인문학 강좌 : 삶의 가치와 자기이해, 고립 대응법 훈련, 가치관 확립 ·조직 적응력 : 관계 연습을 통한 대인관계 기술 습득, 자신감 향상, 교류 불안 해소
	직무교육 취업역량강화		·일역량 향상 : 사회생활 기본사항, 조직 내 의사소통 교육 ·직무별 교육 : 코딩, 엑셀, 일러스트, 포토샵 등 직업 기술 향상 훈련
	일 경험 (초급/고급)		·공동작업장 일체형형 : 도래 청년과의 공동작업 (홍보물 및 웹툰 제작 등) ·농촌일자리 경험형 :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업 농촌 가치 느끼기 ·디지털 역량 제고형 : IT, 웹디자인, 데이터분석 등 디지털 관련 일감
	온라인소통		·두더지망글(온라인플랫폼) : 온라인 소모임, 소통공간 제공
비활동형 고립	일대일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와 함께 청년 스스로 자기성장계획서 작성 → 동기부여, 긍정적 지지 ·AI기반(카카오톡) 일상 모니터링 제공 : 매일 넋지 카드 발송, 목표달성 체크 등 - 넋지 : 부드러운 개입으로 청년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자아탐색 관계형성		·MBTI, TCI 등 검사 : 개인기질 파악, 자기탐색 활동 ·도래청년 간 워크숍, 집단상담, 청년 니즈 소그룹 모임 → 소속감 증진
	활동형 프로그램		·의식주 매개 활동형 프로그램 - [의]퍼스널 컬러, 퍼스널 쇼퍼 [식] 반찬만들기, 밥상 모임 [주] 주거 교육, 정리정돈 프로그램
	진로탐색		·취업아카데미 : 이력서 작성 방법, 면접 준비 등 교육·컨설팅 제공, 취업사진 촬영 등 ·청년이음 COMPANY : 청년이 직접 홍보 콘텐츠 기획, 도래 청년과 동아리 활동 지원
은둔형	일대일 회복관리		·코치와 함께 청년이 회복로드맵 상담 ·회복로드맵에 따라 시간사용, 재정관리, 사회활동, 예술활동 훈련
	일상 회복	신체	·리커버리 야구단/ 요가 / 산책 → 기초체력 기르기, 유연성 회복 지원
		정서	·미술·예술·음악 활동/ 은둔 자조모임 → 감정 표현 방법 배우기, 내면 치유
		관계	·쿠킹·영화·게임 등 동아리 활동 → 소통과 배려 학습, 소속감 증진
		지적	·글쓰기·전시·견학·봉사·연극 → 성취감 획득, 자신감 증진
	공동생활		·은둔청년 도래들과의 공동생활(셰어하우스)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키우기 ·규칙적 일상생활을 통해 올바른 생활습관 기르기

* 출처: 서울특별시 (2023.4.25.). 2023년 서울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https://opcl.kr/policy-detail/FEw4t4cBX7SBhtxaWJTA/>에서 2023년 8월 20일 인출.

그림 Ⅷ-3. 서울시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단계별 지원내용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이외에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청년을 직접적인 사업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사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은둔이나 고립청년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의 발견과 사회활동 참여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단기 4주, 장기 5개월 이상의 밀착상담과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제적 인센티브(프로그램 이수시 20만원 지급)가 제공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 최소한의 외부활동이 가능한 정도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일부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을 ①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는 ‘구직의지’, ‘일자리 수용태도’, ‘취업 스트레스’, ‘직업이력’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직의지가 없고 일정기간 이상 취업이력이 없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3.03.15.).

기본적으로 개별 상담과 사례관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집단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구성상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참여를 결심하거나 참여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기관별로 맞춤형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둔고립청년 지원경험이나 적합한 지원방향을 가진 운영기관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저활력 상태 및 은둔상태의 청소년 및 청년이 참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프로그램 및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VIII-15.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사례 (인천시 청년지원센터 부평)

사례관리	• 건강, 금융, 주거 등 생활 관리 관련 강의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를 위한 활동 - 건강검진, 금연 및 중독교육, 식단관리 등 • 다양한 정책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자신감회복	• 심리상담 : 임상, 심리상담, 아로마 심리상담, 성격검사 및 심리검사 진행 • 취미, 인문학, 자기계발 등을 위한 특강 • 미술치료를 활용한 대인관계이해(심화)
진로탐색	• 직업선택도검사(L형) • 직업 흥미 및 적성 특강
취업역량강화	• 직업기초능력 특강(OA교육, 취업이해 등) • 구직기술향상 특강 • 진로 및 취업 컨설팅
지역맞춤형	• 세줄일기 작성(월 30일/과제형) ※ 단, 도전+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세줄일기 활동이 자율활동에 포함됨 • 유유기지 부평 프로그램 연계 : 청년활동지원, 네트워크, 취창업지원, 문화공감, 전문상담

* 출처: 인천광역시 부평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program_inuu2021&me_code=70d00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④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초기에 비해 지원대상 인원을 늘리고 위기취약 청년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참여 신청이 가능해졌다(보건복지부, 2023h). 서울특별시도 유사한 방식의 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3a).

심리 상담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비용부담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를 찾지 못하는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에게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심리상담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심리상담 단계로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에 대한 정책효과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는 사업참여자들 ‘상담 순응도가 높은 내담자 그룹’과 ‘상담 순응도가 낮은 내담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상담순응도가 낮은 그룹은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자기이해’, ‘주변사람과의 관계 개선’ 등의 항목에서 상담 순응도가

높은 그룹에 비해 크게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런 평가 결과를 통해서, 상담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는 보다 차별화된 방식의 상담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3b : 68).

(3) 민간 영역의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청년 지원사업

① 체인지업 프로젝트 (재단법인 청년재단)

국무조정실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2018년부터 은둔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체인지업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은둔형 외톨이 성향의 고립청년, 사회적응 및 자립이 어려운 대한민국 국적의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다시 ‘진학, 취업 등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고 있지 않으며’, ‘친구가 한 명밖에 없거나 전혀 없고’, ‘자신의 은둔 상태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 하며’,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가지 않아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가지 않으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교류가 없는 상태’의 사람으로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사업임을 명백히 하였다.

‘공동생활, 관계 형성, 정서지지, 부모지원’ 등을 지원내용으로 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5명의 당사자와 480명의 당사자 가족을 지원했다(청년재단, 2023 : 4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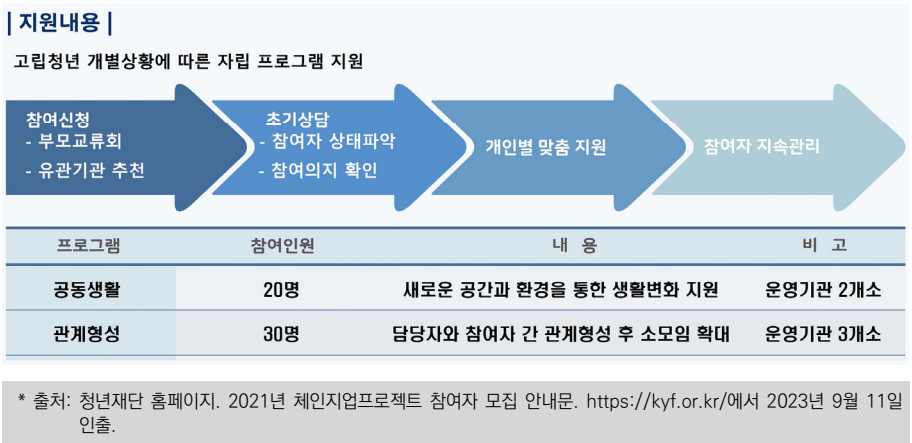


그림 Ⅷ-4. 체인지업프로젝트 지원내용

② 기타

민간영역에서는 몇몇 기관과 단체가 은둔형 외톨이 또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리커버리센터,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 안무서운회사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리커버리센터’는 2014년부터 은둔고립청년을 위한 공동생활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공동생활훈련’, ‘회복프로그램(신체건강, 정서건강, 관계건강, 지적건강)’, ‘자립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및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1).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는 은둔형 외톨이 부모와 당사자를 조력자로 키우는 지원 인력 양성을 실시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를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부모와 당사자를 회복시켜 조력자로 키우는 민간단체이다. 안무서운 회사 역시 은둔경험 당사자들을 은둔형 외톨이 조력자로 활동하도록 돕고 있다. 은둔고수 방문상담, 은둔경험 당사자 활동가 양성(은둔고수 프로그램), 공동생활(세어하우스 운영), 은둔형 외톨이 발견과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2022).

그 밖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실시되어 왔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2022년 서울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사단법인 씨즈’가 운영하는 ‘두더지땅굴’은 온라인 공간에서 은둔·고립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대면하지 않고도 교류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하고 관계 형성하는데 유효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더 나은 미래, 2023).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단’은 2022년 고립·청년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더 유스’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고립·은둔청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2023). 성취경험과 관계형성을 돕기 위한 ‘활력증진 프로그램(위드미)’과 ‘안식처 프로그램(퀘렌시아)’ 등으로 운영되었으나 공모사업이 1년 만에 종료되어 사업이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2년 ‘은둔형 외톨이청년’ 등 사회적 관계 취약 청년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4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사단법인 파이나다운청년들, 지식순환협동조합은 은둔·고립 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는 은둔·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였다. 수행기관별로 세부 프로그램에 차이는 있지만 ‘온라인 심리상담’, ‘부모상담’⁶⁸⁾, ‘성취경

험 프로그램’, ‘문화체험’, ‘일경험 프로그램, ‘식생활 지원’⁶⁹⁾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지엘학교밖청소년연구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근무하는 실무자 대상 프로그램과 은둔형 외톨이 대상 심리상담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다⁷⁰⁾.

전반적으로 민간영역에서는 은둔·고립청년과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장기적·지속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방문상담이나 공동생활 등 공공 영역의 사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에게 다가가거나 밀착하는 형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공영역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영역의 사업내용을 제도에 반영하거나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진단

지금까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지원사업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정책 및 지원사업 현황을 진단해볼 수 있다.

1) 법령 및 조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방법과 절차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해당 법령 안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내용과 절차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내용이나 방안은 담겨있지 않았다. 지원의 내용과 방식은 교육, 상담, 생활지원 등 포괄적인 내용이며 지원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특화된 기관은 아니다.

구체적인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법을 담고 있는 것은 지자체별로 제정되고 있는 ‘은둔형

68) 파이나다운청년들 홈페이지. www.pie-edu.com/사업소개/모집안내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69)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홈페이지. www.workingschool.net/396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70)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 홈페이지. www.glosy.re.kr에서 2023년 10월 15일 인출.

외톨이 지원조례’였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 연령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고무적인 일은 최근(2023년 10월) 경기도의회가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점이다.

그 밖에 총 3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사회활동 및 사회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부모 가족도 함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부합하도록 자조모임, 활력조성, 가족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별도의 정책기구와 지원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지자체들도 있었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은둔은 청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16개 지역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들이 제정되어 청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청년 지원조례들은 지자체별로 지원의 내용과 방식의 구체성 수준에 편차가 크고 지원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향후 법령을 통해 보다 뚜렷한 지원근거를 마련되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상담자 및 조력자의 장기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인력 및 재정지원 의무가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청년 지원사업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참여에 제한적임

명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공공영역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며 2021년까지 청년재단의 ‘체인지업 프로젝트’가 실시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성인기의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학령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은 참여하기 어려웠다.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의 경우는 전 연령을 지원범위로 하고 있으나 10대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광주광역시의회, 2023).

그밖에는 간접적·제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유효한 사업들이 일부 실시되고 있었으나,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특화된 지원정책·지원사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었다.

(2) 상담지원 프로그램에서 선제적 접촉과 발견 기능 강화 필요

청소년동반자 사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제도들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상담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발견과 관계형성 방안이 필요할 수 있고 상담과 다른 형태의 지원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들은 ‘상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언어적 표현이 부담스럽거나 상담에 부정적 경험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은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외부관계가 단절된 경우 스스로 지원프로그램을 파악하거나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접촉하고 사전 관계형성을 해나갈 수 있는 지원요소가 보완되어야 한다.

(3)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방법들: 지속적·안정적 모색 기간 필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발견과 상담지원 및 가족지원 기능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의 경우 활력 단계별로 각기 상이한 목표와 지원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은둔형 고립단계’ 프로그램의 경우, 신체활동과 자기표현 및 관계형성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다. 민간영역에서는 공공영역보다 더 일찍부터 관련 사업이 실시되어 왔는데 ‘청년재단’의 ‘체인지업프로젝트’는 ‘공동생활’과 ‘관계형성’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효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을 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 밖에도 민간영역에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들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담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재정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4) 참여자의 활동노력이 단절될 가능성: 장기 지속적 지원형태 필요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같이 수개월이나 1년 단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확인되었다. 안정된 관계형성과 장기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1년 이내 단위의 프로그램 신청과 선발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종료 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은둔이나 재고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장기지속적인 지원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정 기간으로 제한된 프로그램을 중심에 두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보다는 은둔형 외톨이를 특정 기관에 소속되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5) 발견 영역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 필요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발견을 전제로 하는 지원들이지만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필요한 측면은 ‘발견’이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견에 제한적이었고 민간영역의 발견 노력(두더지땅굴 등)은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 제한적이고 불안정하다. 향후 은둔형 외톨이 발견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은둔형 외톨이 지원 인프라의 지역 격차: 지역별 지원활동가 양성 필요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청년 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이었다.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해본 경험이 있거나, 지원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수행력을 가진 지원조직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부모와 가족,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활동가와 지원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정책 개선과제

1) 법률 제·개정(안)

(1)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는 은둔 징후가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기 매우 용이한 기관이다. 학교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학교 출석을 어려워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학교의 민감성을 키워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 1항에 4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유형으로

‘잡은 지각 및 결석, 인간관계의 고립, 무기력 등 은둔 징후가 보이는 학생’을 추가한다. 이를 근거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한 예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촉진되고 교원 연수가 실시될 수 있으며 방문상담 등 이들에 맞는 학업중단숙려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동법 28조 9항은 숙려제 기간 동안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에는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 훈령 ‘위(Wee)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다.

은둔 문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교육적 대응 여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은둔 징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에 대해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및 대응 교육 프로그램, 은둔 징후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실, 위탁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부과,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건강복지센터 검사, 병원치료 등을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학교장이 부과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출석인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현재 부모에 대한 교육근거는 교육부 훈령 ‘위(Wee)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Wee Class) 2항 3호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에 있다. 교육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 소속 학교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기를 매우 꺼려하므로 은둔 징후 등 학업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교육지원청 또는 지역사회회기관과 협력을 통해 하되 소그룹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은둔형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만 반영한 것은 지원을 매우 제한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을 따라야 하고 특별지원 내용이 주로 현금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타 법률과 중복 지원을 검토하는 등 제한과

검증 사항이 많아 지원의 활력이 떨어진다. 사실 특별 지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용하기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동기를 살리고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삶의 활력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비대면, 대면 등 접촉을 시도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라는 가정환경이 이들에게 우호적으로 되게 하는 것 등이 급선무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미취학·장기결석 관리 전담기구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관 참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정보 연계 등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중심기관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찾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기에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을 통해 사례발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윤철경 외 2021: 179-180). 단점은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은둔 초기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교육부 훈령과 연계하여 ‘은둔 징후 청소년에 대한 학업중단숙려제’를 지침에 넣어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들 청소년 유형은 발견과 접촉,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쉽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법 제2조(정의) 3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은둔, 비행, 노동, 학업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심리 정서적 어려움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견과 사례관리, 상담, 교육, 문화활동 및 동아리 등 청소년활동, 자립 및 시민교육, 부모교육 및 멘토링을 의미한다” 로 개정한다.

발견과 사례관리 조항(제8조의 1로 개정)을 신설한다. (상담지원)을 제8조의 2로 개정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발견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내방하는 청소년과 부모만이 아니라 도움이 더 필요한 청소년과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부모상담 및 교육, 멘토링(제8조의 3으로 개정)을 신설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견은

부모의 의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와의 접촉과정 중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형제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내방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의뢰와 접수상담, 부모교육과 멘토링으로 신뢰기반을 마련한 후 가정방문 등으로 연결하는 게 효과적이다. 부모의 불안감과 문제가 자녀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특별히 은둔형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이러한 불안감과 더불어 자녀양육 태도상 고착된 문제와 원가정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외톨이와 부모에 대한 개입은 해결될 때까지 장기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담전문인력 개입이 어렵기 때문에 준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자조모임 소그룹 운영과 이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이 더 효율적이다.

제9조(교육지원)은 청소년관점에서 학습지원으로 개정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기보다 정규학교로의 복귀, 대안학교로 진학을 연결하고 있지만 주요 임무는 검정고시 준비 등 청소년 학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제10조에는 문화활동 및 동아리 등 청소년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실제 다양한 문화체험 및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또래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은둔형 청소년과 일반 학교 밖 청소년이 함께 활동할 기회는 관계 맺기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현재 자립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공간 지원도 문화활동 및 청소년활동 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은 동법 제11조(자립지원)과 통합하여 제11조를(자립지원 및 시민교육)으로 개정한다. 현재 자립지원에는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 지원,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에 특별지원까지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면서 개념적 혼선이 생겨 교육부 등 청소년 외 다른 영역과 의사소통에서 혼선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자립 및 시민교육으로 하여 자립지원에는 특별지원 등 현금성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경제활동 지원을 포함하고 근로보호/성보호/안전교육/인권 교육, 재무교육, 법률 교육 등은 시민교육으로 조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3) 은둔형 외톨이지원법 제정

중장기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0월 25일 김홍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바 있다(김홍걸, 정춘숙, 김승남, 양정숙, 2022:15-20) 은둔형 외톨이는 초·중학교 어린 시절에 발생한다. 개인적 기질, 가정, 교육, 사회문화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될수록 은둔이 장기화된다. 24세까지는 교육, 청소년정책 개선으로 발견과 지원이 가능하지만 25세 이상 연령은 해당 연령이 아니라 지원에서 배제되기 쉽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연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들은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이기에 심리적 부담이 더해져 사례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독립적 입법을 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적 연계가 가능하게 되고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다. 지금도 40대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들이 곧 50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정책이나 청년정책 입법만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청소년·청년기관, 사회복지관, 심리상담기관 등 은둔형 외톨이에 관심이 있는 기관들이 자기 기관의 역량을 투입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긴 기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

기존에 있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 적용대상 연령, 적용할 수 있는 지원내용 등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 분산된 전달체계로는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은둔형 외톨이는 지원 대상이 소수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은둔형 외톨이를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립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윤철경 외, 2021: 180-181).

(4) 제도개선 사항

①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모델 개발 및 관련자 연수

학교는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본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무자들은 학교와 가정은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사, 위클래스 상담사나 교육복지사가 발견한다는 비율은 이에 못 미친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로 학교 실무자들은 ‘평소에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이 타 기관에 비해 아주 높다. 학교생활에서 은둔

생활의 사전징후를 파악하는 정도도 4개 기관 중 가장 낮다. 학교 실무자의 은둔 징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교 밖 실무자들 보다 낮다.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개입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담당자, 지역사회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담당자들은 담임교사 등과 협력하여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을 사전에 발견하여 예방이 가능하다.

학급 담임과 학교 Wee Class, Wee 센터 심리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이 은둔 특징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교사, 숙려제 운영담당자들이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 모델을 개발하고 교사연수나 담당자 연수, 학교장 연수 시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과 개입 방법에 대한 연수 내용을 추가하여야한다.

② 지각·결석이 잦은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관리 강화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을 발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각·결석이 잦은 청소년에 대한 관리,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 돕고자 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 문화였다. 또한 은둔 청년들의 과거 학교 경험에서 공통적이었던 것은 초·중학교 때 왕따 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었다. 당시에 이 때문에 갑자기 학교에 안가기도 했고 나중에 그만 두기도 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폭력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Wee 클래스가 없는 경우, 담임교사가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공감에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 이후 학교에 자기 편이 없다는 좌절감으로 쌓여 은둔으로 가는 계기가 된다. 사소한 피해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해소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은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각과 결석이 잦은 학생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학교차원의 교육적 배려와 숙려제 내실화 등 학교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와 왕따 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도록 외부 상담기관 의뢰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담임교사가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 지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생활지도에 우선적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책임 관리해야 한다.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견체계 강화

교육청 정보망,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청소년 통합 안전망을 이용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견을 강화할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시·군·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이관하는 정보를 가능한 빨리 접촉하고 당사자나 부모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심의회)를 통해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발견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조직을 책임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히 의뢰, 연결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사항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예방 및 장기화 예방은 기존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안,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1) 기존 전달체계 활용방안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9~24세 은둔 징후, 또는 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발견체계는 첫째, 교육지원청과 학교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학교가 은둔징후 청소년과 부모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한 인적정보를 연계 받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접촉하면 된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과 더불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정보를 학교로부터 연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촉을 통해 해당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미 개인정보 연계가 안되고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은둔형 외톨이 가족지원사업을 홍보하여 가족을 통해 발견하는 체계를 갖춘다.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사례관리, 부모교육 및 멘토링, 상담,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면 되기에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에서 총괄하며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부에서 업무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로 할 것인가, 기초자치단체에 분산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마다 인구수, 지역 범위 등에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인구 수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센터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주요 발견체계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해당 센터, 해당 시·도의 생활권을 같이 고려하여 은둔형 외톨이지원기능을 하는 센터를 선정, 배치할 필요가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센터의 기능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하기보다 광역센터와 기초자치단체 센터 모두 관내 지역 은둔형 외톨이 발견과 지원 기능을 하면서 광역센터에 해당 시·도 은둔형 외톨이사업 총괄기능을 부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표 Ⅷ-2〉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8-24세 은둔형 외톨이 발생률은 1.97%이다. 윤철 경의 산출기준은 은둔기간을 6개월 이상, 신체장애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은둔을 제외하고 산출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보다 보수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발생률을 근거로 추출한 18-24세 사이 은둔형 외톨이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8만 3천 명이다. 〈표 Ⅷ-16〉은 전체 은둔형 외톨이가 균등한 비율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시·도별 해당 연령대 은둔형 외톨이 인구를 산출한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 인구 1천 명당 1센터 기준으로 하면 전국 총 88개 센터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이 탑재되어야 한다. 이는 18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빼고 산출한 것이다. 실제 18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은둔형 외톨이 인구, 숙려제 의뢰를 통한 예방 사업 대상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 Ⅷ-16. 시·도별 인구비율로 추정한 시·도별 18-24세 연령대 은둔형 외톨이 인구와 지원센터 수

시·도	18-24세 인구 수	비율(%)	은둔형 외톨이 인구(추정치)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수
전국	3,766,587	100	82,785	88
서울특별시	724,881	19.24	15,932	16
부산광역시	229,300	6.08	5,039	5
대구광역시	179,903	4.77	3,954	4
인천광역시	214,562	5.69	4,715	5
광주광역시	122,346	3.24	2,689	3
대전광역시	121,555	3.22	2,671	3

시·도	18-24세 인구 수	비율(%)	은둔형 외톨이 인구(추정치)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수
울산광역시	76,098	2.02	1,672	2
세종특별자치시	25,368	0.67	557	1
경기도	1,026,142	27.24	22,553	23
강원특별자치도	107,379	2.85	2,360	3
충청북도	113,083	3.00	2,485	3
충청남도	146,918	3.90	3,229	4
전라북도	129,560	3.43	2,847	3
전라남도	119,565	3.17	2,627	3
경상북도	164,300	4.36	3,611	4
경상남도	217,006	5.76	4,769	5
제주특별자치도	48,621	1.29	1,068	1

* 출처: 통계청 (2023). 주민등록 인구통계(2023.8. 기준)에 기초하여 해당 연령인구와 시·도별 인구비를 산출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2)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가족지원 센터 설치

시·도별로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안이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윤철경 외, 2021: 184-185).

첫째, 교사,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가정방문상담자 배치와 사례관리이다.

둘째, 의사, 임상심리사, 상담사, 센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해당 청소년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문상담 결과를 기초로 해당 청소년에게 맞는 개입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행한다.

셋째, 은둔형 외톨이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놀터, 치료 지원, 온·오프라인 상담 및 멘토링 지원, 또래관계 지원,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학습지원, 진로 및 일 경험 등 대안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분과, 통합지원체계 등에 참여하여 지역자원의 발견 등을 실시한다. 해당 청소년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용하여 학교 안에 있을 때부터 정서적 지지를 하고 이들을 위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책임 사항으로 한다. 상담, 지지,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자원 연계 및 정보를 제공한다.

3) 전문인력 확보 방안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적다. 무기력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와 유리되어 있다. 이들을 발견하고 소통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 발견과 예방, 신속한 개입과 장기화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지속적·단계적으로 서비스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은둔 초기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 아웃리치 인력 등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주요 대상은 첫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종사하는 심리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이다. 이들 전문가들에게 은둔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을 교육하여 은둔형 외톨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둘째, 은둔 경험자, 은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실제적 경험을 갖춘 좋은 사회적 자원이다. 이들의 탈 은둔 과정을 도우면서 이들을 사회적 자원화하는 것은 지속적, 장기적 지원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은둔 청년, 은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멘토가되어서 당사자와 부모들을 도우며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점을 의미 있게 주목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은 사업기획자, 소통역량을 습득한 전문가, 은둔 경험을 갖춘 준전문가, 은둔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사 양성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한다.

(1) 실무 전문 인력 양성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달체계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해당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인력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은둔형 외톨이, 부모와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

실무자 조사결과를 보면 은둔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하더라도 이들과 소통능력이 적음을 볼 수 있다. 강의 중심의 연수과정으로는 습득하기 힘든 능력이다. 교사, 청소년 지도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집단 중 현장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상대로 직접 부딪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전화/카톡/SNS/Discord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소통, 단계적으로 이끌어 내는 일,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 발견과 더불어 이들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상담 및 교육, 일상생활 관리에서 요리/목공/수예, 동아리/캠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스런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

실패를 최소화하고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과의 소통능력, 이러한 업무 담당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습 등 상당 시간을 투자하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3) 준 전문인력 양성

전문 인력만으로 은둔형 외톨이현장을 지켜내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감안한다면 은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청년, 자녀의 은둔 경험을 극복한 부모들이 좋은 인력이다. 당사자 청년,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자조모임 능력을 이끌 수 있는 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안무서운회사의 은둔고수, 지엘학교 밖 청소년연구소의 부모 멘토와 청년 멘토가 좋은 선례이다. 이들은 심리상담사 등만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소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들을 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인적 자원, 준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4) 은둔형 외톨이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을 발견, 예방, 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와 부모이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도 확산되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에 대한 이해, 대응방법 등을 가르칠 강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4)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1)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실무자들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전문인력 양성 배치이다. 학교를 포함 4개 기관 실무자 모두 이를 요청하고 있다. 실무자들은 은둔문제를 이해하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처할 역량에는 자신이 없다. 은둔형 외톨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인력에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역량을 함양시키는 방안, 은둔형 외톨이와 은둔형 외톨이 부모를 준전문인력의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양 방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① 은둔형 외톨이 전문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센터장, 팀장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부모 이해, 발견체계 및 단계별 서비스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기 집중과정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② 소통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현장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 하여도 은둔형 외톨이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장기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이러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은둔형 외톨이 전문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고용하도록 추진한다.

③ 가정방문상담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본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 중 가정방문상담이 있다. 가정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 수준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가정에 가정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숙련된 가정방문 전담인력이 있을 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구를 가정방문 전담인력을 양성할 것인가?

숙련된 가정방문 상담인력이 되려면 많은 임상경험이 필요하다. 초보 단계 실무자로서 매우 두려울 수 밖에 없다. 이때 은둔 경험을 한 청년들이 함께 하면 가정방문상담 실패율이 적다.

은둔 청년들은 사회적 기여 욕구가 높다. 자신과 같은 청소년, 청년이 더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고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들은 은둔 청소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 다른 은둔 외톨이 (징후) 청소년을 돕는데 매우 탁월한 자원이 된다.

은둔 고수 프로그램이 좋은 선례이다. 은둔 청년들은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 아웃리치 및 사례관리, 은둔 기간 동안 집안에서 축적한 다양한 능력을 활용하여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하여 기관실무자와 협업,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 가정방문을 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 상담, 활동 지도까지 조력할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함양시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다양한 조력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④ 부모멘토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무자 조사결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 최우선 대상은 은둔형 외톨이 부모 등 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응답자는 특히 많았다. 그럼에도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이라고 답한 비율은 4개 기관 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가장 낮다. 최우선 지원대상을 가족으로 보면서도 부모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비율이 낮은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모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다.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들이 해당 청소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은둔형 외톨이 (징후) 부모 역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는 지역사회 상담체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또한 부모 연령대에 비해 나이 어린 실무자들이 부모 대상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부모 교육을 하고 멘토링을 할 것인가?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부모 멘토를 훈련하여 배치하면 된다. 부모 멘토를 양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배치하면 은둔형 외톨이부모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

멘토들이 부모교육과 멘토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교재와 멘토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부모 멘토에 대한 수퍼비전 체제를 갖춰 부모 멘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지원 프로그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문제 접근에 있어 부모가 일차적 지원대상이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보살필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경우 일차적으로 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에게 주요한 환경인 부모를 변화시키는 것이 집 안에 틀어박혀 있는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용이하다. 청소년기에는 아직 고착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모 변화 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살필 부모가 있는 경우 먼저 부모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한다.

① 부모교육 및 멘토링, 자조모임 지원

부모는 은둔형 외톨이 발견의 주요 통로이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에 대한 답답함을 제일 먼저 호소하는 것은 부모이다. 이 때문에 부모를 지지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이다.

자녀가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이 되기까지 부모의 문제요소가 있다. 이 부분을 시정하고 자녀에게 적절한 태도를 취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육태도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과 더불어 오랫동안 굳어진 것이 있어서 몇 회기 동안 강의로 시정될 성격은 아니다. 매주 생활 점검을 겸한 멘토링이 필요하다.

강의를 통해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부모들 간 대화를 나누며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시정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징후) 경험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멘토는 부모들이 동료의식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상승작용 하도록 이끄는 모임 지도자이다.

② 부모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은둔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는 부모 자신의 문제가 깊어 자녀와 소통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 불안 등 복합적인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많다. 부모교육이나 멘토링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이다. 소그룹 대화에서도 자신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부모들이 있다. 이 경우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하다. 부모들이 자신들에 대한 상담치료는 경제적 부담으로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현재 학령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주로 20세 이상 청년 프로그램이다.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노력 대비 성과가 크기 때문에 학령기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하다.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자기 표현이 서툴고 관계 형성에 애로가 있다. 또한 성취 경험이 적으며 무기력하다. 신체활동보다 두뇌활동을 하며 지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화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① 비대면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은둔형 외톨이 청년 멘토를 통해 발견된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촉진하는 활동이다. 청소년과 비대면 접촉을 지속하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활동, 가정방문 등을 시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내어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다.

자기 생활 관리에서 시작하여 비대면으로 가능한 음악/미술/글쓰기 등을 통한 자기표현 활동, 가정용 키트를 활용한 목공/수예 등 만들기 활동, 게임 등 놀이와 신체활동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비대면 대화모임 또한 가능하다.

② 대면활동 프로그램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천한다. 온라인으로는 제한적이었던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셜 다이닝, 자기표현 및 신체활동, 문화체험 및 동아리활동, 캠프활동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 사귀기를 지원한다.

③ 심리정서적 지원 및 치료지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중에는 심리정서적 문제, 우울/불안/공황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증을 가려 심리정서적 지원,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4) 은둔형 외톨이 발견을 위한 홍보 사업

학교와 연계된 정보망이나 지역관내 사회통합지원체계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발견을 촉진하여야 한다. 홍보방법은 다양하다.

①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 실태 조사 및 세미나

전국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지원대상의 규모와 현황,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조사과정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이해하고 조사 주체와 연결 고리가 마련된다. 실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발견과 전문적 지원을 촉진한다.

② 홍보물 제작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는 물론 부모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 발견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다. 관내 관련 기관에 비치할 은둔형 외톨이 사업 리플렛, 동영상, 온라인 홍보에 필요한 카드 뉴스 등 제작이 필요하다.

5) 소요예산 확보 방안

〈표 Ⅷ-17〉은 18~24세 은둔형 외톨이 1천명당 1개 센터 설치를 전제로 필요한 소요예산을 제시한 것이다. 1개 센터에 실무자/심리상담사 2명, 부모 멘토 1명, 청년 멘토 1명을 배치해서 부모 100명(수요인원의 10%), 청소년 30명(수요인원의 3%)에게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최소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은 14,253,400천원이었으며 일대일 매칭으로 국고는 9,299,000천원, 지방비는 4,954,400천원이었다.

표 Ⅷ-17.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사업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구분	사업명	산출 근거	총액(자원)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실무전문인력 양성성과 정 운영	-교재개발 : 5,000,000원 x 1종 =5,000,000원 과정운영: 200,000원 x 88명 = 17,600,000원	5,928,600,000원 (국고)
	- 소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교재개발 10,000,000원 x 1종=10,000,000원 -과정운영 : 1,000,000원 x 88명 = 88,000,000원	
	- 기관별 배치	-연 33,000,000원 x 88명 x 기관 당 2명 =5,808,000,000원	
청년 멘토 양성 및 배치	- 양성과정 운영	-1인당 500,000원 x 88명 =44,000,000	360,8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 기관별 배치	-시간당 1만원 x 88명 x 기관 당 1명 x 1인당 120시간 지원 x 30명 지원= =316,800,000원	
부모멘토 양성 및 배치	- 양성과정 운영	-1인당 500,000 원 x 88명 =44,000,000	1,100,0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 기관별 배치	-시간당 1만원 x 88명 x 기관 당 1명 x 1인당 120시간 지원 x 100명 =1,056,000,000원	
은둔 청소년 프로그램지원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비	1인당 1,000,000원 x 기관 당 30명 x 88 개 기관 =2,640,000,000원	2,640,0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은둔 부모 프 로그램지원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비	1인당 300,000원 x 기관 당 100명 x 88개 기관 = 2,640,000,000원	2,640,0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은둔 청소년 발견·홍보	- 실태조사 및 세미나	기관당 15,000,000 x 88 기관 =1,320,000,000원	1,584,000,000원 (지방비)
	- 홍보물 제작	기관당 3,000,000 x 88 기관 =264,000,000 원	
계			총14,253,400,000 = 9,299,000,000 (국고)+ 4,954,400,000 (지방비) * 1대 1 매칭 기준)

5. 소결

면접에 참여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은 성장 과정상 공통점이 발견되었는데 두 청년은 맞벌이 가정으로 엄격한 조부모님의 대체 양육을 받았고 한 청년은 부모의 이혼으로 손위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부모님의 보살핌이 부족했다. 순종적이며 규범을 잘 준수하는 성향이었고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가 왕따나 폭력피해 경험 등 관계 고립 경험을 하였고 이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학업을 중단한 청년, 부모의 과잉기대로 번아웃과 정신질환을 얻어 학업을 중단하고 은둔한 청년이 있었다. 맞벌이 부부, 엄격한 규율, 과잉기대, 정서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양육과정에서 자기표현을 잘못하고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가 관계 고립 등을 경험하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시점에 은둔에 들어가게 된다.

은둔 후 부모와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은둔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하게 된 계기는 그대로 집에 머물다가는 부모에게 버려지고 죽을 것 같아서였다는 응답,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도와준 것, 과거 동아리 활동 등을 하며 행복했던 경험 등을 들었다. 아직 은둔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한 청년은 비교군이 없어 내 젊음이 마냥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었고 방안에 머물지만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속도는 느리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현재 원하는 도움은 심리상담, 교육을 받으면 취업과 연결되는 교육지원, 인간관계 네트워크 지원, 주거지원 등이었고 은둔 초기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도움은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갖고 개입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부모들은 학업중단 시 정보를 연계 받은 기관에서 은둔상황을 체크하고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둔경험 있는 형, 또는 상담자가 주기적으로 자녀를 방문해 해결될 때까지 도움을 주는 것을 요청했다.

은둔형 외톨이청소년 법·제도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령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보되어 있지 못하다. 은둔형 외톨이지원에 특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청소년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법 제2조(정의) 3항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은둔, 비행, 노동, 학업 등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견과 사례관리, 상담, 교육, 문화활동 및 동아리 등 청소년활동, 자립 및 시민교육, 부모교육 및 멘토링을 의미한다”로 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통해 연령이 분절되지 않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은 학교와 가정에서 청소년의 은둔 성향을 발견하고 에너지가 고갈되기 전에 예방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잦은 지각과 결석, 인간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여 적절한 대응으로 심화되지 않게 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통능력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참여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둔형 외톨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이며 전문성이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기에 탈은둔 노력을 하는 청년, 부모 등을 훈련하여 준전문가로 협업하게 하는 게 비용 절약적일 뿐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실패 확률을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초점이 되어야 한다.

○———— 제9장 결 론

- 1.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절차
-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절차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정책 진단과 정책과제의 발굴은 다음의 7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다. 첫째, 다양한 취약계층 청소년 중에서 주요한 정책 대상과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에서 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책 대상과 청소년 유형별 현안 이슈,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등에 관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델파이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4개의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을 선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시설보호 청소년, 경계선지능 청소년, 가족 돌봄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청소년 유형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4개 유형의 선정은 금년도 본 연구과제의 예산과 인력 등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의 한계를 반영하여 정한 것이었다. 셋째, 4개의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유형별로 협동연구기관을 구성하였으며, 또한 각각의 유형별로 4~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설문 및 면접조사의 내용 구성과 정책과제의 발굴 등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넷째, 4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태와 실무자들의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 유형의 취약계층 청소년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4개 유형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과 정책 과제 요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각 유형별로 4~5명의 취약계층 청소년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현장 실무자 대상의 요구조사와 FG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청소년 유형별로 워킹그룹의 구성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

71) 이 장의 1절은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고, 2절은 5장, 6장, 7장, 8장의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요약 정리한 것임.

유형별로 정책진단을 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일곱째,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발굴된 4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취약계층 청소년 관련 정부 관련 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정책 중요도, 실현가능성 등을 기초로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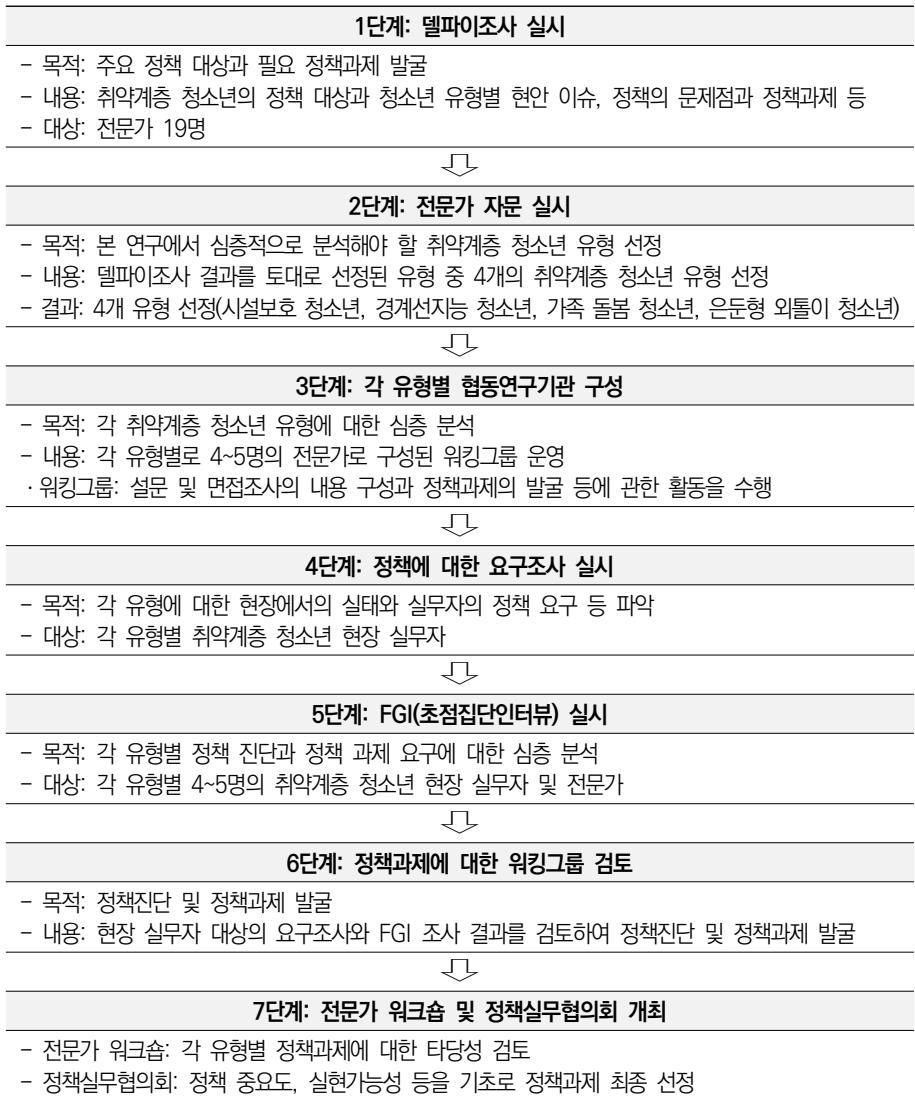


그림 IX-1.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진단 및 정책과제 발굴 절차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공통적인 과제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저소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같이 그동안 많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의 경우에는 기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책에서 누락되고 있는 대상이나 부족한 서비스를 파악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 돌봄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그동안 정책의 관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정책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못한 대상의 경우에는 정책 대상의 발굴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이를 토대로 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취약계층 청소년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에 따라서는 일부의 편중된 지원만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의 취약 상황이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그 이외의 지원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아동·청소년들의 균형 있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 경제적 지원 이외에 심리상담, 교육, 진로 지원 등이 필요하고, 중독청소년의 경우에도 기존의 상담활동 이외의 생산적 온라인 놀이, 활동 체험 등 대안적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3)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에 서 소외되고 있는 대상들이 있다. 기존의 정책 대상 중에서 누락되고 있는 대상도 상당수 있으며, 새로운 청소년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취약계층 대상도 있다. 기존의

정책 대상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정책 개발에 다소 소홀하기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에서 누락되고 있는 대상과 서비스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및 관련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규 취약 계층 대상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현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델파이조사에서는 가족 돌봄 청소년의 경우에 행태데이터 분석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현황 및 특성 파악,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확한 실태 분석 및 은둔·고립 상태를 초기에 진단·분류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그리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기반한 정책 마련 등의 과제가 제안된 바 있다.

(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확충 및 특성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에 맞게 보호, 교육, 자립,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설의 확충이 요청되고 있다.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별,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시설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에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가령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인 꿈드림센터의 경우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의 요구가 있으며, 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이나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 등 특별히 이동이 불편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설치, 이동수단의 제공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맞춤형 전문 인력 배치 및 연수 강화

대부분의 정책사업의 성과는 무엇보다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특히,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시설종사자의 업무 여건과 전문 인력의 배치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 전문 연수 운영 등 기존 인력의 전문역량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필요한 아동·청소년 대상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델파이조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인력의 전문역량과 환경 개선 지원,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내 생활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적극적 양성과 업무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 1교 1인 배치 등의 과제가 제안된 바 있다.

(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함께 부모나 조부모, 기타 가족 등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본 델파이조사에서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자녀 동시 상담 지원, 유기·학대피해 아동·청소년의 부모교육 의무화, 가족 돌봄 청소년의 부모나 조부모 등 돌봄 대상자들이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 연계,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 청소년의 부모 휴가 지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청소년의 자녀관계 개선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등이 제안된 바 있다.

(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제·개정 추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존 법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족 돌봄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저소득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기존 법령의 검토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신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률에서 지원근거를 찾지 못하고 제도 시행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 또는 경계선 지능인 학생의 경우에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서 서울, 인천, 부산, 세종, 강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조례, 경계선 지능인 학생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과제

(1)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중장기 청소년쉼터 주거환경 개선,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퇴소 규정 보완, 청소년보호 체계에서의 공적 책임 규정 강화,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 정체성 확립 등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건물형태, 침실 등 중장기 청소년쉼터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에서의 중장기 청소년쉼터 건물 형태는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상가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장기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이상 생활하는 곳이므로 ‘상가건물’을 제외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과 동일하게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제안한다. 또한 침실은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으로만 제시되어 있는데, ‘침실 1개의 정원을 최소 2~3명 이하’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IX-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별표3]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개정(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물형태	•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 단독건물,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입소인원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침실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채광, 환기 및 냉난방 가능 공간 • 침실 1개 정원 2~3명 이하

둘째, 중장기 청소년쉼터 입·퇴소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에서는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기타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등의 사유로 가출한 청소년을 퇴소 조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미성년자 양육권과 거소지정권 위배 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의2에서의 퇴소 규정도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점이 있다. 동 조항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거나 청소년쉼터 내에서 현저한 질서 문란한 행위를 한 경우 퇴소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	내 용
제32조의2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①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셋째, 청소년보호체계에서의 공적 책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4항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책임을 민간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아동보호체계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호 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책임을 강화하였듯이 청소년보호체계에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가야 한다.

조항	내 용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넷째, 아동복지시설로서의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나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의 중간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통계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과 달리 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공동생활가정 지원수준, 종사자 자격기준이나 처우 등도 낮아 아동양육시설과 차이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이 위탁가정은 아니므로 「아동복지법」 내에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위탁가정의 부족한 공급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기능도 있다. 소규모 가정형 아동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보호의 질적 수준 제고 측면에서도 아동양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제도 보완이나 예산·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2)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 혼재되어 사용되는 개념의 명확화, 기능 중심 청소년쉼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첫째,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자립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계되므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관련 통합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법·제도 및 세부 지원정책 수립·시행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위기 원인에 따라 구분하여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되 지자체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필요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같은 별도의 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합적 아동·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혼재되어 사용되는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아동의 경우, ‘가정보호’, ‘가정형 보호’, ‘가정형 거주’, ‘가정위탁’ 등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시설보호와 가정형 보호의 중간 형태로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보호대상아동’,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중심의 용어 설정과 지원대상자 조정이 필요하다. 즉, 보호형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주무부처 이원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정 외 보호의 방향성과 지원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능 중심 청소년쉼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이용기간 중심의

로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되어 있다. 공급 측면에서도 청소년쉼터의 수는 수요 대비 부족하고, 지역·유형별로도 불균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조기발견·개입,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립지원 중심 등으로 논의될 수 있다. 황진구와 김지연의 연구(2020)에서는 일시 이동형 쉼터는 일시 아웃리치센터로, 일시 고정형 쉼터는 3일의 일시형 청소년쉼터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는 3년의 일반형 청소년쉼터로, 그리고 자립지원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며, 지자체 특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3)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인력 배치기준의 개선 측면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자립준비 지원 인력 등을 제안하였다.

첫째,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다.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이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호봉제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 배정 시 입소 청소년 인원 기준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단기 청소년쉼터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예산 배정 시 수용인원과 보호기간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도 운영비 현실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내용의 교육보다 변화하는 아동의 특성과 정신건강 관련 교육, 사례관리 교육 등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개입,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대, (성)폭력 등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 준비로, 1명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다수 아동의 자립지원 계획을 돕는 것은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이나 주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사회복지사들은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배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최근 아동·청소년 보호 시설의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신과 진료비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보호 시범사업 확대, 가족관계 회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첫째, 정신과 진료비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시설에서는 심리·정서적 취약, 문제 행동, 약물복용, 경계선지능, ADHD 등의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비 지원 중 정신과 진료비 지원이 확대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전국 시·도 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지원팀을 두고, 전문 인력 3인이 학대피해아동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거점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동시에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시설 보호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시설 보호 축소와 가정형 보호 확대로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아동의 관점에서 소규모 인원의 아동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일시보호를 받다가 원가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아동이 보호받고, 적정 수의 종사자가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 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구세군 서울후생원이 공동으로 소규모 가정형 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을 1년간 추진한 바 있다.

셋째, 가족관계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 외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는 가정 외 보호의 방식과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설에서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과제

(1)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가족 돌봄 청소년의 정의와 돌봄 내용 및 범위를 명시하는 법률 제·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단독법과 청소년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조속히 법률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법률은 연령 기준, 실태조사, 인식 개선과 홍보, 선제적 발굴 시스템 등을 ‘의무추향’으로 명시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먼저 연령은 영국처럼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과 「가족 돌봄 청년법」으로 구분하거나,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령으로 대상자를 세분화해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제정할 경우에 연령범위는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18세 이하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돌봄의 범위와 내용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수행 보조를 원하는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범위에서 제공되는 돌봄 범위와 내용은 사회적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국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행하거나 인구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편차를 감소시켜야 한다. 넷째,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명시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들의 돌봄 서비스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의미부여를 해야 한다. 다섯째, 사전에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조항은 제3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조, 제22조, 제23조이며, ‘아동·청소년은 돌봄 서비스 대상자이므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 서비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사회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에는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에 ‘아동·청소년 주요 돌봄 제공자인 경우 추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32조의 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장애인 돌봄 제공자 현황’을 추가 조사하도록 하며,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에 ‘신청인의 가족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제32조의 6과 7에 ‘아동·청소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복지서비스 확대’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의 돌봄의 책임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표 IX-2.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주요 돌봄 제공자인 경우에 추가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5.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수급자격 결정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2.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및 인지·행동 등 장애특성 3. 신청인의 가구특성, 거주환경, 사회활동 등 사회적 환경 4. 신청인의 장애인 돌봄 제공자 현황 5.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신청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가족 환경을 파악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원)를 ‘~제공할 수 있다’에서 ‘제공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에 상담지원 모니터링 체계를 추가하여 지역사회 사회보장체계에서 상담서비스 제공과 이용내역 등 상담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2조(휴식지원 등) 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가족구성원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추가 지원해야 한다’와 같이 형제·자매를 돌보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표 IX-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9조의2(주간 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담서비스와 <u>이용내역 등 상담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u>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와 <u>모니터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32조 (휴식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구축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체계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경제적 주체가 아니므로 생계비 부족이나 의료비 문제 등 경제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법안」(안)에 중앙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설치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 인력 교육과 배치, 실태조사, 대상자 발굴 시스템,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의 책무를 명시해서 중앙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방향이나 예산지원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사례발굴과 서비스 개입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과 지역사회 행정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체계와 연계하여 가족 돌봄 대상자 발굴부터 대상자 욕구파악, 서비스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 NGO 단체나 기업 등과 협업하여 캠페인을 통한 후원금 모집이나 기금을 통해 가족 돌봄 청소년 예산을 마련하여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민간단체는 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행 주체로서 공공과 민간 서비스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마을공동체 구성이나 협동조합 등을 스스로 구성하여 공동의 돌봄 제공자들의 지역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가족 돌봄 청소년들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 서비스, 자조집단, 홍보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돌봄 주체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학교 학업 지원을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족 돌봄 정의와 돌봄 범위 등을 상세히 소개해야 한다.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자신의 돌봄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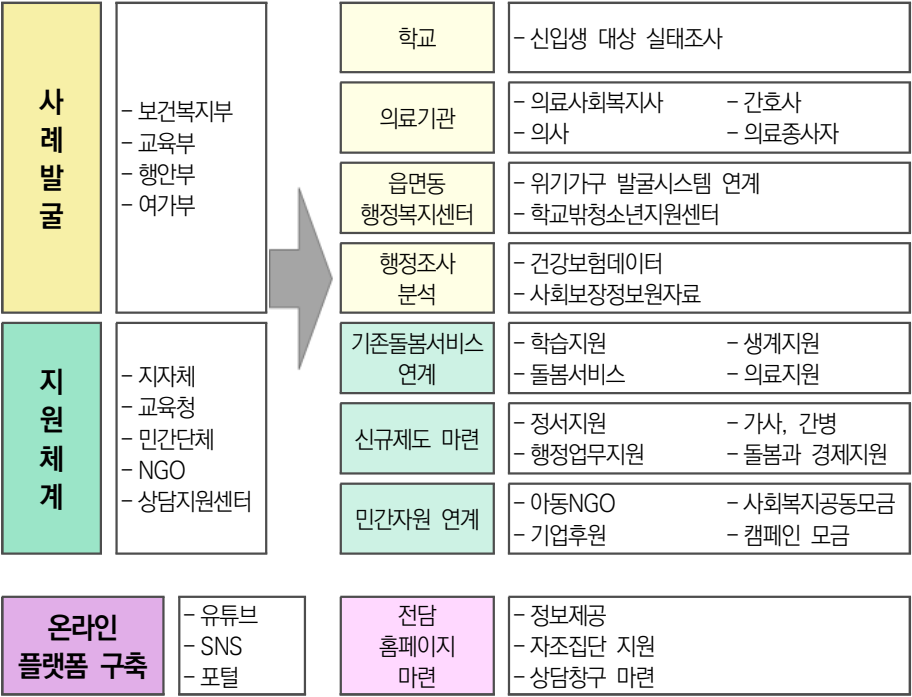


그림 IX-2.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체계(안)

(3)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가족 돌봄 경험이 있는 돌봄 제공자를 적극적으로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해야 한다. Carers UK는 돌봄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데 이 활동은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활동이다. Carer UK가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은 전문가와 공무원, 돌봄자,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돌봄 제공자의 권리와 사정, 돌봄 제공자 지원과 옹호활동,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신보건 서비스, 돌봄 제공자 복지혜택과 수당제도 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민간 단체인 Carer UK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방법을 벤치마킹해서 돌봄 서비스 유경험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가족 돌봄 제공자들의 경험을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① 커뮤니티 케어 허브

가족 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커뮤니티 케어 허브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관리기관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 허브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들이 논의하여, 제공 서비스의 우선순위나 선정집단, 서비스 지원방법 등을 논의하는 것인데,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이 적은 서비스 기관이나 대형 서비스 기관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재정 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는데, 커뮤니티 케어 허브 등을 도입하여 자원이 부족한 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 연계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허브를 공공기관이 담당하게 되면, 공공과 민간의 연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체계 구축을 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② 방문서비스 제공자 활용

방문노동자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돌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체계를 일부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가족 돌봄 대상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③ ‘가족 돌봄(Family Care)’ 카드(가칭) 발급

영국은 ‘영 케어러 카드’를 발급하여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이유를 학교에 설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족서비스 카드)(가칭)를 발급해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결석이나 사전 통보 없이 조퇴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긴급하게 가족 돌봄 대상자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될 때 교사나 학급 구성원들에게 사례별로 설명을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족 서비스 카드(가칭)’는 호주의 학비 보조금 제도처럼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카드 소지자들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영수증 제출 없이 용돈개념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Self-Care Day’(가칭) 지정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돌봄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휴가 개념의 휴식일을 보낼 수 있는 날을 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방학기간 동안 최소 일주일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간은 가족 돌봄 제공자가 아니라 돌봄 대상자로서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또는 문화 바우처 등을 제공하여 또래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가족 돌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지역사회 ‘돌봄 매니저(가칭)’ 배치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가족 돌봄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는 이들이 사회가 제공해야 할 돌봄 서비스 영역을 대체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족 돌봄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보호 받고 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돌봄 대상자이며 제공자라는 이중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돌봄 매니저(가칭)’를 배치하여 이들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진학과 진로 지도를 해야 한다. 가족 돌봄 청소년은 성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매니저(가칭)’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논의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청소년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5) 필요 예산 및 확보 방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의 비용 추계서에 기초하여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률안은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돌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보다 높게 추계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추계 안은 지원 법안 제 5조, 제6조, 제7조, 제13조만 포함하고 있고, 주요 서비스 방안인 가족 돌봄 서비스(안 제8조), 상담지원(안 제9조), 교육지원(안 10조),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안 11조), 자립지원(안 제12조)에 관한 예산 추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 발의안의 예산추계는 5년간 총 425억 1,300만원(연 평균 85억 300만원)이상으로 나타났는데(서영석의원, 2023. 4. 6), 청년대상은 제외하고 지원 서비스를 포함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IX-4. 가족 돌봄 지원 5년 간 필요예산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계획 (안 5조)	99	0	0	0	0	99	20
실태조사(안 6조)	200	0	0	200	0	400	80
지원 위원회(안 7조)	8	8	8	8	8	40	8
지원 센터 설치와 운영(안 13조)	8,813	7,885	8,160	8,422	8,694	41,974	8,395
-국비	6,985	5,988	6,197	8,630	6,603	32,170	6,434
-지방비	1,828	1,897	1,963	2,026	2,091	9,803	1,961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합계	9,120	7,893	8,168	8,630	8,702	42,513	8,503
국비	7,292	5,996	6,205	6,605	6,611	32,709	6,542
지방비	1,828	1,897	1,963	2,026	2,091	9,803	1,961

* 출처: 서영석 (2023a).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비용추계서]. p13.

4)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과제

(1)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가지 법률 제·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신규 제정하는 1안이고, 둘째,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의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는 2안이며, 셋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 또는 장애 위험군 범위에 포함시키는 3안이다. 1안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 대상 선별방법의 문제와 소득분위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체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2안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취약계층에 경계선 지능이 편입되는 효과가 즉시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년기 이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다시 마련해야 하고, 「평생교육법」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3안은 현재 장애인 관련 지원 체계에 바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거가 취약하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존재하며, 장애인 인구 증가로 예산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

표 IX-5.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개정(안)

법률 제·개정(안)	장점	필요한 조치 및 쟁점
1안 : 경계선 지능 청소년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신규 제정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 마련	- 지원 대상 선별방법의 문제 - 소득분위에 근거하지 않은 지원체계 개발 필요
2안 : 현행 아동 및 청소년 지원 관련법의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년기 이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법률 제·개정(안)	장점	필요한 조치 및 쟁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명시, 초·중·고 교육법,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 평생교육법 등이 개정 대상임	• 취약계층에 경계선 지능이 편입되는 효과 즉시 발생	• 「평생교육법」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포함 필요
• 3안 :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경계선 지능인 포함	• 현재 장애인 관련 지원 체계에 바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만들 필요 없음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거 취약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 존재 • 장애인 인구 증가로 예산 소요 많음

(2)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전달체계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체계 개선과 연계하여 신규 구축하는 1안과 기존 전달체계 안에 편입하는 2, 3안을 제안하였다.

1안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안으로 사회복지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 관리 등이 가능하므로 지원의 연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취약계층, 시설보호 청소년 등의 지원과 통합하기 어렵고, 취약계층 대상의 국가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 있으며, 센터 구축에 따르는 초기 비용과 시간이 들고, 거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원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발견될 때마다 센터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센터가 너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2안은 취약계층 복지 전달 체계에 편입하는 안으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 중복지원의 문제를 줄이고 지원 대상이 생길 때마다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재의 경계선 지능인 출현률의 통계 13.56%를 고려하면 국가 사회복지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나고,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인원이 대폭 늘어나야 하고, 행정과 지원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고, 학교의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전달체계에 편입하는 안으로 기존의 발달장애인 장애인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고, 광범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과 다른 요구들이 적절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보호자 중심인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당사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표 IX-6.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안)

법 개정(안)	전달체계	장점	단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법」 신규 제정할 경우 - 현행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기초학력보장법」 등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	1안 경계선 지능인 지원 거점센터 구축	- 사회복지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 - 사례 관리 등이 가능해서 지원의 연계를 높일 수 있음	- 취약계층, 시설보호 청소년 등의 지원과 통합하기 어려움 - 취약계층 대상의 국가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 있음 (임대주택, 고용 쿼터제 등) - 센터 구축에 따르는 초기 비용과 시간 - 거점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지원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 - 사회적 취약계층이 발견 될 때마다 센터 구축의 방식으로 진행되면 센터가 너무 많아짐
	2안 취약계층 복지 전달 체계에 편입	- 사회복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므로 중복지원의 문제 줄임 - 지원 대상이 생길 때마다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를 줄임	- 현재의 경계선 지능인 출현률 통계 13.56%를 고려하면 국가 사회복지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이 늘어남 - 현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인원이 대폭 늘어나야 함 - 행정과 지원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짐 - 학교의 지원과 연계가 쉽지 않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개정	3안 발달장애인 지원 전달체계에 편입	- 기존의 발달장애인 장애인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음 - 광범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과 다른 요구들의 적절한 수용의 문제 -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는 보호자 중심인데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당사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함 - 종사자들의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보장할 수 없음

(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방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전문 인력 확보 방안은 현재 학교, 지역아동센터, 평생교육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것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 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년 지원 자격은 첫째,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가칭)경제선 지능인 지원 국가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둘째, 대학 또는 대학에 준하는 기관에서 지정된 경제선 지능인 지원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셋째, 대학원에서 지정된 경제선 지능인 지원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표 IX-7. 경제선 지능 청소년 종사자 역량 및 역량 제고 방안

전문 인력	전문 인력 구비 요건		전문성 제고 방안	
	공통요건	직무 관련 요건	현 종사자 대상	새로 진입하는 전문 인력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 기획, 권리보장 등의 전문가	- 경제선 지능인에 대한 전문성 - 경제선 지능인 지원 역량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요구에 대한 이해	행정역량	일정 시간 이상의 관련 교과목 이수	
경제선 지능 청소년 사례관리 및 지원 연계 전문가		사회복지, 상담 등의 사례관리		
학습지원 전문가		학습지원 및 교육 역량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지원 관련 내용의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 경제선 지능 서비스 자격과정 신설 - 국가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경제선 지능 지원 관련 과목 수강 -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전공 이수
정서지원 전문가		상담 및 행동중재 역량		
일상생활지원 전문가		일상생활지원 및 교육 역량		
진로직업지원 전문가		진로 지원 및 교육 역량		
가족 지원 등 기타 전문가		상담, 사회복지 역량		

(4) 신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신규 사업은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 적응 사업의 두 영역을 제안하였다. 사회 적응 사업은 종사자 역량강화,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거점 대학 시범사업, 지역사회 적응 지원, 진로 취업 지원과 가족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다.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은 출현율 조사, 경제선 지능 청소년 및 위험군 파악, 경제선 지능 청소년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경제선 지능 청소년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지원 5년 기본계획 수립, 경제선 지능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 홍보 자료 및 영상 제작 등을 제안하였다.

표 IX-8.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신규 사업	내용	주무부처
- 출현율 조사 - 경계선 지능 청소년 및 위험군 파악	- 초, 중, 고 전 학교 급에 걸쳐 경계선 지능 선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전수조사 - 연령, 지역, 양육환경 등에 따른 출현율	교육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영유아기에 영유아건강검진(발달선별검사) 또는 어린이 집 유치원을 통해 발달종합검사 전수 조사를 통해 위험군 선별	- 보건복지부 - 교육부
실태조사	- 인권 실태 - 현재 학업,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진로 등 삶의 전반에 관한 status	보건복지부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 체계 및 인프라 구축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5년 기본계획 수립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 가칭(중앙)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센터 설립 또는 지정	보건복지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 홍보 자료 및 영상 제작	-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 및 지원 안내 자료 제작 및 배포 - 방송을 통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의 중요성 홍보	- 문화체육부 - 지자체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적응 사업은 종사자 역량강화, 특성화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네트워킹 및 흥미 탐험,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거점 대학 시범사업, 지역사회 적응 지원, 진로 취업 지원과 가족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다.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와 학교 기초학력지원인력,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대상으로 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이해와 지원에 대한 자료, 연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전환 지원 사업 중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내 경계선 지능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흥미 탐구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 취업 지원 거점 대학 지원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학과 신설 또는 대학 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은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역사회 시설 이용하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찾기, 지역사회 social community 탐색하기 등이며,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지원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교과 개발, 대학에 진학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적응 지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형

형 일자리 개발, 취업 알선 및 직장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지원 사업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을 위하여 지원 기관 모집 및 선발,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역량 강화, 경계선 지능 청소년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시 이동 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다.

표 IX-9.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적응 사업(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내용	주무 부처
교사, 사회복지사, 경계선 지능인 사례 관리 담당자 등 종사자 역량 강화		• 아동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기초학력지원인력, 기초학력전담교사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연수 내용 개발 및 연수 실시	• 교육부 • 보건복지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전환 (transition) 지원 사업	특성화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네트워킹 및 흥미 탐험	• 특성화 고등학교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이들이 은둔 고립될 가능성도 높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함 • 특성화고등학교 내 경계선 지능 청소년(체크리스트 활용해서 대상자 선별)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역사회 다양한 공간, 공연, 전시회 등을 탐방하면서 흥미를 찾아내고 흥미에 따른 역량 개발 지원	• 교육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취업 거점대학 시범사업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특수학교 전공과, 한경대학교 평택 캠퍼스, 나사렛대학교 휴먼서비스 학부 인간재활학전공 참조 • 경계선 지능 청소년(예, 학습장애, 발달지체, 기초학력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 등) 학생의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을 도와줄 수 있는 학과 신설 또는 대학 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교육부 • 고용노동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역사회 적응 지원	• 학교에서 사회로 전환(transition)을 위한 지원 사업 • 지역사회 시설 이용하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찾기, 지역사회 social community 탐색하기 등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지자체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지원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역량 강화 •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교과 개발 • 대학에 진학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적응 지원 • 경계선 지능 청소년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취업 알선 및 직장 적응 지원	• 교육부 • 고용노동부
지역별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지원 사업		•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 모델 참조 • 지원 기관 모집 및 선발 •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역량 강화 • 경계선 지능 청소년 보호자 교육 • 프로그램 참여시 이동지원	• 여성가족부 • 지자체

(5) 필요 예산 및 확보 방안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주요 대상인 사업은 경계선 지능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이다. 이 둘을 합치면 약 16억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약 11억 정도는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예산이다. 현재의 다른 정책 기반으로 비슷하게 운영되는 사업 추진 등을 참고하고 제안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였다.

표 IX-10. 경계선 지능 청소년 예산 추계

사업	내용	추계 비용	주무부처 예산 확보 방안
출현율 및 실태조사	5세~24세 대상 경계선 지능 청소년 출현율 추정 5세~24세 경계선 지능 청소년 인권실태를 포함하여 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2023년 10억 편성을 준용하여 예산 추계	10억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조사는 학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으므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보다 출장 인원이 덜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나 조사의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태조사 준비에 따르는 비용 포함해야 함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기본 계획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연구 용역에 대한 비용 1억원을 준용하여 예산 추계할 수 있음	3억 -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데 따른 비용을 포함해야 함	- 보건복지부 - 경계선 지능인 지원 인프라 구축 예산 신설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가칭)중앙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설립 -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필요함 **2023년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로 약 76억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이를 준용하여 추계함.	15억 - 운영비 (5억) - 인건비 (10억)	
종사자 역량 강화	- 종사자 역량 강화 자료 개발 -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위탁	3억 - 프로그램 개발비 포함 위탁 운영비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과 신설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국립대학육성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 교육부 - 국립대학육성

사업	내용	추계 비용	주무부처 예산 확보 방안
거점 대학	•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선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총당	사업 및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거점 대학 요건 신설
특성화고등학교 경계선 지능 네트워킹 지원 사업	• 특성화고등학교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대상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 공연, 전시, 문화 체험 • 흥미를 기반으로 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4억 • 한 학교에 2천만원씩 약 20개 학교 지원	• 교육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 적응 지원	• 경계선 지능 청소년 사회적응, 진로 취업 및 가족 지원 시범 위탁 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 15억 • 사업 위탁기관 운영 및 경계선 지능 청소년 취업 교육 프로그램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고용노동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진로, 취업 지원	*** 장애인 근로자 고충상담 등 장애인 근로지원 센터 6개소에 총 17억원 지원	• 경계선 지능 청소년이 취업하 기관에 훈련비 지급	
경계선 지능 청소년 가족 지원	과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민간위탁운영 64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이를 준용하여 추계함		
계		50억	

*출처: 강기윤 (2023a).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비용추계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3R0P7O1N0O0W9V3T2S0A0Z1Z0N1에서 2023년 9월 2일 인출.

**출처: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10-p13.

***출처: 고용노동부 (2023). 2023회계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p61, p64. https://www.moel.go.kr/agency/budget/budgetView.do?bbs_seq=20230200030에서 9월 1일 인출

예산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청년 진로 취업 고용 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 예산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 일반, 아동 보육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교육부의 경우 대학에 대학혁신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관련 내용을 포함하면 각 대학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보장 사업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명시하여 종사자 역량 강화, 실태조사와 같은 사업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과제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①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8조 1항에 4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유형으로 ‘찾은 지각 및 결석, 인간관계의 고립, 무기력 등 은둔 징후가 보이는 학생’을 추가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한 예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촉진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하며, 학업중단숙려제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육부 훈령 ‘위(Wee)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Wee Class) 2항 3호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에 은둔 징후 등 학업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교육지원청 또는 지역사회기관과 협력을 통해 하되 소그룹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자녀 소속 학교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기를 매우 꺼려하는 교육위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표 IX-1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8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잦은 지각 및 결석, 인간관계의 고립, 무기력 등 은둔 징후가 보이는 학생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제2조 3항),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발견과 사례관리(제8조 1항), 부모상담 및 교육, 멘토링(제8조 3항), 문화활동 및 동아리 등 청소년활동 지원(제10조), 자립지원 및 시민교육 지원(제11조)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표 IX-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3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은둔, 비행, 노동, 학업 등 다양한 학교밖청소년의 유형과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견과 사례관리, 상담, 교육, 문화 활동 및 동아리 등 청소년활동, 자립 및 시민교육, 부모교육 및 멘토링을 의미한다.
제8조 1	-	제8조 1(발견과 사례관리) 신설
제8조 2	제8조(상담지원)	제8조 2(상담지원)로 변경
제8조 3	-	제8조 3(부모상담 및 교육, 멘토링) 신설
제9조	제9조(교육지원)	제9조(학습지원)로 명칭 변경
제10조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0조(문화활동 및 동아리 등 청소년활동 지원) 신설
제11조	제11조(자립지원)	제11조(자립지원 및 시민교육)로 변경

③ 은둔형 외톨이지원법 제정

중장기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초·중학교 어린 시절에 발생한다. 개인적 기질, 가정, 교육, 사회문화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될수록 은둔이 장기화된다. 24세까지는 교육, 청소년정책 개선으로 발견과 지원이 가능하지만 24세 이상 연령은 해당 연령이 아니라 지원에서 배제되기 쉽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 연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들은 새로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이기에 심리적 부담이 더해져 사례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독립적 입법을 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적 연계가 가능하게 되고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다. 지금도 40대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들이 곧 50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청소년정책이나 청년정책 입법만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기존에 있는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게 될 경우 적용 대상 연령, 적용할 수 있는 지원내용 등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 분산된 전달체계로는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 은둔형 외톨이는 지원 대상이 소수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 은둔형 외톨이를 생애주기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독립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윤철경 외, 2021: 180-181).

(2)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관련 제도 개선

①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모델 개발 및 관련자 연수
학급 담임과 학교 Wee Class, Wee 센터 심리상담사, 교육복지사 등이 은둔 특징을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교사, 숙려제 운영담당자들이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 모델을 개발하고 교사연수나 담당자 연수, 학교장 연수 시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과 개입방법에 대한 연수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② 지각·결석이 잦은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 관리 강화
학교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각과 결석이 잦은 학생을 방지하지 말고 숙려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폭력 피해와 왕따 학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역올한 마음이 해소되도록 외부 상담기관에 의뢰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담임교사가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 지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생활지도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책임 관리해야 한다.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견체계 강화
학교 정보망,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청소년 통합 안전망을 이용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을 강화할 수 있다. 학교에서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이관되

는 정보를 가능한 빨리 확인하고 당사자나 부모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심의회)를 통해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발견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조직을 책임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히 의뢰, 연결하여 방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구축 및 개선사항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예방 및 장기화 예방은 기존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안과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안의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① 기존 전달체계 활용방안

기존 전달체계 활용방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9~24세 은둔 징후 또는 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다. 발견 체계는 첫째, 교육지원청과 학교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통해 학교가 은둔징후 청소년과 부모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한 인적정보를 연계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접촉하면 된다. 관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과 더불어 해당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로부터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연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촉을 통해 해당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이미 개인정보 연계가 안 되고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은둔형 외톨이 가족지원사업을 홍보하여 가족을 통해 발견하는 체계를 갖춘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사례관리, 부모교육 및 멘토링, 상담,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 중앙정부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총괄하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에서 업무지원이 가능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담당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로 할 것인가, 기초자치단체에 분산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마다 인구수, 지역범위 등에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와 생활권을 고려 고려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센터에 균등하게 배치한다. 주요 발견체계가 교육지원청과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해당 센터, 해당 시도의 생활권을 같이 고려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기능을

하는 센터를 선정·배치할 필요가 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센터의 기능을 서로 다른 것으로 분리하기보다 광역센터와 기초자치단체센터 모두 관내 지역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견과 지원 기능을 하면서 광역센터에 해당 시도 은둔형 외톨이 사업 총괄 기능을 부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②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안)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가족지원 센터 설치

시·도별로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안이다. 주요 기능은 첫째, 교사,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가정방문상담자 배치와 사례관리이다, 둘째, 의사, 임상심리사, 상담사, 센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해당 청소년에 대한 진단검사와 방문상담 결과를 기초로 해당 청소년에게 맞는 개입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행한다, 셋째, 은둔형 외톨이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에게 치료 지원, 온·오프라인 상담 및 멘토링 지원, 또래관계 지원,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활동 지원, 학습지원, 진로 및 일 경험 등 대안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분과, 통합지원체계 등에 참여하여 지역자원의 발견 등을 실시한다. 해당 청소년에게 학업중단 속려제를 적용하여 학교 안에 있을 때부터 정서적 지지를 하고 이들을 위한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 등을 지원한다, 다섯째,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책임 사항으로 한다. 상담, 지지,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자원 연계 및 정보를 제공한다.

(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은 사업기획자, 소통역량을 습득한 전문가, 은둔 경험을 갖춘 준전문가, 은둔에 대한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사 양성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전달체계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해당 기관에서 은둔형 외톨이(징후)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인력이다.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 및 부모와 소통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교사, 청소년지

도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집단 중 현장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상대로 직접 부딪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이들은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전화, 카톡, SNS, Discord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소통, 단계적으로 이끌어 내는 일,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 발견과 더불어 이들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상담 및 교육, 일상생활 관리에서 요리, 목공, 수예 등 활동과 동아리, 캠프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일, 상담을 비롯하여 다양한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일 등을 담당해야 한다. 실패를 최소화하고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과의 소통능력, 이러한 업무 담당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습 등 상당 시간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준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에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교육만 부가해서 은둔형 외톨이 현장을 지켜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은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청년, 자녀의 은둔 경험을 극복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자조모임 지도자로 활동하는 준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함께하면 대단히 효과적이다. 이들은 심리상담사 등만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직관적으로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넷째, 은둔형 외톨이 이해교육 전문 강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을 발견·예방·지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와 부모이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도 확산되어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에 대한 이해, 대응방법 등을 가르칠 강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5) 신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 심리 정서적 지원 및 치료 지원 등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 멘토를 통해 발견된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촉진하는 활동이다. 청소년과 비대면 접촉을 지속하면서 온라인으로 가능한 활동, 가정방문 등을 시도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내어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다. 자기 생활 관리에서 시작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한 음악, 미술, 글쓰기 등을 통한 자기표현활동, 가정용 키트를

활용한 목공, 수예 등 만들기 활동, 게임 등 놀이와 신체활동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화모임을 또한 가능하다. 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천한다.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제한적이었던 활동을 보다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셜다이닝, 자기표현 및 신체활동, 문화체험 및 동아리활동, 캠프활동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 사귀기를 지원한다. 셋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중에는 심리 정서적 문제, 우울, 불안, 공황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증을 가려 심리 정서적 지원,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②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멘토링, 자조모임, 부모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은둔 자녀를 외부로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모 변화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을 지지해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부모의 양육태도의 개선을 위해 강의를 통해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며 부모들 간의 대화를 나누며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시정조치 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징후) 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멘토를 중심으로 부모들이 동료의식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상승작용 하도록 이끄는 모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교육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어렵고, 소그룹 대화에서도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여 이탈하는 부모들의 경우에 자녀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더불어 부모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하다. 부모들이 비용 부담이 있어 심리상담 치료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③ 은둔형 외톨이 발견을 위한 홍보 사업

학교와 연계된 정보망이나 지역 관내 사회통합지원체계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발굴을 촉진하여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 (징후) 청소년 실태조사 및 세미나, 홍보물 제작 등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지원 대상의 규모와 현황,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데에도 필요하지만, 조사과정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이해하고 조사주체와 연결 고리가 마련된다. 실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발견과 전문적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관련기관에 비치할 은둔형 외톨이 사업 리플렛, 동영상, 온라인 홍보에 필요한 카드뉴스 등의 제작이 필요하다.

(6) 소요예산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청년 멘토 양성 및 배치, 부모 멘토 양성 및 배치, 은둔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은둔 부모 프로그램 지원, 은둔 청소년 발견·홍보 등의 사업에 필요한 총예산은 14,253,400천원이며, 국고(9,299,000원)와 지방비(4,954,400천원)를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다.

표 IX-1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사업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산출 근거	총액(재원)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 실무전문인력 양성성과 정 운영 - 소통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기관별 배치	-교재개발 : 5,000,000원 x 1종 =5,000,000원 과정운영: 200,000원 x 88명 = 17,600,000원 -교재개발 10,000,000원 x 1종 =10,000,000원 -과정운영 : 1,000,000원 x 88명 = 88,000,000원 -연 33,000,000원 x 88명 x 기관 당 2명 =5,808,000,000원	5,928,600,000원 (국고)
청년 멘토 양성 및 배치	- 양성과정 운영 - 기관별 배치	-1인당 500,000원 x 88명 =44,000,000 -시간당 1만원 x 88명 x 기관 당 1명 x 1인당 120시간 지원 x 30명 지원= =316,800,000원	360,8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부모멘토 양성 및 배치	- 양성과정 운영 - 기관별 배치	-1인당 500,000 원 x 88명 =44,000,000 -시간당 1만원 x 88명 x 기관 당 1명 x 1인당 120시간 지원 x 100명 =1,056,000,000원	1,100,0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구분	사업명	산출 근거	총액(재원)
은둔 청소년 프로그램지원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비	1인당 1,000,000원 x 기관 당 30명 x 88 개 기관 =2,640,000,000원	2,640,0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은둔 부모 프로그램지원	-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비	1인당 300,000원 x 기관 당 100명 x 88개 기관 = 2,640,000,000원	2,640,000,000원 (국고와 지방비 매칭)
은둔 청소년 발견·홍보	- 실태조사 및 세미나 - 홍보물 제작	기관당 15,000,000 x 88기관 =1,320,000,000원 기관당 3,000,000 x 88기관 =264,000,000원	1,584,000,000원 (지방비)
계			총14,253,400,000 = 9,299,000,000 (국고)+ 4,954,400,000 (지방비) * 1대 1 매칭 기준)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기운 (2023a). **경계선 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3R0P7O1N0O0W9V3T2S0A0Z1Z0N1에서 2023년 9월 2일 인출.
- 강기운 (2023b).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기운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V3R0P7O1N0O0W9V3T2S0A0Z1Z0N1에서 2023년 10월 20일 인출.
- 강선우 (20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P3O0W4V2T8R1H5I1G4F3E4M9L2L7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초등교육연구**, 27(1), 361-378.
-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 (2023). **2022년 경기도 고립청년지원사업」 최종 선정기관 안내**. <https://youth.gg.go.kr/gg/intro/notice.do?mode=view&articleNo=4260&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A%B3%A0%EB%A6%BD>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23). **2023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agency/budget/budgetView.do?bbs_seq=20230200030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 고용노동부 (202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치단체 공모 공고문**(공고일: 2023.03.15.). 세종: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108634>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22). **가족 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 아동 정책 추진방안**.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37504&ilenum=2&dtme=20230413174458>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광주in (2023. 8. 22.). **광주 서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실시**.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209>에서 2023년 9월 5일 인출.

광주광역시 (2020).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2021).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2023). **제55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성과와 방향’ 정책 토론회 자료집**.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9. 8. 30.). https://kess.kedi.re.kr/post/6684864?itemCode=04&menuId=m_02_04_02_01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교육부 (2022). **202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 **2023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3. 8. 30.). https://kess.kedi.re.kr/post/6795001?itemCode=04&menuId=m_02_04_02에서 2023년 9월 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eventGubun=060116>에서 2023년 9월 2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학력보장법**. <https://www.law.go.kr/법령/기초학력보장법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2023년 9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에서 2023년 9월 2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에서 2023년 10월 1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예)**.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초·중등교육법>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3년 10월 3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1). **“기초생활보장제도, 20대 청년을 개별가구로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1. 4. 5.).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6467>에서 2023년 1월 4일 인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에서 2023년 1월 12일 인출.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대한민국헌법(제10조)**.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에서 2023년 2월 3일 인출.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사이트. **재정사업(사업별 예산 시계열)**. <https://www.openfiscald ata.go.kr/op/ko/be/UOPKOB EA05?acntFrYr=2019&acntToYr=2023&offCd=076>에서 2023년 4월 15일 인출.

김고은, 김혜리 (2018). 경제선 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

지학, 61, 137-168.

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동일 (2023). **경계선 지능 아동 · 청소년의 이해와 교육 지원**. 파주: 학지사.

김동일, 안예지, 이연재, 최서현, 박지현, 한은혜, 황지은, 최가람 (2021). **서울시 경계선 지능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서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동일, 이연재, 한은혜, 황지은, 안예지, 고혜정, 박유정 (2023). 경계선 지능 청소년 임상집단 하위 분류 탐색. **학습장애연구**, 20(1), 1-28.

김령희 (2021). 영 케어러 지원: 영국, 호주의 사례. **현안, 외국에선?**, 15, 1-7.

김선경, 황민아, 최경순 (2021). 학령기 경계선 지능 언어발달 지연 아동의 배경지식 유무에 따른 추론 능력. **특수교육논총**, 37(1), 185-200.

김성아 (2023). 고립·은둔 청년현황과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2023(05), 6-20.

김성철 (2022).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22-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은정, 이재인 (2006).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빈곤 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253-278.

김정숙 (2016).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신건강 영향 요인. **한국교육학연구**, 22(2), 5-29.

김정현, 박선영 (2023). 영 케어러 대응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 영국, 호주, 스웨덴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40(1), 251-280.

김주경, 허민숙 (2020).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671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김지경, 송현주, 김균희, 정윤미 (202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22-수탁12). 서울: 여성가족부.

김지경, 연보라, 정은진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8-17). 서울: 여성가족부.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2020-22). 서울: 여성가족부.

김지원, 박지연 (2014). 학교폭력에 취약한 장애학생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과 학교폭력

- 피해 변인 고찰. **발달장애연구**, 18(4), 125-155.
- 김태은 (2016).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홍걸, 정춘숙, 김승남, 양경숙 (2022). **은둔형 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2.12.5.)**.
- 뉴스로 (2022. 10. 4.). **서울 서대문구, 전국 최초 영 케어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행**.
<https://www.newsro.kr/%EC%84%9C%EC%9A%B8-%EC%84%9C%EB%8C%80%EB%AC%B8%EA%B5%AC-%EC%A0%84%EA%B5%AD-%EC%B5%9C%EC%B4%88-%EC%98%81-%EC%BC%80%EC%96%B4%EB%9F%AC-%EC%A7%80%EC%9B%90-%EC%A2%85%ED%95%A9%EA%B3%84%ED%9A%8D-%EC%88%98%EB%A6%BD-%EC%8B%9C%ED%96%89/>에서 2023년 9월 29일 인출.
- 더 나은미래 (2023). **‘두더지 땅굴’에서는 은둔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2023. 7. 11. 기사)
- 류인혜 (2020). 국내 경계선 지적기능 학생의 언어관련 연구 동향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 교육연구**, 11(2), 65-95.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취약계층”**. https://open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query=%EC%B7%A8%EC%95%BD%EA%B3%84%EC%B8%B5&dicType=1&wordMatch=N&searchType=&currentPage=1&cateCode=&fieldCode=&spCode=&divSearch=search&infoType=confirm&rowsPerPage=10&sort=W&side_data=0%7C1559525에서 2023년 1월 2일 인출.
- 박광옥, 이기연, 이복실, 안예지 (2022).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보고22-일반08-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윤희, 박승희, 한경인 (2022). ‘경계선급 지적기능성’ 통일된 용어 제안 및 교육지원 쟁점과 과제: 국내 최근(2010-2022)연구 문헌분석. **특수교육학연구**, 57(2), 31-69.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삼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부산: 부산복지개발원.
- 박지영, 김병철 (2023). 영국의 영 케어러 지원정책 및 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영 케어러 정책의 시사점 탐색. **인문사회21**, 14(3), 2115-2130.
- 박찬선, 장세희 (2018).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 느린 학습자와 발맞춰 걷기**. 경기: 아담북스.

- 박현숙 (2018). **경제선 지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타당화와 하위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주미, 정익중, 김범구, 김영화 (2010).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010, 1-215.
- 백지혜 (2023). 미국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연계 동향: 커뮤니티 케어 허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24, 105-108.
- 법무부 (2021).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전수조사 시행)**. 법무부 보도자료(2021. 5. 11.). <https://www.moj.go.kr/bbs/moj/182/547742/artclView.do>에서 2022년 3월 15일 인출.
- 법무연수원 (2022). **2021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 변관석, 신진숙 (2017). 경제선 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0-109.
- 보건복지부 (2022a).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c).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d).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8. 19).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SEARCHKEY=&SEARCHVALUE=&page=1&CONT_SEQ=372616에서 2023년 6월 2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a).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6. 28.).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6950&page=1에서 2023년 7월 1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b).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4843에서 2023년 7월 1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c).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d).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3e). **가족돌봄청년, 주당 21.6시간 가족 돌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

23. 4. 2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717>에서 2023년 6월 1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f).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77174에서 2023년 7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g).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78952>에서 2023년 8월 20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3h).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r>에서 2023년 1월 30일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체계연구: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 복지타임즈 (2023. 7. 20). **지역사회통합돌봄 어디까지 왔나?**. <https://www.bokjitime.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93>에서 2023년 10월 23일 인출.
-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학교 홈페이지. www.workingschool.net/396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 **광주 서구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돌봄사업 신청 안내**. <http://sgwelfare.kr/>에서 2023년 10월 20일 인출.
- 서영석 (2023a).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비용추계서】**.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O3P0E3D1B4A1I1J2H3G1F9N6O8N4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 서영석 (2023b).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의안 원문】**.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O3P0E3D1B4A1I1J2H3G1F9N6O8N4에서 2023년 10월 2일 인출.
- 서울특별시 (2023.4.25.). **2023년 서울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https://opcl.kr/policy-details/FEw4t4cBX7SBhtxaWJTA/>에서 2023년 8월 20일 인출.
- 서울특별시 (2023b).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 참여자 모집공고**(공고일: 2023.5.19.).

서울특별시 자살예방센터 (2022). **청년자살예방 플랫폼**. 2022년 10월 24일 기사.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23a). 「**2022년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서울특별시 (2021).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서정아, 권해수 (2010).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자립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0-R2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해정, 박현숙, 이혜수 (2019).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경계선 지적기능아동의 지원방안 연구** (정책19-11).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선미정, 전종설 (2021). 취약계층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의 구조적 관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0), 215-246.

성윤숙, 문호영, 천정웅, 이희현 (202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손재환, 김범구, 한유화, 김세진 (2020).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 실태조사연구** (2020 청소년상담연구·221).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송주미, 강경미 (2011). **청소년복지**. 서울: 대왕사.

송하웅, 김현성, 원석현 (2020). **느린학습자의 병영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 좋은동네 연구소 협동조합.

신남철, 박정화 (2005). 초등학생의 체육 학습부진의 원인에 따른 유형 분류.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1(1), 73-85.

신미정, 장정은, 김진영 (2022).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3(3), 33-67.

안주영 (2022). 일본의 영 케어러 현황과 대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3, 16-27.

양경선, Grace H. Chung (2019). 취약계층 조손가족 청소년 손자녀와 보호자의 학교폭력 피해 대처에 관한 사례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1(4), 87-116.

엄정남, 이재경, 문정희 (2019).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학습권 보호 및 자립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여성가족부 (2021a).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9. 7.).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

01d.do?mid=news405&bbtSn=708063에서 2023년 3월 13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1b).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a). **2022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 5. 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에서 2023년 6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2b).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 증가 추세 뚜렷**.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2. 5. 26.).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4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3a). **2023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3. 5. 3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23년 6월 5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II)**.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c). 보도자료(2023.04.1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현황**.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https://www.ypec.re.kr/mps/administrativeData/youthSupportByTarget/runawayYouthSupport?menuId=MENU00393>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서울: 지혜문학.

오마이뉴스 (2023. 4. 27.). **영 케어러의 간병살인 후 2년, 한국은 어떻게 바뀌었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261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에서 2023년 6월 4일 인출.

오상빈 (2021).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입법이 필요하다’**.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지원의 길을 찾다.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자료집, 20-28.

유민상, 신동훈, 이민정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정원, 강보민 (2022).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은 누구인가?** (복지이슈 FOCUS

2022-28), 수원: 경기복지재단.

윤철경 (2022). 은둔형외톨이지원법에 대한 토론. **은둔형 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33-37.

윤철경, 권세진, 박현정, 서희정, 이정현, 황현 (2022). **2022 고립·은둔 청년 바우처 지원 방안 연구**. 서울: G·I·학교박청소년연구소.

윤철경, 박선영, 임말희, 김재희, 문금화, 김연정 (20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가족 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윤철경, 서보람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20-3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2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의 실태 및 정책 개발** (연구보고22-일반08-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선주, 조혜수, 오상우 (2014). 양육시설아동들의 인지능력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303-321.

이소희, 도미향, 정익중, 김민정, 변미희 (2005). **청소년복지론**. 경기: 나남출판.

이수영, 민소영, 장연진, 양효안 (2023).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심층분석** (서울시복지재단-2023-8).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이영식, 최태영 (2022). **은둔형 외톨이 탈출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 서울: 학지사.

이정우, 김태준, 남궁지영, 박승재, 최상덕, 윤민중, 이정민 (2022).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Ⅲ): 고등 및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 2022-19).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이정희 (2022). **가정 밖 청소년 원 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35).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연, 조경옥, 최지훈 (2019). **전라북도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및 지원방안** (정책연구 2019-02). 전주: 전북연구원.

이혜연, 박영균, 유성렬, 정선옥 (20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Ⅲ** (연구보고

- 12-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희현, 김경애, 김효정, 유경훈, 이성희, 정동철, 황준성, 성열관 (2020). **교육복지 지원기
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2020-24).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 인천광역시 부평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inuu.kr/bp/bbs/board.php?bo_table=bp_program_inuu2021&me_code=70d0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 인천투데이 (2020. 11. 16.). **[기획]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올해 첫 시범사업 운영.**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219>에서 20
23년 8월 21일 인출.
- 일본 내각부 (2016).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서**. 일본: 일본 내각부.
- 일본 후생노동성 (2019). **은둔형 외톨이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 일본 후생
노동성.
- 임성은, 구병두, 신혜원, 신윤승 (2020) **서울시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임성은, 황주희, 이민경, 강지원, 조영림, 김형모, 안동현, 정선영, 손병덕 (2019). **아동복
지시설 기능 전환을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정책보고서 2019-111). 세종: 보건복지
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정현, 김정현, 우아영, 윤연숙 (2022). **2022년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영 케어러
케어링’사업 효과성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 (주)제도와사람.
- 임희진, 백혜정, 김희진, 황여정, 안지선 (2014). **2014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
사** (연구보고2014-52). 서울: 여성가족부.
- 전민경 (2021).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 (이슈분석 제
214호(21-28)). 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선욱, 김형태, 김미숙, 공영숙, 이수천 (2023). 아동보호체계 관계자의 사례결정위원회
참여 경험 연구. **보건사회연구** 43(2), 215-232.
- 정소연, 서흥관, 홍순혜 (2023). 영 케어러의 돌봄활동과 그 영향: KBS 1TV <동행> 출연
가족 사례 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30(61), 151-182.
- 정익중 (2014). **아동·청소년그룹홈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정희정, 이재연 (2005). 경계선지능 아동의 인지적, 행동적 특성. **아동복지연구**, 3(3),
109-124.

- 조규필 (2013).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좌현숙, 권지성 (2023). **가족 돌봄청년(Young carer)의 경험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연구보고 2022-7).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주은미, 최승숙 (2021). 경계선 지적 지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6(1), 1-30.
- 질병관리청 (2022).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사망 및 진료 이용 현황 통계 공표**.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2. 11. 30.).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21282#에서 2023년 3월 22일 인출.
- 청년재단 (2023). **청년의 고립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청년재단 홈페이지. **2021년 체인지업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안내문**. <https://kyf.or.kr/>에서 2023년 9월 11일 인출.
- 최승숙, 한경근, 김수완, 임은주 (2023).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방안 연구** (GLR2023-002). 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최영준, 김보영, 김윤영, 임소현, 오서은 (2022). 영 케어러(Young Carer)의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혼합방법 연구. **2022 사회복지공동동학술대회 자료집**, 1119-1197.
- 최영희 (202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3S0T5B3B0Z1A1Y1Z0X5F5G8E5F1에서 2023년 10월 20일 인출.
- 최정원, 전현희, 홍세희 (2020). 취약계층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공격성, 자아탄력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2), 1-26.
- 최태영 (2021). **“은둔형 외톨이 이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실무자 교육 자료집**. 서울: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
- 최희경 (2014).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참여로서의 가족 돌봄자 운동조직 사례연구-영국 Carers UK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1(3), 37-70.
- 충북인뉴스 (2020. 10. 7). **“차라리 장애 등급을 받겠다”...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아동**. <http://www.cb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35>에서 2023년 8월 22일 인출.
- 통계청 (2023).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3. 3. 7.). <https://>

//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4071
&act=view&mainXml=Y에서 2023년 3월 8일 인출.

통계청 (2023).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에서 2023년 9월 1일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1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vw_cd=MT_ZTITLE&list_id=G_1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7156#content-group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에서 2023년 5월 4일 인출.

통일부 (2022).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2022. 12월말 기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3년 3월 15일 인출.

파이나다운청년들 홈페이지. www.pie-edu.com/사업소개/모집안내에서 2023년 9월 18일 인출.

하수정 (2022). 스웨덴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연구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3, 35-49.

한겨레 (2022. 9. 27.). **광주 서구 “가족 돌보는 청소년들, 혼자 고민하지 말아요”**.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60313.html>에서 2023년 9월 14일 인출.

한겨레 (2023. 7. 11.).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수행 지역 선정**. https://www.seoul.com/arti/society/society_general//12866.html에서 2023년 7월 20일 인출.

한국일보 (2023. 5. 5.). **돌봄 ‘절실’한 나이에 돌봄 ‘지친’ 아이들...꿈도, 희망도 사라졌다 [제101회 어린이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300230003354?did=NA>에서 2023년 5월 18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청소년쉼터**. https://www.kyci.or.kr/userSite/Local_shelter/list.asp?basicNum=1에서 2023년 10월 12일 인출.

한운선, 박현숙, 정희재, 강한술, 이유진 (2017). **경제선지적기능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참여아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함선유 (2023).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319, 34-46.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보건복지부 입양아동수 및 입양기관 현황 통계**. <https://www.data.go.kr/data/15004310/fileData.do>에서 2023년 3월 17일 인출.

허민숙 (2022). **해외 영 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 가족 돌봄청소년 지원 및 고립 예방을 위한 과제** (NARS 현안분석 제242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허영 (2023). **경제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D3C0D3C2B9Q1P0O4M0V5V2U7T4R7에서 2023년 10월 20일 인출.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모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서울: 청소년위원회.

황순길, 조규필, 박현진, 김범구, 황수진, 신정란, 윤재희 (2013). **취약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 통합모형 개발** (연구보고 2013-26).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여정, 김지경, 이운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04). 서울: 여성가족부.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연구보고 20-R2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지은 (2022). **부모 인식에 따른 경제선 지능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특성 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진구, 김지연 (2020). **기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연구보고20-R2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 이해연, 유성렬, 박은미 (201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양육시설 이용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1-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lexander, C.(2021). Affects of policy design: The case of young carers in the

- Care Act 2014 and 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55(5), 968-980.
- Duijvenbode, N., & VanDerNagel, J. E. L. (2019). A systematic review of substance use (Disorder) in individuals with mild to borderline intellectual disability. *European Addiction Research*, 25(6), 263-282.
- EBS (2014). 심층취재-경제선지능 12편, 그는 왜 ‘관심병사’가 됐나. EBSCulture (EBS 교양). <https://www.youtube.com/watch?v=KNm4pTouPmE>에서 2023년 9월 8일 인출.
- e-나라지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0에서 2023년 5월 19일 인출.
- G·L학교박청소년연구소 홈페이지. www.glosy.re.kr에서 2023년 10월 15일 인출.
- Gilbert, N. & Terrell, P. (2005).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6th edition)*. Boston, MA: Pearson, Allyn and Bacon.
- Hallahan, D. P., Kauffman, J. M., & Pullen P. C. (2009). *Exceptional learners: An introduction to education*. Boston, MA: Pearson Publications.
- Hassiotis, A., Tanzarella, M., Beggington, P., & Cooper, C. (2011).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suicidal behaviour in a sample of adults with estimate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Results from a population surve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9(3), 380-384.
- IJzendoorn, M. H., Luijk, M. P. C. M., & Juffer, F. (2008). IQ of children growing up in children's homes: A meta-analysis of IQ delays in orphanages. *Merrill-Palmer Quarterly*, 54(3), 341-366.
- Joseph, S., Becker, F., Becker, S. & Regel, S. (2009). Assessment of caring and its effects in young people: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aring Activities Checklist (MACA-YC18) 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Outcomes of Caring Questionnaire (PANOC-YC20) for young carers.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5(4), 510-520.
- Kavale, K. A., & Forness, S. R.(1996). Social Deficits and learning disabilities:a meta-analysi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9, 226-337.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u, A., & Becker, S. (2017). A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750-762.
- Leu, A., Berger, F. M. P., Heino, M., Nap, H. H., Untas, A., Boccaletti, L., Lewis, F., Phelps, D., Santini, S., D’Amen, B., Socci, M., Hlebec, V., Rakar, T., Magnusson, L., Hanson, E., & Becker, S. (2022). The 2021 cross-national and comparative classification of in-country awareness and policy responses to “young carers.” *Journal of Youth Studies*, 1-18.
- Nouwens, P. J. G., Smulders, N. B. M., Embregts, P. J. C. M., & van Nieuwenhuizen, C. (2017). Meeting the support needs of person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till a long way to go.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61(12), 1104-1116.
- Peltopuro, M., Ahonen, T., Kaartinem, J., Seppälä, H., & Närhi, V. (2014).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52(6), 419-443.
- Salvador-Carulla, L., García-Gutiérrez, J. C., Gutiérrez-Colosía, M. R., Artigas-Pallarès, J., Ibáñez, J. G., Pérez, J. G., ... & Martínez-Leal, R. (2013).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Consensus and good practice guidelinesFuncionamiento intelectual límite: guía de consenso y buenas prácticas. *Consensus and good practice guidelines*, 6(3), 109-120.
- Schalock, R. L., Luckasson, R. & Tasse, M. J. (2021). *Intellectual disability: Definition, diagnosis, classification, and system of supports (12th ed.)*.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 Seltzer, M. M., Floyd, F., Greenberg, J., Lounds, J., Lindstrom, M., & Hong, J. (2005). Life course impacts of mild intellectual deficit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10(6), 451-468.
- WHO (1952).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njuries, and*

causes of death (6th ed.). Geneva: Author.

Wieland, J. & Zitman, F. G. (2016). It is time to bring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ack into the main fold of classification systems. *BJPsych Bulletin*, 40(4), 204-206.

○ — 부 록

- 1.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지(제1차)
- 2. 업무 종사자 설문지
- 3.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부록1.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델파이조사지(제1차)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Ⅱ’의 범위와 방향 설정을 위한 작업 일환입니다.

본 조사는 중앙 정부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정책의 대상과 내용, 정책 아이디어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조사는 3차례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주관식 질문, 2~3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객관식 질문을 반복 조사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3차 조사까지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전체 조사 완료 후 30만원의 자문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 사 자	기관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연구진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구본호 연구원(044-415-2120)

연구
참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1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응 답 자	성명	홍길동
	소속	한국청소년정책대학교

1. 중앙정부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할 취약계층 청소년은?

- 1) 중요도 : 정책 대상으로서의 중요도 표시, 추가 필요한 유형이 있을 경우 (20)번 ‘기타’에 기재하고 응답(추가 사항이 더 있을 경우 칸을 만들어서 기재 가능)
- 2) 순위 : 전체 유형 중에 1~3 순위를 선정하여 해당 유형에 1, 2, 3 순위 번호 기재
- 3) 응답 이유 : ‘1) 중요도’가 낮다고(①과 ②)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1) 중요도					2) 순위 (1~3순위 선정)	3) 응답 이유 (①과 ②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저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저소득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밖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3)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5) 장애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6)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가정위탁청소년 포함)	①	②	③	④	⑤		
(7) 비행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8)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9) 위기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년한부모	①	②	③	④	⑤		
(11)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2) 유가학대피해 아동·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3) 가족돌봄청소년(영 케어러)	①	②	③	④	⑤		
(14) 농산어촌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5) 보호종료청소년(자립준비청년)	①	②	③	④	⑤		
(16) 근로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7) 중독청소년(약물, 도박 등)	①	②	③	④	⑤		
(18) (희귀난치성질환소아암)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19) 수감자 자녀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2. 중앙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은? (이 문항은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며, 단 1번 문항에서 응답한 유형도 포함하여 응답 가능)

복지 정책 사각지대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선정 이유
1순위		
2순위		
3순위		

3. 취약계층 청소년에 필요한 주요한 중앙 정부 복지 정책 서비스는? (1번 문항에서 응답한 1, 2, 3순위 청소년에 지원이 필요한 정책 서비스)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복지정책 서비스
1순위		
2순위		
3순위		

4. 최근(1~2년 내)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복지 정책의 주요 이슈는? (1번 문항에서 응답한 1, 2, 3 순위 청소년 유형과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슈)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주요 이슈
1순위		
2순위		
3순위		

5.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의 복지 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1번 문항에서 응답한 1, 2, 3 순위 청소년 유형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시설의 정책 수행상의 문제점)

1) 중앙정부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1순위		
2순위		
3순위		

2) 지방정부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1순위		
2순위		
3순위		

3) 민간단체 및 시설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문제점(정책대상, 정책내용, 전달체계, 재정 등)
1순위		
2순위		
3순위		

6.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제도 개선과 발전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1번 문항에서 응답한 1, 2, 3 순위 유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취약계층 청소년 유형		복지 정책 아이디어
1순위		
2순위		
3순위		

- 본 조사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부록2. 업무 종사자 설문지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100여명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를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는 5,000원 상당의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2023년 7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기본문항

SQ1. 귀하는 현재 어떤 유형의 기관(시설)에서 근무하십니까?

- ① 아동양육시설
- ② 공동생활가정
- ③ 청소년쉼터(중장기)
- ④ 해당없음 ☒ 조사종료

SQ2. 본 조사와 관련하여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이엑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폐기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답례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업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글로벌리서치이엑스	휴대폰 번호	경품 지급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① 동의 ☒ SQ3로 이동

② 미동의 ☒ Q1로 이동

SQ3. 귀하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연락처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 - () - ()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Q1. 귀 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어려움입니까?

문항 번호	문항	겪고 있는 어려움				구체적인 어려움 (③, ④ 응답한 경우)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Q1-1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건강·의료적 어려움 (신체 건강)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심리·정서적 어려움 (정신 건강)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4	행동 문제의 어려움 (폭력, 이상행동 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학업 수행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6	여가·문화 향유의 부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7	중독 문제(알콜, 담배 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8	시설생활·적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9	친구 관계의 어려움 (학교, 시설, 지역사회 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10	원가정과의 관계 어려움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11	자립 준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12	기타(_____)					

Q2. 귀 시설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음의 정책·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는 어떻습니까?

문항 번호	문항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2-1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Q2-2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Q2-3	건강·의료 지원(신체 건강)	①	②	③	④
Q2-4	심리·정서·행동치료지원(정신건강)	①	②	③	④
Q2-5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Q2-6	학업 지원	①	②	③	④
Q2-7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 지원	①	②	③	④
Q2-8	법률 지원	①	②	③	④
Q2-9	사회적 관계 지원(시설적응, 또래, 타인관계)	①	②	③	④
Q2-10	가족관계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Q2-11	문화·여가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문항 번호	문항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제공안함)
Q2-1-1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2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3	건강·의료 지원(신체 건강)	①	②	③	④	⑤
Q2-1-4	심리·정서·행동치료지원(정신건강)	①	②	③	④	⑤
Q2-1-5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6	학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7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8	법률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9	사회적 관계 지원(시설적응, 또래, 타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Q2-1-10	가족관계 회복 지원	①	②	③	④	⑤
Q2-1-11	문화·여가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Q3. 귀 시설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음의 정책 필요도와 수행정도는 어떻습니까?

문항 번호	문항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3-1	대상 아동·청소년 실태·현황 파악	①	②	③	④
Q3-2	관련 법·제도 개선(아동보호체계 포함)	①	②	③	④
Q3-3	자립 지원 내실화	①	②	③	④
Q3-4	가정(형)보호 활성화	①	②	③	④
Q3-5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Q3-6	시설 내 1인 1실 확충	①	②	③	④
Q3-7	시설 내 치료실·놀이실 등 확충	①	②	③	④
Q3-8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유연화	①	②	③	④
Q3-9	시설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지원	①	②	③	④
Q3-10	아동특성별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추진	①	②	③	④

문항 번호	문항	충분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제공인함)
Q3-1-1	대상 아동·청소년 실태·현황 파악	①	②	③	④	⑤
Q3-1-2	관련 법·제도 개선(아동보호체계 포함)	①	②	③	④	⑤
Q3-1-3	자립 지원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Q3-1-4	가정(형)보호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Q3-1-5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Q3-1-6	시설 내 1인 1실 확충	①	②	③	④	⑤
Q3-1-7	시설 내 치료실·놀이실 등 확충	①	②	③	④	⑤
Q3-1-8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유연화	①	②	③	④	⑤
Q3-1-9	시설종사자 역량·전문성 강화 지원	①	②	③	④	⑤
Q3-1-10	아동특성별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추진	①	②	③	④	⑤

Q4. 귀 시설의 아동·청소년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특별히 수정되어야 할 것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정책 및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구분	수정되어야 할 정책·서비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서비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인구학적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Q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4.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에서의 **경력기간**은 어느정도 인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 3년 미만
③ 3년 ~ 5년 미만 ④ 5년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DQ5.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시설장 ② 생활복지사
③ 보육사 ④ 임상심리상담원
⑤ 자립지원전담요원 ⑥ 보호상담원
⑦ 거리상담전문요원 ⑧ 기타()

DQ6. 귀하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격증/급**을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100여명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서는 5,000원 상당의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기본문항

SQ1. 귀하는 현재 어떤 유형의 **기관(시설)**에서 근무하십니까?

- ① 가정위탁지원센터 ② 지역아동센터
③ 사회복지기관 ④ 해당없음 **☞ 조사종료**

SQ2_1. 최근 2년간 귀 기관 서비스 대상 중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1명 이상 있다면,

가족유형은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조손가정 ② 양부모 가정 ③ 모자가정
④ 부자가정 ⑤ 소년소녀가정 ⑥ 기타()
⑦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없음 **☞ 조사종료**

SQ2_2. 귀 기관 서비스 대상 중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 1명 이상 있다면, **돌봄대상은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친(외)조부 ② 친(외)조모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자매 ⑥ 친인척
⑦ 계(양)부모 ⑧ 기타()

〈 설명자료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이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알코올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 등을 돌보거나 성인이 수행해야 할 가사노동이나 가족 돌봄(예: 약 챙기기, 병원 동행, 산책 보조 등) 등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말합니다.

SQ3. 본 조사와 관련하여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이엑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폐기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답례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업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글로벌리서치이엑스	휴대폰 번호	경품 지급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① 동의 **☞ SQ4로 이동** ② 미동의 **☞ Q1로 이동**

SQ4. 귀하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연락처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 - () - ()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Q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하셨던(또는 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기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항 번호	문항	겪고 있는 어려움				구체적인 어려움 (③, ④ 응답한 경우)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Q1-1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정서적(정신건강) 어려움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건강(신체적) 문제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4	학업 문제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친구 관계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6	기타 ()					

Q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정책 및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 번호	문항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2-1	대상자 실태 파악	①	②	③	④
Q2-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	①	②	③	④
Q2-3	경제적(생활비 보조) 지원	①	②	③	④
Q2-4	주거환경 개선지원	①	②	③	④
Q2-5	정신건강 지원	①	②	③	④
Q2-6	학업과 진로 지원	①	②	③	④
Q2-7	취업 연계	①	②	③	④
Q2-8	심리치료와 상담 서비스 지원	①	②	③	④
Q2-9	법률 지원	①	②	③	④
Q2-10	또래관계 지원	①	②	③	④
Q211-	문화·여가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Q2-12	가족돌봄 관련 법·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Q2-13	돌봄 대상자 의료 연계 지원	①	②	③	④
Q2-14	기타()	①	②	③	④

Q3.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 정책, 서비스가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귀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과 정책·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책·서비스
정부부처	1.
	2.
	3.
지방자치단체	1.
	2.
	3.

Q4.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가장 가까운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모, 조부모, 동생,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②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이(고)모, 삼촌 등 친인척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③ 가족, 친인척이외에 함께 생활(거주)하는 친구나 이웃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

Q5.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스스로 서비스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 등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사회에서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행정 체계를 통해 발굴

② 학교, 학교밖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교육청과 학교밖 지원체계를 통해서 발굴

③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예: 가정위탁,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발굴지원 확대

④ 지역사회의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보호대상 아동 유관기관 종사자를 통해 사례 발굴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

Q6. 아동·청소년이 수행하는 **돌봄의 범위는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말벗이나 간단한 심부름 정도 수행할 수 있다

② 가족의 일원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수준으로 식사 챙기기, 산책, 병원 동행 정도 수행할 수 있다

③ 공동생활을 함께 공유하면서 의료적 처치가 아닌 집안이나 주거지 근교에서 일상생활 조력정도 범위에서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족이나 친인척, 일상 생활을 공유하는 동거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돌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_____)

Q7. 귀하는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Q7-1로 이동 ② 아니오  Q7-2로 이동

Q7-1. (Q7의 ① 응답자 대상)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7-2. (Q7의 ② 응답자 대상)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7-3. (Q7의 ② 응답자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원가정 분리 후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제공(예: 위탁가정, 시설 입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예 ②아니오

Q.7-4. (Q7-3의 ① 응답자 대상)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장 적합한 보호서비스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① 위탁가정 ② 그룹홈
③ 양육시설 ④ 입양
⑤ 기타()

Q8. 귀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가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단독 법률, 정책, 서비스를 수립해야 한다.
② 지자체별로 조례 등을 수립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관련 정책과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③ 중앙정부가 기존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기존 돌봄 관련 정책과 서비스 대상 확대와 기준 완화로 서비스 대상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포괄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술:)

인구학적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Q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4.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에서의 **경력기간**은 어느정도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 3년 미만
③ 3년 ~ 5년 미만 ④ 5년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100여명의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를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서는 5,000원 상당의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기본문항

SQ1. 귀하는 현재 어떤 유형의 기관(시설)에서 근무하십니까?

- ① 학교  SQ1-1로 이동
- ②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 ③ 지자체 소속 경계선 지능인 지원센터(평생교육지원센터 등)
- ④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아동복지시설
- ⑤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 운영 사설 협·단체
- ⑥ 기타()

SQ1-1. (SQ1의 ① 응답자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교사
- ② 상담사
- ③ 교육복지사
- ④ 기타()

SQ2. 본 조사와 관련하여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이엑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폐기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답례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업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글로벌리서치이엑스	휴대폰 번호	경품 지급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① 동의  SQ3로 이동
- ② 미동의  Q1로 이동

SQ3. 귀하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연락처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 - () -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Q1.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항 번호	문항	겪고 있는 어려움				구체적인 어려움 (③, ④ 응답한 경우)
		전혀 아름지 않다	아름지 않다	아름다	매우 아름다	
Q1-1	자기관리 문제 (게임중독, 소비 계획 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2	심리정서 문제 (불안 우울 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신체 건강 문제 (식습관, 운동 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4	친구 관계 맺기의 어려움 (학교, 지역사회)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5	여가·문화 향유의 부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6	폭력 등의 피해 노출 문제 (왕따, 성희롱 등)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7	학업수행 문제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8	가족이나 가족처럼 도와줄 사람이 없음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9	진로 및 취업 문제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10	경제적 문제	①	②	③	④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1-11	기타(_____)					

Q2.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음의 **정책 필요도**와 **수행실태**는 어떻습니까? 또한 정책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번호	문항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Q2-1	실태 파악	①	②	③	④
Q2-2	지원 기관의 양적 확대	①	②	③	④
Q2-3	지원 전달 체계의 확립	①	②	③	④
Q2-4	예산 제고	①	②	③	④
Q2-5	정책 접근성 제고	①	②	③	④
Q2-6	기관 종사자 역량	①	②	③	④
Q2-7	관련 법·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Q2-8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①	②	③	④

문항 번호	문항	수행실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수행실태에 ①, ② 응답한 경우)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	수행되고 있지 않다	수행되고 있다	매우 잘 수행되고 있다	
Q2-1-1	실태 파악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2-1	지원 기관의 양적 확대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3-1	지원 전달 체계의 확립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4-1	예산 제고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5-1	정책 접근성 제고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6-1	기관 종사자 역량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7-1	관련 법·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2-8-1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서비스의 중요도와 지원정도는 어떻습니까? 또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번호	문항	필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3-1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Q3-2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Q3-3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지원	①	②	③	④
Q3-4	학업 지원	①	②	③	④
Q3-5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Q3-6	법률 지원	①	②	③	④
Q3-7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Q3-8	자기 관리 프로그램 (신변 관리, 소비 계획 등)	①	②	③	④
Q3-9	가족 참여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Q3-10	심리 정서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Q3-11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Q3-12	신체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Q3-13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 (동료 모임 등)	①	②	③	④
Q3-14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Q3-15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Q3-16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문항 번호	문항	수행실태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수행실태에①, ② 응답한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Q3-1-1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2	주거 지원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3	자립 준비를 위한 진로/취업/직업지원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4	학업 지원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5	상담 지원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6	법률 지원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7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8	자기 관리 프로그램 (신변 관리, 소비 계획 등)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9	가족 참여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10	심리 정서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11	지역사회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12	신체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13	사회적 관계 지원 프로그램 (동료 모임 등)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14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15	사회적 고립감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3-1-16	기타 ()	①	②	③	④	공유해주실 의견이 있는 경우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Q4.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서비스 중에서 특별히 수정되어야 할 것과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구분	수정되어야 할 정책·서비스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서비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 다음은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선별, 지원요구, 지원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Q5-1.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요구**와 **지원 실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지원 요구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Q5-1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교육	①	②	③	④
Q5-2	자기표현, 대화하기, 규칙지키기 등 사회성 교육	①	②	③	④
Q5-3	불안, 고립,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지원	①	②	③	④
Q5-4	신변관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 적응 교육	①	②	③	④
Q5-5	진로 및 사회 전환에 필요한 교육	①	②	③	④
Q5-6	공동체 활동 참여 지원	①	②	③	④
Q5-7	기타 지원요구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_____)				

문항 번호	문항	지원 실태			
		전혀 지원되지 않음	지원되지 않음	지원되고 있음	매우 잘 지원되고 있음
Q5-1-1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 교육	①	②	③	④
Q5-1-2	자기표현, 대화하기, 규칙지키기 등 사회성 교육	①	②	③	④
Q5-1-3	불안, 고립,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지원	①	②	③	④
Q5-1-4	신변관리,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 적응 교육	①	②	③	④
Q5-1-5	진로 및 사회 전환에 필요한 교육	①	②	③	④
Q5-1-6	공동체 활동 참여 지원	①	②	③	④

Q5-2.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선별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선별이 필요하다. ➡ Q5-2-1로 이동
 ② 선별이 필요하지 않다 ➡ Q5-3으로 이동

Q5-2-1. (Q5-2의 ① 응답자 대상)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선별한다고 하면 다음의 선별 방법에 대하여 적절성을 표시해 주세요.

문항 번호	문항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Q5-2-11	전체 학생 대상의 경계선 지능인 선별검사	①	②	③	④
Q5-2-12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의 경계선 지능인 선별검사	①	②	③	④
Q5-2-13	학교 교사나 보호자 등의 선별의뢰를 통한 선별검사	①	②	③	④
Q5-2-14	기타 ()	①	②	③	④

Q5-3.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든다면 어떤 형태가 적절하다고생각하시는지 다음의 보기를 보고 적절성을 체크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순위도 매겨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순위
Q5-3-1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 지원 체계 수립	①	②	③	④	
Q5-3-2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 체계 내에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삽입	①	②	③	④	
Q5-3-3	학교 내 방과 후 운영 체계에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삽입	①	②	③	④	
Q5-3-4	학교 밖의 경계선 지능인 센터 등 전문 기관 지원 체계에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위탁	①	②	③	④	
Q5-3-5	특수교육대상자 범주에 포함시켜 특수교육지원 체계를 통해 지원	①	②	③	④	
Q5-3-6	기타 지원체계에 관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Q6. 지역사회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주 전달 체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기를 보고 **적절성**을 체크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순위도 매겨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순위
Q6-1	지역별 거점 경계선 지능인 지원 센터 구축하여 지원 관리	①	②	③	④	
Q6-2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명시하여 동 주민센터 취약계층 지원 체계와 통합	①	②	③	④	
Q6-3	장애 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지원과 통합	①	②	③	④	
Q6-4	지역별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한 관리	①	②	③	④	
Q6-5	기타 지원체계에 관한 제안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_____)					

Q7. 최근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계선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8. 경계선 지능 청소년 **정책 및 제도 개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 1~3가지를
 제안해 주십시오.

Q9. 경계선 지능 청소년 또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하여 용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대안적인 용어**를 제안해 주십시오.

인구학적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Q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4.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에서의 **경력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 3년 미만
③ 3년 ~ 5년 미만 ④ 5년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DQ5. 귀하의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낮은 용어이며 잘 모른다.
② 용어를 들어 봤다.
③ 용어와 개념을 알고 있다.
④ 용어와 개념을 매우 잘 알고 있다.

※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업무 종사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100여명의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서는 5,000원 상당의 소정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기본문항

SQ1.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등교거부를 하고 은둔생활을 하는 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직접 지도는 안했지만 잘 알고 있다
- ③ 없다 ☞ 조사종료

SQ2. 귀하는 어느 기관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 ① 학교 (학생부장, Wee Class 상담사, 교육복지사)
-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
-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동반자)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 청소년 담당)
- ⑤ 기타()
- ⑥ 해당없음 ☞ 조사종료

SQ3. 본 조사와 관련하여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 이엑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폐기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답례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업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글로벌리서치이엑스	휴대폰 번호	경품 지급	조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① 동의 ☞ SQ4로 이동
- ② 미동의 ☞ Q1로 이동

SQ4. 귀하의 연락처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 연락처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 - () - ()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Q1.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조금 안다 ④ 잘 모른다

Q2. 다음 중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중복 선택 가능)

- ①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②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③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한다
 ④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지만, 등교 일수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등교를 한다
 ⑤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
 ⑥ 은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료,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한다(상담센터, 병원 등)
 ⑦ 기타(_____)

Q3. 다음 중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설명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방이나 집에만 머무는 은둔상태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을 넘어야 한다
 ② 지적 장애나 정신질환을 계기로 은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9세~24세 연령 범위 청소년으로 친구가 1명 이하이다
 ④ 은둔으로 인한 불안이나 초조감 등 괴로움을 갖고 있다

Q4. 등교거부를 하고 은둔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사전에 보이는 징후**들은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학교폭력 피해를 봄
 ② 수업시간에 잠
 ③ 친구가 거의 없음
 ④ 지각, 결석을 많이 함
 ⑤ 자기 의사표현이 서투름
 ⑥ 무기력하며 만사를 귀찮아함
 ⑦ 기타(_____)

(중복 선택 가능)

- Q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Q7.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476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I

Q8. 귀 기관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주로 어떻게 발견하였습니까?

- ① 교사가 발견, 의뢰
- ② 위클래스 상담사, 교육복지사가 발견·의뢰
- ③ 부모, 가족 등 주변인이 의뢰
- ④ 지자체에서 의뢰
- ⑤ 기타(_____)

Q9. 귀 기관에서 처음 발견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는 주로 어느 집단에 속합니까?

Q9-1. 연령대

- ① 초등학교 3학년(10세) 이하
- ② 초등학교 4~6학년(11~13세)
- ③ 중학교(14~16세)
- ④ 고등학교(17~19세)
- ⑤ 후기 청소년(20~24세)
- ⑥ 25세 이상

Q9-2.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③ 남녀비율이 비슷하다

Q1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평소에 온순하고 말수가 적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 ② 은둔의 심각성을 모르고 곧 좋아질 것이라 생각해서
- ③ 은둔형 외톨이를 알아채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역량이 부족해서
- ④ 업무 과중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다룰 여력이 없어서
- ⑤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아서

Q11. 다음 기관 중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초기에 발견하기 가장 용이한 곳은 어디입니까?

- ① 학교 ②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③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 ⑤ 가정 ⑥ 기타(예시: 동사무소 등)

Q12. 학교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용이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은둔성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구를 통한 진단
- ② 지각·결석이 잦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
- ③ 교사 교육을 통해 담임교사 등의 관찰력 향상
- ④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하고 돕고자하는 관리자의 인식과 조직문화
- ⑤ 또래상담·쪽지 상담 등을 활용한 학급 내 투명 인간(존재감 없는 청소년)찾기
- ⑥ 보건실과 Wee Class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 관리(특히 쉬는 시간 보건실 이용 학생)

Q1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발견해도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당사자의 거부
- ② 부모 동의를 받기가 어려움
- ③ 보호자가 원하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진단치료비, 경제적 지원, 선호하는 활동 지원 등)
- ④ 개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음
- ⑤ 기타(_____)

Q14. 청소년이 장기적인 등교거부를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 경우 **학교·기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였습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외부기관 연계 **☞ Q14-1로 이동**
- ② 가정방문 및 등교지원 서비스
- ③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
- ④ 학업 지속 지원(대안학교, 복교, 검정고시 등)
- ⑤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 ⑥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취업준비, 기술교육 등)
- ⑦ 건강검진 및 치료
- ⑧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 ⑨ 공동체 교류지원(동아리, 소모임, 자조집단 등)
- ⑩ 문화·취미 지원(독서, 영화, 취미 등)
- ⑪ 복지·생활 관련 안내 및 지원(생계급여, 수당 등)
- ⑫ 청소년의 거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
- ⑬ 기타(_____)

Q14-1. (Q14의 ① 응답자 대상) 어떤 기관에 **연계**하였습니까?

-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③ Wee센터
- ④ 정신건강복지센터
- ⑤ 병원 및 의료기관
- ⑥ 은둔형 외톨이 전문기관(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
- ⑦ 기타(_____)

Q15. 귀 기관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만날 때 주로 활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기관을 방문
- ② 담당자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집으로 방문
-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집이 아닌 카페, 공용 회의실 등 기타 다른 장소에서 만남
- ④ 온라인 등 비대면 방법
- ⑤ 기타(_____)

Q16.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 ①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
- ②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대상 소그룹 멘토링
- ③ 자녀와 부부를 포함한 가족치료
- ④ 자녀로 인한 부모의 우울, 불안 등을 다루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
- ⑤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들의 자조모임
- ⑥ 기타(_____)
- ⑦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Q17.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조금 심각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심각하지 않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Q18. 은둔형 외톨이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늘어날 것이다 ② 줄어든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Q19.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은둔 징후를 보여도 마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② 일단 은둔이 시작되면 장기화돼서 늘어날 수밖에 없음
- ③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문제로 개선될 것임
- ④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것임

Q20.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필요하지 않다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Q21. 귀하가 근무하는 지역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나 사업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Q22.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효과가 높은 **지원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② 은둔형 외톨이 부모 등 가족
- ③ 학교교사 ④ 심리상담사
- ⑤ 지역사회기관 실무자 ⑥ 기타(_____)

Q2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
- ② 심리·마음건강 상담(불안, 우울 등)
- ③ 학업 지속 지원(대안학교, 복교, 검정고시 등)
- ④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 ⑤ 취업·진로 상담 및 교육(취업준비, 기술교육 등)
- ⑥ 공동체 교류지원(동아리, 소모임, 자조집단 등)
- ⑦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
- ⑧ 건강검진 및 치료
- ⑨ 문화·취미 지원(독서, 영화, 취미 등)
- ⑩ 복지·생활 관련 안내 및 지원(생계급여, 수당 등)
- ⑪ 기타(_____)

Q24.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부모(보호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은둔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교육
- ②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 대상 소그룹 멘토링
- ③ 자녀와 부부를 포함한 가족치료
- ④ 자녀로 인한 부모의 우울, 불안 등을 다루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상담
- ⑤ 유사 문제를 겪는 가족들의 자조모임
- ⑥ 기타(_____)

Q2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①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②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 ③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및 고위험군 청소년(상습 결석, 학교폭력 피해 등) 발견 시, 학교·청소년 기관 등이 개입 및 연계하도록 강제성 및 권한 부여
- ④ 학교·청소년 기관 등에 전문 인력 배치 및 예산 배정
- ⑤ 학교 교사, 청소년 기관 종사자 등 대상으로 교육 실시
- ⑥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전문기관 설치
- ⑦ 전국 실태조사 및 국가 통계 관리
- ⑧ 기타(_____)

Q26. 다음은 귀하의 실무자로서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번호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Q26-1	은둔형 외톨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Q26-2	은둔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자의 이들에 대한 이해와 조력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Q26-3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누구인 지 알아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6-4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6-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대하는 실무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Q26-6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코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6-7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정의 위기 상황 시 도움이 될 지역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6-8	나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6-9	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6-10	나는 은둔형 외톨이를 이해하고 개입방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Q27. 과거에 지도했거나 현재 지도하고 있는 은둔생활 청소년의 성별과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별	숫자
남자	
여자	

인구학적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Q2. 귀하의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DQ3.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DQ4.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에서의 **경력기간**은 어느정도 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 3년 미만
③ 3년 ~ 5년 미만 ④ 5년 ~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3.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4~5명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는 1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기관, 직책, 경력기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관련

1. 경력관련 사항

소속기관	구체적인 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직책	예: 센터장, 과장 등 직급,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체 경력기간	관련 업무 전체 경력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현 소속기관 경력기간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의 관련 업무 경력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2. 개인정보 관련(FGI 참석 답례비 지급 필요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 모두 입력 부탁드립니다

- * 해당 자료는 답례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 * 답례비는 1인당 15만원 지급되며, 세금을 제외하고 136,800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답례지급 후 파기됩니다.

Q1. 현재 근무하는 시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해당 업무 수행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Q2. 전반적으로 시설입소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Q3. 현재 귀하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어떠한 유형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취약하고 어려움(지원의 사각지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Q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중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Q5.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 중 중복되거나 불필요(중요도가 낮거나 무의미)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Q6.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지원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Q7. 현재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내용과 지원수준이 적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내용과 지원수준이 적절(충분)하지 않다면, 어떠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보완(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8.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주관부처 이원화에 따른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지원의 차별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9. 지자체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해 특별히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10. 현재 귀하의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을 돌보는데 있어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시설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적절(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충분)하지 않다면, 어떠한 지원이 보완(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4~5명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는 1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기관, 직책, 경력기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관련

1. 경력관련 사항

소속기관	구체적인 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직책	예: 센터장, 과장 등 직급,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체 경력기간	관련 업무 전체 경력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현 소속기관 경력기간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의 관련 업무 경력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2. 개인정보 관련(FGI 참석 답례비 지급 필요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 모두 입력 부탁드립니다

* 해당 자료는 답례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 답례비는 1인당 15만원 지급되며, 세금을 제외하고 136,800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답례지급 후 파기됩니다.

Q1.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을 파악하고 사례발굴과 사회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나요?

Q2.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할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간병/돌봄 서비스 연계, 아동·청소년의 학업/취업/진로 지원, 경제적 지원 확대 등)

Q3. 가족돌봄 아동·청소년들의 학업과 취업/진로 등 개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예: 가정위탁센터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해 돌봄 인력 연계사업 실시,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체계 연계 신청 등)

Q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책/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Q5.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과 자원 연계 강화와 서비스 지원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Q6.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은 기존 돌봄 지원정책의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관련하여 새롭게 단독 법률 제정, 정책 수립, 서비스 개발을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 돌봄 관련 정책의 대상자 및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Q7.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영양, 돌봄, 일상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정책: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

3)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ID(기록하지 마세요) <table border="1">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able>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4~5명의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업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는 1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소속기관, 직책, 경력기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관련

1. 경력관련 사항

소속기관	구체적인 기관명을 입력해주세요.
직책	예: 센터장, 과장 등 직급,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전체 경력기간	관련 업무 전체 경력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현 소속기관 경력기간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의 관련 업무 경력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2. 개인정보 관련(FGI 참석 답례비 지급 필요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 모두 입력 부탁드립니다

* 해당 자료는 답례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 답례비는 1인당 15만원 지급되며, 세금을 제외하고 136,800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답례지급 후 파기됩니다.

Q1.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학교에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Q2.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Q3.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사회 공적 정책(제도)의 지원 대상이 된다면 선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Q3-1) 학교의 경우

Q3-2) 지역사회와의 경우

Q4. 학교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습니까?

Q5.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 방안
(예, 기초학력, 특수교육대상자, 새로운 분류, 방과후 지원 체계 등)

Q6. 지역사회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 전달 체계 방안
(거점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Q7.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정책 및 제도 개발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Q8. 보완/개선 또는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

Q9. 다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서 차별화 되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요?

Q10.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갈 때 사회 적응/진로탐색/직업교육 등을 위해 사회전환과 관련된 지원 정책/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특수교육의 전공과 모델을 알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11. 경계선 지능 청소년 또는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하여 용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대안적인 용어를 제안해 주십시오.

Q12.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지원 방안은?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Q13.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은 어떻게 선별(발견)했으며 주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생활 실태는 어떠한지요?

4)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업무 종사자 FGI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당사자 FG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4~5명의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는 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관련

1. 분류정보

형제자매 수	형제자매가 총 몇 명인지 입력해주세요
형제자매 순서	몇 번째 자녀인지 입력해주세요
은둔기간	은둔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습니까? 총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최초 은둔시작시기	(예시: 중3, 고졸 후, 대학재학 중 등)
연령	
성별	

2. 개인정보 관련(FGI 참석 답례비 지급 필요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 모두 입력 부탁드립니다

- * 해당 자료는 답례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 * 답례비는 1인당 5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 *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답례지급 후 파기됩니다.

Q1.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나요?

Q2. 성장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3. 학교를 가기 싫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개인문제, 가족문제, 학교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 등)

Q4. 부모님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2

가족 역동 탐색

Q5. 은둔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 가족 간의 변화 포함)

Q6. 부모님은 어떤 부모였나요?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 등 탐색)

Q7. 현재 본인의 은둔상태는 어떠한가요?

Q8. 본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마음상태는 어떠한가요?

Q9. 가족들의 도움과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10. 은둔 증상과 행동들에 대해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도움이 되었던 점과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탐색)

Q11.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 병원 등을 이용한 경우 도움이 된 점과 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Q12. 은둔생활 시작 시 (등교거부 등)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Q13. 현재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정책적으로 바라는 것 포함)

5)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부모 FGI 설문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ID(기록하지 마세요)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부모 FGI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과제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어려움과 복지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4~5명의 **은둔형 외톨이 아동·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기관에서 참여자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참여한 분들께는 100,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행기관: 글로벌리서치E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044-415-2169)	글로벌리서치EX 홍종호 이사(02-3456-176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044-415-2136)	글로벌리서치EX 김창민 대리(02-3456-1764)

-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생된 결과나 개발 내용에 대한 직접적 금전보상이 없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함(답례품 지급을 위한 연락처는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폐기함).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개인정보 관련

1. 분류정보

자녀의 성별	자녀의 성별을 입력해주세요
자녀 수	자녀가 총 몇 명인지 입력해주세요
자녀 순서	은둔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 입력해주세요
자녀의 은둔기간	자녀의 은둔생활이 어느정도 지속되었습니까? 총 기간을 입력해주세요
최초 은둔시작시기	(예시: 중2, 고졸 후 , 군 제대 후 등)
자녀의 연령	
성별	

2. 개인정보 관련(FGI 참석 답례비 지급 필요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자 모두 입력 부탁드립니다

- * 해당 자료는 답례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 * 답례비는 1인당 1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 * 관련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답례지급 후 파기됩니다.

Q1. 자녀는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나요?

Q2. 자녀의 은둔 초기 증상과 문제행동은 무엇인가요?

Q3. 등교거부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문제, 가족문제, 학교 등의 사회 환경적 문제 등)

Q4. 부모는 그 문제행동에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2

자녀와 가족 역동 탐색

Q5. 자녀가 은둔생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 가족 간의 변화 포함)

Q6.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였나요?
(양육태도, 의사소통방식 등 탐색)

Q7. 현재 자녀의 은둔상태는 어떠한가요?

Q8. 부모님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마음상태는 어떠한가요?

Q9. 현재 부모님이 자녀를 지지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10. 자녀의 은둔 증상과 행동들에 대해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도움이 되었던 점과 도움이 되지 않았던 점 탐색)

Q11. 지역사회 전문 상담기관, 병원 등을 이용한 경우 도움이 된 점과 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Q12. 자녀의 은둔생활 초기 증상 발현 시(등교거부 등)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Q13. 현재 자녀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정책적으로 바라는 것 포함)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I

이 연구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진단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개년에 걸쳐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2022년에는 교육 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그리고 2023년에는 복지 분야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을 개발하였다. 특히, 2023년도에는 델파이조사 등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4개 유형의 청소년 대상을 선정하여 복지 정책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 설문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등의 방법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전문가 델파이조사는 2023년 3월 8일 ~ 4월 17일 사이에 아동·청소년학과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복지 관련 연구원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영역에서의 취약계층 청소년 정책 대상과 정책 내용, 주요 이슈,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워킹그룹의 구성·운영은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4개 유형별로 학계 및 현장 실무자 3~4명 내외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점 진단, 설문조사 문항 구성, 정책과제 개발 등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18일 사이에 4개 유형별 취약계

층 시설 종사자 각 100명 내외, 총 511명 대상으로 온라인 웹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 현황과 정책 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파악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는 2023년 8월 8일 ~ 2023년 8월 21일 사이에 4개 유형의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와 은둔형 외톨이 부모 및 당사자 등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지원정책의 실태와 요구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공통과제와 각 유형별 과제를 제안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공통과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확충 및 특성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맞춤형 전문 인력 배치 및 연수 강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제·개정 추진의 7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4개 유형별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하여 각각의 청소년 유형의 지원과 관련한 법률 및 조례 제·개정, 전달체계 구축, 전문 인력 확보,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취약계층,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시설 보호, 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가족 돌봄,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복지, 복지지원, 정책, 정책 진단, 제도, 정책과제

ABSTRACT

Study II on Diagnosing the Support Policy Need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to Complement the Scheme

This study aimed to prepare effective policy measures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diagnos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period of 2 years, during which polici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regarding their education and welfare were developed in 2022 and 2023, respectively. In 2023, based on expert opinions, including those gathered via the expert Delphi survey, four typ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olicy blind spots were selected to examine welfare policies and develop related policy tasks, namely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facility protection, in family care, or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socially withdrawn children and adolescents.

To develop policy tasks based on the diverse opinions of various academics and field experts, this study referred to the Delphi survey in combination with expert working groups, a questionnair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FGIs). The referenced iteration of the Delphi survey was administered between March 8, 2023 and April

17, 2023, to 20 professors in the welfare field as well as welfare researchers affiliated with the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Studies and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tudies to collect these experts' opinions on welfare policy targets and content, key issues, and policy task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Expert working groups comprising three to four academics and field experts each were organized and operated for each of the four aforementioned typ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identify problems in existing policies, prepare questionnaire survey items, and develop policy tasks. An onlin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511 respondents from July 24, 2023 to August 18, 2023, including about 100 facility workers in jobs related to each of the four types of vulnerable child/adolescent groups. Responses helped the researchers understand the status of these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ir policy support needs. FGIs were conducted with 20 interviewees in the period August 8-21, 2023. Interviewees comprised employees of welfare-related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four groups of vulnerable children and adolescents, parents of socially withdrawn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vulnerable children and adolescents themselves. The interview content helped the researchers deeply ascertain the actual situations and welfare support policy need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applying the above methodologie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seven common tasks for supporting the welfar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by type: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tailored to each type of child and adolescent belonging to a vulnerable group, providing comprehensive support for all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identify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who currently exist in blind spots, expanding and characterizing organiza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strengthening the deployment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designated to assis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establishing a social care system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and promot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applicable laws or ordinances to support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to support the welfare of each of the four types of vulnerable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tasks: enacting and amending applicable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support of each type of child or adolescent, establishing a delivery system, recruiting a sufficient number of professionals, developing projects and programs, and securing the necessary budget.

Keywords: Vulnerable groups, Children and adolescents in vulnerable groups,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facility protectio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family c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Socially withdrawn children and adolescents, Welfare, Welfare support, Policies, Policy support, Scheme, Policy tasks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3-기본01 청소년들은 ‘금융’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 청소년 금융이해력 수준 및 금융생활 실태 / 김지경·서정아·송현주
- 연구보고23-기본02 청소년활동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문호영·서고운·김진호
- 연구보고23-기본03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 연구 / 이윤주·최용환·길정아·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4 2023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 / 임희진·황여정
- 연구보고23-기본05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연구 / 배상률·김영한·황현정
- 연구보고23-기본06 청소년의 대안교육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 오해섭·최홍일·송원일
- 연구보고23-기본07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최정원·이인영·박지숙·이호준
- 연구보고23-기본08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인재·임지연·김민·강영배
- 연구보고23-기본09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 박지수·이지연·한윤선·김혁
- 연구보고23-기본10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조혜영·한지형
- 연구보고23-기본11 청소년 디지털인재를 어떻게 양성할까? / 이창호·모상현·최항섭
- 연구보고23-일반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유성렬·이수정
- 연구보고23-일반01-01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
- 연구보고23-일반02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 양계민·권오영·이영신·장윤선·장인숙
- 연구보고23-일반07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황진구·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7-01 202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윤희·정윤미
- 연구보고23-일반08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임선아·김지혜
- 연구보고23-일반08-01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 연구보고23-일반08-02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정민·홍명기·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Ⅲ / 김형주·김정숙·김문길·변금선·배정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임성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4-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신인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	청년종합연구Ⅱ: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김이배·노혜진·김성아·박광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2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1)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실태 및 정책개발 / 백혜정·김지연·김승경·노혜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3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2)	청년의 금융취약 및 정책소외 실태와 과제 / 김성아·김문길·나원희·한영섭·강예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8-04(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5-03)	발달장애청년의 정책소외 실태와 정책과제 / 박광옥·김용득·이복실·이은영·이동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8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3-일반0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김경준·김영지·윤철경·이은주·이은주·임성은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3-수시0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내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 황진구·김윤희
연구보고23-수시02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 배상률
연구보고23-수시0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 유민상·서고운·신동훈·이지연
연구보고23-수시04	청소년복지시설 설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 김영한
연구보고23-수시05	니트 청년 지원 사업의 참여자 발굴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구직단념청년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김나영

수탁과제

〈 일 반 〉

- 연구보고23-수탁01 디지털시대, 디지털 문해력 개념의 확장 / 황용석·이현주·황현정
- 연구보고23-수탁02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 강진숙·김지연·류숙
- 연구보고23-수탁03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사업 성과 연구 / 이윤주·최정원·최홍일·이수진
- 연구보고23-수탁04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연구보고23-수탁05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5-01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 정책자료집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3-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플랫폼 개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7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 존중과배려 메타버스 체험학습 교실 - 교사용 수업활용 안내서 / 임지연·황여정·이미영
- 연구보고23-수탁08 학교-지역사회-민간연계를 통한 우수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이창호·주예찬·이슬기
- 연구보고23-수탁09 인성교육 프로그램 비인증제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김봉제·신현우·곽현석
- 연구보고23-수탁10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이정민·최홍일
- 연구보고23-수탁10-0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이미숙·양소현·고혜정·최진혁·한송이·문미혜·윤애영·김주이·조성운
- 연구보고23-수탁11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영역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 연구보고23-수탁12-01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초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2-02 2023년 교과 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중고등 / 최용환·김동일·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3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최용환·김동일·박윤수·김보경·장혜윤·임지영
- 연구보고23-수탁14 2023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 서기희, 김성혜
- 연구보고23-수탁15 2022년 중앙정부 및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추진성과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 최용환·박윤수·김보경·장혜윤·김수진, 오지혜
- 연구보고23-수탁16 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서기희·오지혜
- 연구보고23-수탁17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박소영
- 연구보고23-수탁18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황진구·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3-수탁19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0	신 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조아미
연구보고23-수탁21	청소년활동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현황 연구 / 서정아·김정울·김지수
연구보고23-수탁22	글로벌 K-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체계 연구 / 양계민·권오영
연구보고23-수탁23	레인보우스쿨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 양계민·이영신
연구보고23-수탁24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장근영·김기현·이상준·황성수·이규용·윤석천·최성은·조양진
연구보고23-수탁25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
연구보고23-수탁26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연구 / 김윤희·황진구·이상현·김태성·정윤미
연구보고23-수탁27	2023년 청년정책 성과자료 제작 / 김기현·김형주·김지민
연구보고23-수탁28	청년문제 대응 자원 조성방안 연구 / 김기현·이윤주·조양진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학폭0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저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고학년)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3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4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 모상현·구찬동·조규복·송채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5	2022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발간 모음집 / 모상현·김예원·신보람
연구보고23-학폭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모상현·김창겸·김예원
연구보고23-학폭07	2022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이경상·남지영·송채원·장원빈
연구보고23-학폭0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보고서 / 모상현·남지영·장원빈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3-대안01	대안학교(각종학교) 운영실태조사 / 최홍일·김세광·오해섭
연구보고23-대안0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에 관한 기초 연구 / 최인재·송원일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3-01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23.7.19.)
 세미나23-02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 설명회 및 방법론 특강 (23.8.24.)
 세미나23-03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역사와 전망」 (23.9.12.)

〈 워 크 쉵 〉

- 워크숍23-01 2022년 하반기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23.2.8.)
 워크숍23-02 2022 하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23.1.16.)
 워크숍23-03 2023 꿈지락 운영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워크숍 (23.5.2.)
 워크숍23-04 2023년 학생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및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23.5.3.)
 워크숍23-05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기본과정 (23.7.27.~7.28.)
 워크숍23-06 2023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23.7.19.)
 워크숍23-07 2023년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집필진 워크숍 참가자료 (23.8.5.)
 워크숍23-08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_심화과정 (23.11.2.~23.11.3.)

〈 포 럼 〉

- 포럼23-0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생애주기 시각에서의 사회적 고립 대응(23.4.25.)
 포럼23-02 챗GPT 알고리즘 이해와 청소년 시민성증진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23.7.4.)
 포럼23-03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3.8.24.)
 포럼23-04 보호소년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보호처분제도 개선 방향 모색 (23.8.25.)
 포럼23-05 대안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23.9.20.)
 포럼23-0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 (23.9.21.)
 포럼23-07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포럼 (23.10.25.)
 포럼23-08 청년종합연구 포럼: 협동연구 연구성과 보고 (23.11.14.)
 포럼23-09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 대응 (23.11.21.)
 포럼23-10 청소년정책포럼 '도시를 만드는 아이들' (23.12.7.)

〈 콜로키움 〉

콜로키움23-01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처리의 이해 (23.4.19.)
콜로키움23-02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1차 콜로키움 “SDGs 시대의 청소년정책” (23.6.19.)
콜로키움23-03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2차 콜로키움 “학습 회복(Learning Recovery)에서 교육 혁신(Education Transformation)으로:코로나 이후 해외 교육 사업의 변화” (23.7.20.)
콜로키움23-04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3차 콜로키움 “청소년 사이버범죄 양상 파악을 위한 연구 방법: ATLAS.ti 23을 이용한 주제 분석(원제: Using Thematic Review with ATLAS.ti 23 to Identify Patterns of Cybercrime among Youths from Literature)” (23.8.18.)
콜로키움23-05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4차 콜로키움 “청소년과 국제개발협력 : 월드비전의 전략과 사례를 중심으로” (23.8.28.)
콜로키움23-06	교육 혁신 도구로서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방향과 현황 (23.9.18.)
콜로키움23-07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5차 콜로키움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 도전과 기회를 중심으로” (23.11.13.)
콜로키움23-08	2023 글로벌 청소년정책연구 제6차 콜로키움 “공존과 상생을 위한 세계시민의식” (23.12.01.)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3-01	2022 공교육 안팎 대안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명회 및 연수 보고서
자료23-02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3-03	인성교육 재정립 및 학교인성교육 추진방향
자료23-04	학교 시민교육과 시민성 개념의 재구조화
자료23-05	민주적 학교 운영 길잡이
자료23-06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3-07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위촉식 및 연수
자료23-08	2023년 학생참여교육 실천 프로젝트 전문가 특강 자료집
자료23-09	2023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3-10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가이드북
자료23-11	제12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3-12	다문화청소년 진로교육 선도교원 양성 적응평가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1호(통권 제10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2호(통권 제10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3호(통권 제11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4권 제4호(통권 제111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4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46호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147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Ⅰ
148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Ⅱ
149호	다양한 가족 메타버스 상담·활동·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 연구
150호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 NYPI Bluenote 통계 〉

74호	후기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결과
75호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76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5차 조사(2022년) 주요 조사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협동연구총서 23-89-01

연구보고23-일반06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II

인 쇄 2023년 12월 22일

발 행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13-5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13-5